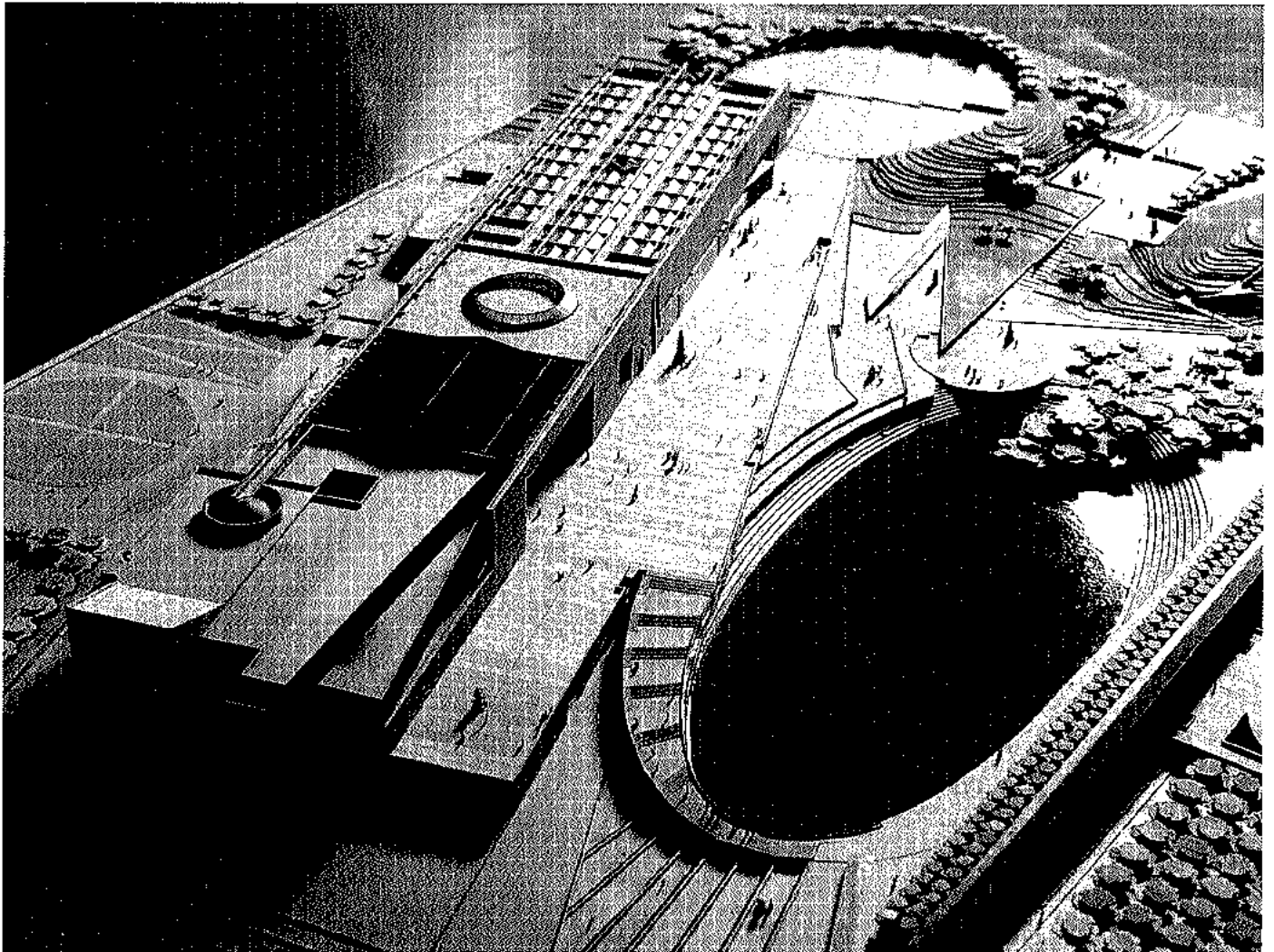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2월호 통권3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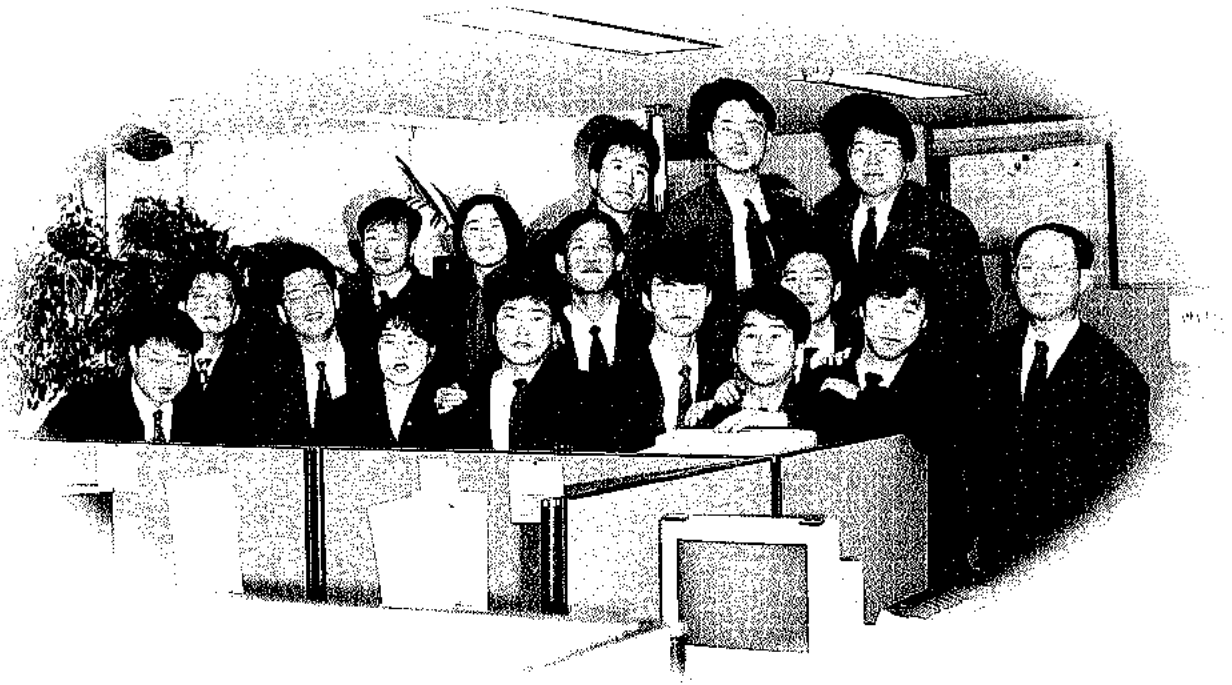
월간 건축사 1995년 12월호 통권 320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사)라 - 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국인지

December

12

칼럼
건축의 '절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 송효상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1) / 최찬환
회원작품
과천시민회관 / 박원태 + 전재우
삼척문화방송(주)사옥 / 최관영 + 정동명
피어리스레이디스파크 / 장석웅
군산정소년 수련원 / 노영래
서초동 원룸주택 / 여은박
일하며 생각하며
한해를 보내며 / 윤상국

작품노트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 우시용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完) / 정인하
건축기행
몽골건축을 찾아서(完) / 박서홍
현상설계경기
국립중앙박물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전산업대학교 중앙도서관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8) / 박효순
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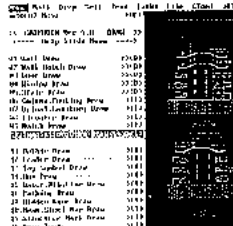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 최고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임팩트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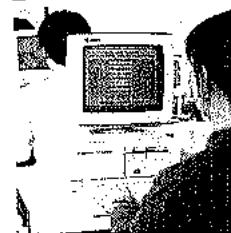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전환을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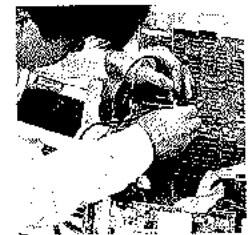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용역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으론 교육
- 체계적인 단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별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알선

애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 584-6480 팩스: (02) 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원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1486 팩스: (02) 598-1487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크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크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크를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크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싣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싣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크는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크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크의 한 유닛(Unit)은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닛을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습니다. 셔틀파크는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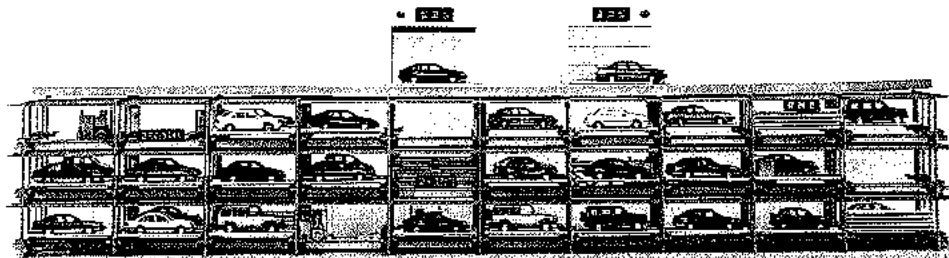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중순환방식

컨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 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본 사 · 공 정 임 청 시 서 구 석 남 2 동 223-40
 목 재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 가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서 소 평 향 호 사 업 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 림 건 축 자 재 백 화 점 102 호
 (02)548-8033 Fax 549-9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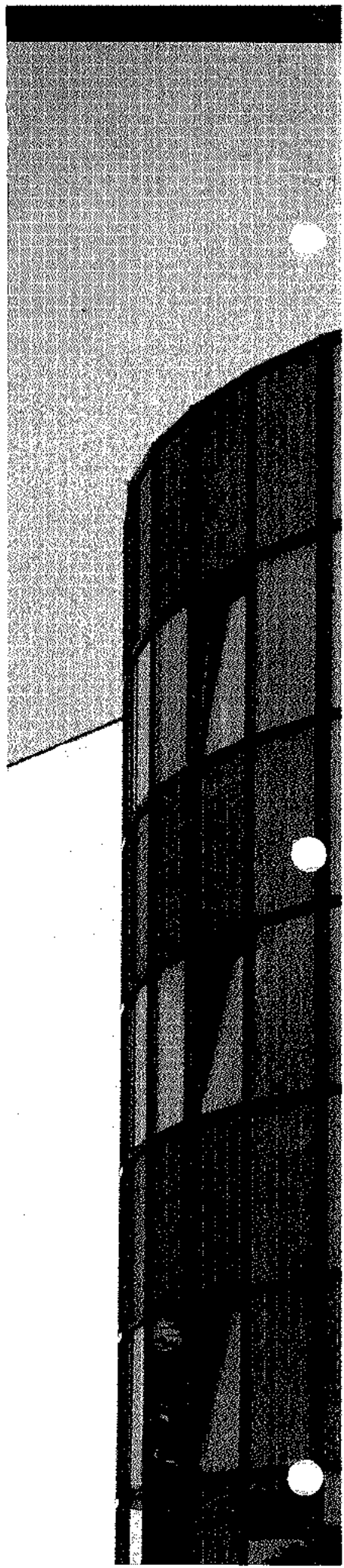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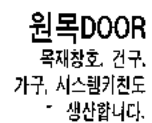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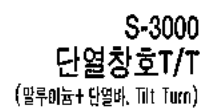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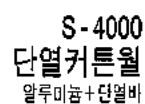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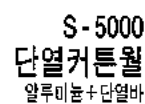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이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주택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CIN CAD U.b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CIN CAD U.b

주요 기능

-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oubble 및 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놀화 하였습니다.

-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Row	Col	Page No	1
011	C1	1	1000
021	1	1000	1000
031	2-5	800	800
041	6-7	700	700
051	PH1	600	600
061	PH2	500	500
071	C2	1000	1000
081	1	1000	1000
091	2-5	800	800
101	6-7	700	700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y Glass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Screen Capture기능
-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입출력 가능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도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설계정보 프로그램

- 산출 내역
총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율 등과 같이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의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에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CM 한국/사아아엠(주)
ARON (주) 아론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 515-3167(대), FAX : 515-3169

이처럼 강력한 펜티엄 PC는 없다

“

업무 따로, 모임 따로, 취미 따로...

몸이 열이라도 부족한 바쁜 일상!

HP 벡트라 VL 3 PC시리즈는

단순히 일로써 컴퓨터를 접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X 세대를 자처하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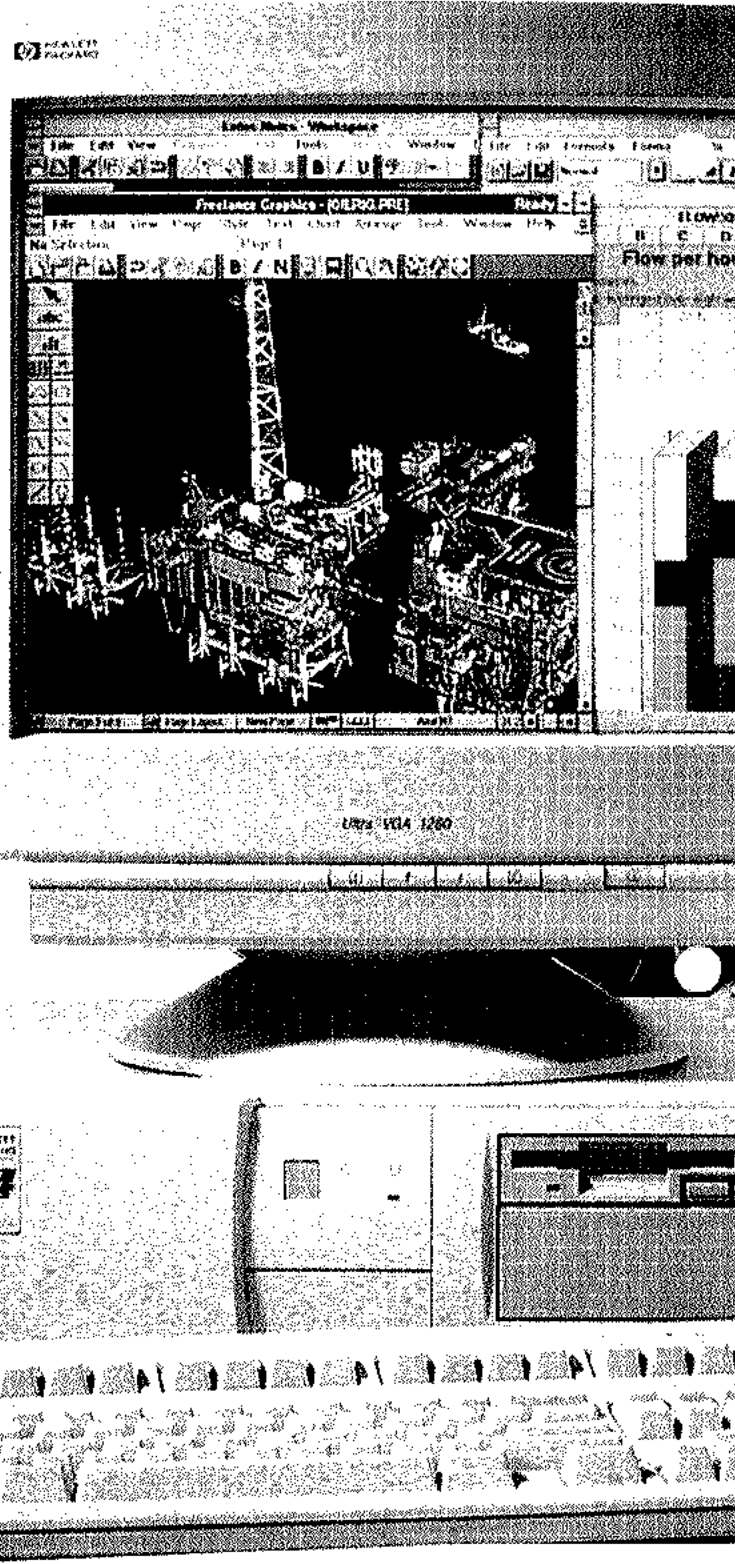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HP 벡트라 VL 3 PC시리즈로 통한다.

”

- Intel Pentium 프로세서의 완벽한 구현과 최적의 시스템 구조
- PCI 버스의 초고속 64비트 그래픽 가속기
- PCI 버스의 Enhanced IDE 컨트롤러
- 완벽한 Plug & Play 기능
- 완벽한 Windows 95 호환성
- 데스크탑 관리 인터페이스(DMI)의 철저한 준수
- HP User Tool을 이용한 손쉬운 설치
- 최신형 전원 관리를 갖춘 EPA Energy Star 인증
- HP의 품질과 신뢰성
- 3년간의 제품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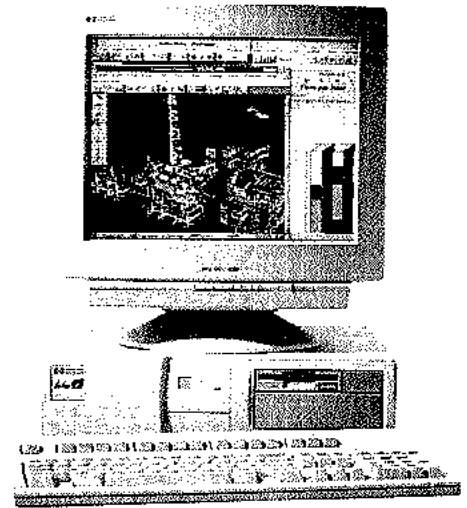
- ★ Energy Star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상표입니다.
- ★ Intel Pentium은 Intel Corporation의 미국상표입니다.
- ★ Windows 95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상표입니다.



PC시장의 새로운 방향 제시,

A/E/C, 멀티미디어, Network 관련 솔루션!
한국 씨.아이.엠(주)에서 찾으십시오.

- 국내 최초로 DOS와 Windows 환경을 지원하는 건축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CIMCAD V.6 개발
- AutoCAD R12/13용 한글 유틸리티 참한글 1.0 개발
-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환경 개선을 위한 CAD 시스템 및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
- 건축물의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에 이르는 멀티미디어 솔루션 제공
- HP 전 제품 취급



HP 벡트라 VL3 PC 구성과 모델

제 품 명	모 델	제품번호	메모리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권장소비자가격
HP Vectra VL3 5/75	M840	D3395	8MB	840MB/Enhanced-IDE	1,905,000
HP Vectra VL3 5/90	M840	D3398A	8MB	840MB/Enhanced-IDE	2,200,000

AD circle-7

최대 80% 할인혜택의 동반자
GM 한국/씨.아이.엠(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2,3층
TEL : (02)515-3167(代) FAX : (02)515-3169

HP 벡트라 VL 3 PC 시리즈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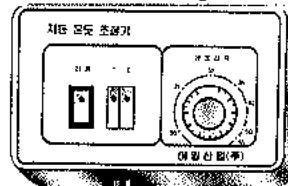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인청형식승인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 1.26kw × 10hr/일 × 0.7 × 59원/kwh = 520원/일
 - 520원 × 30일/월 = 15,60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열전율 70%, 전기요금(일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이일사
전기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데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042)628-2845 강원: (0392)33-0917
부산: (051)248-8933 광주: (062)225-0064
대구: (053)753-4848 제주: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상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공인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영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힌호텔 · 숙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 · 창호 · 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 · 제작 · 설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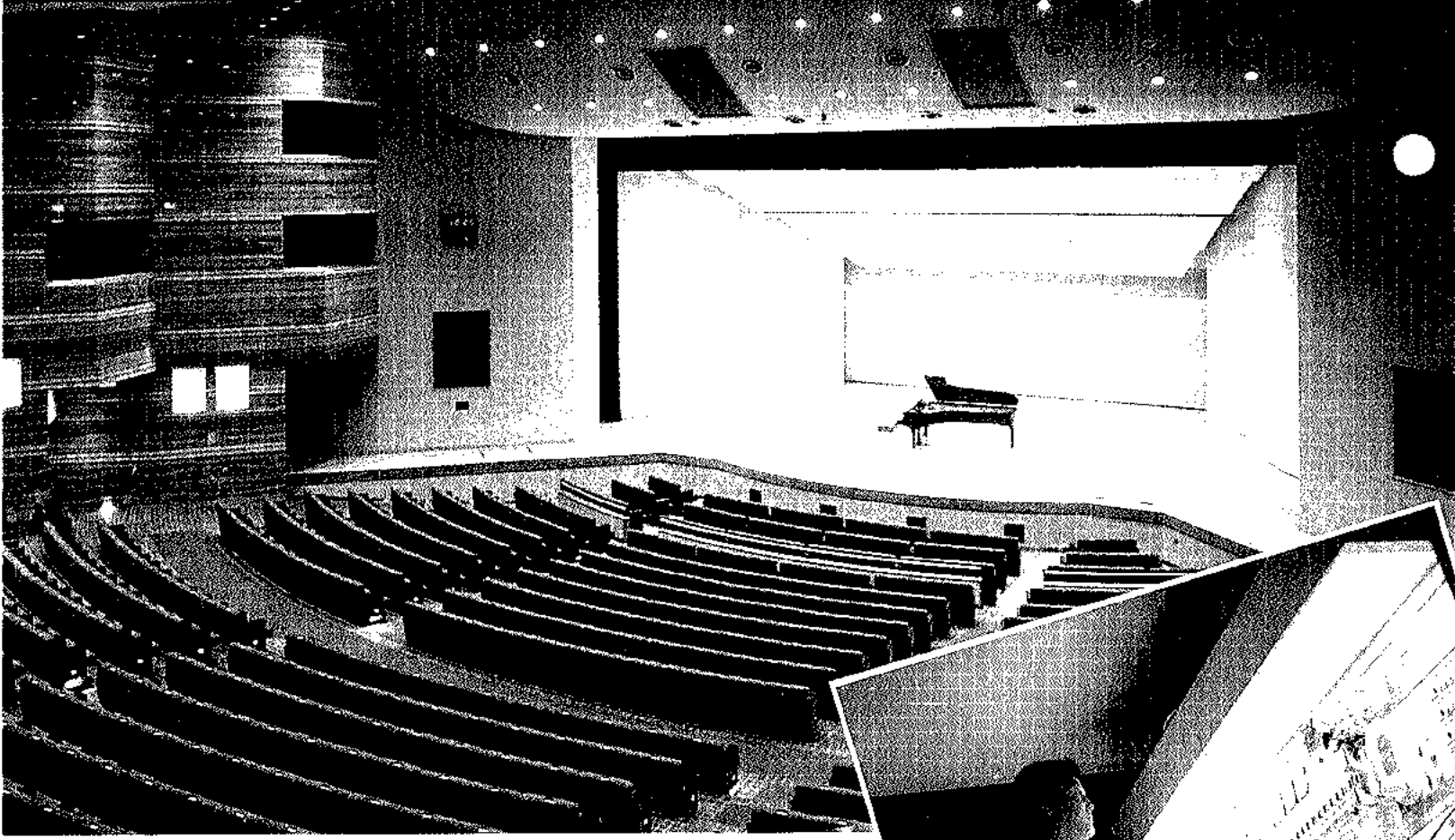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 - 4545 (代)
FAX : 838 - 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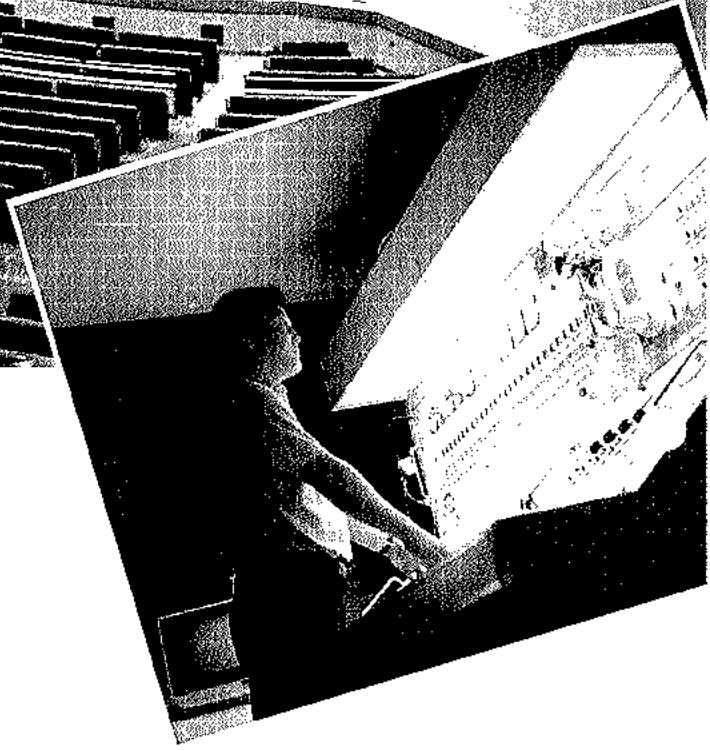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해라톤위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 센터 예술 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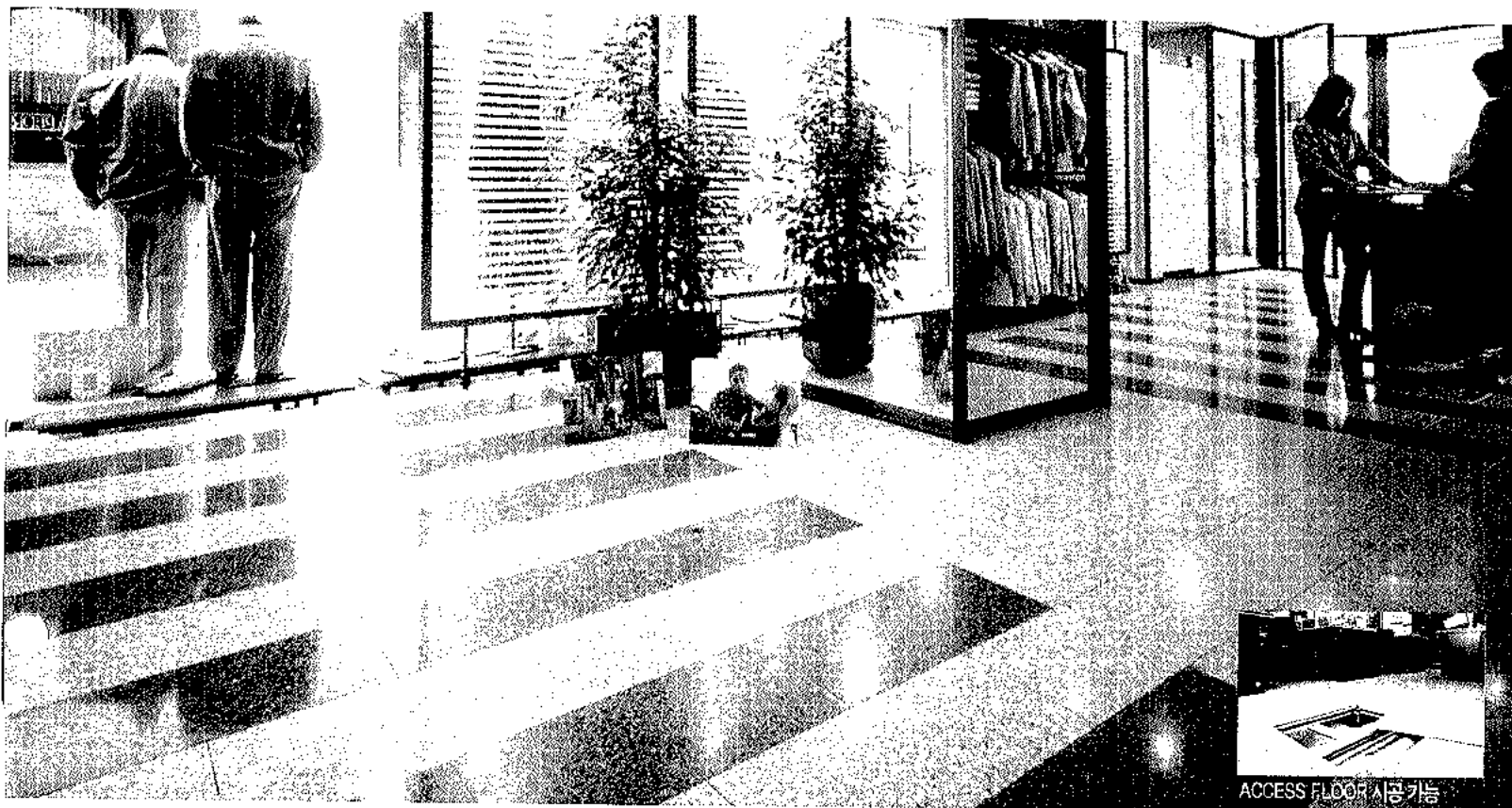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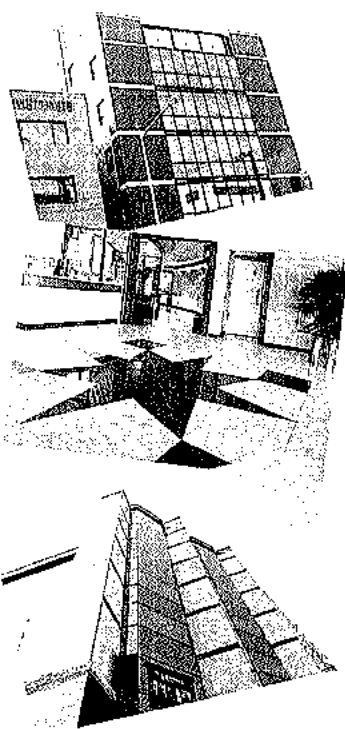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3-1 松蔭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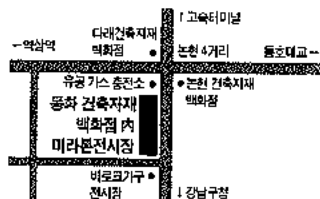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한기업, (주)삼한까뮤,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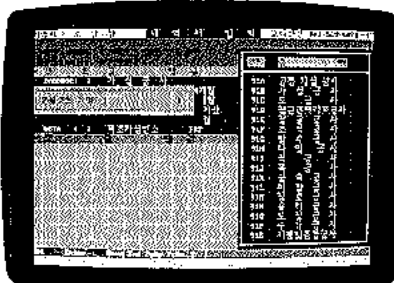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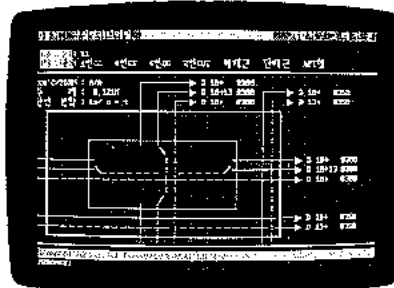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EMS-I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 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특 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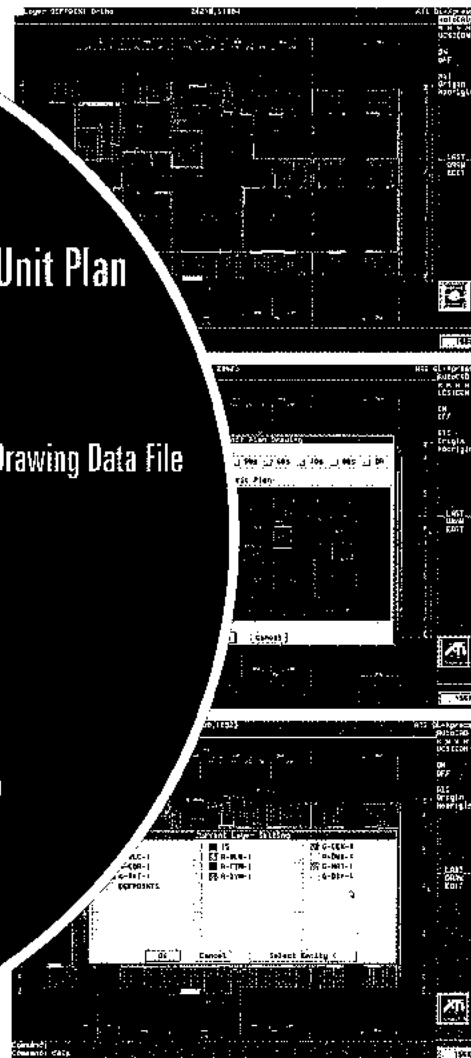
S/W 목록

• EMS-I	내역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목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재관리 SYSTEM
• P.M.S	공사관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사용환경
 DOS 버전 3.3 이상
 AutoCAD R120 이상
 CD-ROM Drive
 386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최소메모리 8MB 이상
 가격 : 70,000원, VAT 별도
 (CD-ROM 1장, A3 메뉴얼 1권)

개발 및 판매인 : (주) 청우시스템
 서울서초구 방배동 980-29 백제빌딩 2층
 전화 : (02) 587-5168 팩스 : (02) 588-4156



아파트 평면도를 삼킨 CD

무려 120채의 아파트를 삼켜버렸습니다

AutoCAD Drawing Data 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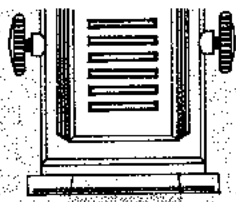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 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화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화일과 함께 Kfont한글유틸리티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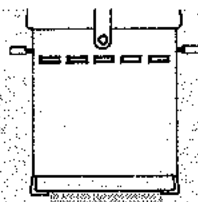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건축전공 학생등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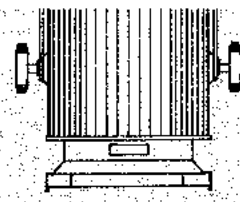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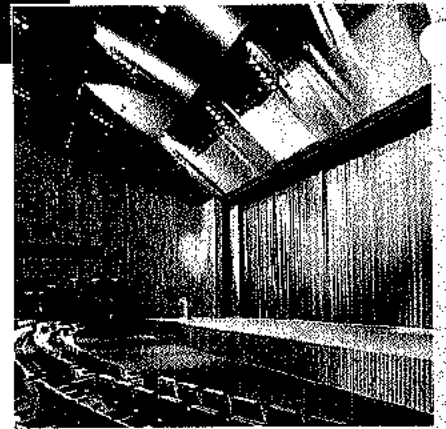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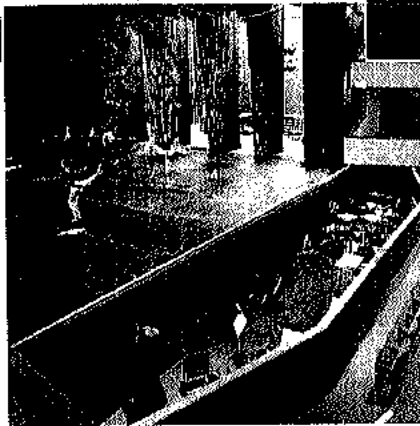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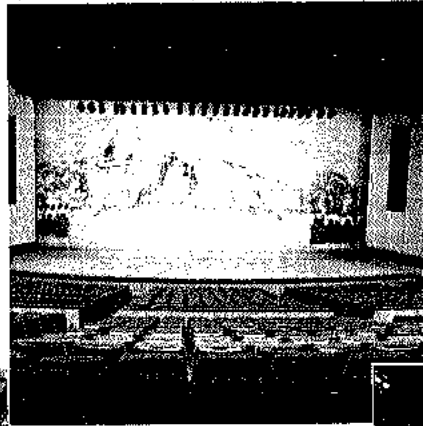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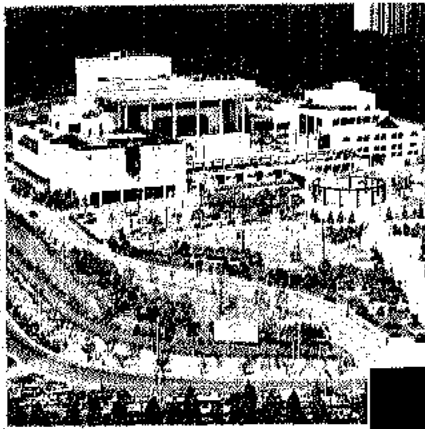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2나 209)
TEL :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지정
		건축용	공정용	
보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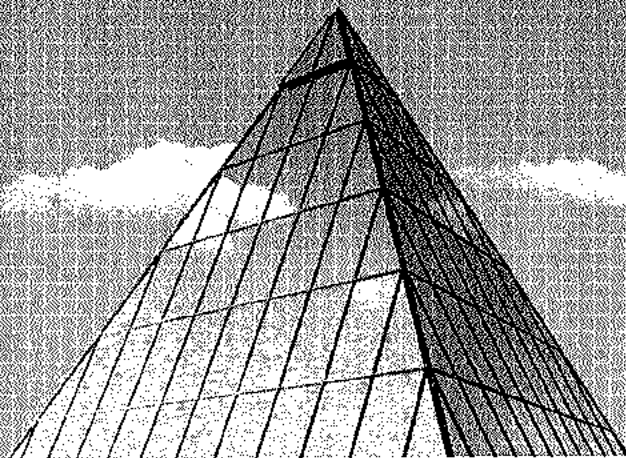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주식 삼 손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언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이건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FACADE SK60으로 시공된
독일의 스카이라이트 컨스트럭션
(SKYLIGHT CONSTRUCTION)
최고급 커튼월(CURTAIN WALL)로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형물입니다.

창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삭막함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창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무덤과도 같을 것입니다.
도시의 창은 하늘의 푸른 빛을
반사시키고, 구름의 느린 움직임, 찬란한 햇빛을
우리의 가슴속에 남기웁니다.
도시에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창호는 아름다운 창을 만듭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한 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창.
이건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건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이건창호는 고객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해드립니다.

독일 창호전문업체 - 슈코(SCHÜCO)사와 기술 제휴

이건창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 전화 563-2071 · 팩스 563-5528
이건산업(주) · 이건설빌드업(주) · 이건설개발(주)
FORESTAL LAUTARO S.A.

이태리 NEOLT사 제품입니다.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제도용 OA기기-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NED-316의 특징

- 한글, 영문 14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 40mm, 메모리 8k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02)515-3287(代)

100년을 위한 선택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젠 시멘트도



한 방울의 물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쌍용 방수물탈 (섬코트)

• 액체 방수의 문제점 (크랙, 들뜸 등)을 해결한 최신공법의 방수물탈

강도 800 이상 발현

쌍용 고강도 시멘트

• Autoclave양생설비 불필요, 고강도용 시멘트 2차제품 생산용

빠르다. 그리고 견고하다

쌍용 초조강·초속경 시멘트

• 초조강 - 1일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 초속경 - 3시간만에 보통시멘트 7일강도 발현

기타특수시멘트

• 쌍용 급결제(스피더)
탁월한 급결성, 초기강도 우수한 슛크리트용 급결제

• 쌍용 S/L재
스스로 정밀한 수평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물탈

• 쌍용 비폭성과쇄제
무진동,무소음, 무공해의 혁신적 파쇄제

전문 취급점

• 서울지역 남양사(02)470-4188 나진물산(02)307-9691~4 쌍용기술(02)333-9045 부성건설(02)419-7357삼건개발(02)508-1012
• 경기지역 안성상사(032)431-9279 남유산업(032)420-1151 금용실업(0345)407-6500
• 대전지역 태영상사(042)253-9338 (주)세화유용산업(042)486-9561 • 대구지역 대도특수(053)958-4921한양양행(053)983-5577 이건설사(053)768-0540
• 광주지역 효광실업(062)675-4659 신홍상사(062)525-7489 (주)태정(062)941-2582

쌍용 첨단 특수시멘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완벽고정



수중공사



지반강화



어떠한 틈새도 허용치 않는다

쌍용 그라우트재(바스콘)

- 기계기초, 철골 및 철주기초, 교량 이음부, 양기볼트 접합 등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접합시켜 줌
- 무수축, 고강도, 고유동성의 간편한 프리믹스 타입

수중 공사의 완벽한 해결사

쌍용 수중콘크리트 혼화제(유테콘)

- 우수한 증점성, 고유동성에 의한 충전효과로 수중에서 재료분리가 없고 강도 발현이 우수한 수중 콘크리트용 혼화제
- 교량 및 수중·해양 구조물의 기초콘크리트 제조, 방파제, 하천제방의 구축 및 보수용 콘크리트 제조

연약지반을 돌처럼 단단하게

쌍용 마이크로시멘트(마이셈)

- 연약지반 보강용 초미립자시멘트
- 지하철, 댐 축조현장 등 기초 그라우트

• 쌍용 토질안정재

연약지반 개량 및 안정화 처리재

• Pile-cutter

현장타설말뚝의 두부정리용 파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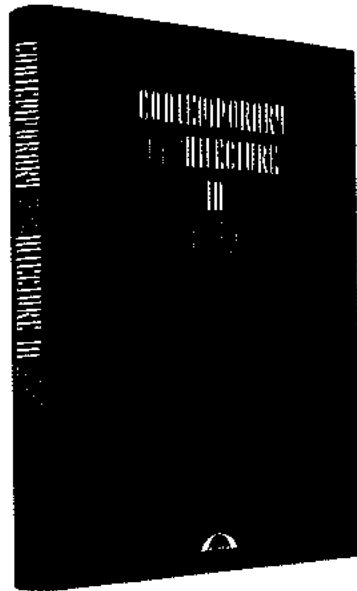
최고추구 · 세계기업

쌍용양회

• 경북지역 신성토건(0562)72-2400 용미상사(0561)773-1211 쌍용상사(0562)73-4129 쌍용판매(0546)52-3033 동아상사(0582)34-4239
선진개발(0662)74-4413 • 부산지역 도시발파(051)441-3251 신화건재(051)208-7144 부산시멘트(051)532-0016 • 경남지역 쌍용특수(0551)45-4547
(주)경남(0522)66-6700 명보상사(0557)41-4571 • 전남지역 대양건설(0667)793-0207 대성산업(0631)78-3542 • 전북지역 대한건설(0652)243-0366
• 강원지역 원성산업(0394)34-9591 혁신상사(0371)731-9951

제품문의 : (02)270-5432~7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자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면 어찌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 ARCASIA
가격: 35,000원

Robbins

Premium Hardwood Flooring



원목바닥재의 명품 - 로빈스

새로운 목재문화의 창조

국제 라이선스 DIN 독일규격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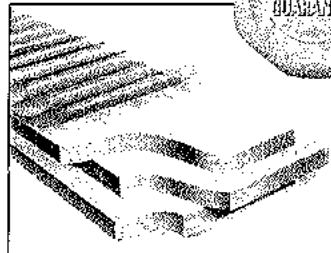
**올림픽이 증명한
최상급의 바닥재
로빈스 우드프로링!**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88 서울올림픽,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실내경기장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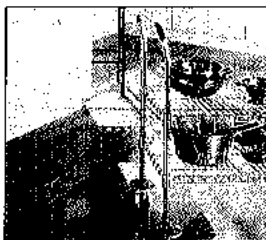
(5년간 품질보증 마크)



(도장의 극치)



(Permacushion
Maple system)



(Maple Natural)



(Oak Chablis)

규격/주거용 10/12mm X 57/76mm X 1219mm

상업용 19mm X 57/83mm X R/L

체육관용 20/27mm X 57mm X 2130mm

수종 : Oak, Maple 시공 : Glue down or Nail down



동양목재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5

TEL: 032-763-1321~4 FAX: 032-762-001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1 금정빌딩 6층

TEL: 514-5411(교한) 641~4 FAX: 546-8175
546-8174(직통)

취급품목

건축마루재/고무바닥재/PVC바닥재/세라믹타일/무늬목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2월호 통권 320호

發行人: 金圭泰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頤, 金宗植
 編輯·取材: 弘毅部/梁元錫, 鄭孝祖,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년 3월 23일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Kim Gyu-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Chun-Heon
 Member: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12월호 통권 320호

칼럼

건축의 '절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 承孝相 26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1) / 崔燦煥 28

회원작품

과천시민회관 / 朴遠泰+全在佑 32

삼척문화방송(주)사옥 / 崔寬泳+鄭東明 40

피어리스레이더스 파크 / 張錫雄 46

군산청소년 수련원 / 盧亨來 52

서초동 원룸주택 / 呂運澤 56

계획작품

호혜빌딩 / 田炳植 60

회원칼럼

한강변의 유채꽃(10F) / 朴松云 62

도시인 II / 金正寬 63

일하며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며 / 尹相國 64

작품노트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 禹時庸 6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完) / 鄭麟夏 70

건축기행

몽골건축을 찾아서(完) / 朴舒弘 80

현상설계경기

국립중앙박물관 88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08

대전산업대학교 중앙도서관 112

건축기행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8) / 朴孝洵 122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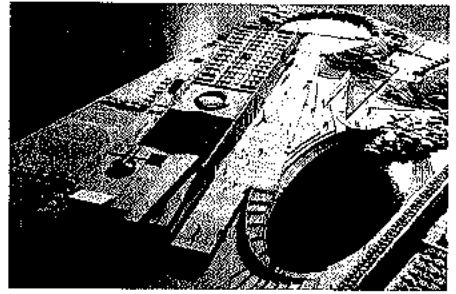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131

통계

1995년도 10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44

협회소식

146



표지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 당선안(정림건축)

CONTENTS VOL 320 DECEMBER 1995

COLUMN

Procedure of Architecture / Seung Hchloh-Sang 26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1) / Choi Chan-Hwan 28

WORKS

Kwacheon Citizen's Hall / Park Won-Tae & Chun Chae-Woo 32

Mun-Hwa Broadcasting Co. Building in Samcheok / Choi Kwan-Young & Jung Dong-Myeong 40

Peeress Lady's Park / Chang Seok-Woong 46

Kunsan Youth Training Center / Ro Heoung-Rae 52

Sun-Rise Villa / Yeo Woon-Taek 56

PROCESS WORK

Hohae Building / Jeon Byeong-Jieg 60

GALLERY

A Flower at the Side of the Han River (10F) / Park Song-Woon 62

Urbanite II / Kim Cheong-Kwan 63

ESSAY

Looking Back This Year / Yoon Sang-Kook 64

WORK NOTE

The Disabled Welfare Center / Wooh Si-Yong 66

SERIAL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 Jung In-Ha 70

ARCHITECTURE TRAVEL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 Park Suh-Hong 80

COMPETITION

New National Museum of Korea 88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108

Taejon National Polytechnic University Library 112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122

LAWS & ORDINANCES 131

STATISTICS 144

KIRA NEWS 14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603-3426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8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 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적광분회/(0331)43-6662 · 안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 0458 · 송탄분회/(03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평택분회/(02)68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3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제천분회/(0443)43-6253 · 옥천분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52-3815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660 · 정촌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8 · 진주분회/(0591)745-6403 · 충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892 · 밀양분회/(0527)355-4846 · 거창분회/(0598)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39)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건축의 ‘절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Procedure of Architecture

承孝相 / 건축사사무소 이로재
by Seung Hichioh-Sang

나는, 건축을 공학 또한 기술분야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또한 건축이 예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기를 위하여 그속에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으려 하는 태도도 참 싫어한다. 그런 발상자체가 지극히 못마땅하며, 내가 믿기로는 그런 레벨에서 접근되는 그 건축은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여도 뻔하다. 그것은 건축의 본질과 분리되어 있어 항상 주변에서만 맴돌 뿐이다. 건축이 그러한 예술적 혹은 기술적 속성을 가질 수는 있되 적어도 그들을 포함한 더 큰 범주의 문화적 소산을 가리킴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건축과 예술 특히 조형예술. 이 둘 중에서는 어느 분야가 인간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것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변하는 감정에 따라 사물에 대한 감동은 상대적으로 다르며 그 감동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더욱이 그 우열을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조그만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그 감동은 어느 예술이 던지는 감동과 그 무게에 있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임을 믿는다.

그 이유는 결과로서 나타난 그 건축이 탄생하기까지의 장엄한 ‘절차’의 문제 때문이다. 밀실에서, 혼자만의 사유와 관념과 집착의 결과로서도 예술은 창작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으나, 건축은 그렇게 작업되어 질 수 없고 그것으로만 충분치 못하다. 혼자만의 사유와 관념은 중요한 것이긴 하되 건축의 일부일 뿐이며 그 사유와 관념을 구현하기까지 험하다 험한 경로를 거쳐야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도로 발달된 교육을 받고 혹독한 전문훈련을 거쳐 영감에 가득 차게 된 건축가라도 스스로만 건축작업을 할 수는 없다. 반드시 누군가 일을 주어야 하며 그 일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뿐만인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혹은 직원으로부터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특히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들로부터, 그 창작의지는 현실성을 이유로 곧잘 훼손되어진다. 일을 맡겨준 건축주로부터는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가.

때때로 모욕적 대우와 결코 넘을 수 없는 두터운 벽 앞에서 좌절

당하기 일쑤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창작의지는 자꾸만 그 색깔이 바래간다. 도대체 이해안되는 이유로, 항변 한 번 못하는 채로, 회한한 심의위원들에게 무참히 난도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며, 전가의 보도를 든 허가 공무원 앞에서 우리의 창작의지는 한없이 초라한 물골이 된다. 그것만이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 양상한 물골이 된 창작의지를 놓고 그래도 개념은 살았다고 자위하며 공사장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무슨 놈의 '혼을 담는 사공'이 그러한지, 날이 갈수록 손도 마음도 더러워진 현장속에서 그 창작의지는 질식직전에 다다르게 된다. 가장 싫은 것이 준공식날 불려가는 일이다. 남들이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기는 절단코 불편해 있다. 상처투성이 뿐인 창작의지를 뒤에 두고 축 늘어진 어깨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건축가의 초상이 아닌가.

그러나, 그래도, 얼마후 그 건축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는 어떤 이의 얘기를 행여 들을 수 있다면, 그 건축에서 감동을 받았노라는 조그만한 전갈이라도 올때면, 그리고 그전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라면, 우리는 그 어둡고 길었던 그 건축의 '절차'를 이겨내었다는 성취감으로 나약해진 건축의지를 위로하게 되며, 더불어 우리는 우리를 건축하는 일에 종사하게 해 준 신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못 대견해진 심정으로 우리가 가졌던 원칙에 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또다른 불리움을 기다린다.

이 험난한 '절차'를 거친 우리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것이며, 그 감동을 이뤄낸 건축은 참으로 장엄한 창조적 작업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예술가의 어떤 작품보다 건축이 평가절하될 수 없음은 바로 이러한 건축의 '절차'가 예술의 것과는 너무도 다르고, 구체적이며 또한 처절하고 절박하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그 감동의 무게도 당연히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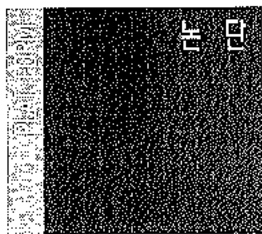
우리는 옛적부터, 결과 보다는 그 결과를 있게 한 절차를 더욱 소중히 여겨온 민족이다. 우리의 도덕과 예법은, 아무리 결과가 훌륭하여도 그 절차가 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요 하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 온리 밖으로 내몰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격조와 품위에 가득찬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 '잘 살아보세'라는 결과만 강조하는 졸부의 논리와 단선적 사고방식이 온 강토를 뒤덮더니 우리의 고즈넉한 문화는 페인트칠로 칠갑을 하며 절차는 무시하고 변칙이는 결과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하였다. 뜻있는 지식인은 그것이 이루어진 박정희 군사독재시대를 가리키며 박조문화(朴朝文化)라 자조적으로 지칭했던가. 그후 30여년이 지나, 그러한 정당한 절차가 없는 파편적 목표가 수치로만 도달된 지금, 그래서 소위 잘살아지게된 지금, 우리의 사회는 드디어 부러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고도 당연한 현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해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절차'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이다. 비록 그 '절차'가 모멸스럽고, 가당찮은 것이라도, 귀찮고 번잡스럽다 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그리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결과가 급하다고 하여서 그 절차는 우리가 피할 문제가 아니며 무시할 장애도 아니다.

그럼에도, 요즘 정부에서, 또 일각에서 결과에 다시 집착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길게 드리워진 박조문화(朴朝文化)의 두터운 잔재를 새삼 느낀다.

이 껍데기를 떨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건축문화는 아득히 멀며, 우리의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분야에 여전히 문전걸식만 하고 있을 게다.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1)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1)
건축심의 제도

崔燦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건축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논란은 여러차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건축계 현안의 문제이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도시미관과 공익성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행위에 수반하여 법규정의 준수 그리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건축에 관한 심의도 이와같은 목적과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심의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에서 순기능(順機能)을 극대화하면서 그 역기능(逆機能)의 폐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안의 여러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심의 제도의 현안과 개괄적 대책

건축물은 건축주(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그리고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 관련되어 있다.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나 전문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서는 건축물의 공익성

등을 위하여 관계법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내용을 전문가 집단에게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설계심의를 위하여 기존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설계의 내실화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심의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설계는 계약관계에 의해 발주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한 잘못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대한 하자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설계에 대한 근원적 부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 제도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문제이다.

둘째, 건축관련심의가 중복되거나 다원화되어 있다. 건축관련법규가 복잡하고 여러 관계법을 적용하며 이를 주관하는 행정부서도 달라 철차이행이나 심의자체가 중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지방 및 중앙), 경관심의, 에너지심의, 굴토심의, 색채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건축관련심의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심의 상호간에 종합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상충되기도 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심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셋째, 건축심의의 전문성확보와 내실화에 문제가 있다. 건축심의의 중요성에 비하여 심의기간이 짧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의 확보, 심의 기준의 확립, 심의의 합리성, 일관성 및 객관성유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건축심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주도하고 있는 한 보조적 수단인 심의제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발주자나 설계자가 설계행위를 인허가 등을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인식한다면 심의제도는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설계도서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자의 설계검토능력이 없으며 건축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에서 건축심의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리고 부실설계가 많을 뿐 아니라 설계계약이 미비하여 책임 및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실정을 감안하고 건축법규가 개별건축물의 특수한 상황이나 종합적 관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계의 심의 기능을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일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일원화(부득이한 경우는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객관화할 수 있는 사항이나 심의 방침 등을 명료화하고 심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동일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심의하면서 심의시 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위원별 의견이 크게 달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설계과정이나 인허가 제도로 볼 때 설계의 객관적, 전문적 검토기구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건축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관계법에 따른 주관행정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심의를 통합하여 종합심의 합으로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합리적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건축위원의 전문성 확보

건축사자격과 면허를 받은 국가공인 전문가의 설계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위원은 그에 상응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도시지역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분야별 전문권위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쉽다. 그러나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전문가의 위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으며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설치운영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인력구성상 심의위원의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시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가의 위촉이 어려운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전문성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위원회는 대부분 업무담당자인 당연직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학계(대학교수 등), 현업실무자(건축사, 기술사 등), 기타로 구성된다.

건축위원회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해야 할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자문기관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법정의사 결정기관은 아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인 의사결정권에 연결시켜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심의위원의 구성과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연직 행정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등 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당공무원은 업무의 주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직접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공무원의 자질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그들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건축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여 운영하는 것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결여와 함께 공공성을 위한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참여는 자치화와 함께 건축행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의사반영이란 명목이 고려되었고 지방의회와 행정청의 상호협력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전문분과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의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견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국한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심의에 있어서 심의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전문직능으로서 의원이 아닌 경우 큰 기대를 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역상황, 주민정서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측 참여자로서 의사대변을 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경우 대부분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대학교수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축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제3자로서의 독립적 지위와 신분을 가짐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가지면서 심의에 대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의 적용과 심의제도의 운영은 공공성확보와 공익증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추구를 위한 건축활동에 있어서 공공성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의위원은 전문성을 기초로 발주자의 사익과 공공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우선하되 사익의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주관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개인적 편견이나 이집 그리고 독선적 강요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다수의 심의위원이 의견을 집약하고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심의위원은 건축주, 설계자, 행정청 등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하며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학계에서 위촉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라도 실무경

력이 많지 않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그리고 충분한 사전정보와 검토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즉흥적 심의 등은 합리적이고도 심층적 심의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업실무자로는 대부분 당해지역의 건축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며 특히 대표성을 지닌 건축사가 위원일 경우 설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심의의 공정성이 중요시되므로 특정단체의 대변자로서의 의견개진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현업실무자로서 위촉된 위원은 실무적 전문지식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해야하며 소속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우려와 시각 때문에 관련실무분야의 심의위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밖에 심의위원은 대부분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와 지역의 저명인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심의위원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다수를 차지해야 하며 특히,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이다.

심의의 종류와 종합심의 제도

건축관련심의는 건축허가에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토지, 건축행위, 건물사용 등에 따른 여러 관련법규정에 의한 허가절차의 필수과정이다. 토지의 상황과 입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심의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심의가 있다.

도시계획심의(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토지 형질변경 등), 건축심의(색채심의 포함), 경관심의, 도시설계조정심의, 굴토심의, 에너지 심의, 예술장식품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심의, 도소매진흥심의 등의 여러종류의 심의가 독립 또는 병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도 규모와 종류에 따라 건교부의 중앙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교부에서 건축은 중앙건축위원회와 중앙기술심사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관련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심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축에 대한 여러 관련법규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업무가 분산되어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별분산 심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건축허가에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행정부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협조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도 종합심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분산심의는 심의 내용이 중복 또는 상충될 경우가 있고 이것이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종합심의는 심의 내용을 상호 조정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는 절차의 간편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사심의 그리고 병합심의가 가능한 것

은 통합하고 심의결과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중앙심의는 우선적으로 통합한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심의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심의기준의 마련

심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족 그리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계획이 불명확해질 뿐 아니라 때로는 잘못 판단하여 큰 차질을 빚기도 한다.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치밀한 계획수립이 어렵다는 점이 자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심의는 개별 법규정이 가지는 일반성, 객관성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될 때가 많다. 그러나 심의위원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할 경우 심의시마다 다른 지적사항을 내놓지 않는 일관성의 유지와 유사한 사례는 같은 심의결과를 낼 수 있는 형평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적인 심의기준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의의 평가제도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은 선의의 경쟁과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 어느 한곳이 절대적인 독점우위를 가지는 것보다 상호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도 심의위원과 설계자가 단절되지 않고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며 상호견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전향적이다.

일부 심의는 설계자가 심의에 참석하여 내용의 설명과 함께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심의위원과 설계자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해 납득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심의는 설계자를 비밀로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심의대상 물량이 많을 경우 흔히 쓰이는 간편한 방법의 하나이다.

설계자가 심의위원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당함으로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심의에 불복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에 상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인 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피심의자가 설계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심의 통과에만 전념하여 채심, 삼심 등으로 행정수요를 유발하거나 비공식심의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잘못은 시급히 청산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심의에 대한 점수 내지는 등급을 정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피심의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다.

정보와 의견의 교환,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적절한 평가에 따르는 책임부여 등은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요건이다.

심의방법의 개선

심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없이 짧은 시간에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즉흥적이거나 졸속한 심의가 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조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심의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소수의 위원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지적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설계자 본연의 창작의도가 무시되거나 굴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기간을 주고 심의위원은 개별심의내용을 담당부서에 미리 통보한다. 통보받은 심의내용을 취합하여 피심의자와 심의위원에게 보내고 이를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한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기회를 주고 불복할 경우 별도기구에 상고하여 심의받도록 한다.

둘째, 심의를 정례화하고 통합 심의한다.

현재는 거의 부정기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정례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심의대기 시간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심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심의 도면을 간소화한다.

심한 경우 실시설계가 끝나고 심의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심의는 계획단계 또는 기본설계과정에서 기본도면으로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구조, 시공, 기계, 전기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으로 설계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여 설계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는지 추후 확인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urn-Key심의 등에서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도면을 경쟁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조속

히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심의내용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원안통과, 조건부통과, 재심, 반려, 유보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결과의 종합평가제가 시행되어 부실한 심의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억제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경쟁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재량권 부여

법규정은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기준이지 적정계획기준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성을 가질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적정계획에 대한 유도, 그리고 특수성에 대한 권한과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심의제도는 법적 규정을 모두 지키고 추가적 규제를 받게 되므로 전혀 혜택도 없이 간섭만 받는 셈이 되어 피심의자로부터 기피당하고 있다. 즉, 규제일변도의 인기없는 심의제도 보다는 인센티브(Incentive)와 보너스(Bonus)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규제도 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실 대응력이 있는 심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일정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재량권을 허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기존 법규정의 적용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규 적용의 예외 인정제도까지 도입하여 현실중심, 그리고 개별 건축중심의 합리적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해결사 내지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의 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은 보이지 않는 공익증진을 위해 민원인의 사익극대화에 항상 제동만 걸고 건축사의 창작물을 간섭하는 악역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더욱 행정관청의 병풍이나 방패막이라는 오명도 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 적용의 예외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법규정의 적정기준 특히, 견제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밀도와 형태규제에서 인센티브제를 허용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천 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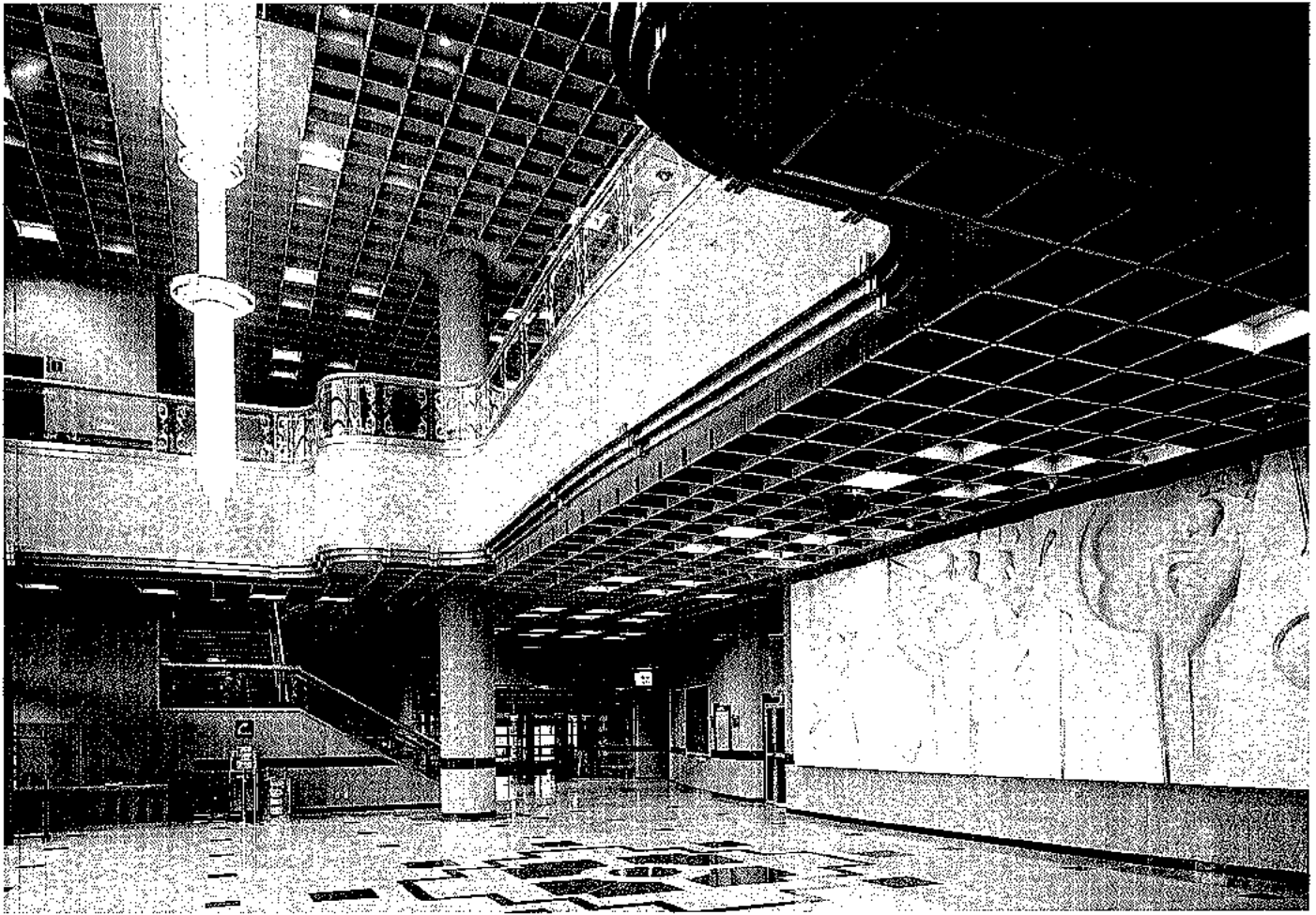
Kwacheon Citizen's Hall

朴遠泰 + 全在佑 / (주)동남아 태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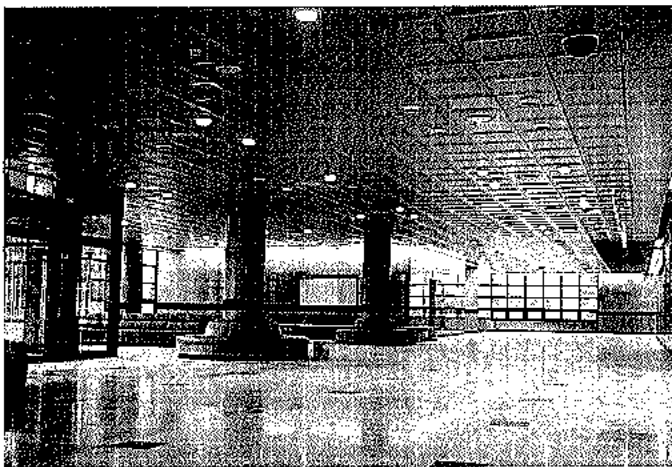
Designed by Park Won-Tae & Chun Chae-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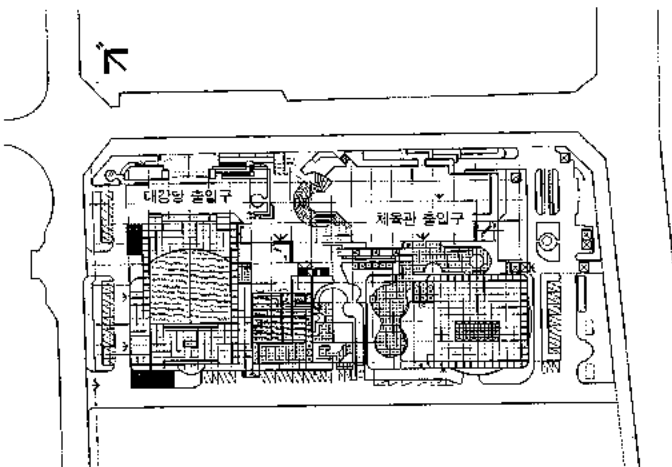
전경



대강당 로비



체육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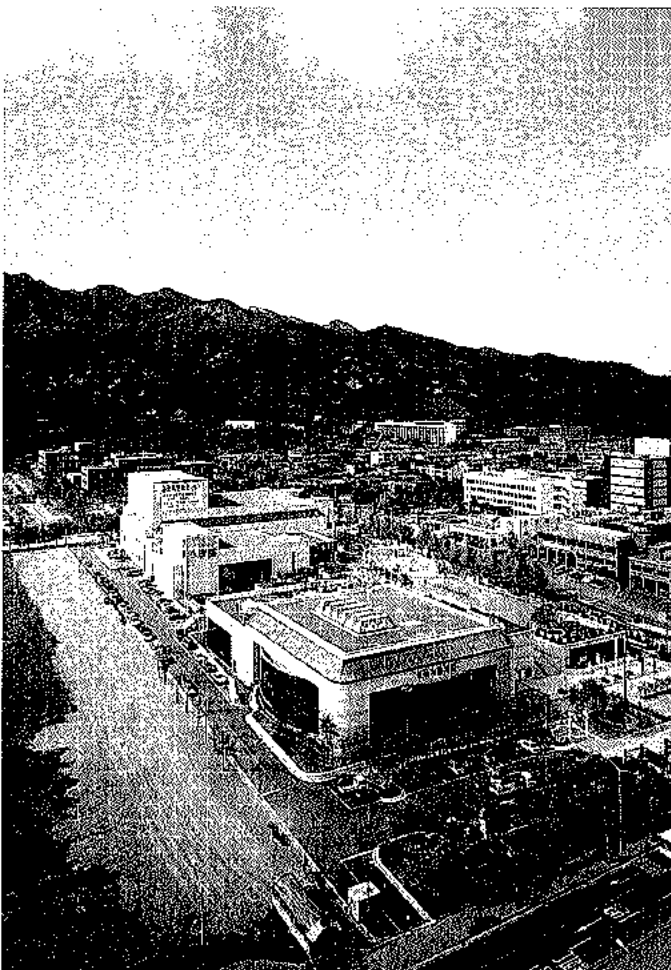
배치도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3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22,237.20㎡
 건축면적 / 7,288.13㎡, 연면적 / 38,995.88㎡
 건폐율 / 32.77%, 용적률 / 58.18%,
 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일부철골조
 구조설계 / 신구조, 기계설비 / 다운셀비
 토목 / 삼림건설엔트, 조경 / 한국종합조경
 시공 / (주)태영, 설계기간 / 1990.11~1991.11
 시공기간 / 1991.12~1995.8, 설계담당 / 최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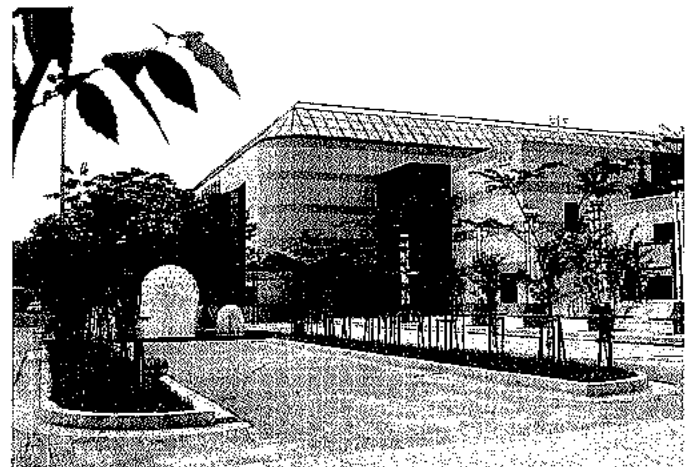
Location / 6-3, Chungang-dong, Kwachon-shi, Kyeonggi-do
 District / Houses
 Site Area / 22,237.20㎡
 Bldg. Area / 7,288.13㎡
 Gross Floor Area / 38,995.88㎡
 Bldg. Coverage Ratio / 32.77%
 Gross Floor Ratio / 58.18%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C+Steel
 Structural Design / Shin Eng.
 Mechanical Services / Down Eng.
 Civil Engineering / Samlim consultant.
 Landscaping / Korea complex Eng.
 Constructor / Taeyoung Co. LTD.
 Design Term / 1990.11~1991.11
 Construction Term / 1991. 12~1995. 8
 Designer / Choi Young-Gi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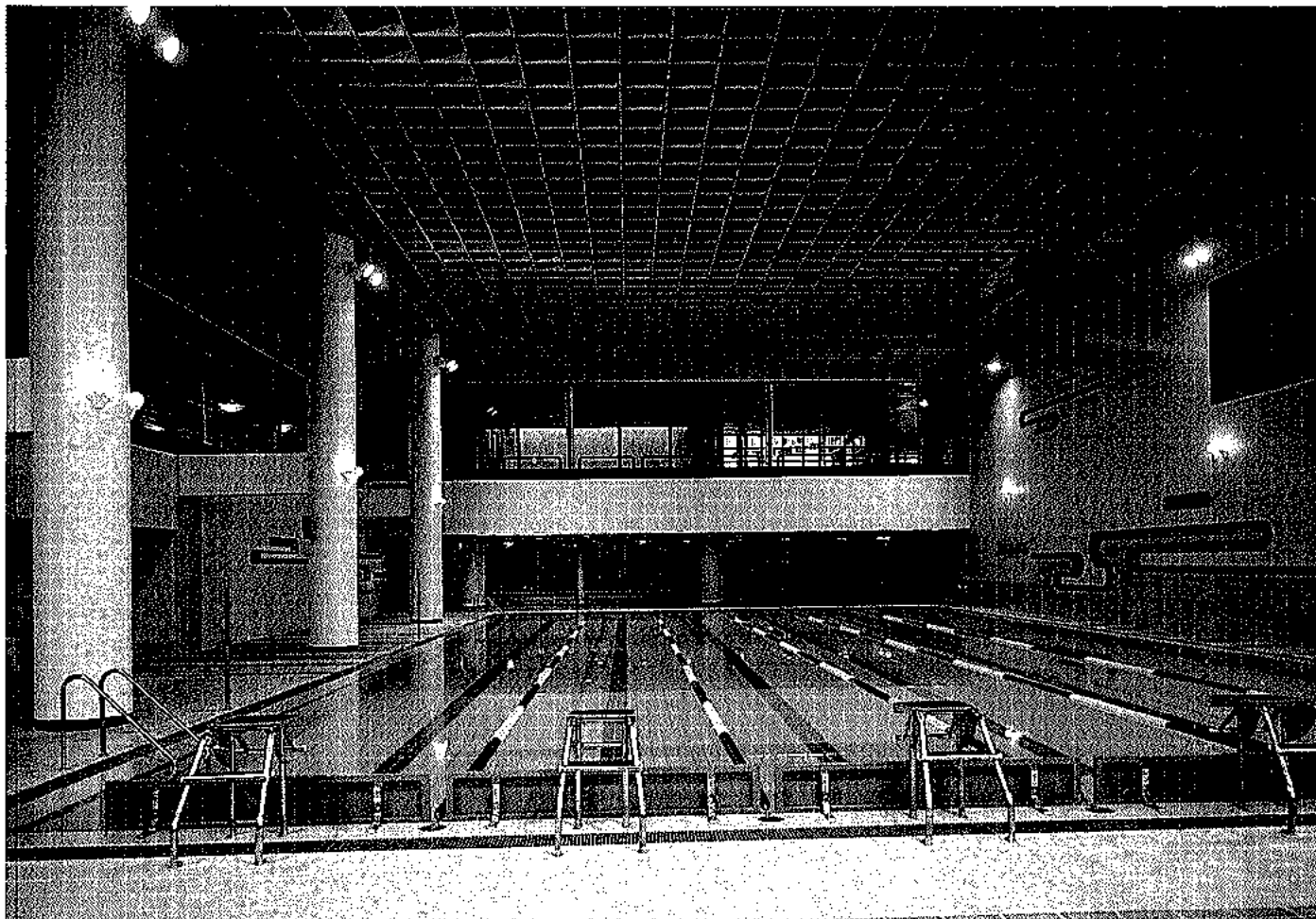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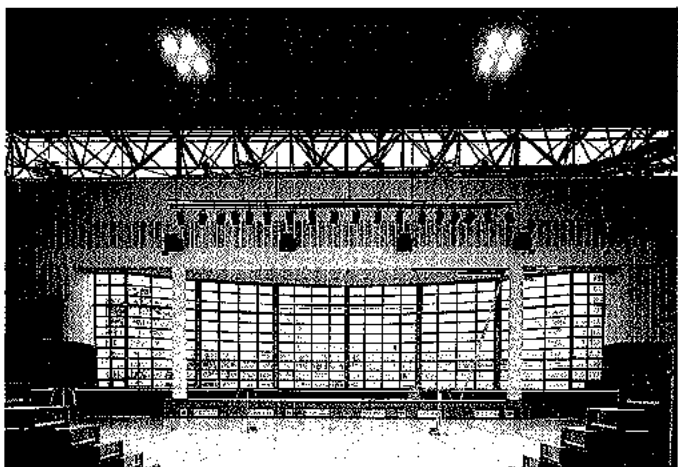
진입로에서 본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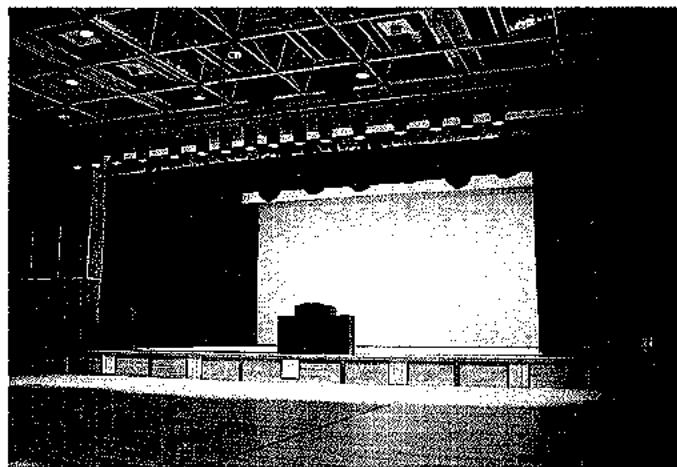
진입로에서 본 강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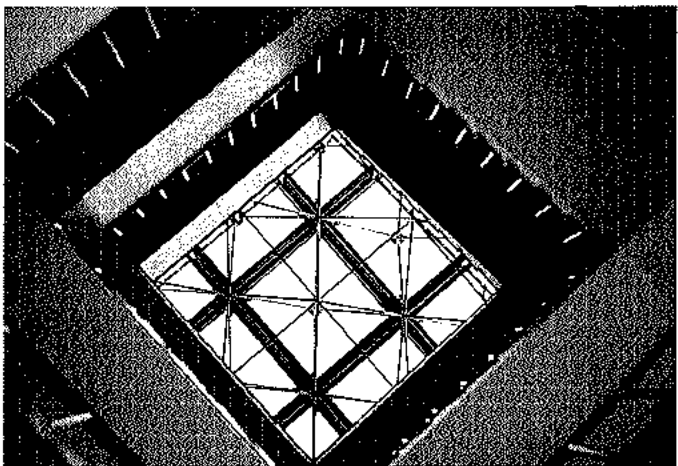
사회체육시설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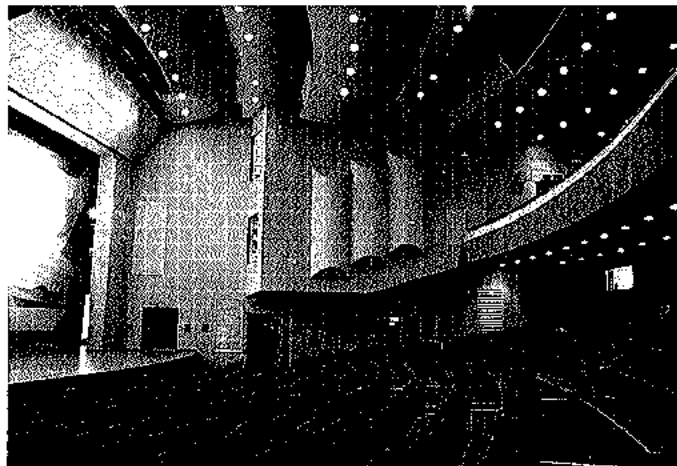
사회체육시설(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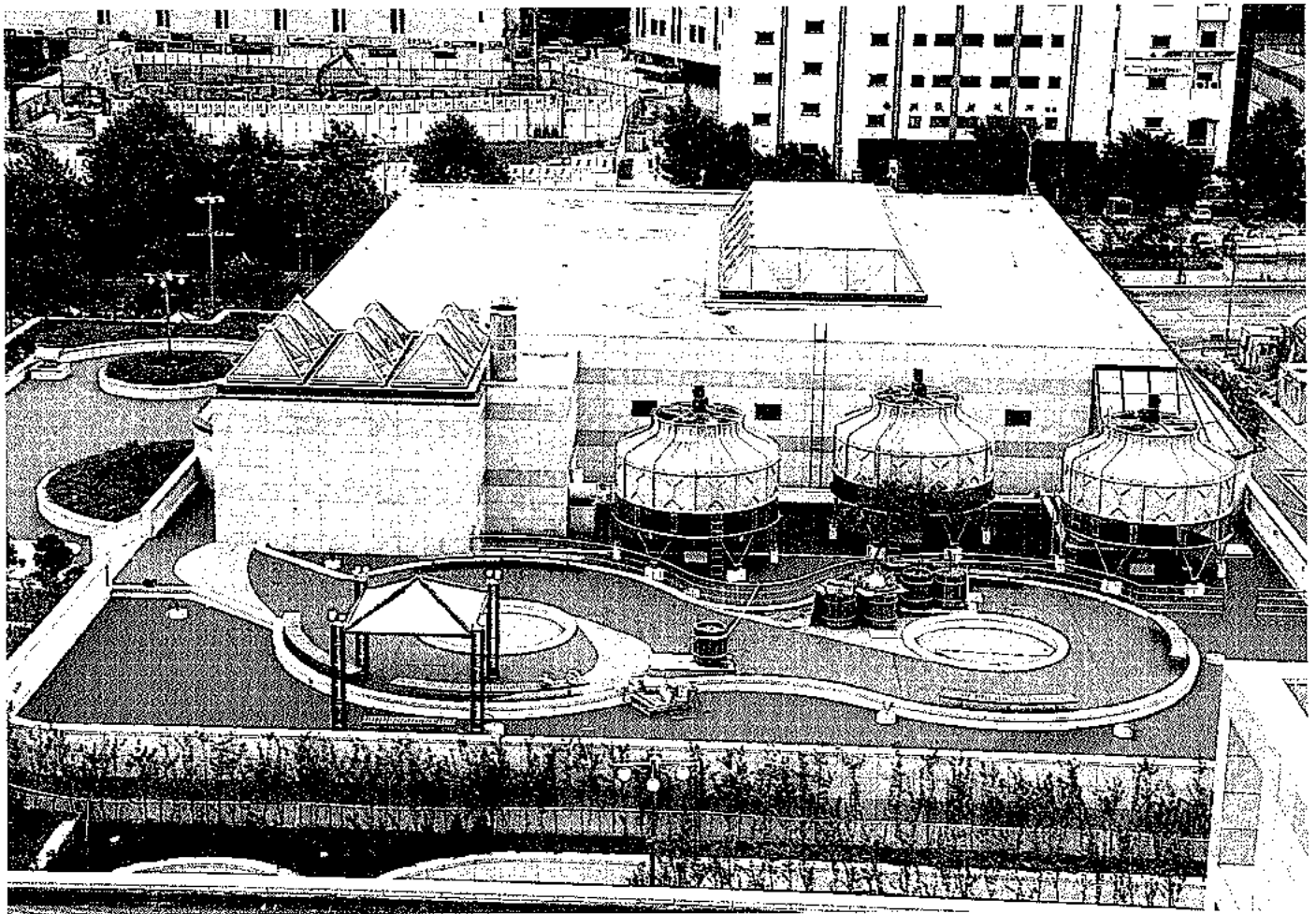
소강당 프로세미엄 아지



중앙계단 천장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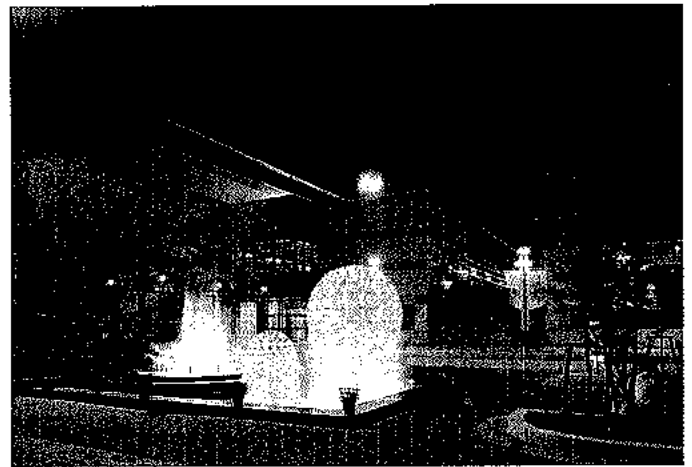
대강당 객석 측면



옥상정원



체육관동 조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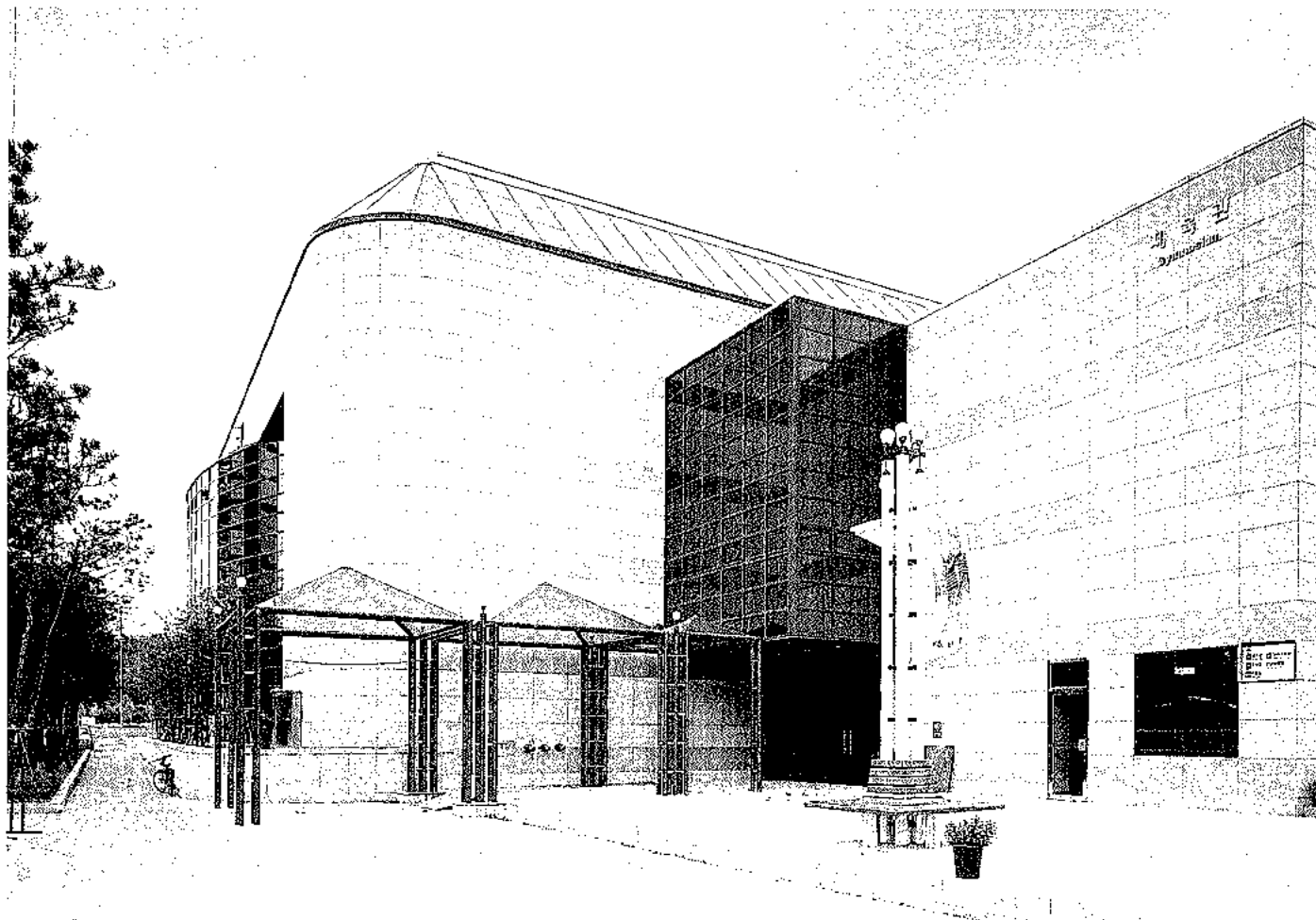


분수광장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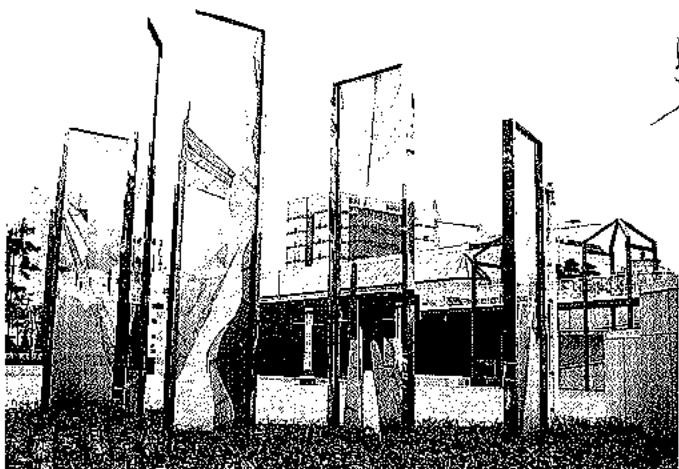
과천시민회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곧 공연장 및 집회장이라는 공회당 개념에서 진일보한 다목적 기능을 갖춘 지역문화 시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 형태를 단일 기능의 의미에 함축시킨 시설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이 갖고 있는 문화육구의 충족과 지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으로서 다양한 요구를 유기적인 군(群)으로서 서로 보완하여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이나 집회행사를 위한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일과성 여가 스포츠가 아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보다나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통해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다나은 효과가 기대되는 시민 기초 체육시설로서의 활성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 다기능을 수용한 시민회관으로서 개체의 시설 규모는 과천시세에 걸맞게 맞추었지만, 갖추고 있는 규격하나 하나는 작지



체육관 출입구 전경



조형물



선극 및 관리사무실

만 세계화된 규격을 갖추었다. 보다 넓고 큰 공간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과천시민회관은 전국의 시, 군, 구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격이 맞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과천 중심에 위치케 됨으로써 주위의 제2정부 종합청사 등 격이 높은 공공청사와 과천 업무지구 시설물들이 관악산을 등반으로 하여 굽은 선만을 나타내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한 mass의 위계와 안정적인 모듈설정을 바탕으로 mass의 분절을 통해, 200여m에 달하는 거대한 mass의 획일적인 입면 전개를 지양하였으며, 화강석과 유리의 질감을 대비한 입면

으로 의장요소를 통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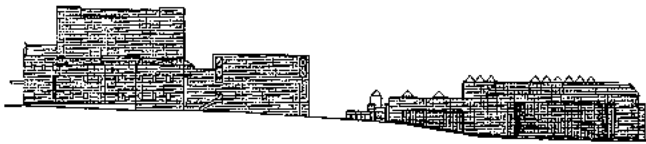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갖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대지내의 복합 건물로 동질한 입면처리로 조화를 유도하였고, 주간선 도로에서의 정면성과 동측 진입로에서의 정면성을 고려하였다.

주위의 강한 이미지의 건물(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에 비해 다소곳하여 여성적인 주간의 모습, 그러나 강한 이미지의 건물의 모습이 가려진 야간에는 화려하고 넓고 강해 보이는 모습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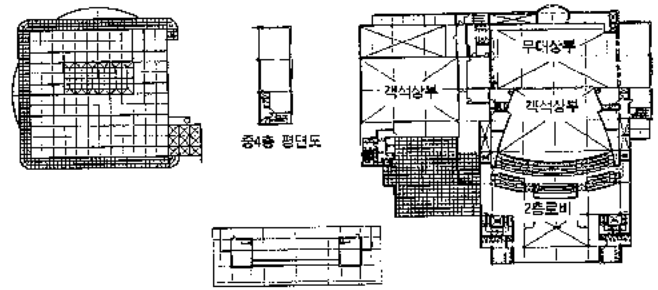
문화시설 부분의 지하 1층에는 전시시설, 다목적(세미나, 소규모 전시, 예식 등)실, 연습실,

지상 1층에는 660석 규모의 소극장, 1,000석 규모의 대극장, 특히 문화시설의 다중이용을 돕기 위해 소극장과 대극장 Lobby는 이용방법을 달리하여 소극장 Lobby는 Free Zone개념의 공간으로 구성 계획하였고 대극장 Lobby는 Pay Zone으로 계획하여 획일화된 Lobby의 개념을 탈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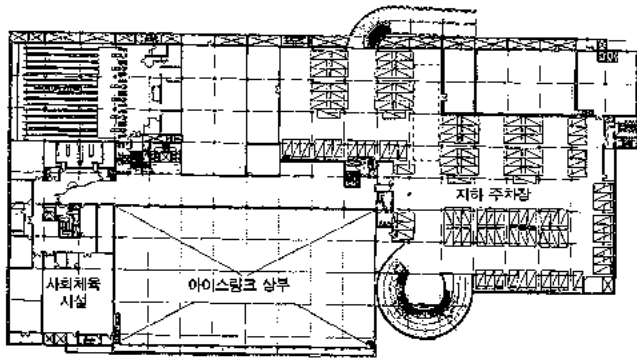
다목적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다양함과 다목적의 의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이후 시설운영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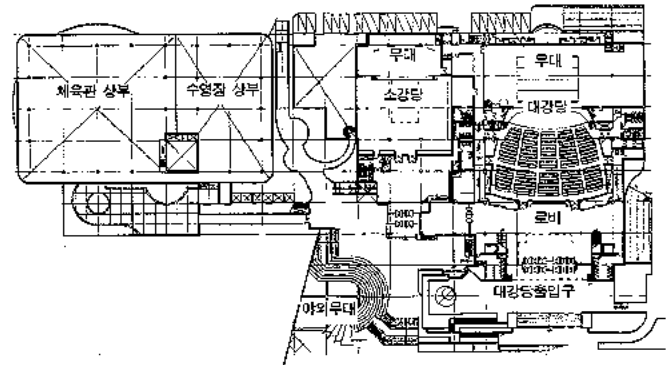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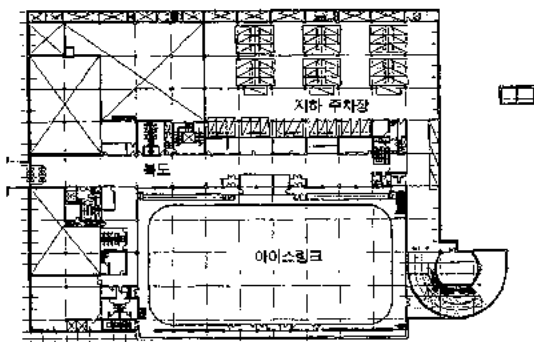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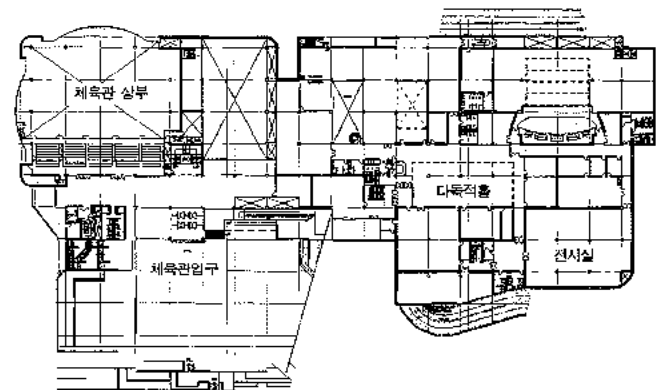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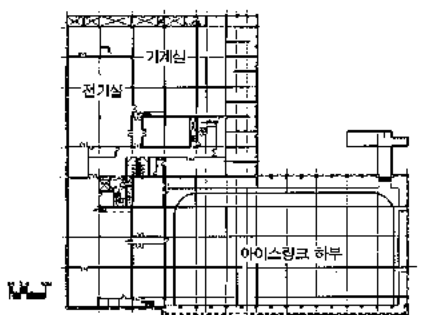
3층 평면도(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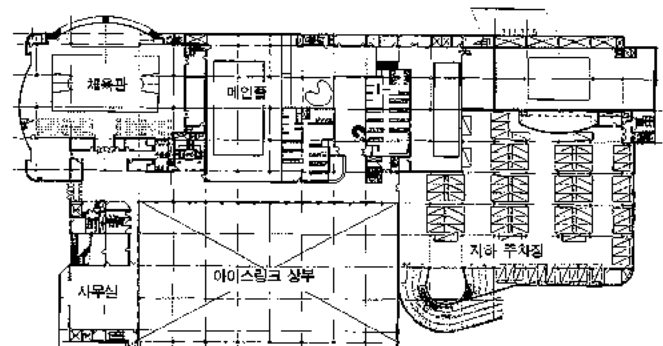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2층 평면도(체육관, 강당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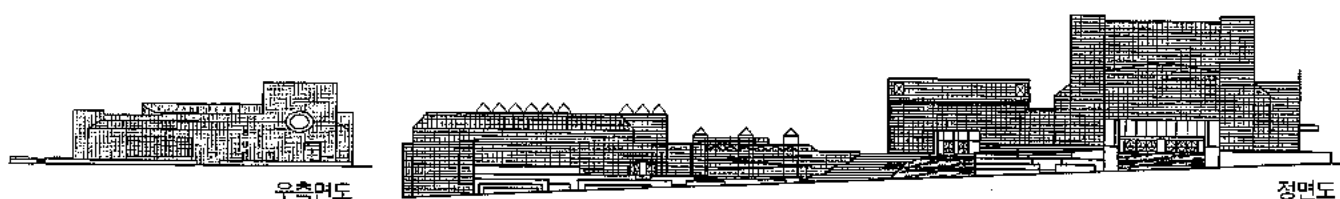
지하3층 평면도



1층 평면도(체육관 강당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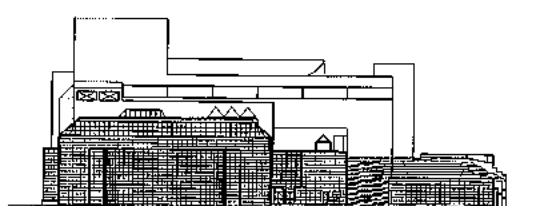


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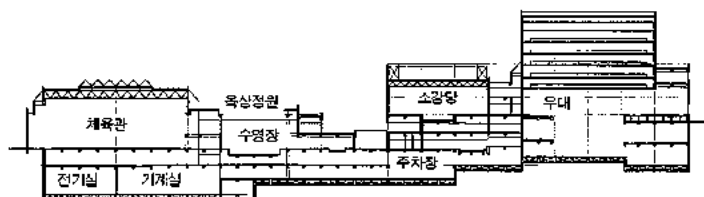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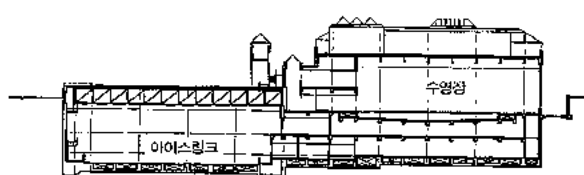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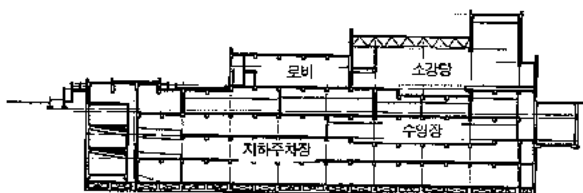
좌측면도



주단면도 - 3



주단면도 - 1



주단면도 - 2



삼척문화방송(주) 사옥

Mun-Hwa Broadcasting Co. Building in Samcheok

崔寬泳 + 鄭東明 /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Jung Dong-Myeong



서측전경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11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2,286㎡

건축면적 / 1,955㎡

연면적 / 4,823㎡

건폐율 / 15.9%

용적률 / 33.2%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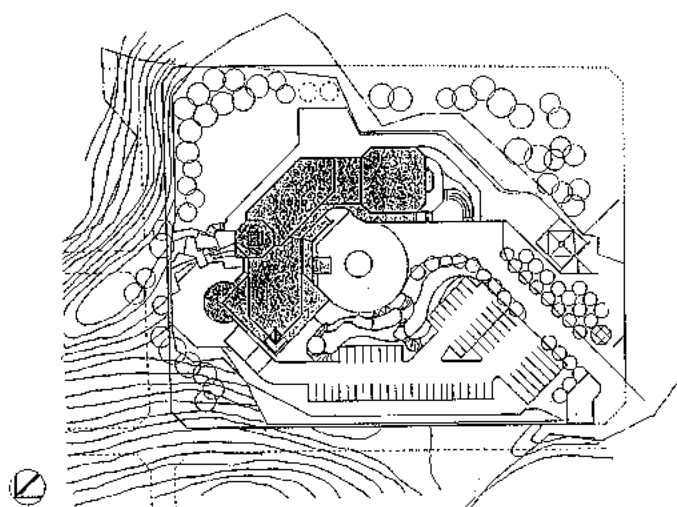
외부마감 / 외장파일, ① 30 회강벽

구조설계 / 일건엔지니어링

기계설비 / 한알엔지니어링

전기설비 / 문엔지니어링

조경 / 일건엔지니어링



배치도



1층 로비



원경

Location / 111, Kalcheon-dong, Samcheok-shi, Kangwon-do

District / Houses

Site Area / 12,285m²

Bldg. Area / 1,955m²

Gross Floor Ratio / 4.823%

Bldg. Coverage Ratio / 15.9%

Bldg. Floor Ratio / 33.2%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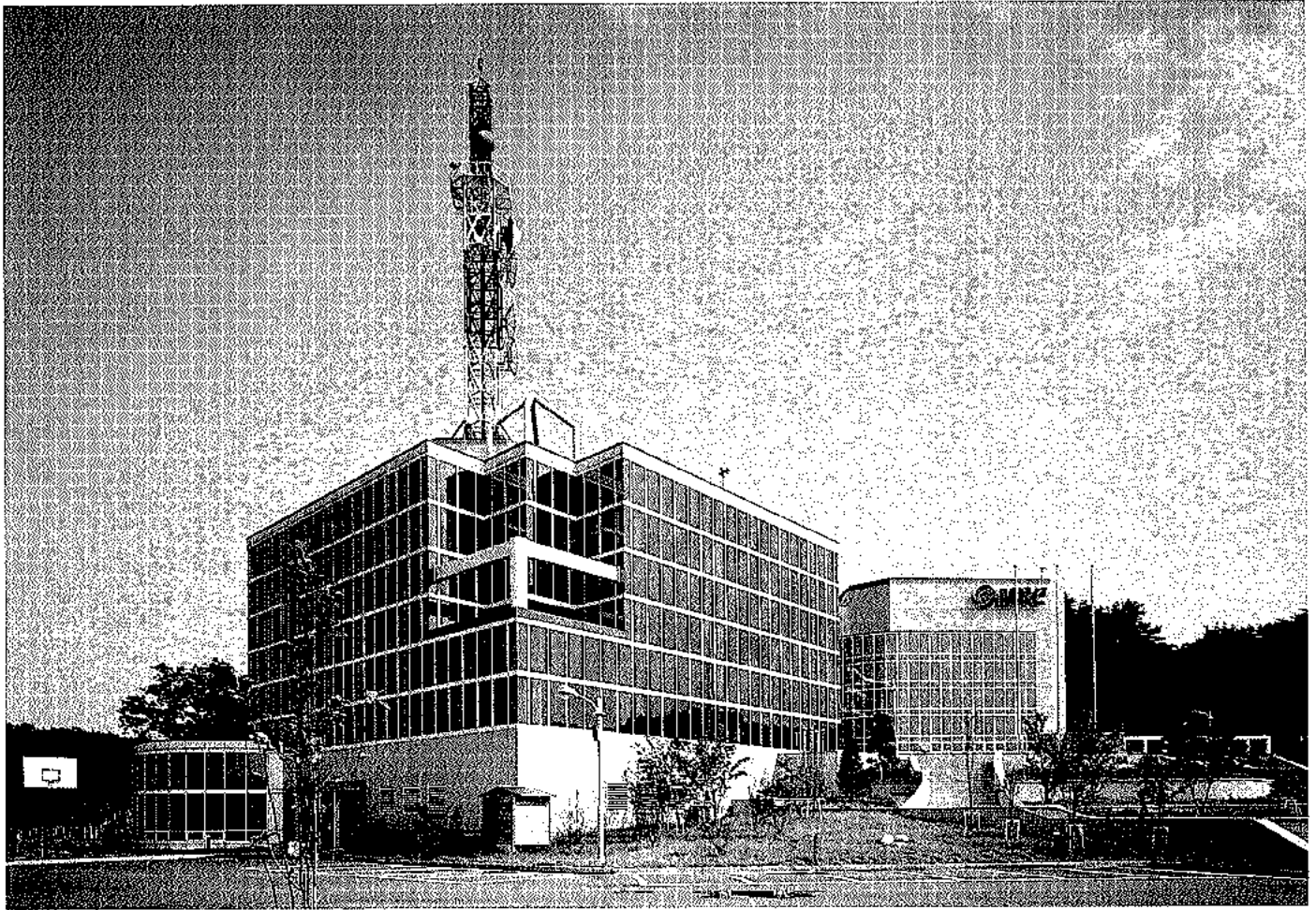
Exterior Finish / Tile, Granite @ 30

Structure Design / Ilgun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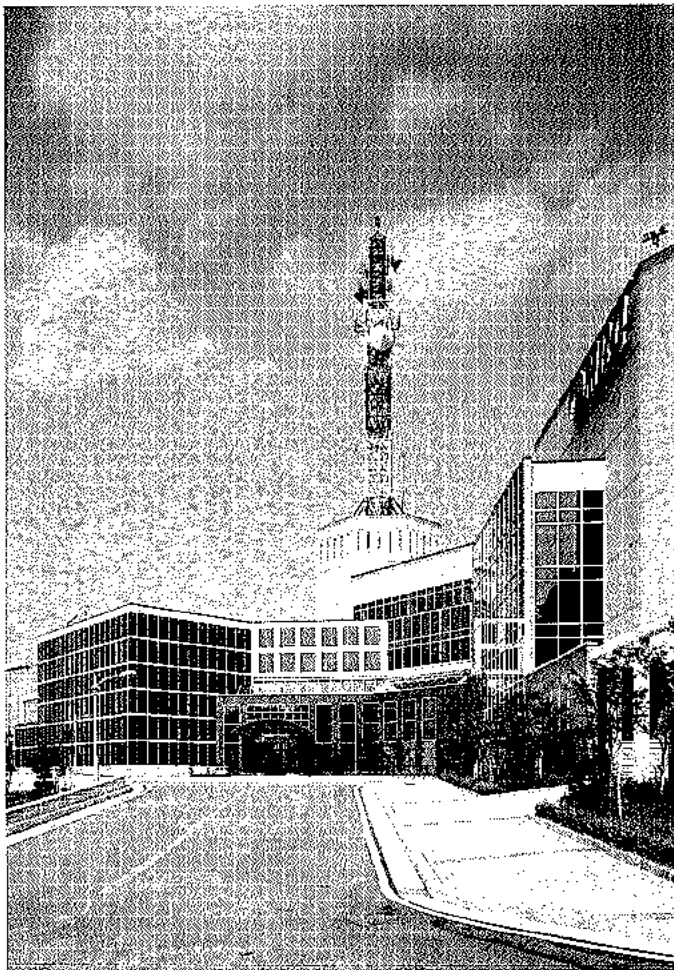
Mechanical Services / Hanil Eng.

Electric Installation / Mun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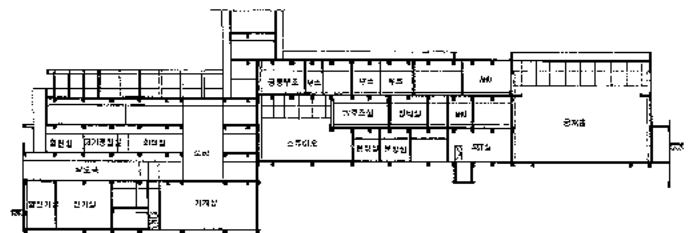
Landscaping / Ilgun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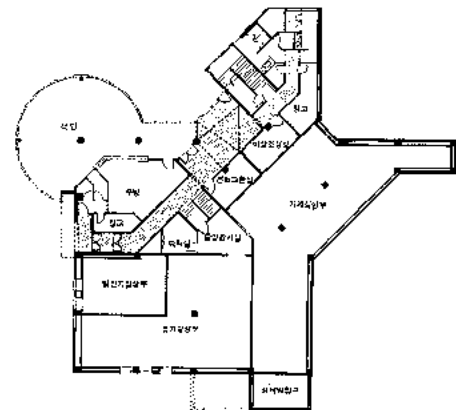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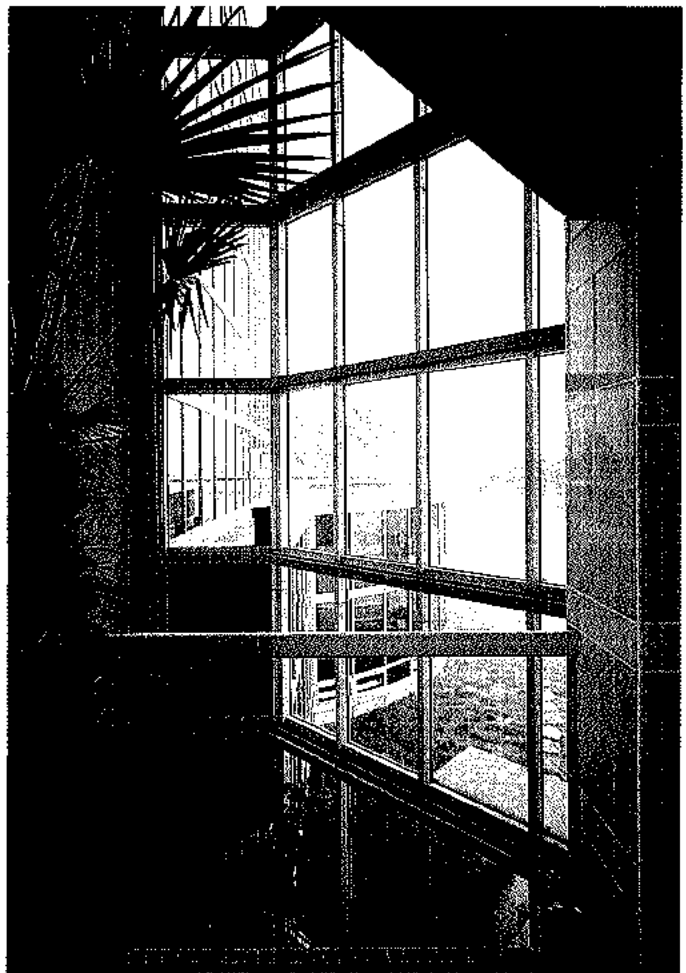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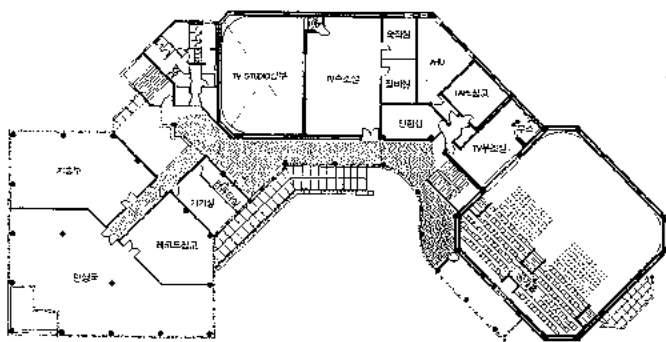
지하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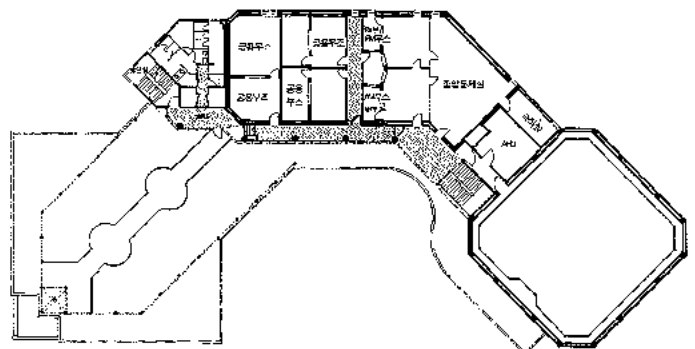
2층 로비에서 본 북측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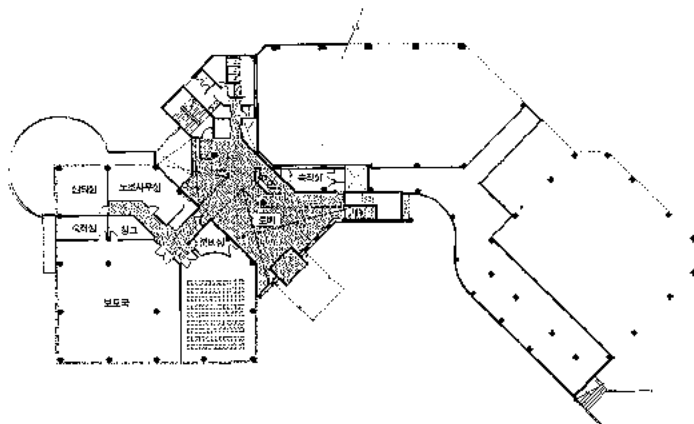
계단실에서 본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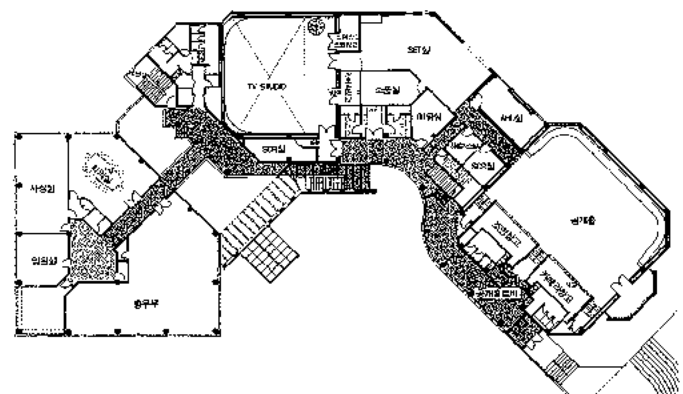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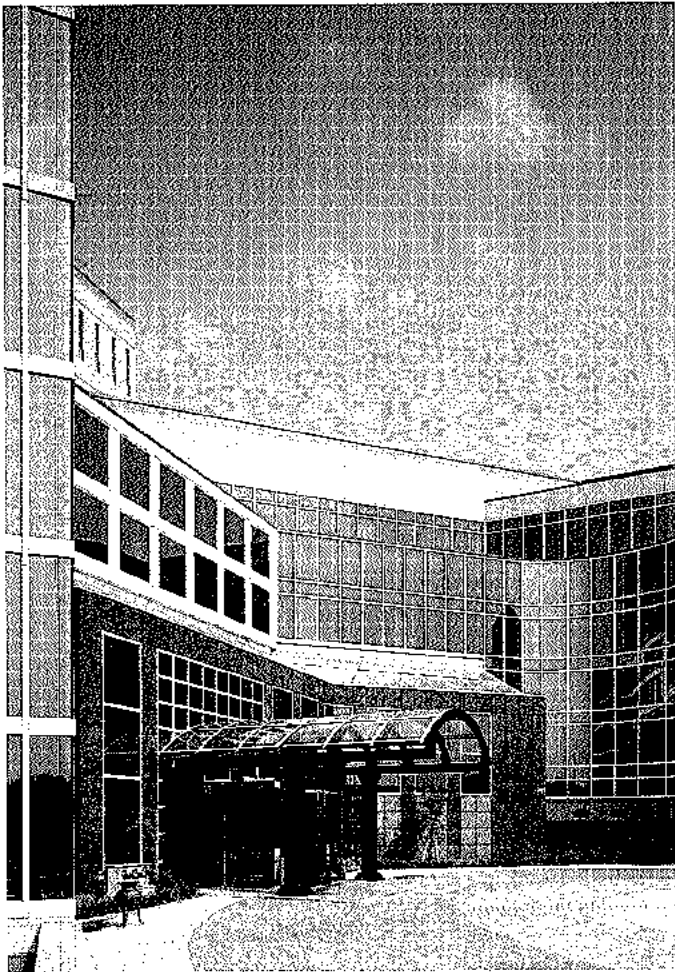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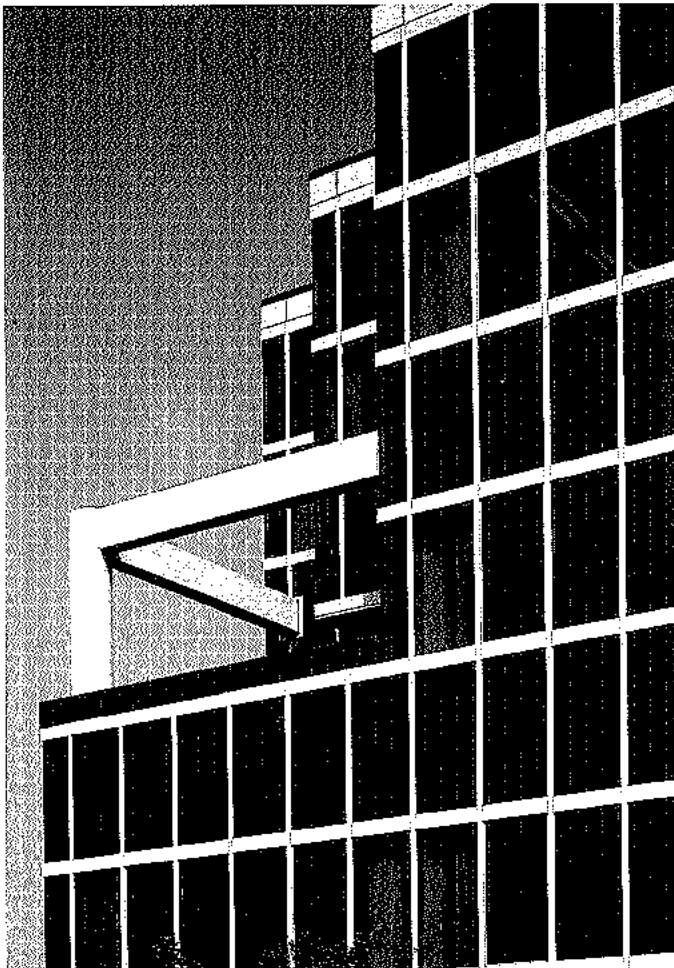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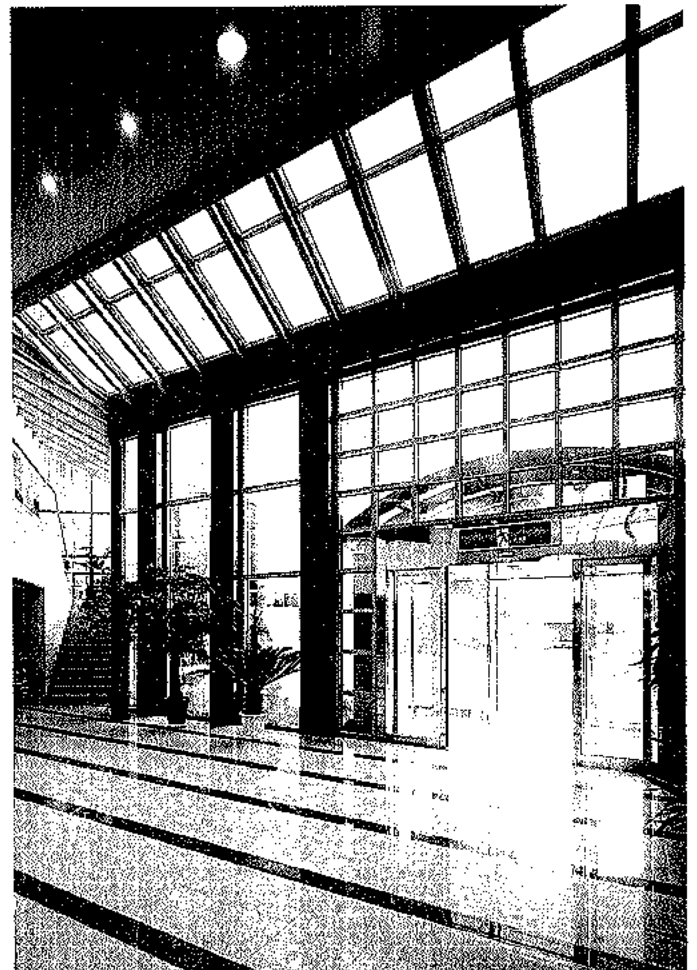
북서측에서 본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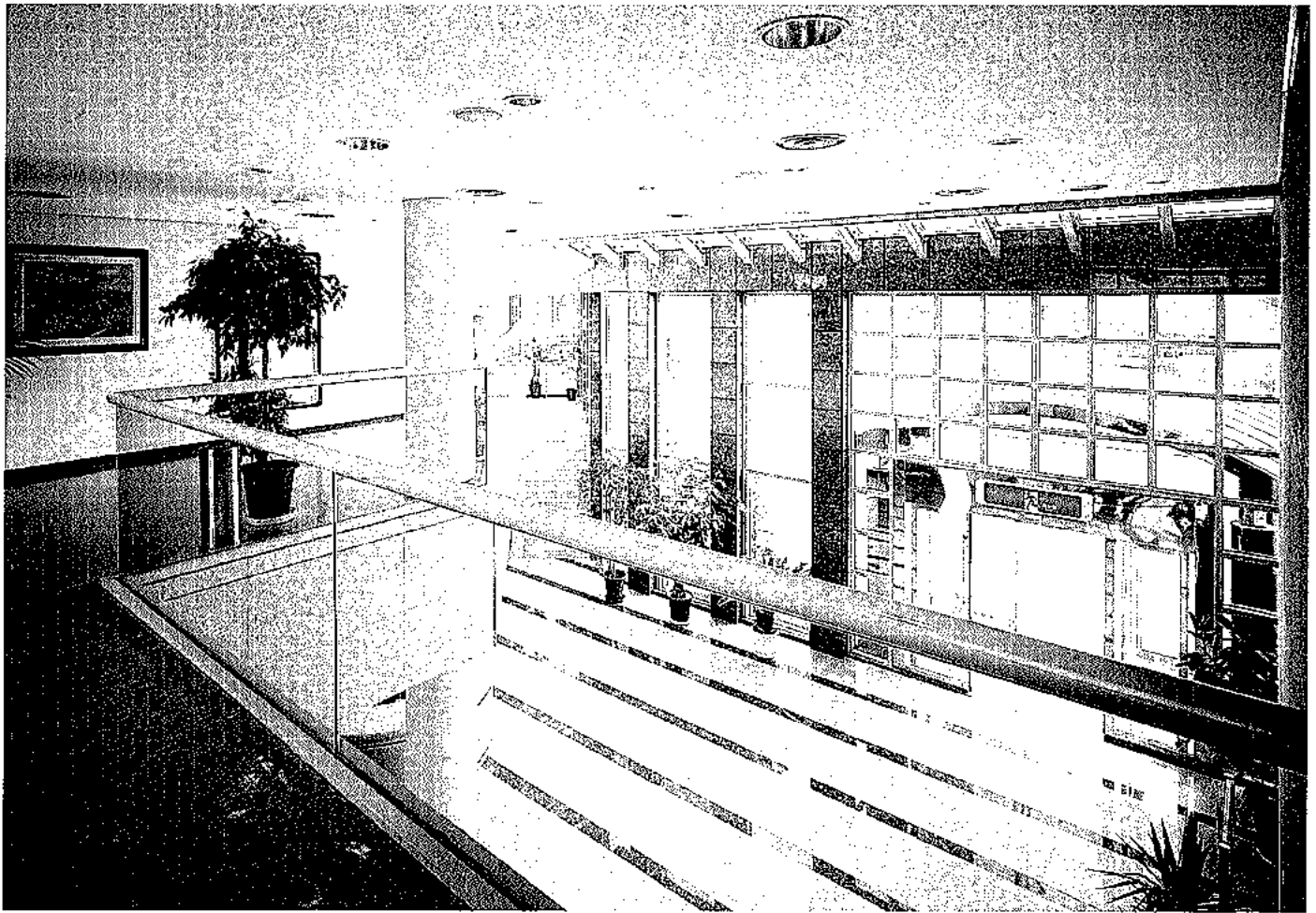
계단실



북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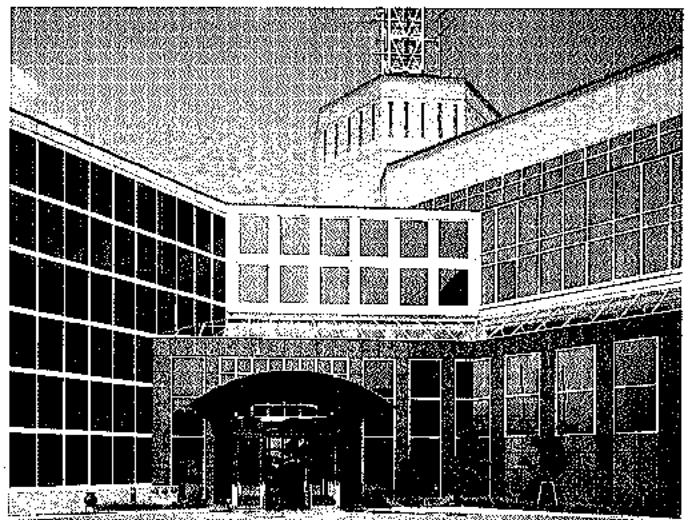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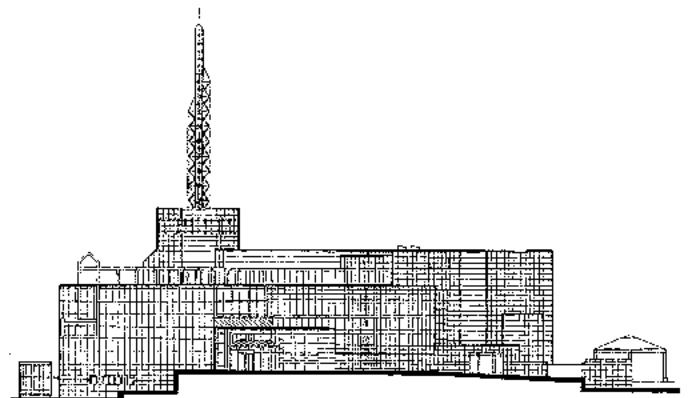
2층에서 본 1층 로비



1층 로비 안내실



주출입구전경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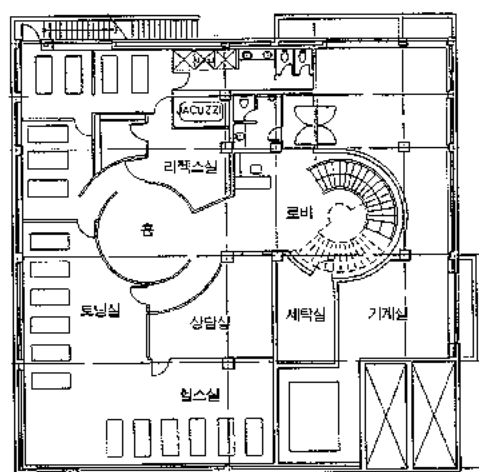
피어리스 레이디스 파크

Peeress Lady's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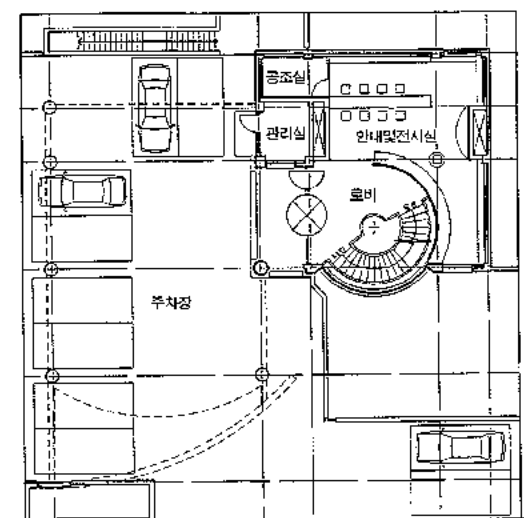
張錫雄 / (주)이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ok-Woong



정면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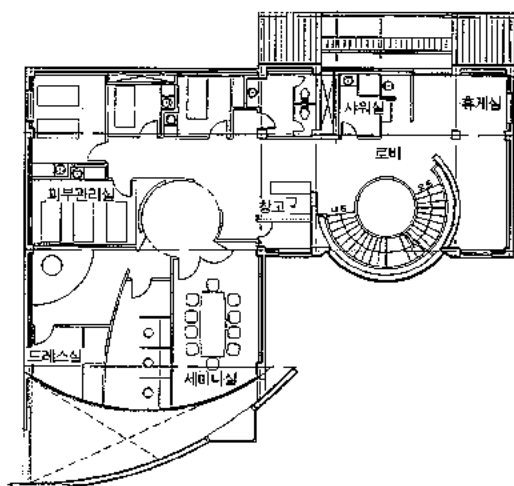
1층 평면 및 배치도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3-8
 대지면적 / 637.2㎡
 건축면적 / 295.34㎡
 연면적 / 1,410.74㎡
 건폐율 / 46.35%
 용적률 / 127.48%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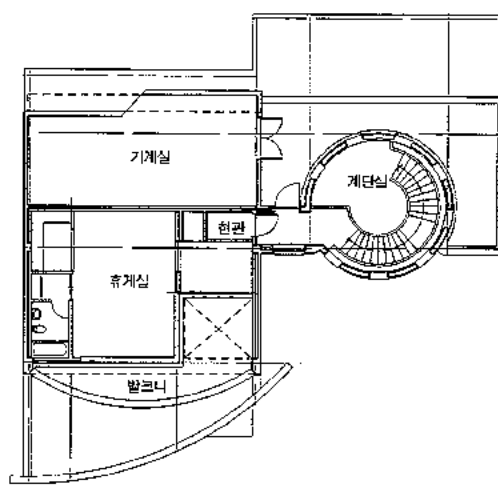
Location / 803-8, Pangbae-dong, Seocho-gu, Seoul
 Site Area / 637.2㎡
 Bldg. Area / 295.34㎡
 Gross Floor Area / 1,410.74㎡
 Bldg. Coverage Ratio / 46.35%
 Gross Floor Ratio / 127.48%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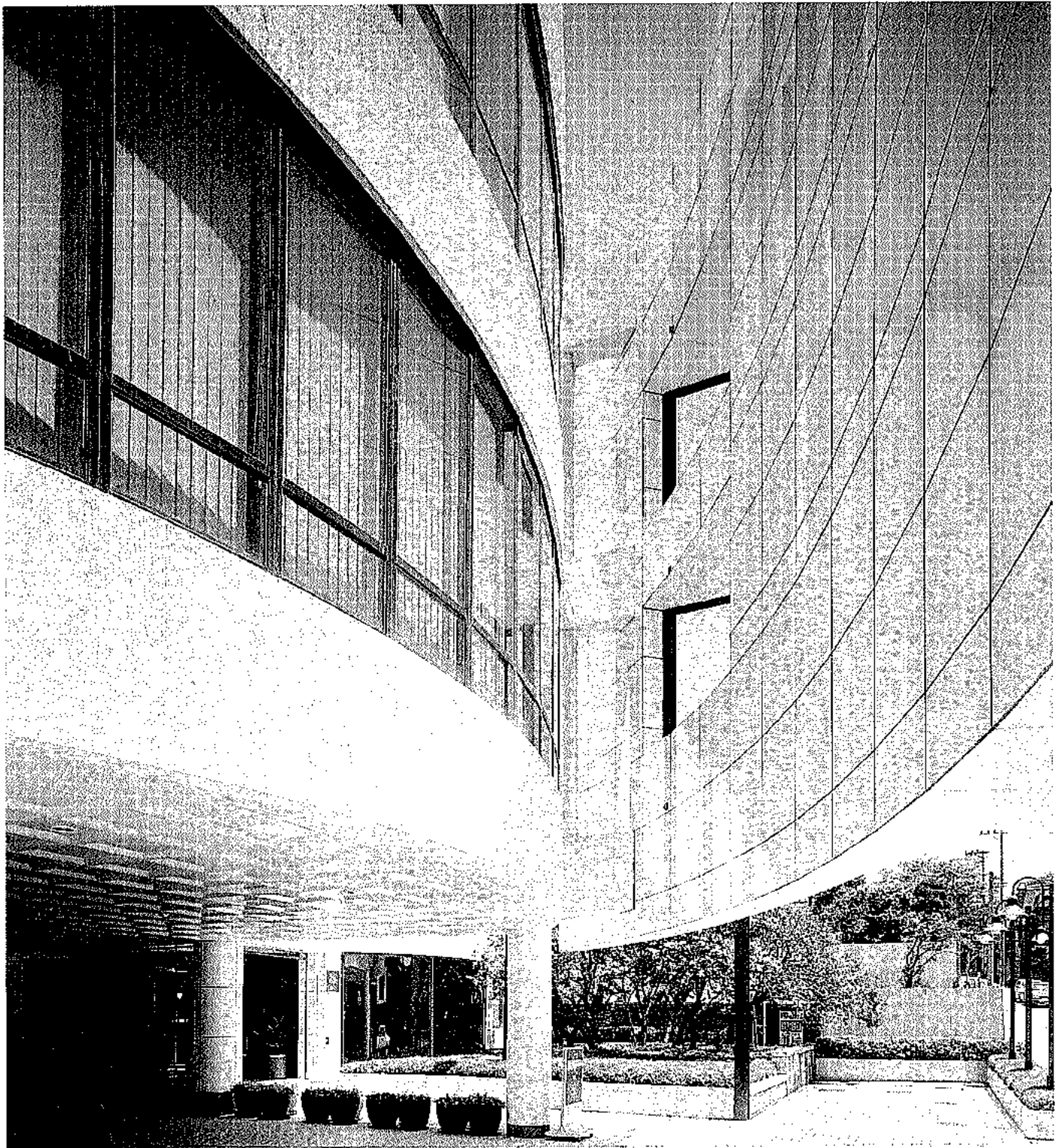
1층 디스플레이룸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히백 내부

간선도로에서 들어간 골목에 위치한 레이디스 파크는 여성전용 미용타운이다.

도시 내의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의 상업 건축물로 현대 여성들을 주 이용자로 삼는 새로운 용도의 시설이라 하겠다. 주변의 대부분의 붉은 벽돌의 주택들로, 벽돌담과 짙은 색의 철재 대문들이 지루하게 연속되어 있는 경관이다. 연속인 골목길에서 흰색 복합패널의 원형통 건축물은 주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외형으로 일단 상업건축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식별성을 지니고 있다.

1층은 막혀진 채 벽면이 연장되어지는 답답함

에서 한 숨을 틔워 줄 수 있도록 피로티로 처리되었다. 공간적으로 시원한 느낌과 더불어 골목길에 소규모 건물에서 가장 불편한 주차 공간도 여유있게 해결되었다.

형태는 외부에 노출되어 보여지는 두개의 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 공간과 이동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진 큰 원과 작은 원은 좁은 복도의 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골목길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며 보이는 주 공간은 단순한 박스형의 매스에 큰 원호형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에 돌출된 창으로 변화를 주었다. 언덕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작은 원호의 계단실은 꼭대기를 시각별

의 천창으로 처리하였다. 골목과 나란하게 내려오는 계단실의 큰 유리창 앞 화단에는 라일락 나무를 심어 녹색 공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 쪽에서 보면 검은색의 사각 프레임 속에서 더 짙고 밝은 녹색의 풍경으로 보여지고 있다. 어슴푸레한 빛이 주위에 무겁게 내려앉을 쫘 할 로젠 가로등이 켜지면 자는 해거름과 함께 복합 패널이 주는 이질감을 해소해 주는 듯하다.

중심의 붉은색 철골 프레임의 설치는 출입구로의 시각적 지시효과와 형태로서의 강조효과를 주고 있다. 좀 어두운 느낌의 사용자 전용 출입구를 들어서게 되고 안내실을 거쳐 안으로 들어



계단 트라이트

서면 화장품 전시장과 메이크업 상담을 하는 개방된 공간이 펼쳐진다. 내부는 사용자가 모두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가 통일성 있는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되는 기분이 들도록 하고 있다.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원형계단으로 연결되어 각층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면서도 각 층의 역할이 분명하도록 분리되고 있다.

원형계단 천창과 계단실의 큰 창에서 쏟아지듯 자연광이 들어와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동 핸드레일과 짙은 색의 오크무늬목은 할로겐등이 만들어 내는 밝은 황색의 색조와 어우러져 있고, 원형으로 둘러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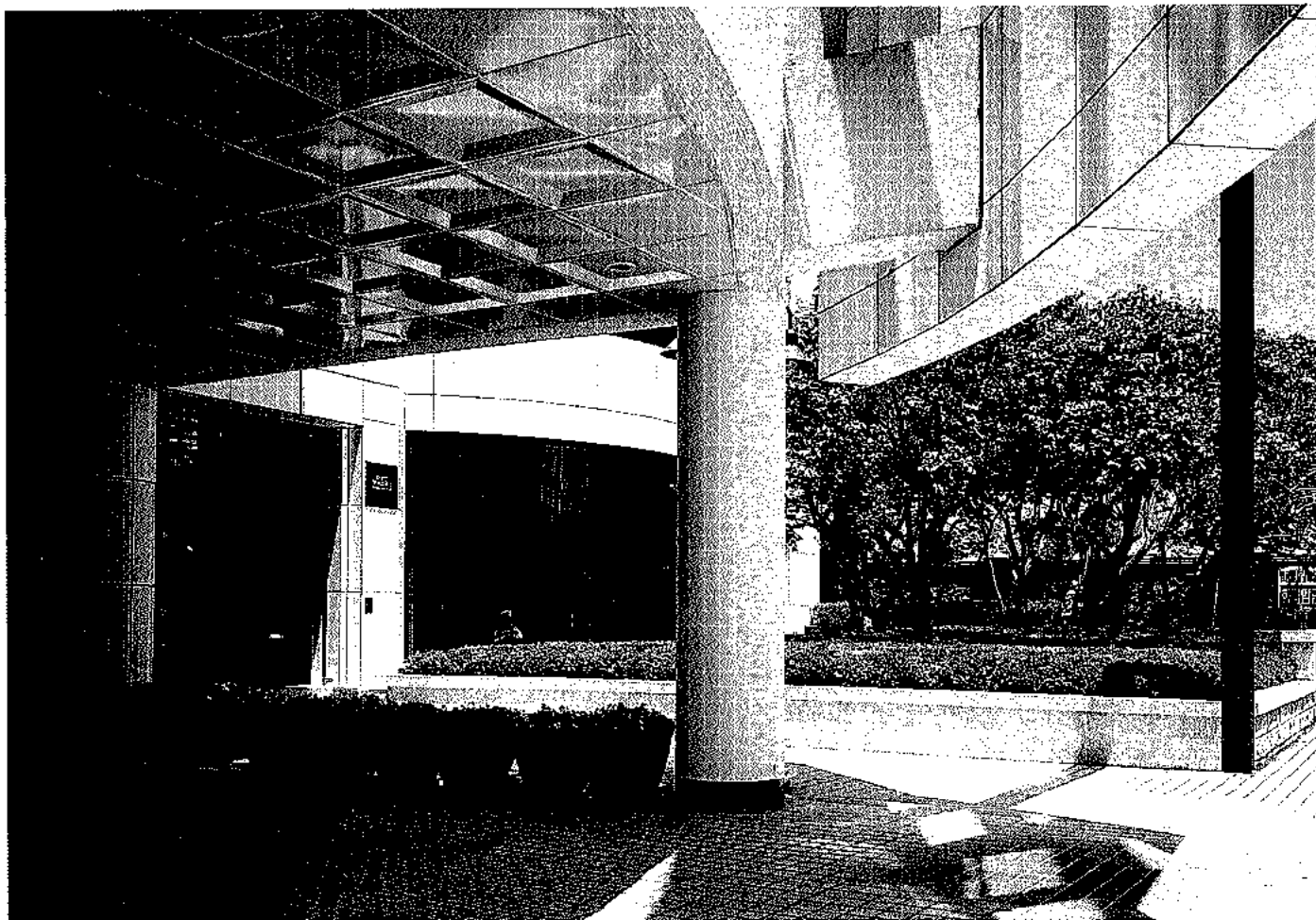
는 감각적이면서도 품위있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안정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지하의 체형관리실과 3층의 웨딩숍은 크게 스태프공간과 전시공간, 사용자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들이 주 공간으로 들어갈 때 원형의 전실을 통과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유지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주고자 했다. 원형의 전실에서는 내부의 진행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과 오크무늬목을 적절히 나누었고, 잠시 대기나 휴식도 가능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1층 원형계단의 가운데 설치된 조각은 천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자연스럽게 변화적인 음영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4층은 원장실로 완전히 사용자들과 별개로 떨어진 독립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데 원형계단을 덮고 있는 뾰족탑 모양의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일정 간격으로 나 있는 창을 통해 보여지는 가까운 주변의 나지막한 주택들과 멀리 들어오는 산 들이 액자 속의 풍경처럼 보여진다.



현관 피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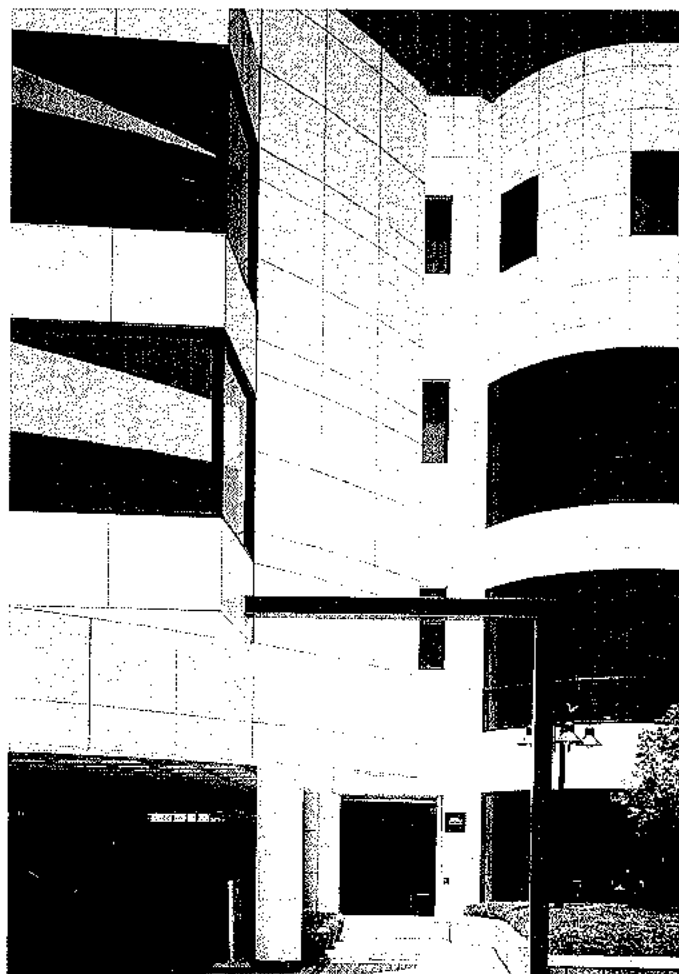
체력단련 및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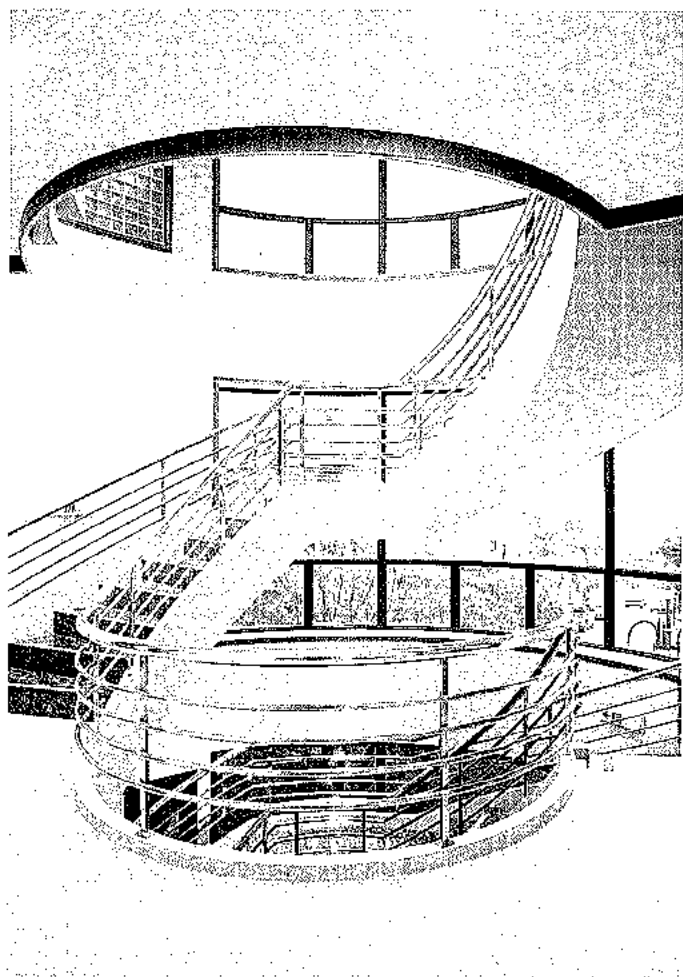
지하1층 계단실



정면 주차장 및 옥외 조명시설



주출입구 전경



원형 계단실



전경



군산 청소년수련원

Kunsan Youth Training Center

盧亨來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o Heung-Rae



전경

위치 / 전북 군산시 송광동 954-13

대지면적 / 18,100㎡

건축면적 / 3,609.091㎡

연면적 / 10,689.447㎡

건폐율 / 19.94%

용적률 / 69.91%

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트라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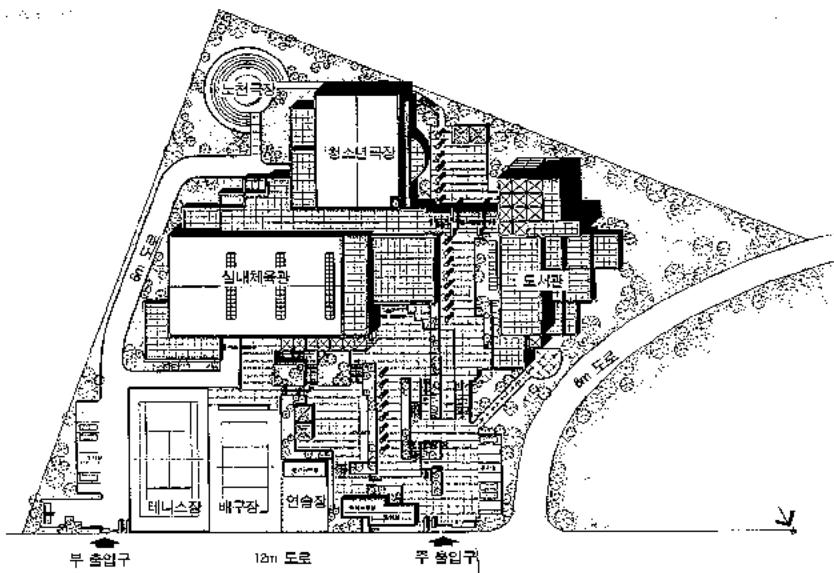
주요 외장재 / 토석벽돌 치장쌓기

구조설계 / 가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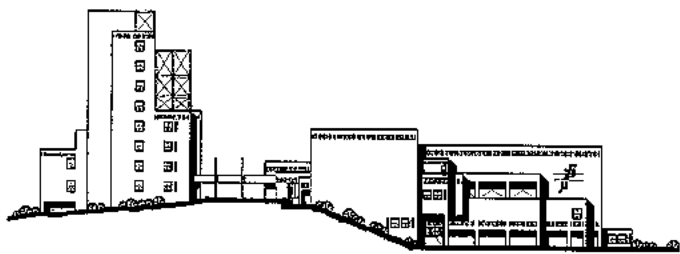
기계설비 / 새진설비

전기설비 / 신우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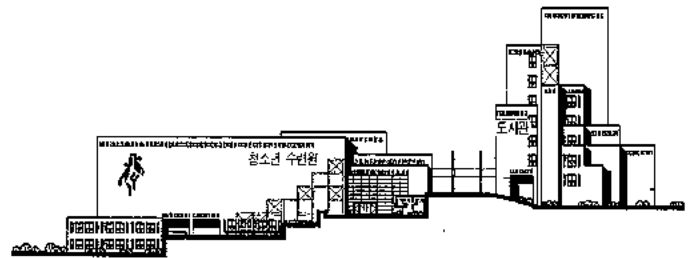
조경 / 박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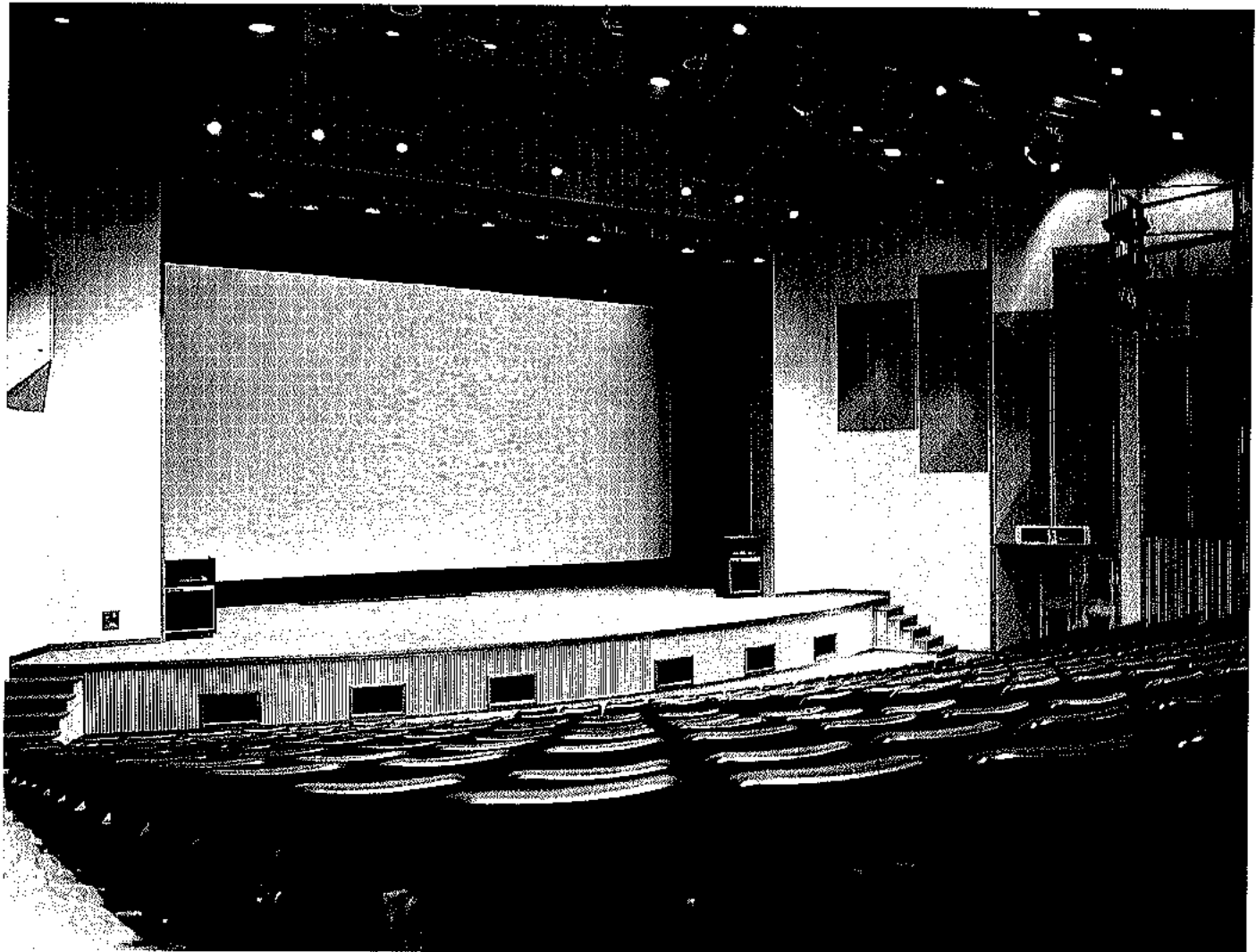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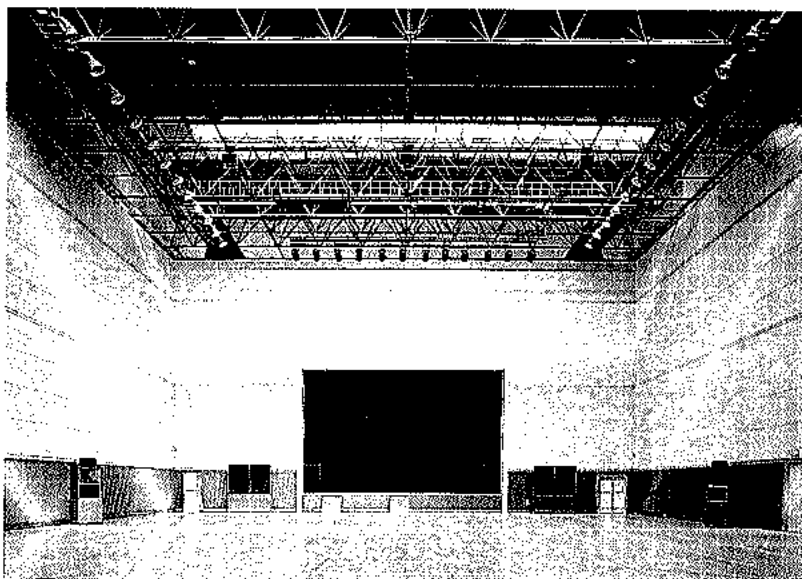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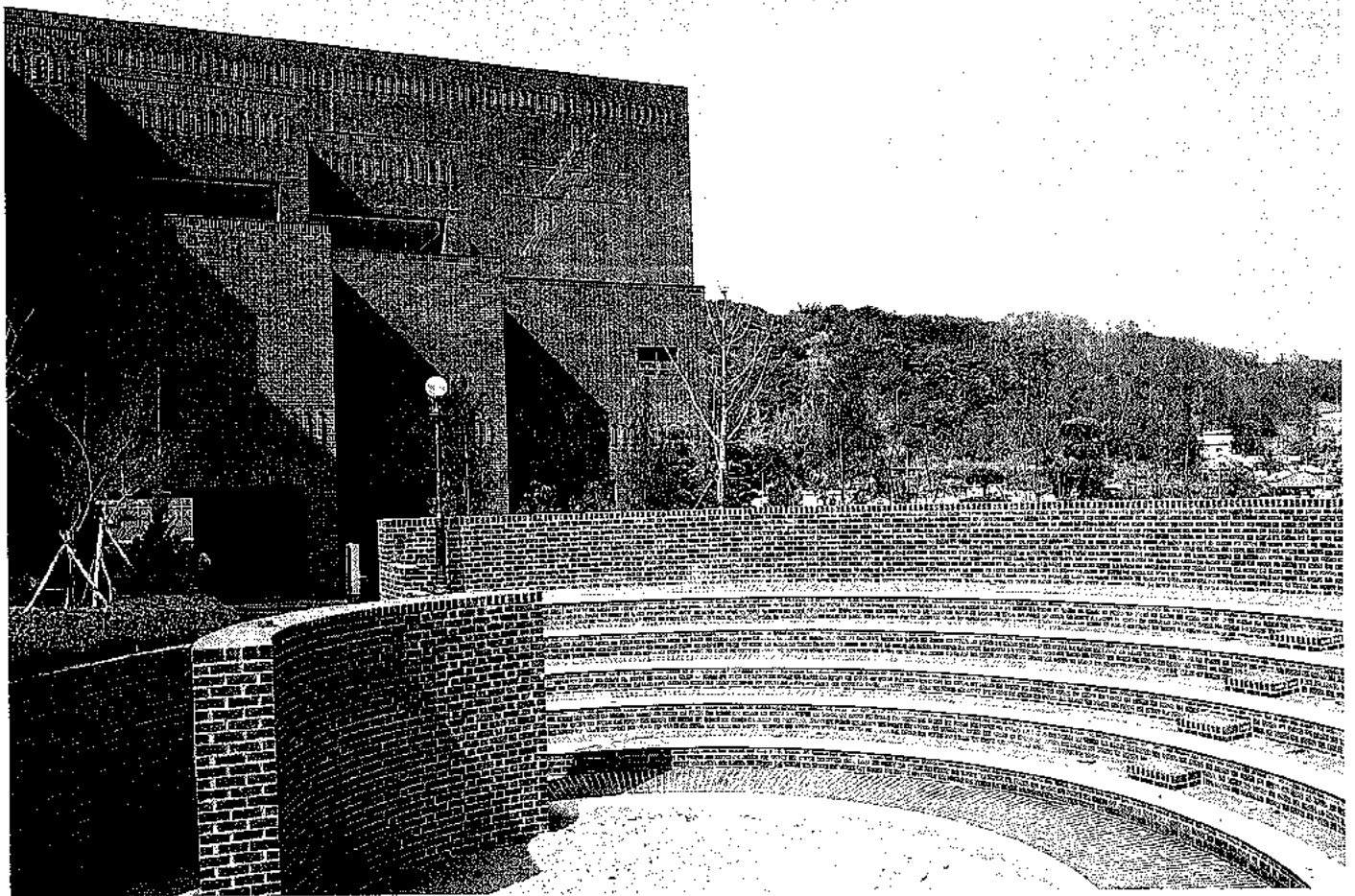


청소년극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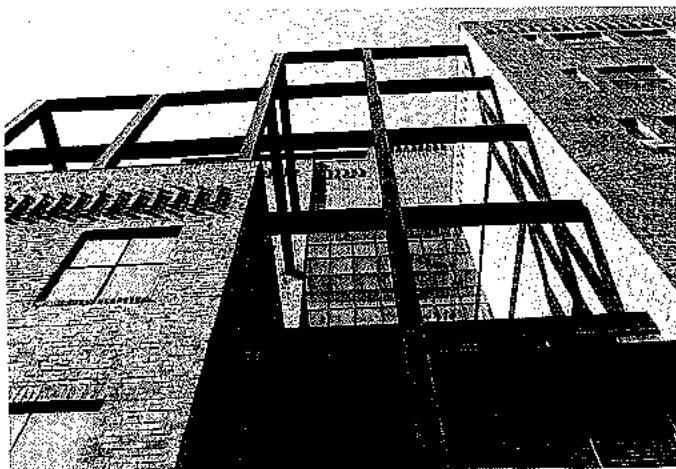


체육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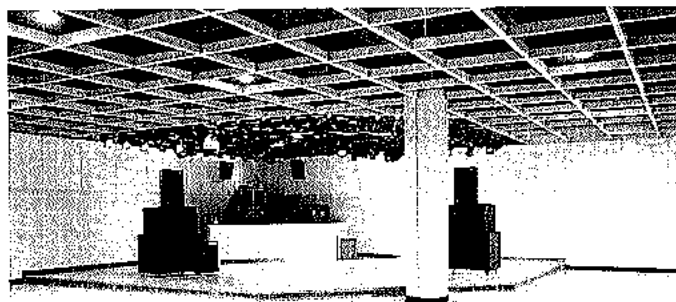
Location / 954-13, Songpung-dong, Kunsan-shi, Cheollabuk-do
 Site Area / 18,100㎡
 Bldg. Area / 3,609.091㎡
 Gross Floor Area / 10,689.447㎡
 Bldg. Coverage Ratio / 19.94%
 Gross Floor Ratio / 69.91%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Truss
 Exterior Finish / Fair-faced Brick work
 Structural Design / Gaya Eng. Co.
 Mechanical Services / Sejin Co.
 Electric Installation / Shinwoo Eng. Co.
 Landscaping / Park Seung-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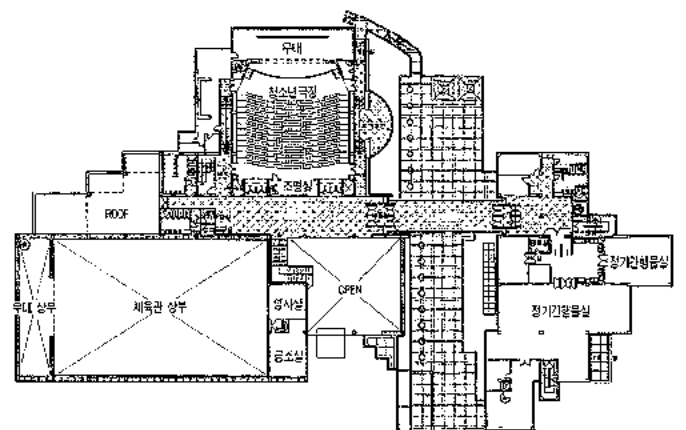
노천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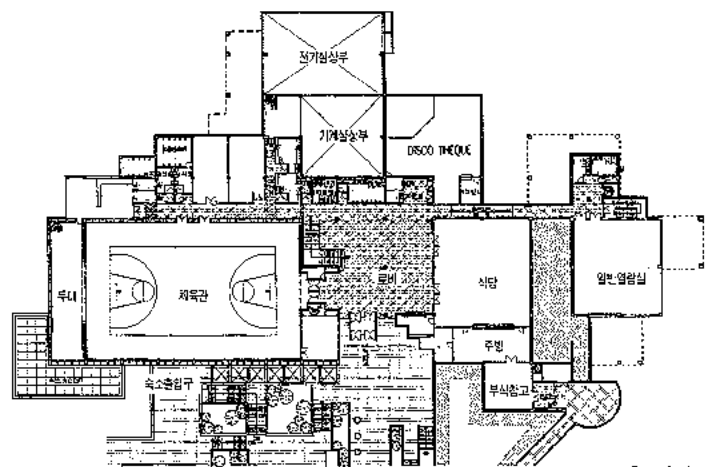
도서관 외부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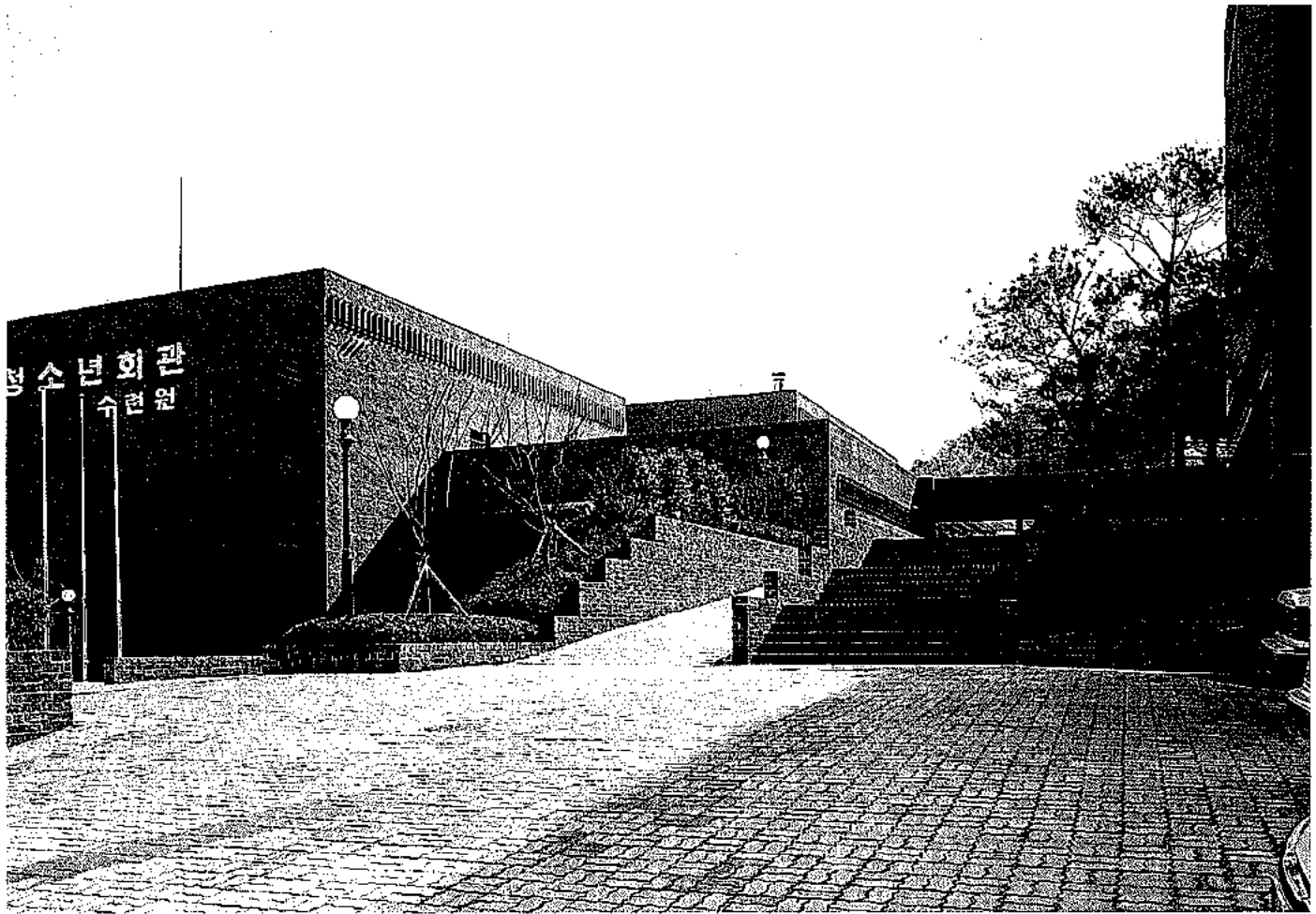
디스코테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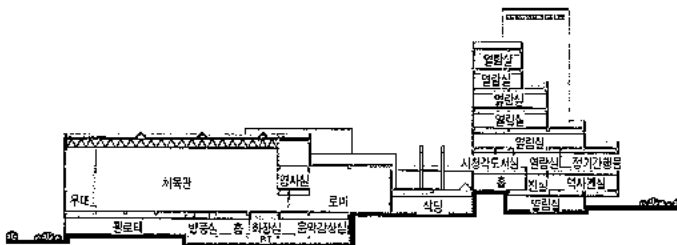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입구에서 본 체육관 전경



단면도



로비

시가지에서 월명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산책로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눈길을 끄는 건축물.

이번에 개관한 군산 청소년 수련원은 체육시설, 공연장, 집회장, 도서관을 고루 갖춘 청소년 문화시설로서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및 레저, 스포츠활동을 위한 Community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시가지 연결 도로(12m)와 공원산책도로(8m)의 교차점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월명공원을 찾는 청소년 및 보행자들의 진·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과 쾌적한 산책코스로서 기대된다. 또한 도로(Public Space)와 건축물(Private Space)의

원충공간으로서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였다.

건축물 전입부에 1개의 로비를 설치하여 중앙광장으로부터의 외부동선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며 자연의 공간을 내부공간과 융화시켜 밝고 넓게 판통시켰다.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야 함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접합하고 분리하여 건물의 기능을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계획하였으며 이를 조형상으로 일관되게 표현하여 디자인의 순수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부지가 월명공원내에 위치하므로 건축물이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외장재료를 토석벽돌(자연+흙)로 사용하였고, 외부공간은 대지의 원경사를 이용하여 각 외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단 차이를 두어 적극적이고 변화감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Community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며,

체육시설은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살아있는 듯한 생동적인 공간감 확보에 노력하였고 저층부에 배낭여행 청소년을 위한 쉼 자리를 계획하였다.

공간에 대한 개념과 사용자의 형식을 고려한 시설로서 이용되고 도시속 청소년의 활력 넘치는 문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초동 원룸주택

Sun-Rise Villa

呂運澤 /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eo Woon-Taek



서측 전경



방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1-7

지역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58.10㎡

건축면적 / 154㎡

연면적 / 582.05㎡

건폐율 / 59.67%

용적률 / 158.9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 명진주택

Location / 1511-7, Seocho-dong, Seoch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258.10㎡

Bldg. Area /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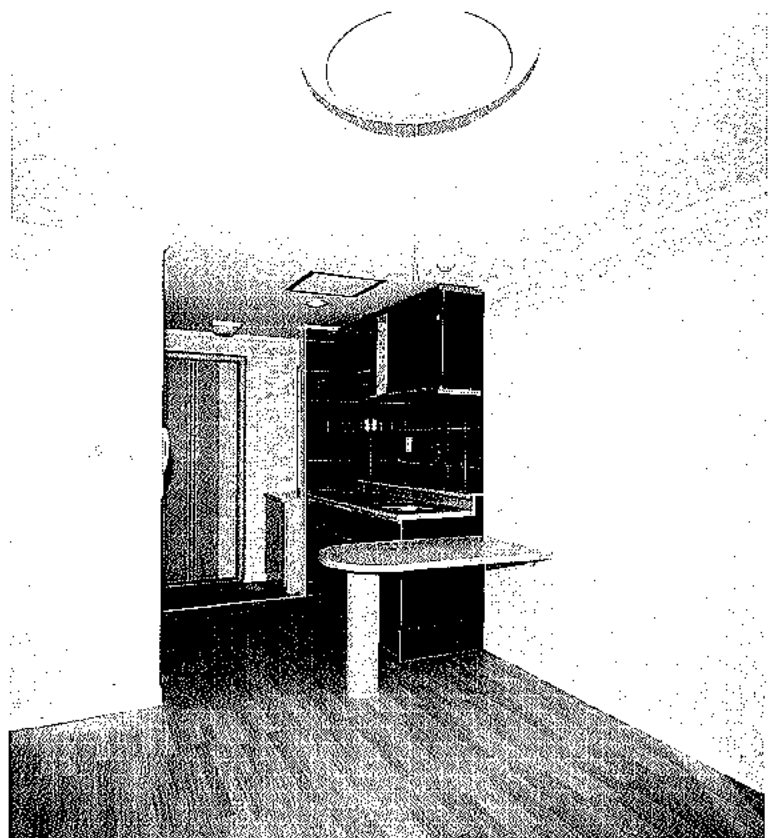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582.05㎡

Bldg. Coverage Ratio / 5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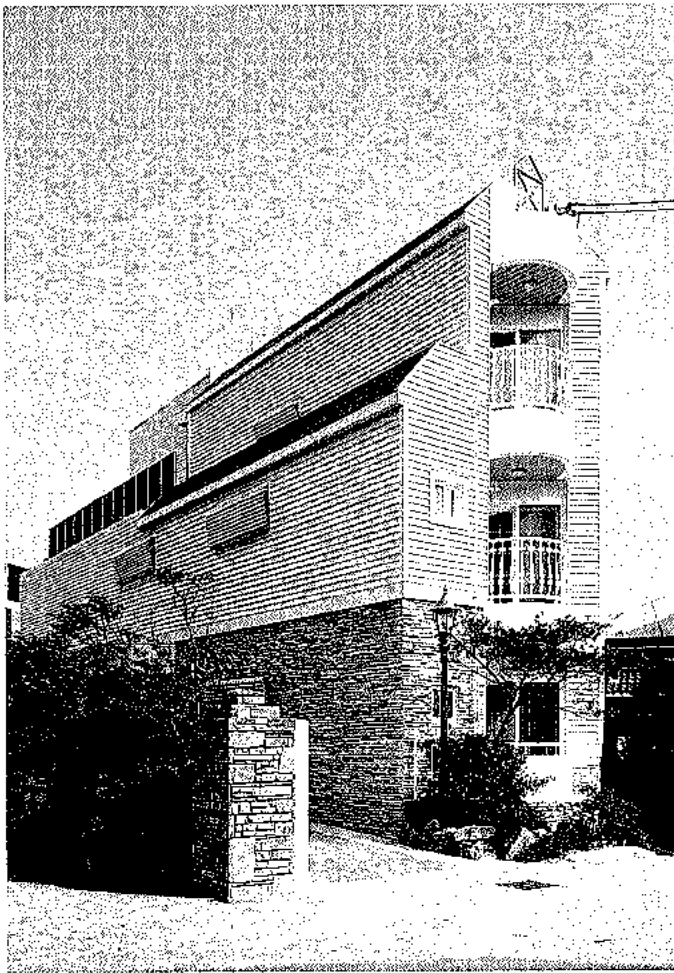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158.95%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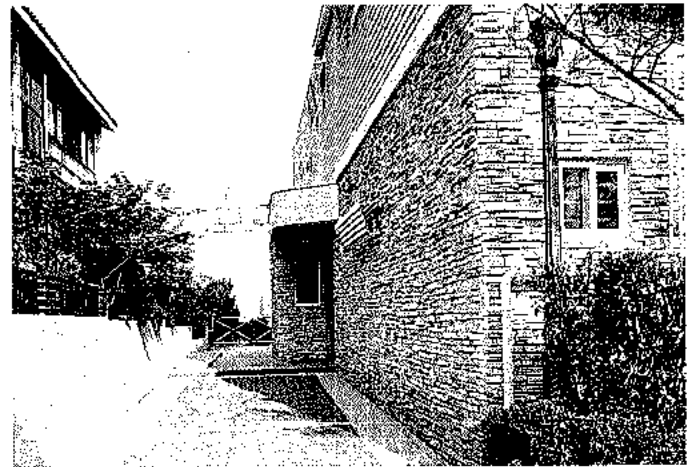
Constructor / Myeong Jin House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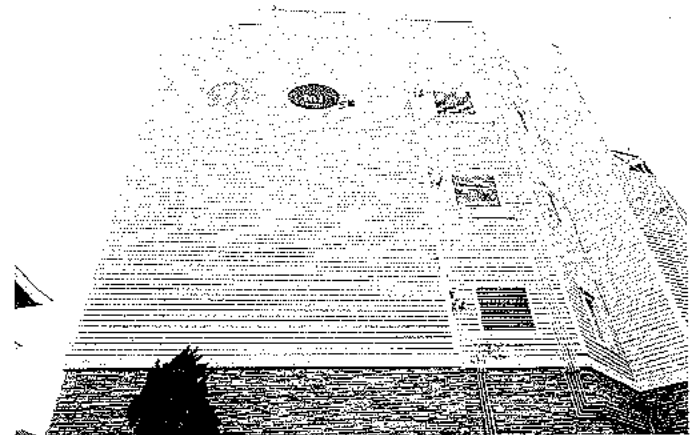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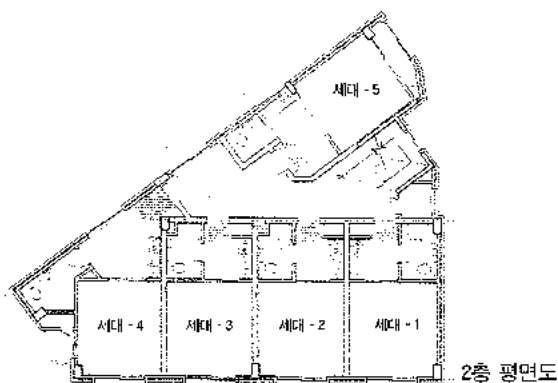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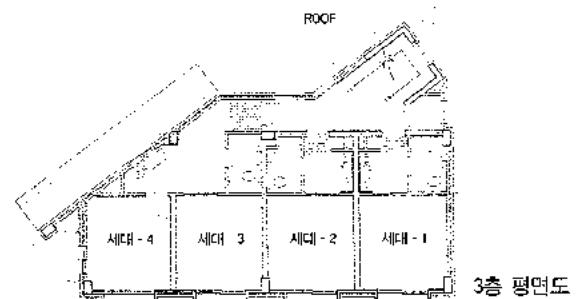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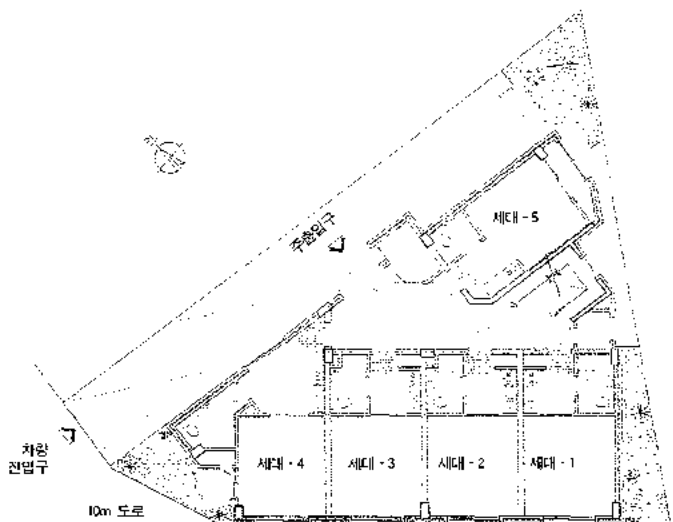
올려다 본 남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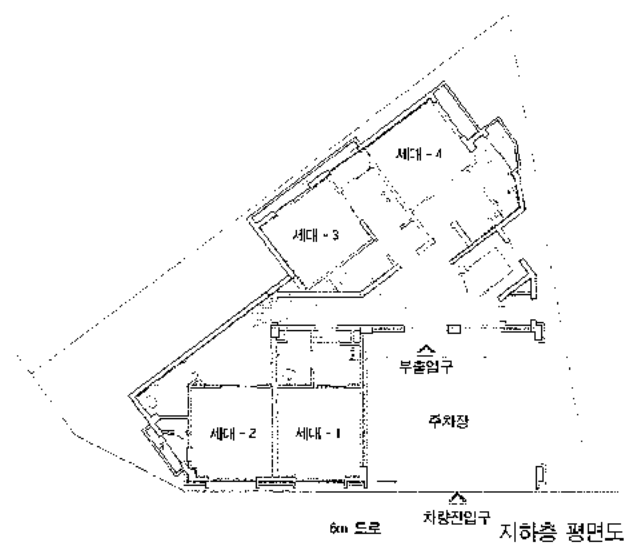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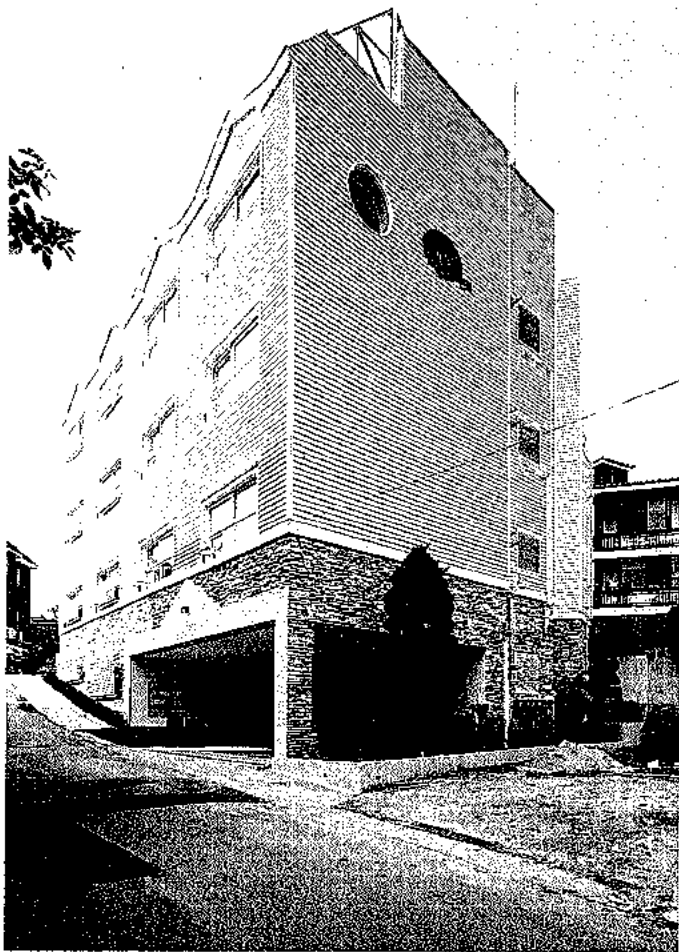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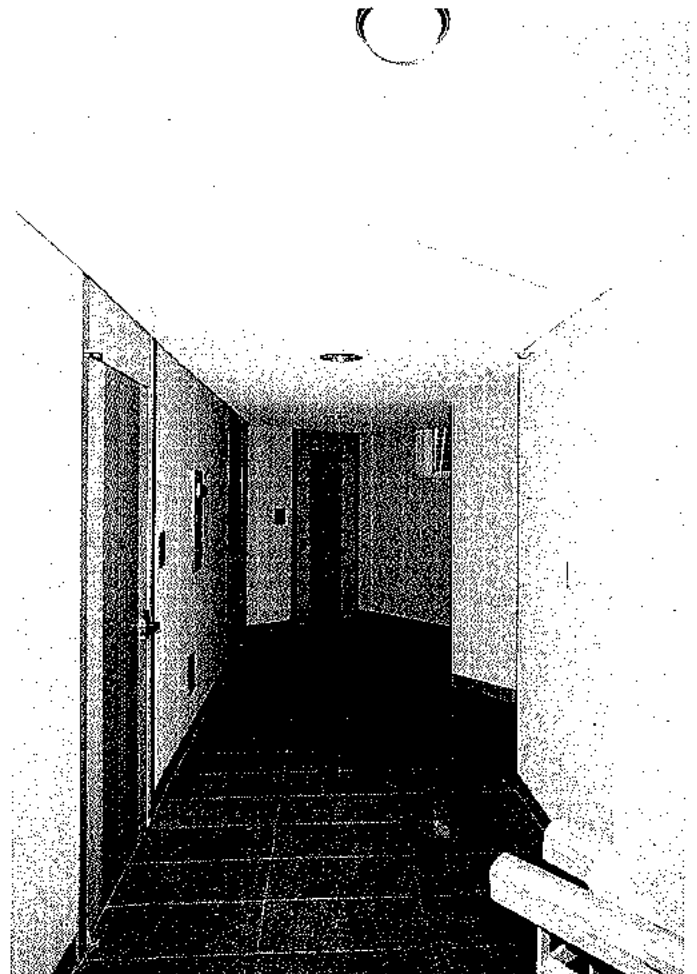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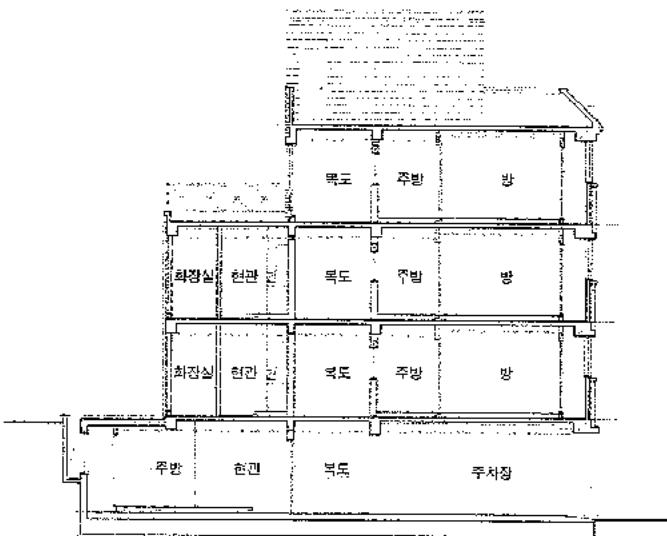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남측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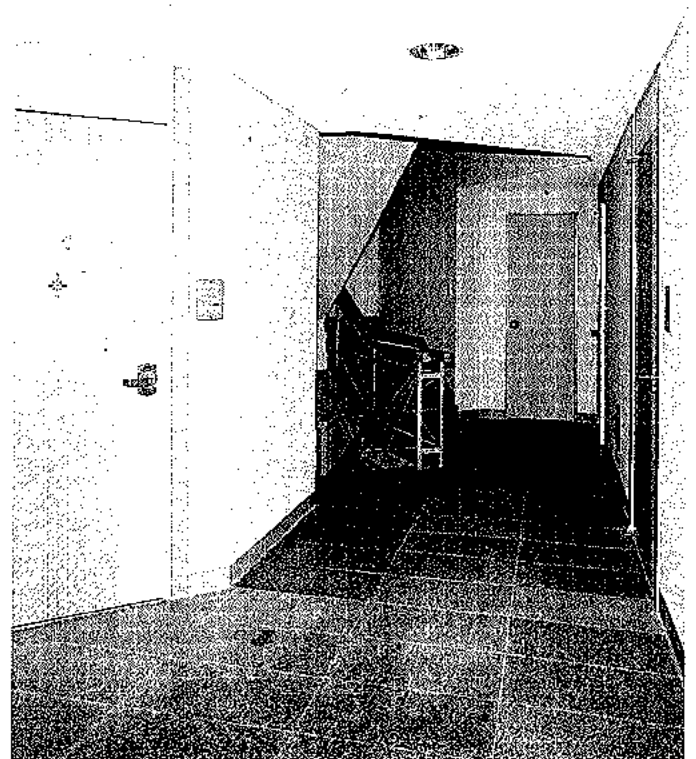


복도 1



단면도

노후대책으로 마련하는 작은 건물
 노후사업도 사업이라면 수익성을 최대한 해야하겠는데 그러려면 대지를
 콕콕 채우지 않고 되겠는가
 삼각형의 대지를 눌러 채우다보니 평면의 형태도 또한 닳아서 날개를 달
 고 날아간다.
 그렇다면 날렵한 감각의 외장재료를 사용하여 날개를 강조하자
 건축주 또한 건축적 안목이 깊은 분이라 구석구석이 세심한 배려가 깃들
 었으며 이름까지 멋있다.
 Sun-Rise Villa
 그 이름에 걸맞게 서초동 양지바른 언덕에 유난히 밝아보이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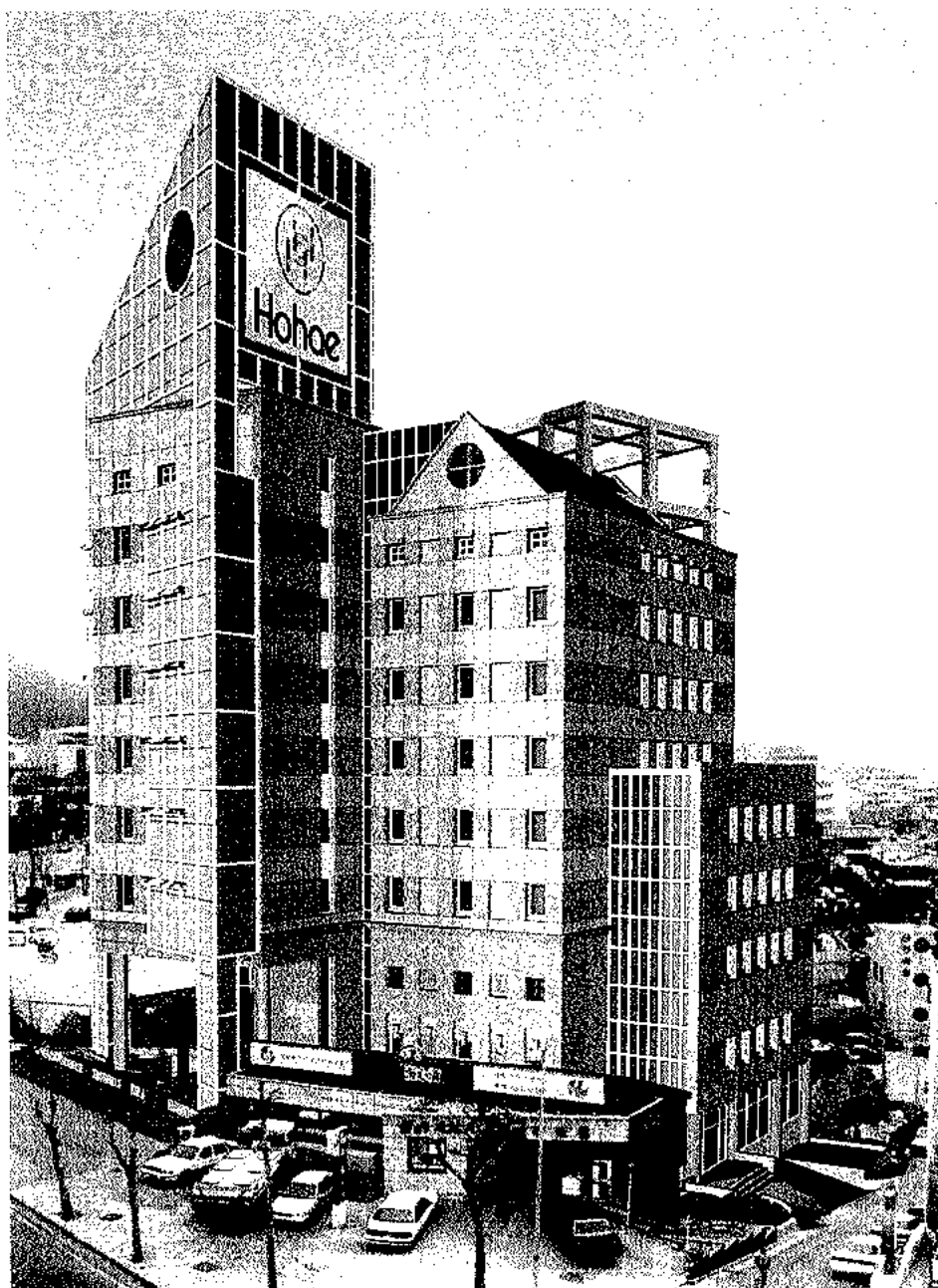
복도 2

호혜빌딩

Hohae Building

田炳植 / 코오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Byeong-Jie



조감도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4-28외 5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3·4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215.7㎡

건축면적 / 688.74㎡

연면적 / 9,319.79㎡

건폐율 / 56.95%

용적률 / 421.61%

규모 / 지하5층, 지상9층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알루미늄커튼월

Location / 1464-28, Seocho-dong, Sech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1,215.7㎡

Bldg. Area / 688.74㎡

Gross Floor Area / 9,319.79㎡

Bldg. Coverage Ratio / 56.95%

Gross Floor Ratio / 421.61%

Bldg. Scale / 5 Stories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Use / Offic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Aluminium Curtain Wall

계획의 주안점

예술의 전당을 낀 대로변의 부정형 대지 내에 삼각형 · 사각형의 조합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강한 이미지 공간을 창출하고, 1·2층의 공개공지 확보로 도시환경에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4면에서의 정면성을 강조하면서 중첩으로 다양함을 보여 주고, 대로변에 돌출된 삼각형 Glass Tower는 21C를 리드해가는 호혜섬유의 위상을, 주의벽의 Semi Classic한 석재 부분은

사옥으로서의 중후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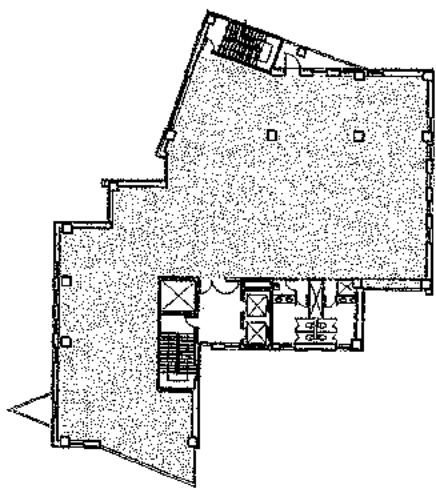
-대로변에 면한 주출입구는 Bridge와 Sunken 및 벽천으로 처리하고 2개층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우측의 6m 도로에 차량 동선을 유도하며 후면에 또하나의 보행자 출입구를 두어 5m의 고저차에 연결성을 부여하고 양측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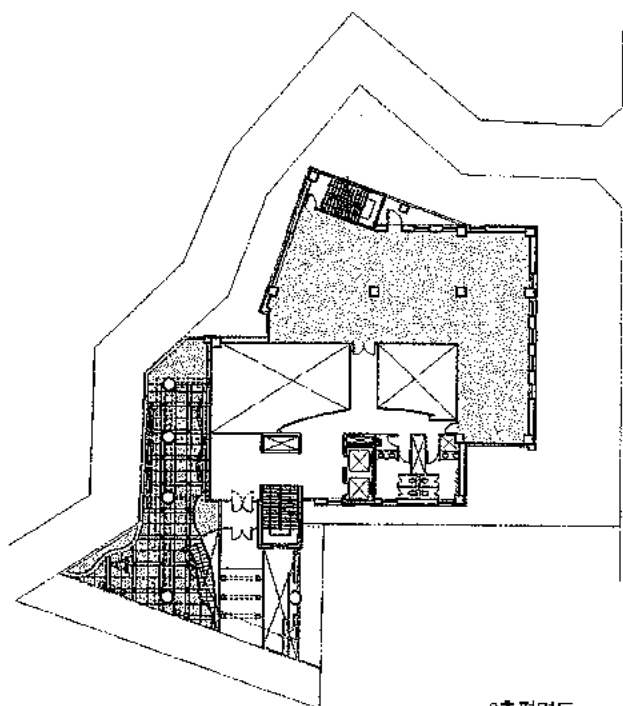
면성을 확보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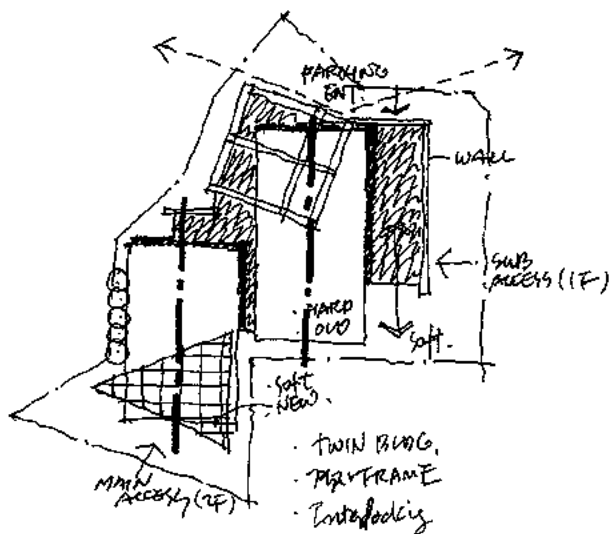
기본도형을 응용한 형태와 Semi Classic한 장식, 유리 및 석재의 대조를 통해 Fashion회사의 진취적이면서도 섬세한 면을 부각하면서, 보논이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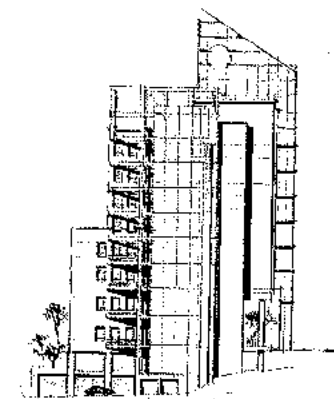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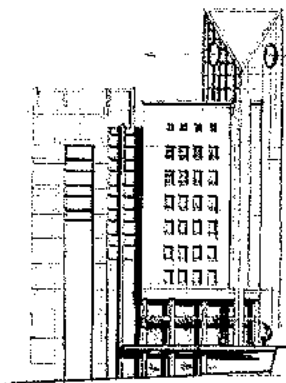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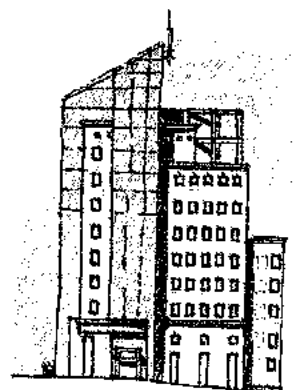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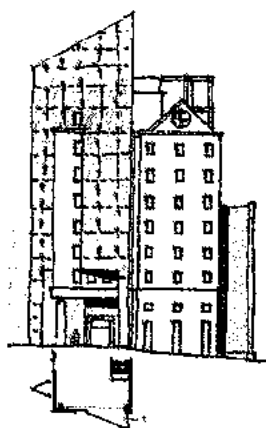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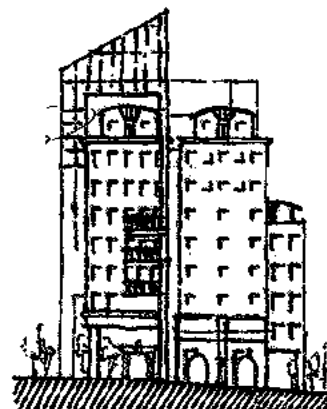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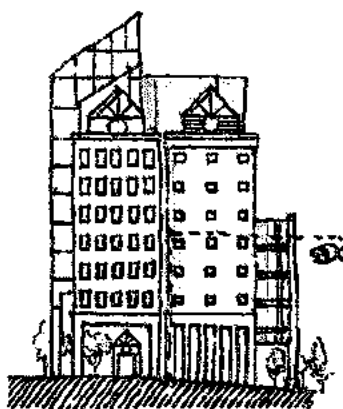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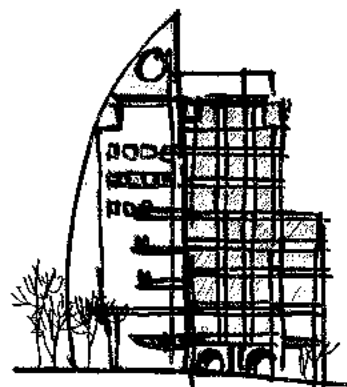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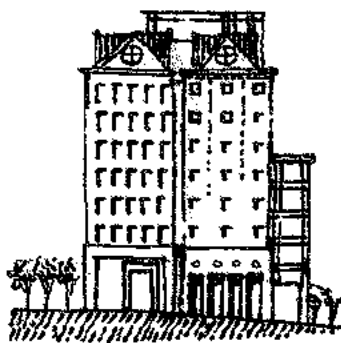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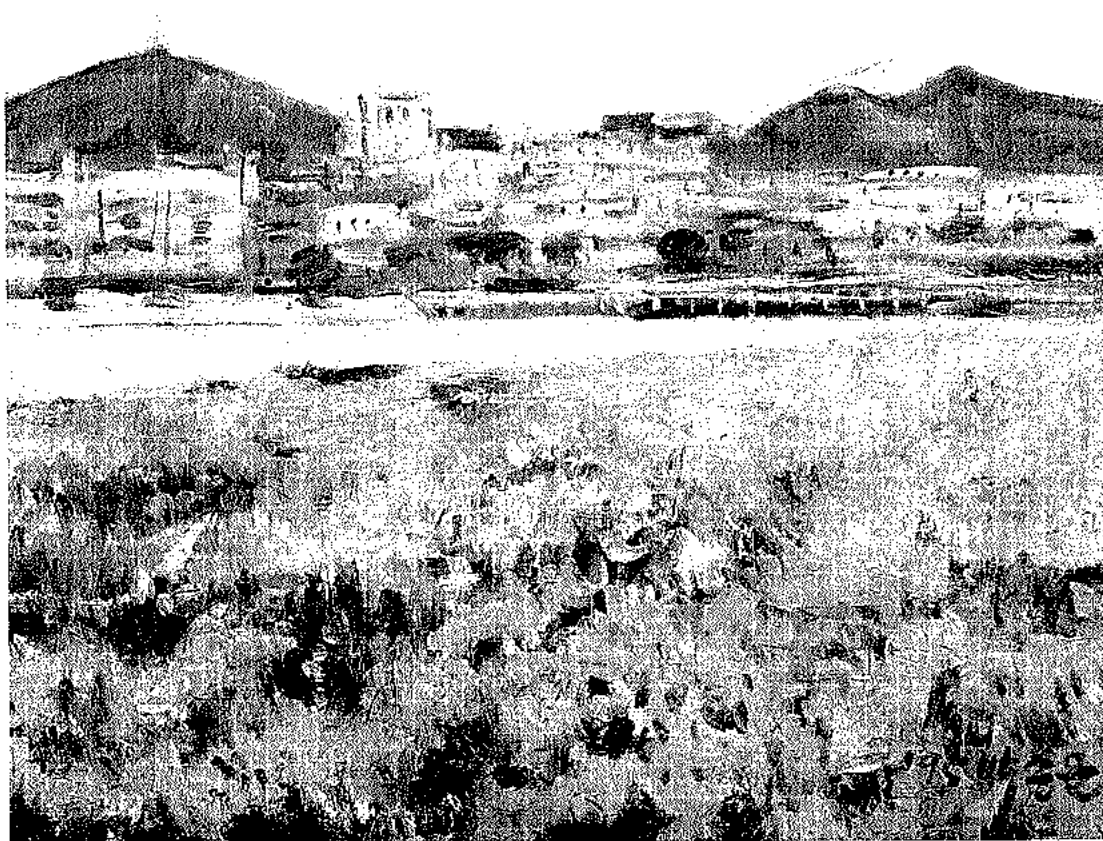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 개념도





한강변의 유채꽃(10F), 박송운 / 삼지건축사사무소

실체는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행동하는 순간 실체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연의 감동을 기록하는 것.
아무렴, 아름다운 한강을 좀 잘못 그렸어도 -



도시인 II

Urbanite II

金正寬 / 서원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Kwan

길어진 그림자
좁은 보도를 덮고
한 뼘의 햇살은
빌딩의 이마에 걸려있다.
가로수 잎사귀는
가을빛을 담아본지 오래
비온 뒤 하늘만 청명해
무심한 잿빛 도시는 우울하다
빌딩의 계곡을 부는 바람엔
벌써 겨울 냄새가 묻어나고
전물 아랫도리에 얹혀사는
좌판 아줌마 손끝이 시리다
서글픈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무표정한 타일벽에도 생기가 돌고
이제사 도시는 움직인다
햇살에도 나뭇잎에도
채색되지 않는 겨울색은
포장마차 백열등에 은밀하게 피어나고
오뎅국물 후후불며 어깨를 펴는 도시인
겨울은 여기에 머물고 있다.

한해를 보내며

Looking Back This Year

尹相國 / 관건축사사무소
by Yoon Sang - Kook

압울한 오늘에서 희망있는 내일의 좋은 건축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주·시공자·행정관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뛰어야 할 것이다. 저 아름다운 들녘풍경이 어둡고 슬펐던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여유를 갖게 했으면 한다. 또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있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한다.

“시는게 시지프스의 신화보다 더 재미없어”라고 아침부터 짜증내는 아내의 모습이 머리를 스쳐간다. 정신없이 계획설계에 몰두하던 일손을 멈추고 창너머 도봉산 가을풍경에 눈을 떠 본다.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인가! 어느 시인도 화가도 한절의 시구 한쪽에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각오와 다짐을 했던 것이 얼마전 같은데 벌써 열한장째 달력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마음 착잡하기만 하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일들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후회와 번민 또 새로운 각오로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감리현장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으면...”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문제 진정문제로 전화가 없었으면...

어제끝낸 계획설계가 간촉주 마음에 들어 계약체결이 꼭 되었으면...

이달 사무실 경비문제, 급료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오늘 하루도 별탈 없는 조용한 하루가 되었으면...”라고 면면하는 녀두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왜 이 부질없는 녀두리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하나,

건축사(건축가)들은 이 사회에 좋은 건축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창작 활동에 전념해야할 때에 왜 이런 문제점에서 헤어날 수 없을까.

현 사회 탓일까? 자신의 자질 문제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든 한해였던가.

대형사건,

충격적인 사건,

그런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우리들은 가슴조려야 했다.

우리의 가슴속은 시커멓게 멎들어 있을 것이다.
이 멎든 가슴속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축주의 싸고 빨리빨리의 잘못된 이해, 정확성 없고 대충에 젖어있는 시공자,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 등을 치유해야되지 않는가.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시골동네의 흙벽돌집이 생각난다.

장정 몇몇이 모여 진흙과 벚짳을 물에 개어 만든 진흙 반죽을 나무틀에 넣고 발로 다져서 흙벽돌 한장 한장을 만들던 그 모습.

그 흙벽돌로 지은집이 지금도 시골동네에 있다. 10도 정도 기울어져 몇군데 버팀목이 기대어 있지만 30년이 넘는 그 집을 사용하는데 불편과 불안감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지금처럼 공인된 제품 이상인 것을 재료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구조계산에 의해 설계된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그들은 구조가 어떻고 시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오직 그들은 장인정신에 바탕을 두고 흙벽돌 한장한장을 정성들여 만들고 쌓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들은 이 장인정신과 정성이 결여된 것 같다.

건축주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규모가 크고 작든간에 정성을 다했다면 오늘날같이 어둡고 씩씩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건물 하나하나를 설계, 감리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정성과 노력을 다할 때 의뢰인들(건축주)로부터 충분한 대가(설계비, 감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럴때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사가 될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작품들이 만약 십수년도 못가 사회적으로(재개발사업, 도로확장)등에 의해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인기요인이나 사용자의 여러가지 불만 등에 의해 현재 몇억 몇십억하는 건축물이 철거가 된다면 과소비중에 과소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몇십, 몇백, 몇천만원을 쓰면 과소비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거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는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 관련 공무원 그리고 사회전체가 본인들이 맡은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느날 설계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병실에서 실낱같은 생명을 부둥켜안기 위해서 애쓰는 어느 노인을 보고 과연 산다는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지려왔다.

언제 다할지 모르는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인.

정신없이 이러저리 뛰는 진료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조이는 주위의 가족들,

이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노인의 실낱같은 생명일 것이다.

이 생명과 같이 암울한 오늘에서 희망있는 내일의 좋은 건축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주·시공자·행정관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뛰어야 할 것이다.

저 아름다운 들녘풍경이 어둡고 슬펐던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 서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여유를 갖게 했으면 한다. 또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있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한다.

북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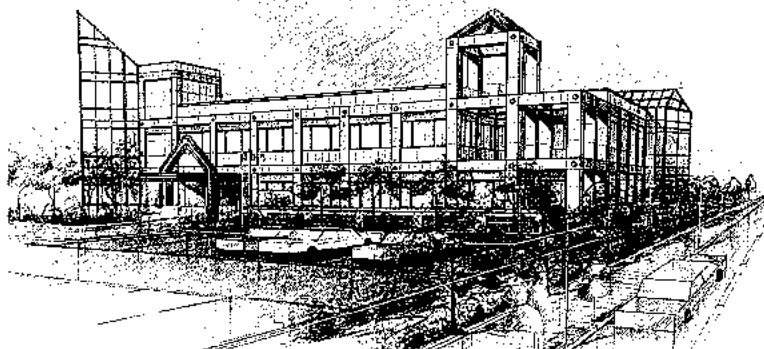
禹時庸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by WooH Si-Yong

지난 7월말이었다. 여름휴가전의 잔무를 정리하고 모든 직원과 휴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FAX가 한장 날아왔다.

8월16일까지의 기한으로 북부장예인 종합복지관의 지명 설계 경기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에서는 92년에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적 공모하여 21개 사무소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계획안은 좋으나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경험으로 설계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추첨을 통하여 설계자를 정하고 설계를 진행하여 우리 사무소는 서울 시립대 종합문화관을 설계한 바 있으며, 94년에는 다시 실적 공모하여 22개 사무소를 선정하여 지명 설계 경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도 20여일간으로 짧았지만 설계 경기기간이 휴가기간에 며칠 빠앗기게 되어 실제 계획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70여평, 예산은 29억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고, 공간에 근무하던 시절인 80년초 고덕에 양로원과 장애자 시설의 설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자료수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 설계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등록을 하고나니 다행히 설계 과장중 1명이 휴가를 얻기 하고 기초 자료 조사 및 계획 스터디를 휴가중에 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현장조사를 나섰다. 대지는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로 대지 안에는 뇌성마비종합복지관(3F), 서울맹인복지회관(3F), 서울상이군경복지관(2F), 북부청소년임대 APT(5F) 등이 들어서 있는 일단의 장애인 시설 단지로서 뇌성마비종합복지관과 서울상이군경복지관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 계획대지(64m×45m)로서 북측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대지와 인접해 있는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최근에 증축된 서부장예인복지관 등을 조사하여 설계지침상 주어진 요구사항들의 성격과 기능, 소요공간을 파



악하는 등 자료수집이 수일간 계속되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의 목적은 동북부지역 장애인의 자립기반확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사회교육, 장애예방 등 중요사업을 추진하며, 초기계획의 배경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정신 지체자를 위한 시설기능을 보강하면서 건립부지 인근의 상이군경복지관, 서울맹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과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지분석결과 북측이 근린공원으로 열린 조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이군경복지관과 뇌성마비복지관, 북부청소년임대주택으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을 계획되는 건물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어진 요구조건과 각 소요공간의 파악 등으로 계획의 넷가지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의 부여로 접근성 및 인지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올바른 이미지를 부여하기로 하고, 둘째로 기능별 동선의 분리 및 연결로 인한 공간 사용 극대화 및 시설이용의 편리화를 유도하며, 셋째로 모듈에 의한 계획으로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추후 기능별 재배치가 가능토록 하며, 넷째로 장래 증축을 위한 고려 등이었다.

계획의 방향으로는 장애인 공동체 공간으로 밝고 개방적인 내외부 공간을 확보하며, 힘찬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형태구성의 의미로 수평, 수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장애인 시설로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간 내외부 공간의 편리한 연결 동선을 제공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대지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신 지체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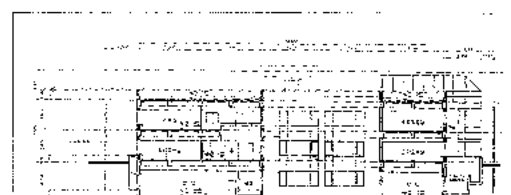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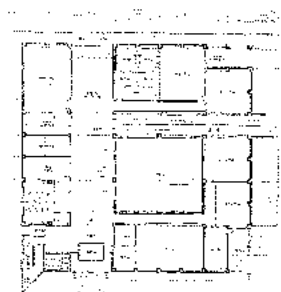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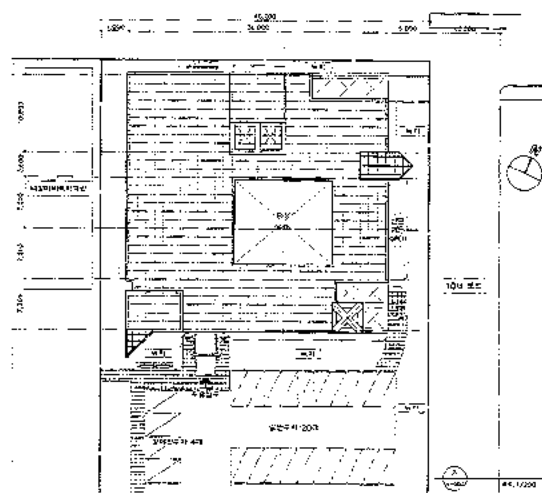
위한 시설로서 다방면의 정면성을 확보하며 주위 환경과 조화되면서 휴먼스케일의 건물이 되도록하며,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물로서 유지관리를 고려하는 건물로 계획하기로 하였다.

각 소요실의 배치는 다음과 같은 단면 개념하에 정리하기로 하였다. 1층은 이용도가 많은 상담 및 치료기능을 배치하고, 2층은 사무 및 사회교육기능을 배치하며, 지하층은 강당, 식당 등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대지분석 결과로 대지 전면의 Open Space를 주위 건물과 공유함에 의하여 건물이 정방형이 됨에 따라 중심공간의 자연채광이 어려움으로 건물 중앙에 중정을 두고 그 주위에 기능실을 배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가능토록하고, 1층의 내부 오픈 스페이스인 홀과 외부 오픈 스페이스인 중정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효과를 기대하고 아트리움 홀과 연관을 갖게하며 1층에서의 이용도를 높게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시 중정을 지하층에 두어 강당과 식당에서 휴게 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을 설치하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경사로는 장애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교육훈련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층에 부모대기실 휴게실을 북측에 두어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성 확보와 연결을 고려했다. 평면 모듈은 실제로 가구 및 집기의 배치가 가능하며 용도 변화에 순응이 가능한 7.2m×7.2m를 기준으로 하여 3.6m×7.2m, 7.2m×10.8m로 하였다.

외부형태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의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부여하며, 건물 외부에 강렬한 색의 부분적인 사용으로 시력이 약한 사람도 강한 느낌을 주어 건물의 인



지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수직, 수평선을 강조하여 건물이 간결한 느낌이 들며 형태를 분절시키고 계단 및 경사로의 천장, 모든 방향에서 Visual Target가 될 수 있는 헛기둥과 헛보에 의한 Pyramid 등으로 진입방향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계 경기에서 당선작으로 확정된 후 서울시종합건설본부 실무자, 서울시 사회과, 고덕 장애인복지관 기획실장 등 장애인 복지 관계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각 소요실의 용도를 확정하고 장애인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게 되었다. 설계과정중 무엇보다도 보람있었던 것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과 실무자들이 디자인에 관한한 설계자를 전적으로 지지해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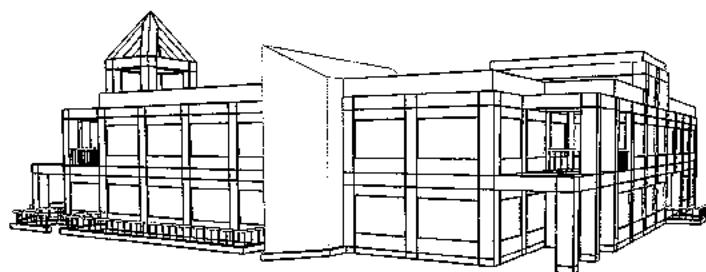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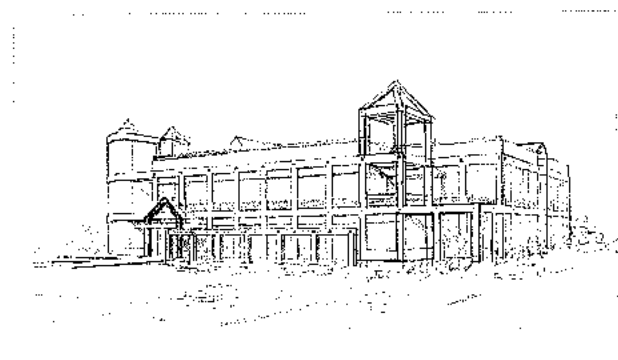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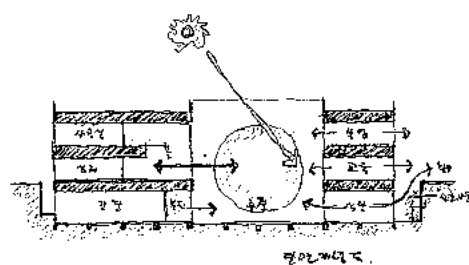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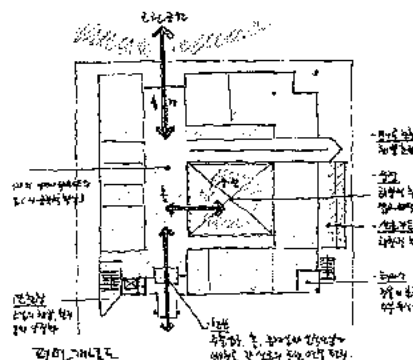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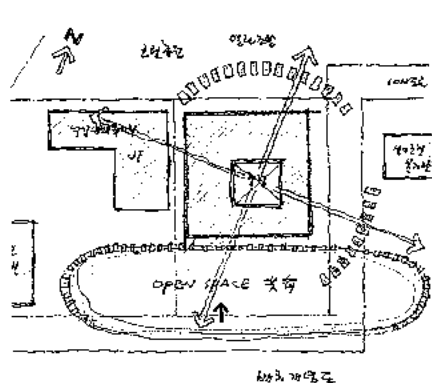
열심히 설계한 때문인지 예산의 상당액이 당초보다 초과되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서울시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린다. 앞으로 공사발주시 성실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여 장애인을 위한 마음으로 성실히 공사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쉬웠던 점은 내 자신이 장애인이 아님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며 최신 정보에 의하여 설계를 하였지만 과연 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건물을 설계하였나 하는 점이다. 장래 증축이 되었을 때의 입면 스테디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 및 이용의 편의성이 우선되어 다양한 내부공간을 계획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크나큰 짐을 더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복지가 미약한 환경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의 가족들도 많은 좌절과 고통, 그리고 불편함을 겪는 일은 흔한 일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라져야 할 커다란 편견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거나, 또 있다면 일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장애인 하면 우리들이 봉사대상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들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제 가족들의 짐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떳떳한 생활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꾸려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의 도움이 순간에는 좋을 지 모르지만 끝내는 자신의 존재와 자존심을 빼앗아가는, 굴레라는 것을 이제 장애인들도 알기 때문에 치료와 사회교육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들도 자립의식을 가져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도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정상이란 우리들의 집단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르고 떳떳하고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행동거지나 정신발육이 정상인과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은 정상인 처럼 행동하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는 습관에 젖어있는 비정상인을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어른들에게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행동거지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은 순진한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린이 보살피듯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다.

근대 정신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요, 인간 본위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세울 때에도 장애인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교통시설이나 각종 건축 등 공공시설의 설계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당연한 일을 먼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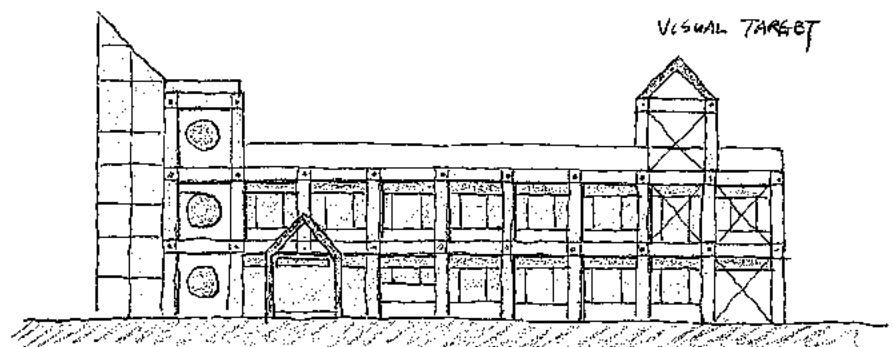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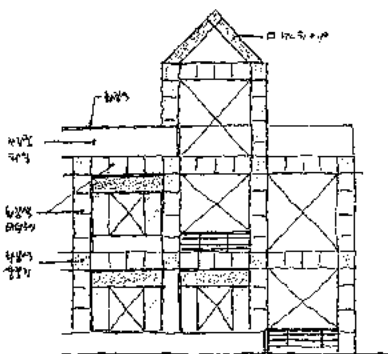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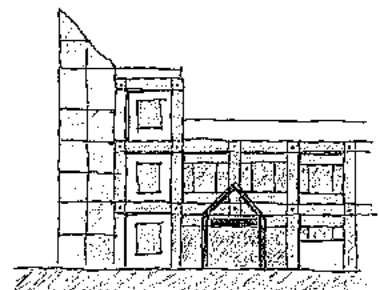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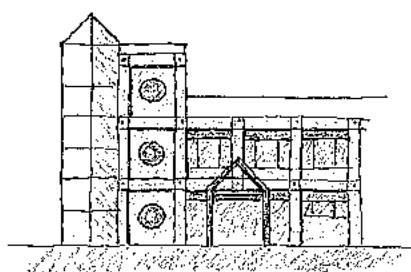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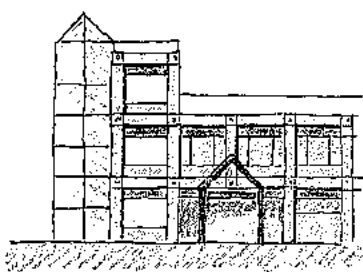
그러나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들이 정상인이라고 자처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일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집단 시설을 지어주고는 마치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무인도와 같은 집단 시설에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예를 들면 북부 장애인복지관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그들을 우리들의 이웃으로 끌어내어 같이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장애인의 행동거지를 흉내내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리들의 사회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자기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탓인가 보다.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해질수록 교통사고, 질병, 약물중독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병든 육체보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병든 마음이 더 큰 병”이라고 말한 테레사 수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기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성숙이 아직 덜 되었나보다.



197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이르는 공간시대는 공간그룹뿐 아니라 한국건축 전체의 '빛나는 한때 (Belle Epoque)'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김수근과 공간그룹이 추구한 것은 바로 건축을 중심으로 모든 예술학과를 결집시켜 한국학파(Ecole de Core)를 결성하려고 한 것이었다. 공간지를 매개로 하여 '한국성'을 규명해 낼 수 있는 거대한 인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양의 각 예술장르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왜곡된 현상들이 한국의 문화계에서 발생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각 예술장르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단절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각 예술장르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새로

운 서양문화를 흡수해서 소화하는데 그들의 모든 정열을 바쳐야만 했었고, 따라서 서양의 각 예술장르에서 보이는 공통된 시대정신이나 혹은 황적인 연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양의 근대건축을 미술의 큐비즘이나 구성주의 그리고 드 스틸운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을까? 김수근과 공간그룹이 시도한 것은 각 예술장르 사이에 놓여 있는 높은 벽들을 허물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정신들을 이끌어 내려한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새로운 서양 예술과 전통적인 예술 사이에 메꿀 수 없는 너무도 큰 간격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전통예술을 근근히 지켜온 사람들은 천한 쟁이로 내몰리고 서양에서 새로운 예술양식을 배워온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하면서 배타적인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제도에 서양예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공공연하게 혹은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하였다. 이런 전도 현상은 여러가지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전통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서양문화에 대한 공연한 피해의식과 시대에 뒤쳐져서 충분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는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보편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나마 그들이 지키고 있는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 움추러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곡된 현상은 전통예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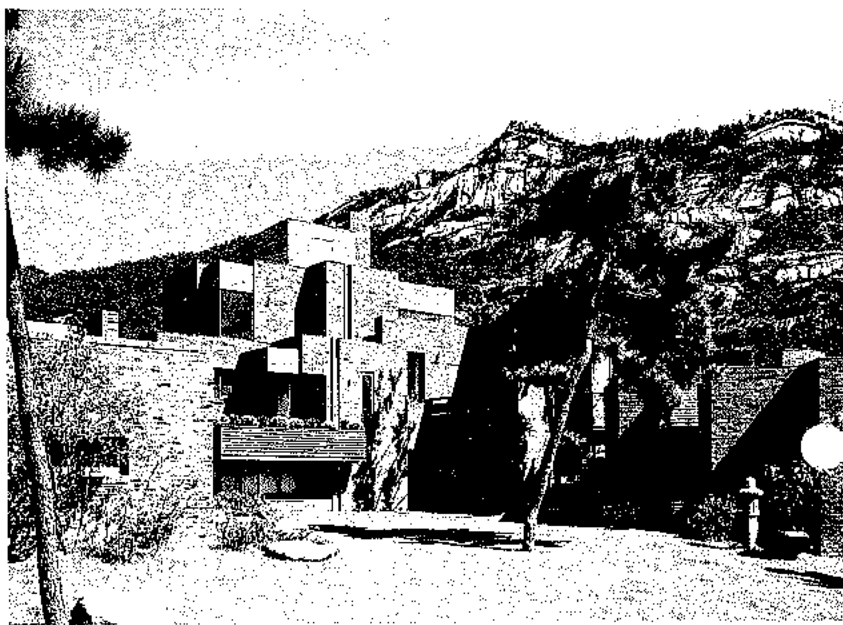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完)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공간시대, 그 빛나는 한 때

鄭麟夏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Jung In-Ha

1. 성장배경과 서울의 북촌
2. 일본에서의 교육
3. 1960년대의 김수근 건축
4. 공간시대, 그 빛나는 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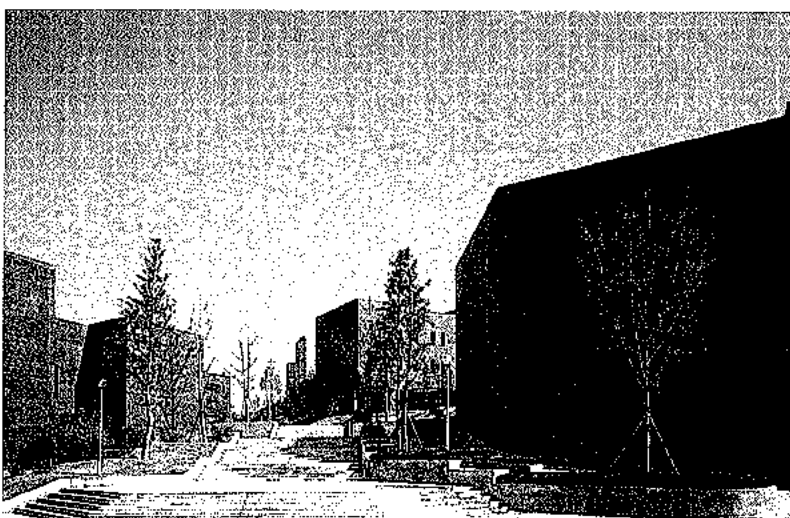
창암장

서양예술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여러 현상들을 자생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모든 예술적 창조를 일구어 내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새롭게 창조된 예술적 경향의 형식만을 빌려와서 이것을 다시 한국사회에 끼워 맞추는 악순환을 되풀이 시킨다. 김수근이 시도한 문화운동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에 필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서 외래문화를 토착화시키고 한국문화를 보편화 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당시 미약하나마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보편성을 가진 문화를 창조하고자 했던 70년대 한국의 전통문화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1972년 공간미술관과 1977년 공간소극장의 개관은 공간사육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성장케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공간사랑'은 우리나라에서 소극장운동을 최초로 불러 일으킨 곳으로, 계속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창고극장과 같은 소극장이 존재했었지만 정말 초기적인 형태였고, 본격적인 것은 공간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

연극 연출가인 오태석도 공간사랑에서 연출을 했고, 공옥진의 병신 춤과 사물놀이도 이 곳 무대에 처음 올려졌으며, 무용이 정식 극장이 아닌 소극장에서 가능하다는 사실도 여기서 처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²⁾

여기에 올려진 공연내용도 다양하여, 실험극이나 부조리극을 포함하여, 기악금산조나 판소리 공연과 같은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가곡이나 실내악, 그리고 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공연예술이 공간사랑에서 행해졌다. 공간사랑과 함께 공간화랑도 '공간국제관화대상전'을 유치, 꾸준히 가꾸어 오면서 그 국제적인 성가를 높이고, 의욕적인 실험적 작가들의 초대전을 마련, 낙후된 한국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공간 미술관의 전시 활동은 김수근의 1주기 추모전에 참석했던, 그를 아끼는 미술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³⁾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1990년에 타계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욱진도 공간미술관을 매우 좋아하여 그의 개인전을 이 곳에서 개최하였는데, 그것은 공간화랑의 내부공간이 오밀조밀해서 그의 화풍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⁴⁾

그래서 1977년 5월 30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김수근을 '맹활약 중인 서울의 로렌조(The Swinging Lorenzo of Seoul)'이라는 타이틀로, 그의 활약상을 소개하였다. 르네상스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로렌조 메디치처럼, 김수근을 한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문화 엔터테이너로 인정한 것이다.

1970년대에 김수근이 시도했던 문화적 노력들은 1980년대에 '공간 아카데미'의 결성으로 그 결실을 맺어나간다. 공릉에 새로운 사육을 지으면서, 종합예술 아카데미로서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그의 뒤를 이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런 시도는 라이트가 세운 '탈리에센'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건축이 규격화 된 학교교육으로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라이트는 탈리에센에 지은 자신의 스튜디오에다 숙식시설과 설계실을 설치하고 농사까지 직접 지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위대한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Ralf Waldo Emerson)이 제안한 브룩 팜(Brook Farm)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모든 문화의 진정한 근원인 일상적 삶에 건축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인 활동이 결합되도록 하여 사람들이 영감과 활력을 가지도록 하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1984년에 공통신사육이 일부 완성되면서 모든 사무실 기능이 이곳으로 이전한다. 서울 외곽지인 파주군에 위치한 한적한 언덕배기에 새로운 유형의 문화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실험은 곧 이은 김수근의 죽음으로 구체적인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그와 함께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이후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흩어졌고, 건축사무소는 다시 원서동사육으로 옮겨졌다. 김수근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고 싶어하는 정신적, 지적 권위였고, 따라서 그가 죽은 후 계속 모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김수근과 같이 작업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자신들의 '빛나는 한 때'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박봉과 잦은 철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앞날에 대한 비전과

1) 박용규와의 인터뷰

2) 박용규와의 인터뷰

3) 여기에는 남관, 박고석, 김영주, 손동진, 이매원, 정창섭, 권옥연, 윤형근, 하인두, 박서보, 이우환, 황용업, 하종현, 오태학, 윤명노, 김구길, 김비함, 박근자, 이만, 서승원, 김진석, 한운성, 황창배, 이경석, 문신, 강태성, 최종태, 이승택, 최만린, 최기원, 정관도, 엄태정, 강은업, 심문섭, 김영원, 최인수, 전국광, 금누리, 신옥주가 참여했다.

4) 김수근 못지않게 화가 장욱진도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죽은 예술가이다. 특히 그는 작은 것을 매우 사랑했는데, 그래서 화폭도 작은 것을 선호했고,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공간의식도 한정된 공간이었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철저히 자신의 일에 몰두케 한 것이었다. 김수근 사후 그의 이런 노력이 한국의 문화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건축분야의 경우 공간을 거쳐간 건축가들이 한국의 건축계에서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70년대 공간 건축사 무실은 재능있는 많은 디자이너들로 붐볐다. 김수근이 지닌 강한 카리스마와 특유의 친화력, 그리고 그가 제시한 원대한 포부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 나가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축을 키워나갔고, 또한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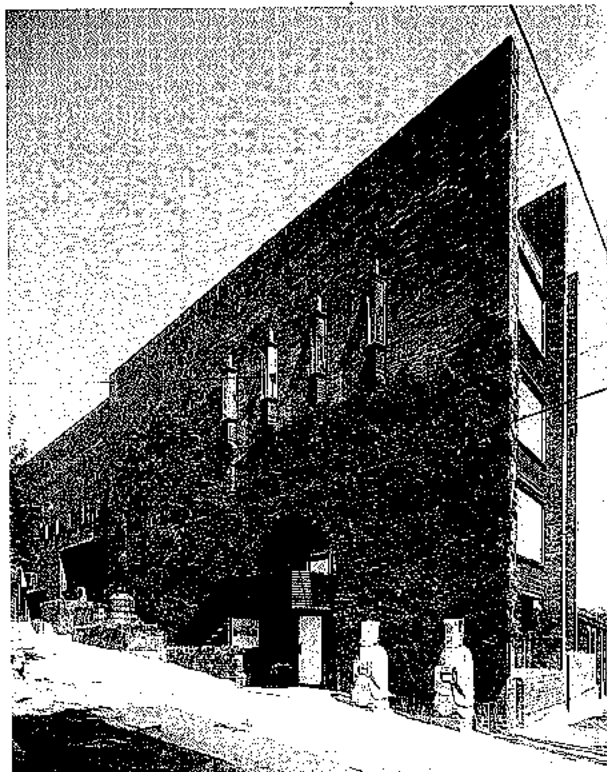
건축언어의 탐구

1972년 공간사옥의 건립과 함께 김수근 건축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던 다양한 공간, 조형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건물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들은 다양한 건축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을 위한 경기장 시설, 대규모 대학 캠퍼스 시설, 공연시설, 종교건축, 고층 오피스 등은 1960년대에는 없었던 건축주제들로서, 김수근은 이들을 설계하면서 자신의 건축언어들을 확립해 나간다. 1970년대 김수근 건축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한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몇 개의 작품들이 연이어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처음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비슷한 기능의 건물을 지으려는 클라이언트가 처음의 작품을 참고하여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 1970년 초와 중반에는 덕성여대, 서울대 예술관, 서울교대와 같은 대학 캠퍼스 건물이 지어졌고, 1970년대 말과 1980년 초에는 세개의 종교건축(양덕성당, 경동교회, 불광동성당)과 두개의 박물관 건축(청주 박물관과 진주박물관)이 이루어졌다. 또한 1970년 중반 이후 서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을 위한 경기장 시설(주경기장, 체조체육관, 자전거경기장)과 배치계획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는 김수근의 태도도 독특하였다. 그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의뢰되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적 프로토타입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에 필요한 기능과 형태, 건축사적인 맥락에 대한 모든 분석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가능성을 따져 본다음 그것을 자기언어화 하기 위해 많은 실험과 시도를 거듭했다. 그래

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 취급할 경우, 설계기간이 매우 길어졌고, 그 언어적인 탐험은 전혀 예측되지 않는 결과로 끝맺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독특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낸 후에 비슷한 프로그램의 건물이 수주되면, 기존의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새로운 대지에 어느정도 변형시키는 선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래서 김수근건축은 각 주제별로 사용하는 건축언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수근은 당시 한국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자기언어를 탐구한 드문 건축가로 보여지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한국현대 건축의 중요한 성과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면 각 건축주제에 대한 몇가지 특징적인 건축어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간사옥과 문예회관 전시장, 그리고 샘터사옥과 같은 저층의 건물에서는 한국전통의 공간개념들이 건물내로 내화(內化)되어 특유한 공간적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이들의 내부공간을 작은 단위공간들로 분할하되, 그들 각각은 독특한 대개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한국공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연속성과 장소성을 부여하려한 것이다. 건물조형에 있어서도 벽들을 이용한 풍부한 장식적 효과를 대학 캠퍼스 시설에서는 공유되는 중정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자연스럽게 형성시켜서 한국의 전통적인 외부공간을 재현하는 접근방법을 택하였고, 종교건물의 경우 종교적인 상징성을 위해서 비정형으로 잘게 분절된 매스들이 구심적인 형태를 띠도록 하여 강한 조형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빛에 대한 탐구가 행해진다. 청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지붕형태를 현대화시키는 작업과 군집미를 통해서 한국적인 조형성을 탐구한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동선체계가 깊이있게 연구되었다. 경기장시설에서는 가

장 최근의 구조공법을 도입하여, 그것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이 건축형태와 공간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태도를 취한다. 창암장과 한계령 휴게소에서는 수평적인 목재 테라스를 길게 뻗아 내어서 자연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그가 60년대부터 추구해왔던 주된 건축개념들, 건축과 대지 그리고 건축과 환경과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건축의 특징들, 휴먼스케일, 공간의 시퀀스, 해프닝이 있는 공간 등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축언어들은 김수근의 건축세계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건축문화



공간사옥 외관

를 더욱 풍부하게끔 하였다.

궁극공간에서 네가티비즘으로

1970년대는 김수근의 건축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시기로 보여진다. 그의 건축관이 최초로 제시된 해는 1971년이다. 이 해에 김수근은 범태평양상 수상연설을 통해서 제 3공간과 궁극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연설은 주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김수근의 건축관이 폭넓게 깔려 있어서 주목된다. 그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문화가 획일적이고도 기능적인 문화패턴에 의해서 그리고 테크놀러지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인간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제시한다. 그는 한국인들의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여유'에 주목한다. 즉, "한국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완전성이라든가 비합리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초월하려고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완전한 것을 이상으로 삼고 투쟁적인 삶을 영위하지는 않았다"⁵⁾는 것이다. 오히려 "달관하려는 의지와 초월하려는 정신 속에서 여유와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깊이를 가질 수 있었다"⁶⁾고 보았다. 김수근이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는 해프닝이 있는 공간이란 바로 치밀한 계획아래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도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었다. 여기에는 해프닝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일과 놀이가 예술적인 차원에서 합일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건축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태도가 아닌, 인본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려는 김수근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들은 요즘 서



공간사옥 내부

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탈 근대의 개념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오늘날 많은 문명이론가들은 근대와 탈 근대의 시대를 구분하면서, 실증적이고 기술중심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보편적인 모더니즘은 단순적 진보, 절대적 진리, 이상적 사회질서에 대한 합리적 계획, 지식과 생산의 표준화에 대한 믿음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것은 보편적 인류역사라는 환상을 합리화하고 그 근거를 제공하여 폭력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탈 근대의 문화는 모더니티의 조작적 이성(manipulative reason)과 총체성의 물신에서 깨어나서 느긋한 다원주의로, 즉 스스로를 총체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포기한 이질적 생활양식과 언어게임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여유와 해프닝을 꼬집어 내어 이것을 건축화시키려던 김수근의 시도는 바로 이성 중심의 모더니티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역으로 그의 생각이 넘나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건축관은 후에 건축에 있어서의 네가티비즘으로 발전한다. 네가티비즘이란 말은 1980년대에 언급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개념은 이미 1960년대부터 김수근의 머릿속에 싹트고 있었다. 그는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한국의 건축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파악했다. 초기 작품에서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가 매우 깊이있게 추구된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는 1970년대에 이르러 건축과 환경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환경문제가 그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던 것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직접 도시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매우 현실적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문명에 대한 강한 거부 현상이 당시 서구에서 발생했고, 이것이 환경문제로 연결되면서 김수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사상적인 흐름은 결국 네가티비즘이라는 매우 철학적인 태도로 귀착된다. 김수근은 네가티비즘(negativism)과 포지티비즘(positivism)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기반하고 있는 정신문명을 총체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고, 포지티브한 서구의 문화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현대의 문제들을 네가티브한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 그는 이런 사상의 근거로 우리의 전통사상 중에 있는 유가사상, 도가사상, 불가사상을 들고 있다.⁸⁾

먼저 유가사상에서는 적극적인 선행을 주장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그와같은 선행이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자기의 행위가 남에게 어떤 악을 자행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에는 분명 네가티비즘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가사상은 서양의

5) 김수근, 범태평양 건축상 수상연설

6) 앞의 책

7)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화, 박영민 옮김, 한울, 26쪽

8) 김수근, 건축에 있어서의 네가티비즘, UIA 동경회의 기초논문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최대행복의 추구를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수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불행이나 고통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라는 부정적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윤리사상이다. 도가 사상에서도 인간 행동의 역기능적인 면을 강조해서 가능한 한 인간의 외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무위'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네가티비즘의 표현이라고 보았다.⁹⁾

상당히 깊이 있고 지적인 체계를 갖춘 건축관의 전개인데, 이것이 발표되기까지는 철학을 전공한 소홍렬교수의 조언이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다.¹⁰⁾

이 두 사람은 많은 여행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주로 생각을 제시하는 쪽은 김수근 이었고, 소홍렬은 여기에 체계와 논리를 세워 나갔다. 즉, 김수근의 아이디어에 소홍렬이 논리적인 틀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철학에 바탕을 둔 건축관을 통해, 김수근은 1970년대 초에 발표한 공간개념을 더욱 확장시킨다. 그는 네가티비즘이 시사하는 공간개념들을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첫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한계성에 관한 것으로, 둘째는 공간의 이용으로, 그리고 셋째는 공간설계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과 양식 또는 형태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¹¹⁾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개념을 전개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필요이상의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적정공간', 태양의 열과 빛, 맑은 공기, 물, 그

리고 흙과 같은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자연공간',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꼭같이 그 설계의 결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안과 밖이 이용될 수 있는 '통합공간', 기능적으로 애매하면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 기분 또는 사고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분공간', 구조적인 가변성과 유연성이 있는 '자궁공간'이 바로 그것이다.¹²⁾

김수근은 이러한 그의 건축사상을 1980년대에 이르러 공간·시간·인간의 소위 공·시·인 삼간론(三間論)에 요약시킨다. 이것은 그의 건축 사상을 집약한 것으로, 그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주장해온 전통을 통한 새로운 건축 이념형의 창조, 건축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인본주의 사상,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기 위해 창조공간의 형성이라는¹³⁾ 그의 원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그가 지향한 건축의 이념형이 한국의 전통이라는 과거적 요소와 새로운 이념형의 창조라는 미래적 요소사이에 위치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이(間)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 도식적으로 분석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조영무의 경우 이것을 시간, 공간, 인간의 세개의 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시간 축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와 근대, 그리고 현대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공간의 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는 생활공간, 근대는 생산공간, 그리고 현대의 시기는 창조의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축이 만나는 곳에 바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해외개발공사 사옥

9)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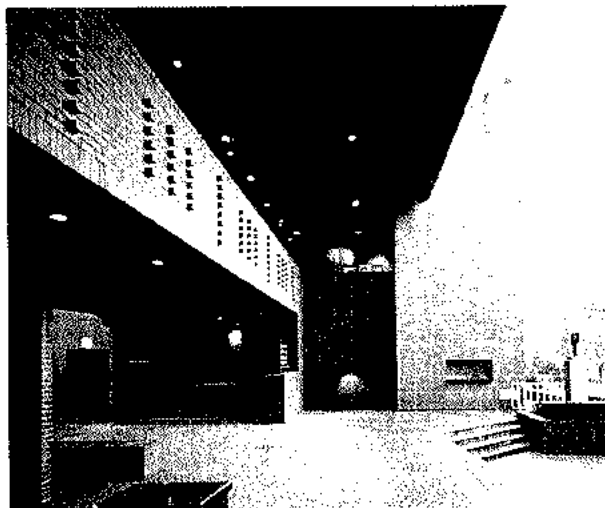
10) 소홍렬에 의하면, 김수근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건축가에게 우리 특유의 공간의식이나 조형의식을 설명해 주는 미학이 없다는 것을 개탄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작품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배경이며, 미학적인 바탕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소홍렬에게 철학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홍렬은 그의 생각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명료화하거나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소홍렬, 김수근 건축과 철학의 만남, 공간사 자료실.

11) 김수근, 앞의 책

12) 김수근, 앞의 책

13) 조영무, '김수근의 작품과 사상체계', 현대건축의 기술들, 현대미술관, 301쪽

14) 앞의 책



문예회관 전시장

위에서 언급한 건축개념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구 문화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의 새로운 방향을 기초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개념들이 근대건축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의 메카니즘과 현대기계문명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그의 건축을 모두 일반해로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는 생각도 든다. 1970년대 그의 건축에서 보이는 재료와 테크닉의 문제와 그에 따른 건축표현의 한계 때문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그의 건축철학 때문에 발생된다. 건축을 환경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조형의지의 표출과 기술적인 실험이 자제되고, 모든 건축물들이 인간 위주로 지어지지만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문명과 조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건축사를 조망할 경우, 건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변화의 모티프는 바로 현대기술문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환경의 존중과 지역성으로의 복귀가 당시 세계 건축계에 하나의 큰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서구에서는 새로이 나타난 기술적인 상징성을 새로운 건축어휘로 바꾸려는 실험이 계속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다시 한번 건축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60년대 말에 두드러지게 활동한 아키그램과 같은 영국의 전위건축가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건축의 주요 경향이 될 하이테크 건축을 예고하고 있었다. 물론 1970년대 초에 김수근은 미래도시를 예견하면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소비사회와 매스미디어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던 시대상황을, 한국이라는 문화적 후진지역에서 예민하게 감지하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담아 낼 수 없었다. 1970년대에 그는 한국건축의 현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집착을 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세계건축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김수근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세워질 몇 개의 고층건물과 전시관에서는 벽돌과 같은 재료가 아니라 알루미늄 패널과 같은 사용하고, 스페이스 프레임이나 유리벽력과 같이 기계성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삽입하기도 한

다. 그렇지만 그런 요소들에서 높은 창의력을 더이상 발견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도의 기술문명에 의해 소외된 인간과 건축에 그 본원적인 가치를 부여하려 한 점이다. 인간이 분명 건물의 주체임을 일깨우고, 건물은 인간을 위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은 인간에게 소중한 실체로 다가온다. 자연은 건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담는 그릇이고, 따라서 자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건축은 결코 인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는 생각을 김수근은 가진 듯하다. 서구의 기술문명이 주는 빛과 그림자 중에서 김수근은 그림자쪽을 택하여서 여기에 동양사상의 온기를 불어 넣는다. 따라서 기술문명이 주는 밝음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의 건축철학은 더욱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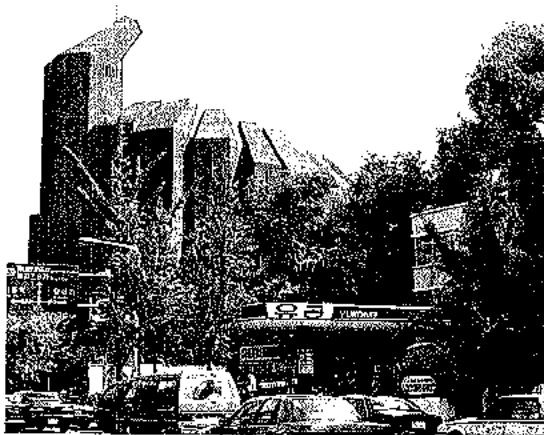
조형의 군집미

1970년대 김수근 건축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건축조형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김수근 자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스케치를 통해 그가 가졌던 조형의식을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

15) 이 법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체로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매스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덩어리 자체의 형상과 의미가 전체로서 일시에 파악,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매스에서 의 디테일이나 섬세함 그리고 스케일의 감각을 미쳐 느껴보지 못하도록 나의 강력함이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작품에서는 덩어리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더 분할되어 가고 작은 것들의 구성이 중요하게 보인다. 전체가 하나인 노출 콘크리트의 표현수법에서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창세양은 1970년 이후에 나타나는 조형양식을 자갈리즘이라 부르면서, 이런 변화를 "하나의 디자인 팩터로서 유니트와 메스의 문제를 휴먼스케일한 공간으로 자기화 시킨" 것으로 보았다. 송효상은 김수근의 건축조형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1969년에 지어진 해피홀이라고 보고 그 이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그때까지의 정형적이고 도형적인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 삼각형 등에서 탈피해가면서 비대칭적, 비정형적인 건축으로 옮겨간다." 이런 언급들에서 우리는 한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 이후에 김수근의 조형의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산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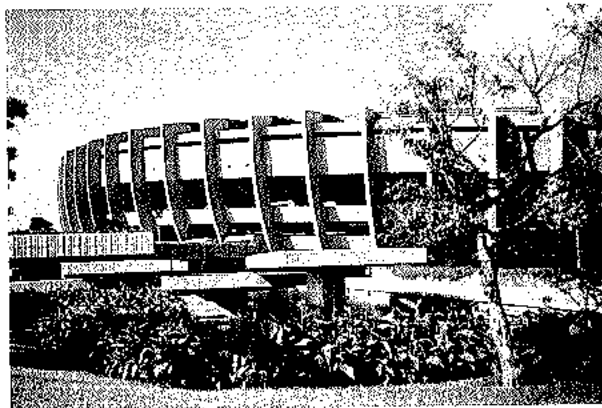
경동교회

으로 김수근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형언어의 전개과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의 조형세계를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의 작품경향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하는 경향이다.¹⁵⁾

김수근과 협동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런 구분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은 김수근의 전반적인 건축활동을 살펴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의 조형의식만을 놓고 볼 경우,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볼 때, 김수근의 조형의식은 이런 단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심상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후 획득하게 될 공간의식이나 건축개념, 건축적 테크닉, 재료 등이 여기에 가미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수근의 성장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내면에는 이미 유년시절부터 건축조형을 인식하는 해마가 존재해 있었고, 그 후의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형미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작은 덩어리를 쌓아서 이것을 건축조형에 있어서 군집미로 발전시키는 것이 풍피두 현상설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와 유사한 조형적 이미지를 가지는 건물은 그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서동 구씨주택이나, 남산펜션, 그리고 해피 홀이다. 좀더 멀리 거슬러 올라 가자면, 1959년에 수도극장 개조를 위해서 그가 한 스케치에서도 수직적인 띠를 이용하여, 매스를 분할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나타난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불룸이나 덩어리를 선화(線化)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노출 콘크리트를 가지고 완결된 조형성을 추구했다고 보는 작품들, 자유센터, 부여박물관, 그리고 KIST 아파트 초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큰 매스를 수직적으로 분할하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1970년 이후에 설계된 작품을 몇개의 작품들, 즉 잠실대운동장, 치안본부청사, 법원청사, 광명 시청사와 같은 건물에도 완결된 조형을 강조하는 태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그가 그린 드로잉집을 보면, 후기에 군집적인 조형으로 이어진 프로젝트에도 완결된 형

태를 가진 스케치들이 초기에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두가지의 조형원리, 즉 단일한 오브제를 수직이나 수평으로 구분하는 것과 단위 매스들을 자유롭게 부가시키는 방법이 시기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 이 두가지 방법이 김수근의 내면에 공존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많은 건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수근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조형에 대한 본질적인 아키타입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연마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형의지를 연마하면서, 각 건물주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건축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과, 새로운 건축주체의 연구, 동시대 건축가들의 영향, 등이 결들여졌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60년대 말과 70년초의 건축적 변화는 그가 갖고 있던 조형의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라고는 보기 힘들고,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형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기 위해 접근방법을 달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기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60년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완결된 형태를 선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더욱 많이 의존한 반면, 70년대에는 작은 덩어리들을 반복적으로 중첩시키는 방법을 더 즐겨 사용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김수근의 스케치가 있다. 1966년 여수 수족관 계획을 위해서 한 것으로, 김수근이 갖고 있었던 조형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세가지 계열의 그림들이 이콘처럼 제시된다. 첫번째 계열의 그림들은(A계열) 작은 단위 매스들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풍피두센터에서 시도한, 매스 덩어리를 부가시키는 방법이 이 때 이미 스케치로 제시된 것이다. 두번째 계열의 그림들은(P계열) 위커힐 힐탐바와 같이 역동적인 단일 오브제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열에 속하는 건물들은 기하학적이면서 완결된 조형으로 특징지워진다. 건물의 조형성을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대담한 구조공법을 채택하고, 재료도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조형원리는 위커힐 힐탐바와 제일당 프로젝트



올림픽 주경기장



청주박물관

트에 이어, 김포공항 계획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잠실 대운동장의 형태를 많은 부분 예고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대부분 경기장 시설은 이 계열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마지막 계열의 그림들은(M계열) 자유센터나 공릉사옥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완결적인 형태를 가진 수평적인 요소를 수직적인 요소가 분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의 그림들은, 추측하건데, 그의 전체 건축을 지배하는 원형요소였다고 생각한다. 즉 그의 의식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 심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다양한 스케치들을 자세히 분류해 보면 대부분 이들 세가지 그룹으로 귀착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수근의 조형의식의 원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된다. 새로운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시됨에 따라, 그리고 건물이 위치하게 될 대지에 따라 건물의 조형이 새로운 모습으로 해석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들은 특히 A계열에 속하는 건물들에서 잘 나타난다. 다른 계열의 조형형식들은 비교적 실현된 프로젝트가 적고, 단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이 계열에 속하는 건물들은 시기적으로 연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지어져서 그 다양한 변화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열에 속하는 건물들은 김수근 자신도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실제 그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건물들은 시기에 따라 세가지 단계로 변화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해피홀, 원서동 구씨주택, KIST 아파트와 같이 1960년대 말의 작품으로 매스 보다는 선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표출된 시기이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건물들에는 분절된 매스들이 질감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군집시킨 건축조형이 김수근 건축의 주요 특징으로 등장하게 된다. 풍파두센터 현상안, 공간사옥, 서울대학교 예술관, 문예회관, 샘터사옥, 주인도 한국대사관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에 나타난 경향으로 단순히 작은 매스들을 군집해 놓은 것을 뛰어 넘어, 건축조형을 통해 강한 건축적 상징성과 전통적 이미지들을 부여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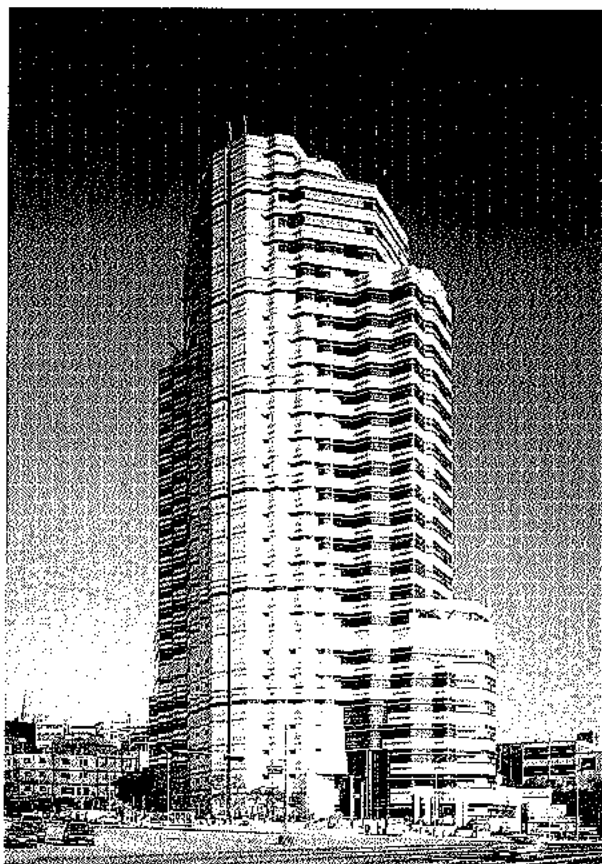
이다. 세개의 종교 프로젝트(마산성당, 경동교회, 불광동성당)와 두개의 박물관(청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 프로젝트가 좋은 예이다. 종교건축의 경우 절대적인 신을 향하는 인간의 열망을, 수직으로 불규칙하게 상승하는 매스덩어리들로 표현하고 있고, 박물관건물에서는 한옥의 중첩된 지붕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벽돌의 미학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김수근 건축을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축재료의 변화이다. 1960년대 주로 사용한 재료가 노출 콘크리트였다면 1970년대 그의 건축은 벽돌로 특징지워진다. 물론 60년대에 김수근이 설계한 주거건축의 경우 벽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어진 결과물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공건물에 벽돌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KIST본관에 붉은 벽돌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이래 김수근은 조적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실험했다. 벽돌로 지어진 최초의 건물들은 전통 흑전돌조로 지어졌다. 공간사옥의 구관과 창암장, 그리고 세이장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그는 노출 콘크리트 대신 처음으로 벽돌을 전체적인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선택은 당시 한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던 김수근에게 한 전돌업자가 건물공사에 사용될 전돌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김수근의 건축철학을 고려해 볼 때, 벽돌을 건축외장재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일면 단순한 건물시공 이상의 철학적인 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진주 박물관



백산빌딩

1970년대 루시앙 크롤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행한 것처럼 건축에 유기적이고 자발적인 무언가를 부여하려고 한 점이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목재의 자연미와 같이 벽돌을 통해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김수근이 70년대 이후 그가 행한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거듭 확인된다. 김수근은 벽돌의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전(塹)이라고 불리는 한국전통 벽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는 벽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벽돌이 지니고 있는 따뜻함을 사랑한다. 나는 또한 벽돌이 지니고 있는 조소성(彫塑性)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벽돌을 한장한장 손으로 쌓아야만 하고, 이것은 나에게 무한히 인간화되는 과정을 상징화하고 있다.”¹⁶⁾ 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함께 “벽돌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벽돌의 거친 텍스처가 한국인의 기호에 맞아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같은 지적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조형물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심리구조를 정확하게 내다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저층으로 이어지는 많은 건물들에서 벽돌이 외장재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반증한다.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하다보면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특징짓는 건축재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파리의 경우 회색빛의 사암과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외벽마감이 건축외장의 주류를 이룬다. 베엔나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옅은 미색마감의 스테코로 되어 있다. 스트라스부르그의 경우 이곳에서 생산되는 암갈색의 돌이 알자스 지방 특유의 목조구조에 결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붉은 벽돌을 선호하는 의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설득력있게 돌리는 것은 김영기가 지적한 바와같이, 조형의식과 풍토, 그중에서도 지형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형적 요소에 대한 지각경험이 우리들의 조형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¹⁷⁾

실제로 겨울에 황량한 들판을 나가보면, 정돈되지 않은 거친 텍스처의 자연환경이 주된 정감으로 다가온다. 누렇게 드러난 전답, 거칠은 구릉에 듬성듬성 심겨져 있는 잡목들, 얇은 토양층 아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암설(바위 부스러기). 바로 이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한

국건축의 외벽처리를 매우 투박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반민가의 토벽이나 상류주택의 잘 쌓여진 당장 모두를 관통하는 정감은 작위성이 어느정도 배제된 바로 이 투박함이다. 김수근은 벽돌조 건물을 통해 바로 이런 느낌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보여진다. 일본처럼 뻣뻣하게 날이 선 긴장된 조형의식이 아닌 무언가 구수하면서도 소박한 정감으로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조적조의 경우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횡력에 약하고 높이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조체가 조적조이기 때문에 공간사육의 구관의 실내 공간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지붕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두꺼운 벽돌벽이 일정한 그리드 위에 놓여짐에 따라, 공간의 개방과 개폐에 따른 컨트라스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체를 만든후 벽돌치장쌓기를 한 신관 건물보다 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적조의 또다른 결점은 가소성이 다른 재료를 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결함으로 인해, 70년대 중반이후부터 김수근이 지은 조적조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에 치장벽돌 쌓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우리는 근대건축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유산인, 구조의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이 내재됨을 알 수 있다. 김수근의 건축은 이런 근대건축의 이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피부’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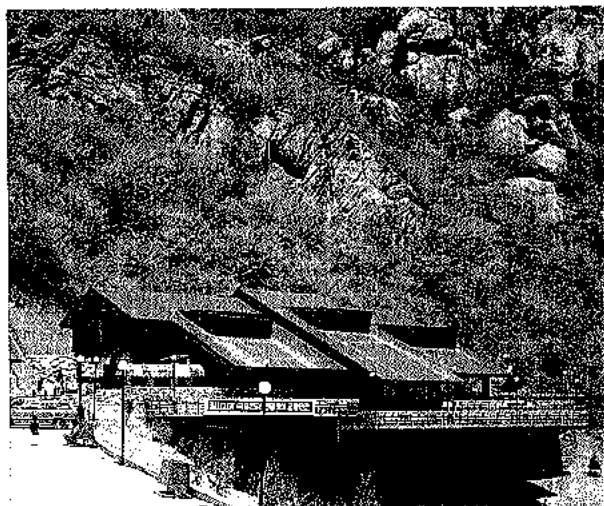
즉 구조체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간이 건물에서 느끼는 부분은 바로 건물의 피부, 즉 겉대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 그가 사용하게 될 다른 재료들, 가령 타일이나 알루미늄 패널의 경우들도 콘크리트 구조와는 상관없이 그냥 위에다가 덧씌워서 사용된다.

김수근이 벽돌을 통해서 이룩해 냈던 다양한 의장효과와 디테일은 높은 미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처음 건물을 사용한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디테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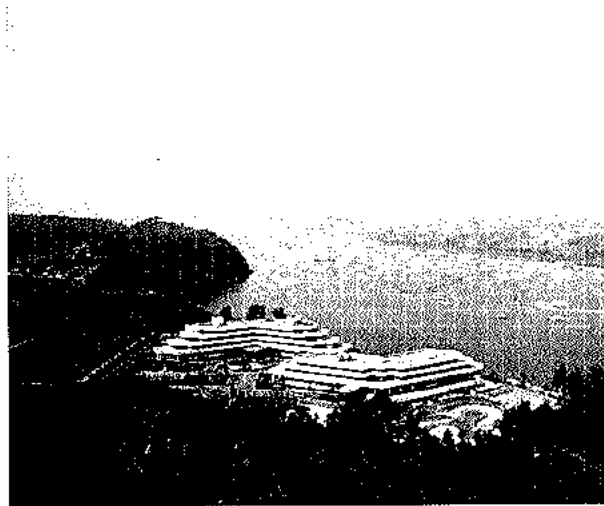
16) SD저, '김수근과 벽돌' 1983년 12월

17)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년

18) 오기수와의 인터뷰



한계령 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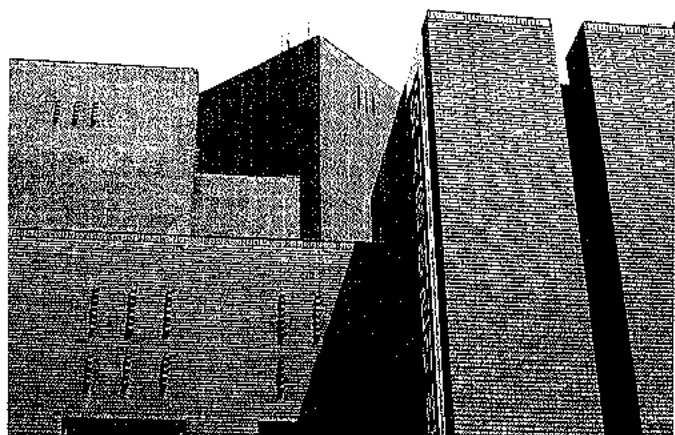


양평 수련원

전돌과 노란색 목재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건물에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벽돌과 비슷한 넓이의 목재널들을 수평으로 이어 두 재료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어 1970년도 중반에 세워진 문예회관 전시장과 공연장건물에서도 다양한 벽돌 디테일들이 선보이고 있다. 평평한 벽면에 벽돌을 반장 크기로 불규칙하게 돌출시켜서 벽면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 햇볕에 드러나 있는 이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김창렬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을 영상시킨다. 벽돌들이 중력에 저항하면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의 창들은 벽돌이 건축재료로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벽돌 접이 여러번 반복되면서 내부로 후퇴되어서 창외 입면효과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과 창사이에 벽돌을 일렬로 돌구어서 사용한 샘터사옥의 경우 벽돌이 외벽의 장식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한다. 이후 김수근은 벽돌의 거친 텍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졌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너무 반듯하게 쌓이지 않도록 시공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 때문에 벽돌조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치장쌓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너무 정교하고 깔끔하게 쌓아서 타일인지 벽돌인지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김수근은 벽돌이 갖는 재료미는 강한 텍스처의 표현에 있다고 보고, 마산 양덕성당이나 경동교회에서는 벽돌을 반으로 잘라, 잘라진 면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쌓도록하여 벽돌이 갖는 텍스처

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옥 현상설계안에서는 벽돌을 프리패브로 만들어서 외벽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를 통해 벽돌이 고층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벽돌이 주는 강한 텍스처와 함께 담쟁이 넝쿨도 김수근 건축의 주요 외장요소로 사용된다. 이것은 70년대에 지은 김수근의 벽돌 건축에서 자주 나타난다. 공간사옥과 샘터사옥의 경우 외벽이 이 담쟁이 넝쿨에 덮혀서 외부모습이 아예 드러나지 않을 정도이다. 김수근은 자신의 건축주에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담쟁이 넝쿨을 심을 것을 주장하였다. 왜 자신의 건물에 이것을 주장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굳이 그 외식의 기원을 밝히자면 이 역시 유년시절의 경험과 결부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과거 그가 살았던 원서동 135-2의 주택을 보면 여기의 벽돌담에도 담쟁이 넝쿨이 심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유년시기부터, 담쟁이 넝쿨이 있는 벽돌집이 하나의 좋은 건축이라는 의식을 가진 듯하다. 그리고 이런 외벽의 처리는 그의 자연주의적 건축관과도 일치하였다. 담쟁이 넝쿨이 잎이 피고 짐에 따라 건물벽이 계절의 변화를 감지케 하였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환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담쟁이 넝쿨이 벽돌벽과 어울리면서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기능적인 장점도 이런 의식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문예회관 공연장



문예회관 벽면 디테일

(사진/심훈보)

■ 폐허로 남겨진 도시들

우리, 여기에 궁궐을 세운다
우리, 여기에 성벽을 쌓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자가 새겨진 기념비를
우리가 설치한 대좌의
다듬어진 돌에 새겨놓은 것을.

—도론모드 지방에서 발굴된 고대 투르크시대 비석에서—

일반적으로 몽골에는 도시다운 도시(都市)가 없었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도시건설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과거 역사시대를 전후로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광활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민족³⁾들에 의한 국가가 세워졌다가 소멸되어 갔음을 역사는 전하고 있다.

그 중 몽골지역 내에서 정착생활에 의한 성곽도시의 유구 중 대표적인 것은 흉노 시대의 위궤왕국의 수도였던 하라발가스⁴⁾를 꼽을 수 있다.

하라발가스의 배치형태는 거의 정방형으

몽골건축을 찾아서(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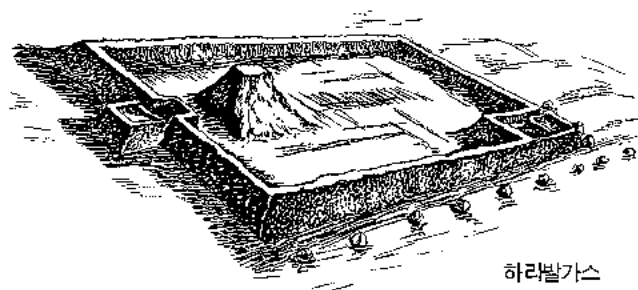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대초원의 고뇌 - 도시와 건축의 이마골로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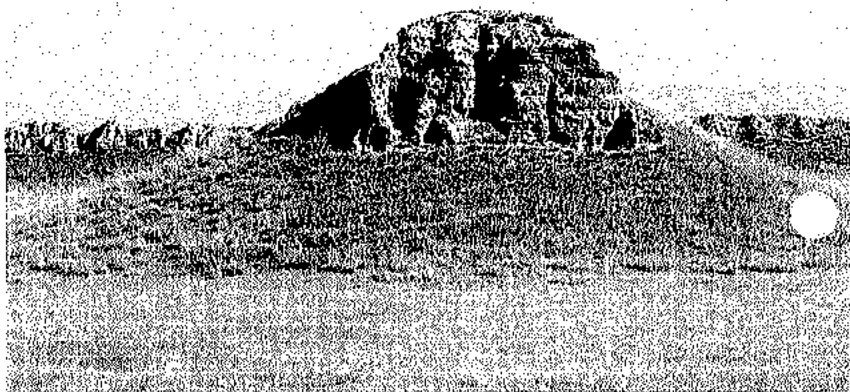
朴舒弘 / (주)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1. 대초원의 비밀, 몽골리아
2. 대초원의 실존, 몽골 전통 주거의 허와 실
3. 대초원의 성채, 라마교와 건축
4. 대초원의 고뇌, 도시와 건축의 이마골로기

- 1) Imagology, Image와 Ideology의 합성어
- 2) 고고학자 펠레의 고고학 발굴보고서 1975. 약 200개의 촌락이나 성곽도시가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 3) 동굴족을 필두로 선비, 투르크, 흉노, 거란, 위궤국 등이 대표적이다.
- 4) 올드 바퀴크라고도 하며 A. D. 800년경 약 100년간 위궤제국의 수도였다. 후에 예니세이 키르키스의 침략에 의해 멸망함.



하라발가스



하라발가스 유적지

로 몇 개의 성문과 탑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며 왕궁은 운하로 에워싸여서 요새화되어 방어적인 기능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흙벽돌과 점토로 축조되었고 매우 두껍지만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 5단마다 나무를 보강재로 사용했다. 또한 사원의 흔적과 함께 스투파의 흔적이 운하 양쪽에 남아있어서 초기 불교(佛敎)의 이 지역 전래를 짐작케 한다. 현존하는 거란제국의 유구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는 편으로 타원 우란 발가스는 다시치란군에 위치하는데 정방형의 평면을 가로 세로 2개의 대로(大路)가 교차하면서 도시를 네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또다른 성곽도시 텔센헬렘은 타원 우란 발가스 부근에 위치하는데 관개용 수로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건축물의 흔적은 볼 수 없다. 그것은 그곳의 주민들이 정착농경생활을 하면서 겔(몽골 전통주거)에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하르 부한 발가스는 0.5km 사방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은 점토로 되어 있고 네개의 성문이 있다. 특이한 점은 성벽 바깥쪽에 주거지가 밀집되어서 동서로 나 있는 큰 길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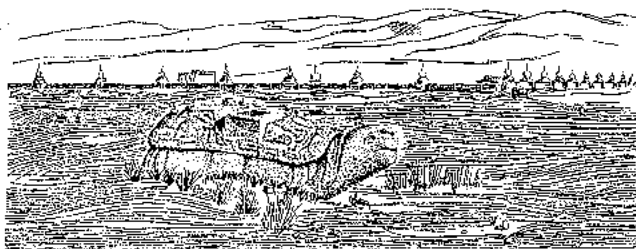
동부현의 초이발산시 서쪽에는 발스호트라고 부르는 세개의 도시의 유구가 남아 있다. 이 도시들은 거란시대에 건설되었지만 몽골제국 시대에도 도시로서의 기능은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 큰 도시는 가로×세로, 1600m×1800m에 성벽은 높이가 4m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 도시에는 네개의 큰 규모의 사원이 있었는데 중앙에 위치한 사원에는 제단이 구성되었

던 흔적이 보이고 다른 사원에는 불상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다. 또 사원 부근의 스불간과 함께 발굴된 탑과 불상 등의 유구는 이곳이 거란제국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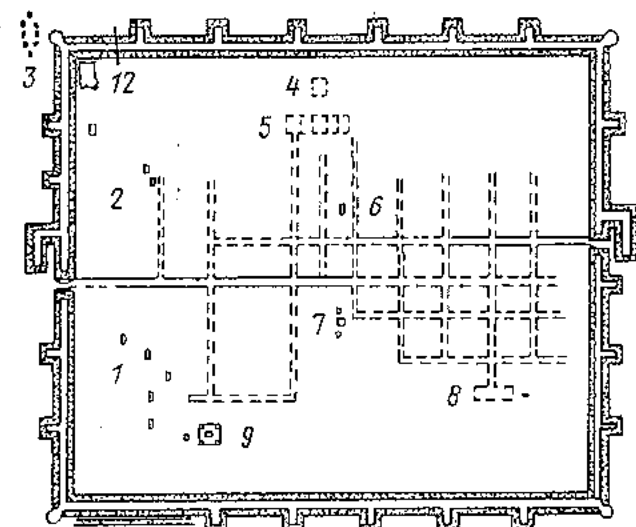
당시 거란제국 시대의 도시는 몇 가지 점에서 이후의 몽골제국 시기의 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모든 도시들은 성곽도시로서의 구성을 갖고 있었고 방어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어떤 곳은 군사적으로 또 어떤 곳은 경제적 중심지로서 집단으로 형성되었는데 경제도시의 경우에는 장인, 상인, 농경민과 승려들이 거주했다. 둘째로 정방형의 도시 구조를 이루고 사방에 성문이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시 전체는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길에 의해 보통 네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부 구역에는 건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주민의 거의가 겔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성밖에서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몽골제국은 제국형성 초기부터 특수한 형태의 도시가 이루어졌다. 군사의 주둔을 위한 도시와 식민도시가 바로 그것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몽골군에 각종 도구나 수공예품을 공급하여야만 하였다. 알타이지역에 위치하는 친가이 발가스라고 불리는 도시는 1215년에 10,000여명의 포로들에 의해 건설된 대표적인 식민도시로 꼽히고 있다.

몽골제국 이전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가 특징이었으나 몽골시대가 되면서는 성벽과 내성등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세계제국 완성 후의 자신감이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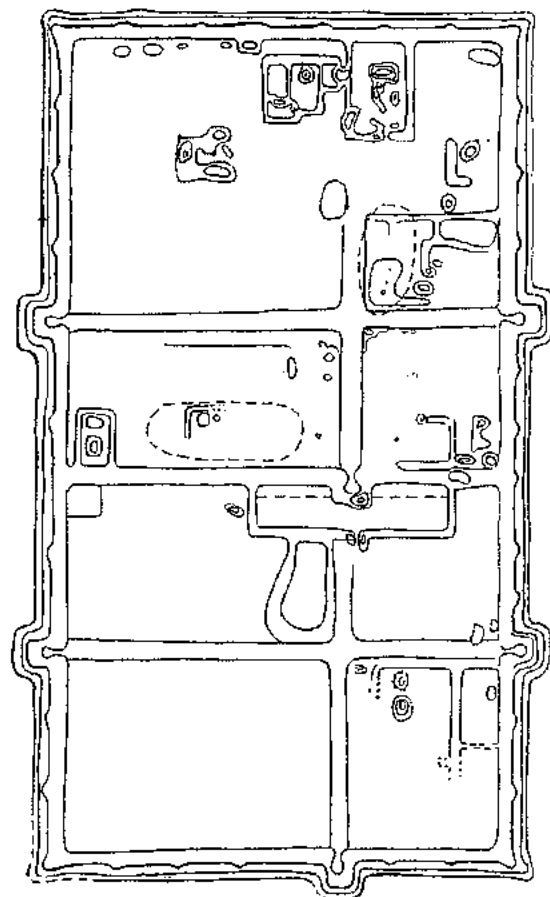
하르하린



11

10

하르 허트, 발굴 배치도



하르 보호, 발굴 배치도

지는 몰라도 각종 방어용 시설물은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도시 중앙부에는 귀족들의 주거가, 외곽에는 일반 서민들의 주거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면서 카라코름 시대를 맞게 된다.

몽골제국에 의한 카라코름⁵⁾의 건설은 고대 봉건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의해 도시계획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면서 도시와 건축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파멸적인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1220년에 칭기스칸은 제국의 수도로 카라코름의 건설을 명하였는데 많은 목수들이 인근 국가에서 차출되었고 제국의 진보적인 정치, 사회와 경제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도시의 면모는 1228~1241년 사이의 우게데이 칸 통치시대에 이루어졌다. 그 후 쿠빌라이 칸에 의해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北京)으로 옮기기까지 카라코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도시는 4대문이 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동물과 농업생산물이 4대문에서 거래되었다. 수도 카라코름에는 두개의 시(市) 구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슬람교도들의 지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상인들의 거주지역이었다. 그 외에 세계 각 민족고유의 집단 종교지역⁶⁾이 12개소나 있었다. 그중 유명한 것의 하나가 1256년에 세워진 불교

사원이었는데 높이는 9m에 넓이는 22m×22m나 되는 거대한 건물로서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기록되고 있다.

148년간 존속된 카라코름은 32년간 제국의 수도로 사용되었는데 중국의 침략과 몽골 영주들간의 내전으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200년 후에는 완전한 폐허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1948-1949년 사이에 있었던 발굴조사에 의하면 두번의 대화재가 도시 전체를 괴멸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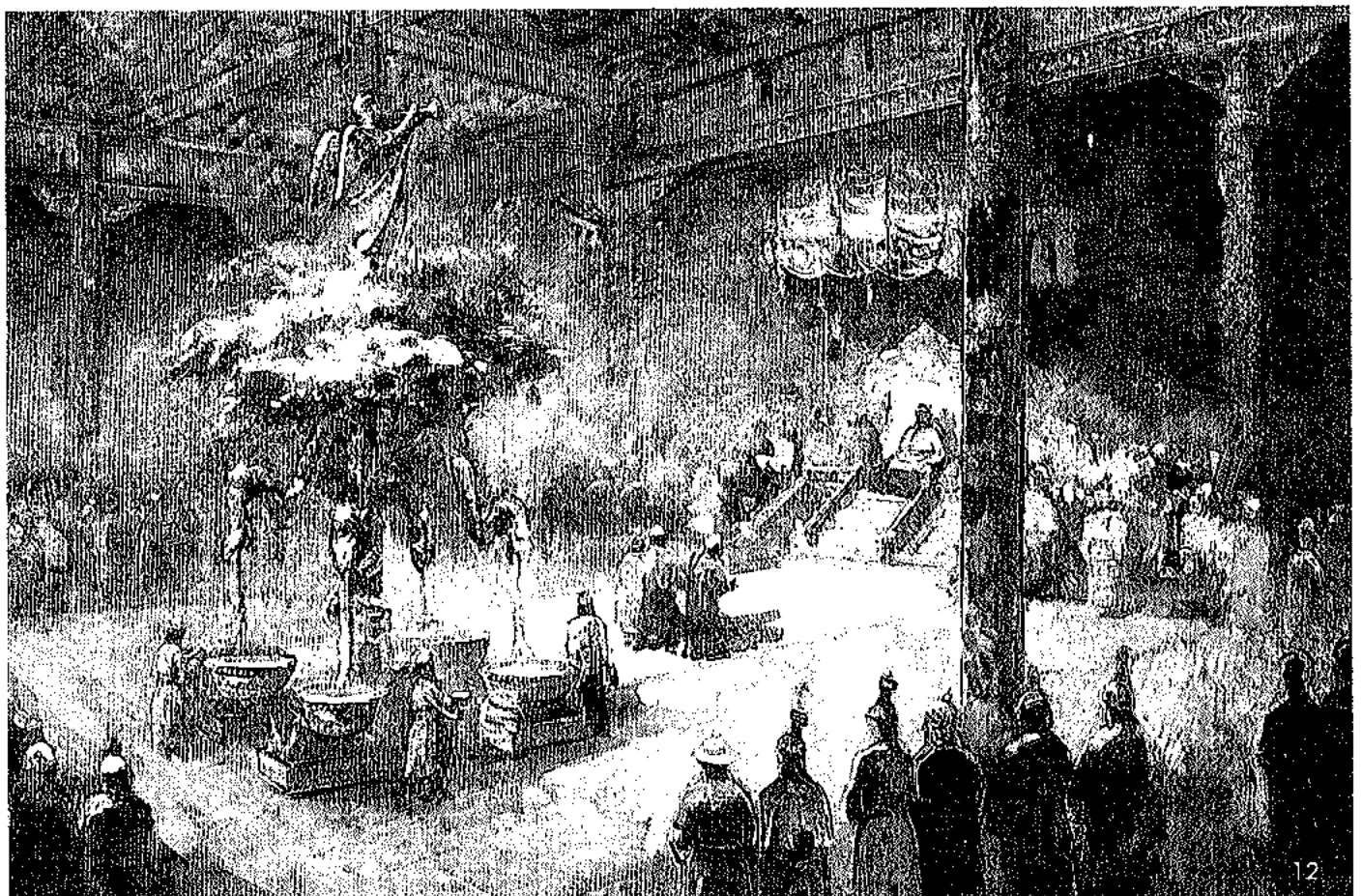
수도로서의 상징은 1238년에 건설된 우게데이 칸의 궁전으로 투멘 암가란(위대한 평안의 궁)이라 불리웠다. 그것은 도시 남서부에 위치하였고 평면은 80m×80m 크기의 정방형에 2층 건축물로서 64개의 기둥이 있는 넓은 홀을 갖고 있었다. 당시 17년간 몽골에 거주했던 베네치아인 마르코 폴로의 기록과 묘사는 호화롭고 웅대했던 당시의 궁(宮)의 모습을 추측케 한다.

“넓은 홀의 바닥에는 녹유가 칠해진 도판이 깔려 있고, 벽은 벽화로 장식되어서 현란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지붕은 녹색과 붉은 색 기와로 덮여서 경이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카라코름의 찬란한 건축과 문화유산은 문헌과 고고학 발굴의 성과에서 만이 엿볼 수 있는 바 오늘날에는 지면

5) 오랫동안 카라코름의 위치는 발견되지 않다가 1889년 소련학자인 N. m. 야드린체프가 엘레니 조 부근에서 대규모 도시의 폐허 흔적을 발견했고 1년 후 V. V 라드로프는 이 사원의 벽 안에서 당시 중앙 부서에서 하달된 문서와 석판을 발견해서 카라코름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우게데이 칸은 계절에 따라 주거를 가졌는데(4개의 궁) 카라코름은 봄 궁전에 해당된다.

6) 정복지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복지의 각종 종교를 인정하였고 종교인들은 조세가 면제되었다.



카라코름 궁궐 내부와 온색 나무 4개의 뱀 형상의 관에서는 술·우유·꿀·맥주 4종류의 음료가 흘러내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地面)보다 높게 놓여 있는 주춧돌만이 남아서 과거의 영광을 짐작케 할 뿐이다.

대체로 옛날의 몽골 도시나 취락지는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파멸적인 전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외에 사용된 건축재료가 점토제품으로서 기후의 변화에 약했었기 때문이며 오늘날에는 단지 석재(石材)의 기초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 전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도성터에 대한 연구 및 발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흔적을 형성하지 않은 유목국가이며 광대한 영토내에 건축 및 도시 건설의 경험이 없었다는 일부의 견해를 뒤집어엎기에 충분한 근거로서 제공이 되고 있다.

■ 도시의 건설과 건축

몽골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간직한채 20C 초반까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문화적으로는 티베트에 의지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폐쇄되고 가장 뒤떨어진 국가중 하나로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1921년의 인민혁명의 승리는 정치·사회·경제 등 각분야에서 몽골인의 삶과 문화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였고, 국가적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소련은 믿을 수 있는 지지자임과 동시에 몽골의 유

일한 후원자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민정부가 주도하게 되는 이전까지의 봉건주의의 잔재를 일소하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물질적·기술적인 모든 지원이 소련의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은 극히 당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의 재구축이라는 명제에서 도시의 건설과 건축은 혁명정부의 목표설정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시적 지표였다.

그렇지만 현대도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한 최소한의 물질적 바탕조차 없는 수준에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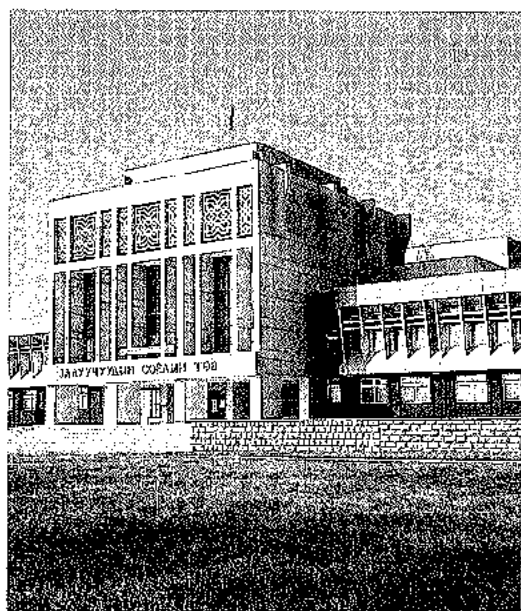
오늘날 몽골제일의 도시면서 수도이기도 한 울란바토르는 1639년의 건설시작과 함께 초대 북트칸의 본영(本營)을 의미하는 울가라는 명칭을 갖게되는데 후에 잠시 클렌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지만 1921년 혁명이전까지는 몽골최대의 불교중심지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1924년에 울가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울란바토르(Ulanbaator)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현대적인 도시의 건설과 함께 1920년대에 유럽무역회사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한 몇개의 건축물은⁷⁾ 과거의 몽골인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세워졌다.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과 헝가리 등지의 건축

7) 후에 이 건물들은 극장, 백화점, 공연장 등으로 사용됨.



투멘 암가란 궁궐



청소년 회관

사들이 설계한 전화국, 극장 등의 공공건축물은 새로운 건축의 시작이라는 의미와 함께 몽골현대건축(現代建築)의 효시로서 자리잡게 된다. 헝가리 건축가 조셉 게레트(Joseph Gelet)에 의해 설계된 국립극장은 기둥없는 전통적 몽골 겔 형태의 원형 돔(Dome)을 채택하였다. 몽골 최초의 극장 건축물로서 800명을 수용하였고 두개층의 관람석을 갖는 현대적 건물이었다.

1920년대 말까지 세워진 일련의 건축물들—기획국, 자동차 도로 건설국, 정부은행, 제2청사, 방송국 등—에서는 극히 유럽적인 건축의 형식이 차용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유럽 스타일의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들이—외무부, 국립대학, 정부청사 등—소련 건축사들에 의해 설계되면서 코린트나 이오니아식 주두의 채용과, 기둥과 벽기둥의 사용에서 오는 엄격한 비례에 의한 건축형태는 이전까지의 겔과 종교적 건축물로 특징지워졌던 도시의 모습을 전혀 새롭게 바꾸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엔지니어링과 기술습득을 위해 소련에 보내졌던 일단의 몽골인들에 의한 최초의 결실이 1953년 발표된 수도 울란바토르의 20년 장기 개발 계획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련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준비된 청사진에는 대지의 동결, 기후의 변동, 강한 봄바람, 많은 일조량, 강과 산의 근접성 등 자연적이며 기후적인 요소들의 기준설정과 함께 중앙집중식 난방과 물 처리 시스템, 하수처리 시스템, 전기, 전화 등의 공급체계 등 도시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다루어졌다. 도시의 건설과 함께 건축의 발전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전문적 교육을

받은 몽골 건축사들에 의한 작품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본격화하게 된다.

무역연합건물, 드라마극장에 이어 1961년의 울란바토르 호텔을 필두로 레닌박물관, 통계센터빌딩, 승리영화관, 보이스카웃 마을 등 많은 건축물들이 몽골건축사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그렇지만 질적인 모색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약간의 다양성이 가미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련이나 동구의 영향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면서 1980년대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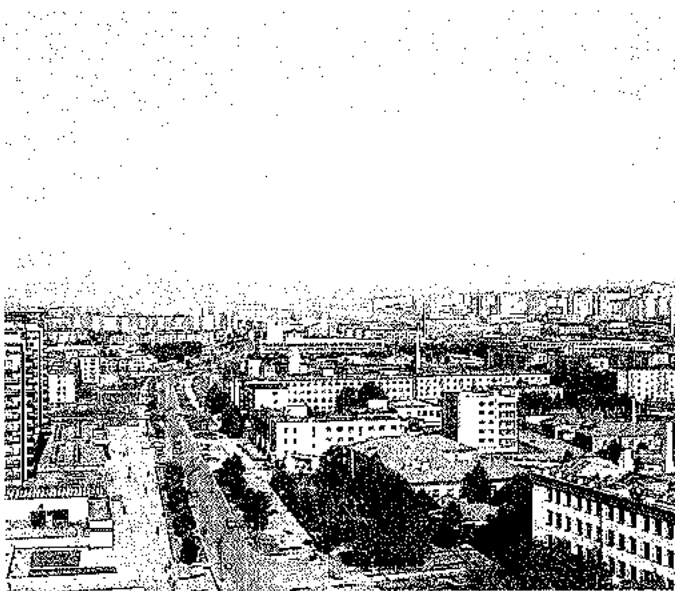
하지만 세계사의 격동기로 표현되는 이 시기에 몽골도 예외일 수는 없는 환경을 맞으면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여건의 변화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변환은, 이제 이곳 건축사들로 하여금 몽골 전통에 기초하여 현대의 몽골건축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생각보다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학생 작품들보다 순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건축사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전시되어 있는 몽골대학 건축과 4학년 학생들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데 막 한국 현대건축 세미나를 끝마친 이정근 위원이 들어서다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지는데요. 이걸 충격입니다」



시가지 전경



레닌 박물관



중앙박물관

「최근의 경향인 것 같은데 텍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과거 동구권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혁명 후의 사회주의 국가의 건축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니 말입니다。」

「몽골 현대건축의 역사가 길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소련의 영향이 진부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아까 위층에서 보았던 구성주의적 작품경향을 소련의 영향으로 치부해서 간단히 보아넘겼는데,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두어 시간쯤 전 이곳 설계사무소 몇 군대를 방문하고 그들의 작품 및 작업과정을 안내받으며 추스렸던 신선한 충격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남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카메라를 분주히 움직이던 이근창 위원의 외침이 전시실의 공기를 흔들어 놓는 바람에 이곳 건축사 한 분이 의아한 눈길을 한 번 주고는 스쳐 지나친다.

「아니, 이전 디컨(Deconstruction, 해체주의, 해체양식) 아닙니까?」

요즘은 시들해져 버렸지만 서구건축가들에 의해 한 때는 현대건축의 마지막 귀결이라고까지 평가되면서 공전

의 유행을 이끌어낸 해체주의 양식은 그 표현이나 수법에서 과거 구성주의 건축의 그것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던 게 사실이다.

물론 “현대의 방향과 고뇌”가 담긴 해체의 본질이 거의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대정신과 일치할 리야 없겠지만, 단지 양식적인 영감만을 갈구하였던 많은 건축가들에게 모방의 모델을 제공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고 보면 구성주의 건축의 본향인 소련에서 건축의 모든 것을 시작한 몽골 사람들의 사고의 편린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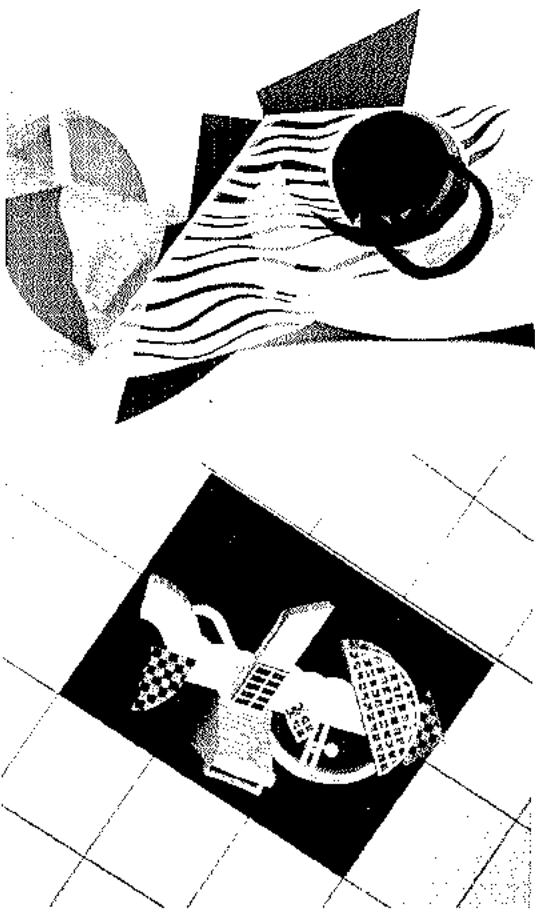
■ 소련의 구성주의(構成主義) 운동

소련의 구성주의⁸⁾, 다시 말해서 1920년대 소비에트의 진보적인 건축과 도시계획은 당시 정치와 사회환경의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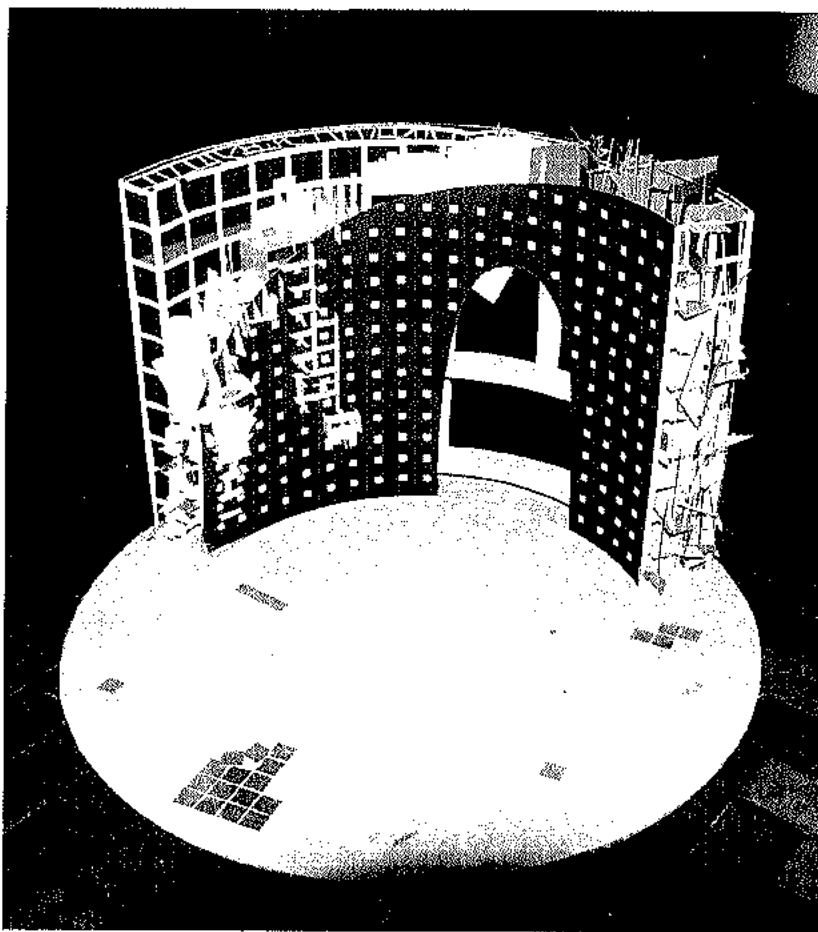
1907년 10월 혁명이 건설하려 했던 사회와 일치하는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시도 중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목표에 부합하는 건축적 모델(PROTOTYPE)을 구성주의 운동은 제시하였다.

당시의 혁명세력들이 주창했던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였으며 공동체에 대한 과업은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옹호자인 새로운 집단적 인간(集團의人間)을 만드는 것이었다.

8) constructivism 구성주의, 1921년 말레비치 Malevich의 영향을 받은 페브스너 Pevsner 등에 의한 선언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타틀린 TATLIN의 제3 인터네셔널 탑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 작품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 작품

그리하여 공동체의 생활을 전제로 한 집단취사, 집단 육아, 노동분업의 폐지 등은 물론 인간성의 변혁과 전통 도시의 해체 등 「삶의 방식의 재구축」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의 소련 건축의 기본원칙이 되었으며, 이후 구성주의자들이 시도하는 집요한 목표가 되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건축의 문제나 설계를 개인적인 영감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수학적 방법이나 논리적인 해석에 기초한 대안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였다.

베스닝 형제에 의한 노동궁을 시발로 레오니도프, 긴즈부르그, 마르코니코프, 알렌산드로 니콜스키 등 뛰어난 작가들에 의한 창작활동은 소비에트인들의 미래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20C 초 소련 건축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1937년 정치적인 모색에 의해서 소비에트 건축사 연합이 채택한 사회주의 리얼리즘⁹⁾에 의해 광휘롭던 구성주의 운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버리고 이후 약 반세기만에 걸친 소련 건축의 암흑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은 1920-1940년 사이의 소비에트 구성주의 운동의 결과가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1970-80년대에 이르러서 서구인들의 비극적인 방향에 대한 형태(건축)상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어찌 보면 역사의 회통같이 보이기도 한다.

■ 폐허의 본질과 고뇌

「...몽골의 근대화에 앞장서면서 건축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몽골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져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의 지난 온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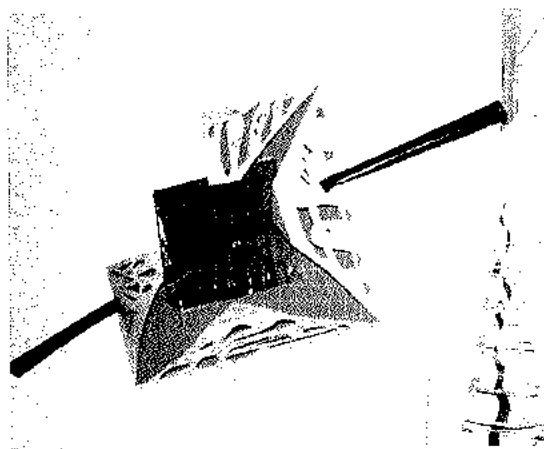
김규태 회장의 고별인사가 이어지는 이곳 영빈관 만찬장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광활한 초원의 모습은 실루엣 같은 도시의 이미지와 삶의 이데올로기가 복합되어서 폐허 위의 실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내 중심지를 막 벗어나 길게 뻗어있는 넓은 도로에는 최신형 벤츠가 달리고 있고, 그 옆의 보행자 전용로에는 말을 탄 청년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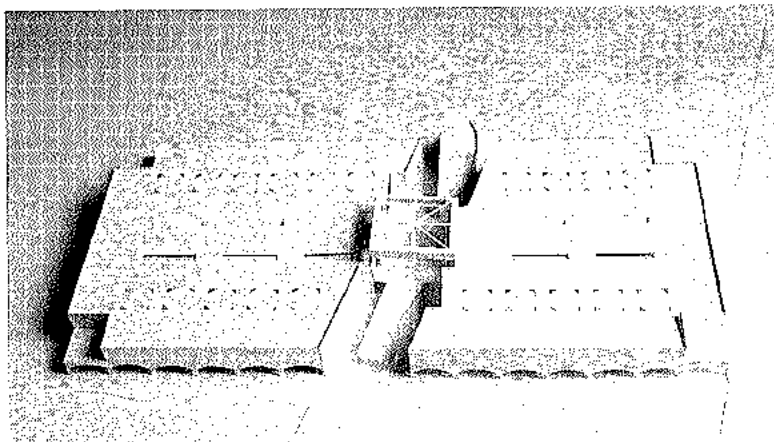
마치 과거의 향수를 음미라도 하려는 듯이.

그 옛날 말(馬)로 대표되는 몽골의 이미지는 전세계에 지울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비엔나에서 일본 열도까지, 북의 불가강에서 남의 자바섬에 이르기까지 몽골군의 말발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던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침병이었다. 또한 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수행 능력과 엄청난 파괴력에 접한 세계인들의 공포감은 현재까지 우리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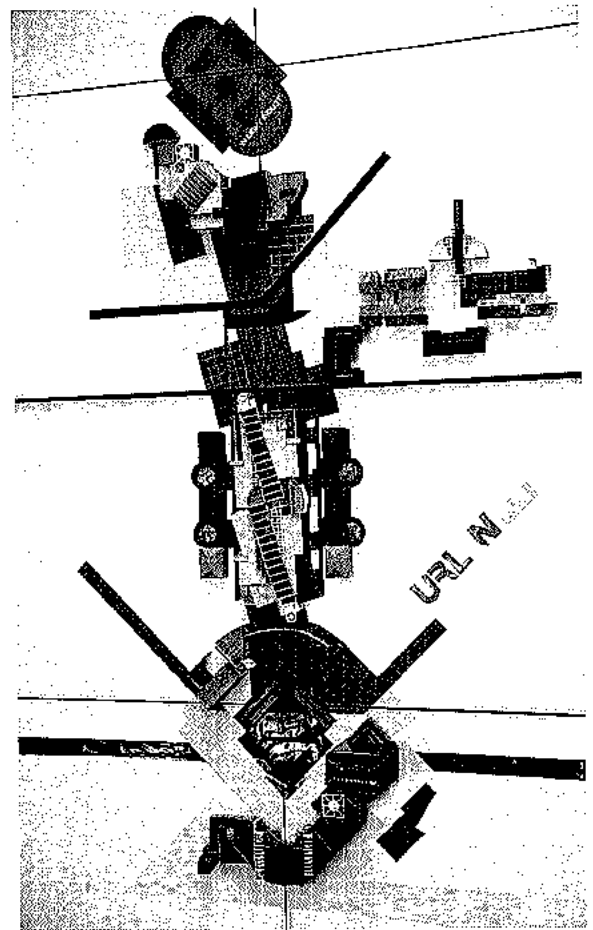
9) Social Realism : 소비에트 건축의 기본방침으로 정함. 고전주의를 선호해야 하며, 과거의 모든 시기로부터 형태를 차용함을 원칙으로 했다. 이 때부터 신고전주의의 양식이 대중을 이루게 됨.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작품



몽골건축사작품, 시장계획안



몽골 건축사 작품, 복합건물 계획안

뇌리에 각인되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전쟁, 그리고 그 파괴행위의 중심에 있었던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 이 스텝의 대지는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한창 전쟁의 승전고를 울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사람은 강간을 당하는 순변을 기다리며 눕혀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형벌을 당하는 순서를 기다리며 묶여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체가 되어 집단매장되는 차례를 기다리며 포개져 있었다.

천년 저 너머 이 민족이 잉태했던 광기의 시대.¹⁰⁾

지금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 남겨져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후세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졌던 전을 할 과거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

이제 이 폐허 위에 아니 이제 겨우 역사의 복원력을 회복한 이 영광스런 대지는 무엇이 절박하여 해체의 논리를 받아들여려 하는가? 과거 광란의 현장을 보아온 역사에 대한 불신인가. 아니면 역사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자의식 때문인가.

폐허로 남겨진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향수를 느낀다. 그것이 석양에 바라보는 아크로폴리스의 장엄함이든 백야의 저녁에 드러나는 스텝의 폐허이든 비장함 서린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지만 폐허를 덮고 일어난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때로는 낭만이고 때로는 애환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영욕만이 남겨진 몽골의 폐허를 대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느껴야 할 향수어린 비애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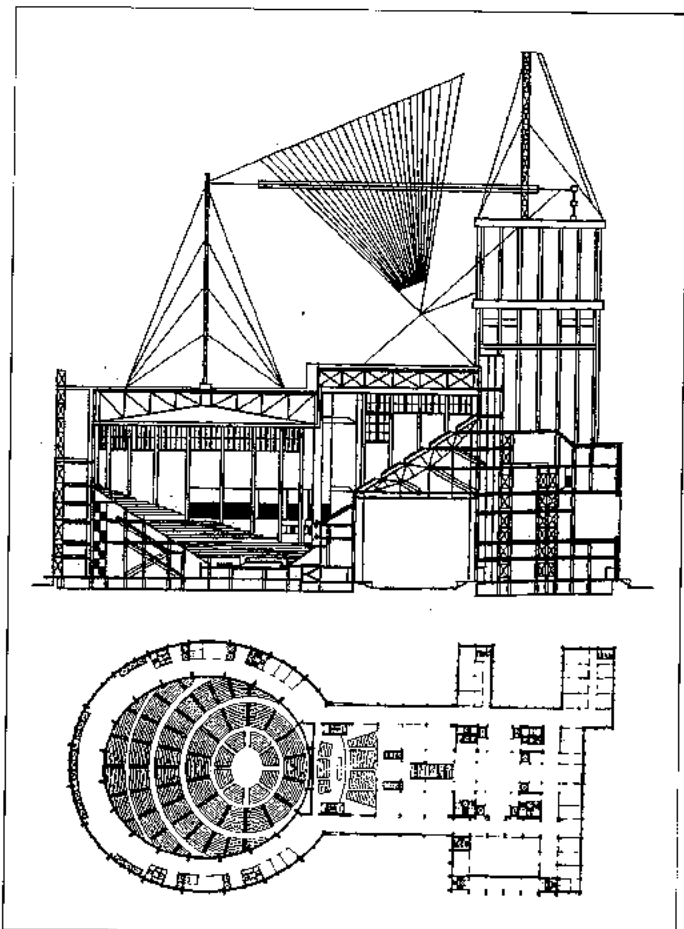
탈출구마저 보이지 않는 비극적 실존을,

현실을 바라보는 고뇌서린 눈망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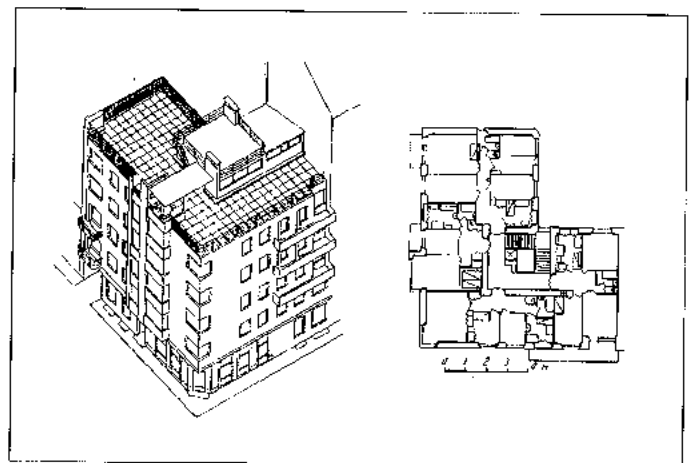
지금의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다.

아, 대초원의 영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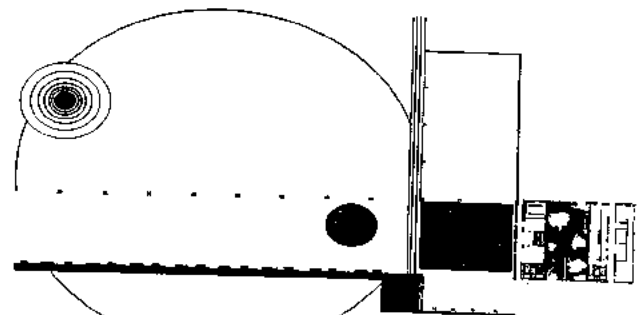
10) 몽골군의 특히 징기스칸 시기의 침략전쟁은 기본적인 틀이 있었다. 우선 점령지의 도시는 점령한 후 젊은 여자와 이용가치가 있는 젊은이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몰살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파괴하고 집과 성벽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가축들만 거두었다. 그와 같은 전략은 정착지대의 농민들을 풀을 뜯어먹고 사는 가축과 동일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궁, 1923년 베스닌 형제



아파트 1926, 긴즈부르크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작품



국립중앙박물관

New National Museum of Korea

지난 93년 대통령 명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가 결정되면서 시작된 새 박물관 신축 논의는 유네스코 협력단체로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아 국제 설계경기로 실시기로 결정하였고 94년 4월부터 UIA 한국 지부인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설계경기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면서 설계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94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설계경기 공고를 하고 95년 2월 27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은 결과 총 59개국 854건(국내 234, 국외 620건)이 접수되었다.

1단계 아이디어 설계경기, 2단계 프로젝트 설계경기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국제설계경기(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는 5월 25일 1단계 응모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46개국 341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 일 정

정부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1세기 통일 한민족 시대를 대비하고 오천년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관·전시할 새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UIA 공인 하에 국제설계경기 방식으로 설계(안)을 공모기로 하였다.

1단계 아이디어 설계공모

- 질의응답 : 95년 3월 2일~4월 14일
- 공모안 접수마감 : 95년 5월 25일
- 공모안 예비심사 : 95년 6월 1일~10일
- 공모안 본 심사 : 95년 6월 12일~16일까지 심사의 과정을 거쳐 10개의 공모안이 선정되었고 이중 상위작 5개 공모안만이 2단계에 응모하게 되었다.

2단계 프로젝트 설계

- 작품접수 : 95년 9월 25일~30일
- 최종심사 : 95년 10월 16일~10월 20일
- 당선자 발표 : 95년 10월 20일
- 포상

1등(미화 50,000불), 2등(미화 30,000불)

3등(미화 20,000불), 가작(2명, 각 미화 15,000불)

※ 최종 당선자에게 본 설계권 부여

• 참가작품 전시회 개최 : 95년 11월 6일~26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향후 추진계획

- 기본설계 : 95년 11월~96년 7월
- 실시설계 : 96년 8월~97년 6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97년 7월~97년 8월
- 공사착공 : 97년 9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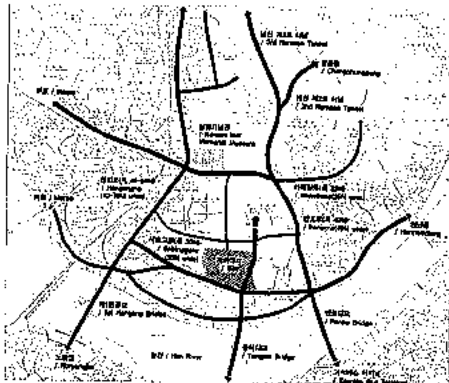
□ 심사위원

성명(연령)	국적	주요경력	비고
빌헬름 뤼커 (62) (Wilhelm Kucker) * 위원장	독일	○원현대학교수(공학박사) ○전 독일건축가연맹 회장 ○Kassel 매장문화재박물관설계 ○건축설계 관련상 다수 수상(약 40회)	○UIA장독관 겸임 ○전 UIA 부회장 ○국제경기부장 역임
이광노 (67) * 부위원장	한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문화재위원(1분과위원장) ○박물관전립자문위원(현) ○예술원 회원(현)	
가에 아우렌티 (68) (Gae Aulenti)	이탈리	○오르세 박물관 개축설계 ○라리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설계 ○카탈리안 박물관 설계	○호암미술관 건축 관계 자문
랜달 보스백 (65) (Randall Vosbeck)	미국	○미네소타대학 졸업 ○전 AIA 회장 ○미국 연방 도시계획 위원회 의장 역임 ○AIA상 등 다수 수상	
앙리 시라아니 (58) (Henri E. Ciriani)	프랑스	○제1차대전 역사박물관 설계 ○유럽내 34개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 역임 ○건축관련 수상다수(14회)	○파리8대학 교수 ○코르뷔제의 최종 전수자
정양모 (61)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장(현) ○서울대학교 사학과 졸업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 연구실장 역임 ○한국의 도자기 외 다수의 논문 발표	
유희준 (61)	한국	○한양대 및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졸업 ○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국선 건축부문 대통령상 ○박물관전립자문위원(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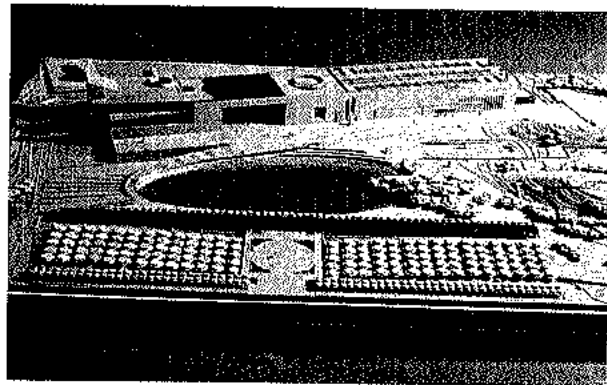
□ 국가별 응모작품 접수현황

—총 341작품(46개국) (국내 78, 국외 263)

국가명	작품수	국가명	작품수
남아프리카	2	우루과이	4
네덜란드	5	우크라이나	4
노르웨이	1	유고	1
덴마크	1	이란	5
독일	15	이스라엘	3
러시아	2	이탈리아	23
레바논	1	인도	1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1
멕시코	17	일본	17
미국	19	중국	2
벨기에	4	캐나다	7
불가리아	3	카자흐스탄	4
사우디	4	크로아티아	2
스리랑카	1	터키	4
스위스	16	파푸아뉴기니아	1
스페인	5	폴란드	3
슬로바키아	1	프랑스	26
시리아	1	핀란드	5
싱가포르	2	필리핀	1
아르헨티나	7	한국	78
영국	19	헝가리	1
오스트리아	3	호주	3
요르단	1	홍콩	11



대지 현황도



1등 모형

□ 제1단계 심사결과

1단계 설계경기에는 세계 46개국에서 총 341점이 접수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훌륭한 건축가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설계경기 참가자들에게 배부된 설계지침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시대상 유물들이 수록되어 있어 세계의 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유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심사위원(국내 3인, 국외 4인)과 예비심사위원(국내 1인, 국외 1인)으로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심사위원회가 담당하였으며, 심사는 먼저 기술심사를 거쳐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먼저 심사 첫 날에 위원장(빌헬름 쾰러, 독일)과 부위원장(이광노, 한국)을 선출한 다음 기술위원장(서상우, 국민대 교수)으로부터 기술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문제점이 있는 작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응모작 총 341점에 대한 관람과 개별심사를 하여 그 중에서 84점을 선정하였고 이중 심사위원 1인의 지지만을 획득한 43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공동심사를 실시하여 탈락·잔류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결과 35작품이 탈락됨으로써 49작품이 잔류되었다. 이들 작품들을 다시 2차 투표와 공동 토론을 거쳐 13점으로 줄였으며, 3차 투표에서 3점을 탈락시킨 다음 10점을 선정하였고 4차 투표에서 이들 10점을 다시 상위 5점과 하위 5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비공개 발표).

당선작에 대한 대우는 상위 5점에게는 제2단계 설계경기 참가자격 부여와 함께 상금으로 미화 5만불이 지급되며 하위 5점에게는 상금으로 미화 5만불만 지급된다.

□ 2단계 심사결과

1단계 아이디어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상위 5점의 작품 접수마감은 9월 30일이었고 2단계 심사는 1995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다. 첫날에는 기술위원회가 제출한 제2단계 기술심사보고서의 검토와 응모작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였고 심사위원과 전문교문과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심사시 주안점은 전체적인 개념, 건축형태, 기능성 등 3가지를 강조할 것을 결의하고 제출한 작품의 장·단점을 비교 및 상호의견 교환을 하고 양일간 나누어 작품 심사를 하였다. 최종 순위결정을 위한

1차투표에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3작품씩을 투표하여 상위 득표 4점을 결정하였고 2차 투표에서 다시 상위 3점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각자가 1작품씩을 투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작품을 1등 당선작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3차 투표결과 1등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2등과 3등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당초 순위에서 제외된 우수작 2점을 4등상, 5등상으로 결정하였다.

- 1등(당선작) : 김창일(정립건축)
- 2등(우수상) : 크리스티앙 드포르잠박(Christian de Portzambarc, 프랑스), 김병년·신제순(선진엔지니어링)
- 3등(우수상) : 김현철(서울대 교수), 김용미, 김상식(금성건축), 김석운(김석운 건축), 김홍식(명지대 교수)
- 4등(우수상) : 베르너 크리스텐(Werner Chisten, 스위스), 광영훈(환경그룹), 이승우(종합건축)
- 5등(우수상) : 로랑 살로몽(Laurent Salomon, 프랑스), 김홍일(위드건축)
- 가작
 - 민현식, 승효상(이로재)
 - 한규봉(천일건축), 앙리 고댕(Henri Gaudin), 브르노 고댕(Bruno Gaudin, 이상 프랑스)
 - 김석철(아키반 건축)
 - 박승(삼우설계), 한현호(건원국제), 제임스 개리슨(James G. Garrison, 미국), 로버트 시겔(Robert Siegel, 미국)
 - 손두호(단우모람), 이 영(경원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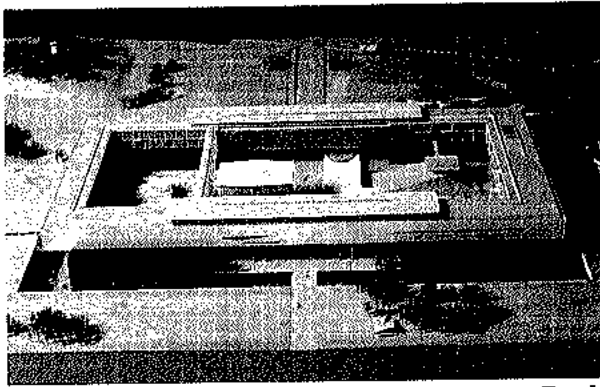
□ 기본개념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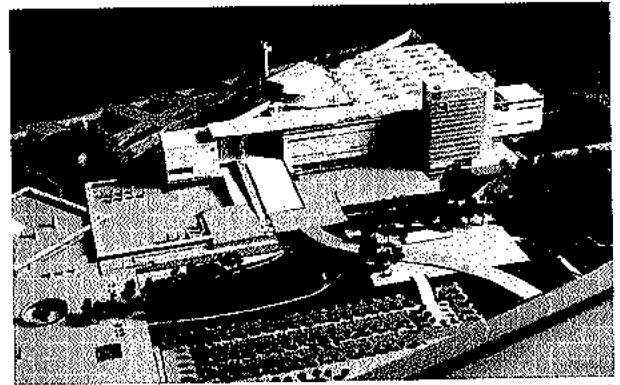
첫째, 새로운 박물관은 국제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문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한다. 국제적 안목과 시야를 확대하여,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이 다양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전제가 된다.

둘째, 종전의 역사, 고고, 미술의 혼합된 전시체제를 지양하여 한국 문화와 한국미술의 특수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남북통일에 대비, 한민족 전체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구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등 모형



3등 모형

넷째,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문화창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제조정이 필요하고 사회교육의 대상층이 확대되어야 한다.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은 역사체험의 형식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우선적 목적을 둔다.

다섯째, 복합박물관 지역(Museum Complex)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차, 고고·인류학 박물관, 민속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박물관, 공예박물관 등이 대지 주변에 연속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여섯째, 1차 단계 구상에는 반드시 박물관의 확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건축 프로그램

기본개념

이 설계경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합리적인 기능 해석 위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현대 박물관 건축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박물관 건축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성과 함께 사용자를 우선하는 공적 영역, 대중문화의 고양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그리고 유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환경의 쾌적성이 강조된다.

박물관 건축의 조형

이 건축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사회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한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위한 상징이기를 기대한다. 이에 건축의 조형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학적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복합적 문화 공간의 구축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시 주변의 미군 주둔지 이전 적지는 향후 별도의 계획에 따라 민족공원 조성으로 전환될 것이 구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각각 성격이 다른 여러 주제공원으로 구성되며, 남산 자연공원의 녹지축을 한강 시민공원과 연계시키는 구도에서 자연 속의 종합적 문화공원이 될 것이다.

□ 배치계획

배치의 기본조건

본 예정지의 현재 지반 레벨은 큰 홍수가 날 경우, 침수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강의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지반의 구성 및 건물의 레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변화감이 있는 지형 및 자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토지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기를 기대한다.

건물의 배치는 남산을 잇는 남북축을 주축으로 계획시 시각적 측면에서 차경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넓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잠재력을 살린다.

이 박물관 건축은 주변이 개방되어 있는 공원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그의 보안성은 외부 공간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물의 반출입구 등 부분적으로 주요하게 보안을 요하는 접근경로에서는 인공 또는 자연적인 보안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구조는 시각적으로 건축의 조형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접근 이후의 조건

출입구에서부터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동선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유물과 물품의 반출입을 위한 서비스 차량 동선은 일반 차량과 구분되는 접근을 취하며, 쓰레기 처리와 함께 주건물의 배후에서 차량의 회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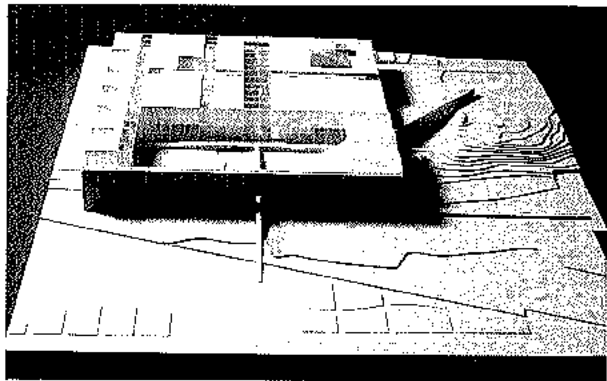
대지 조성 계획

전술된 한강의 홍수위와 대지 레벨의 관계로 인하여, 박물관의 주축을 이루는 레벨은 해발 16.20m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동작대교 기존 제방고 15.30m~16.20m : 서울시 1992. 12.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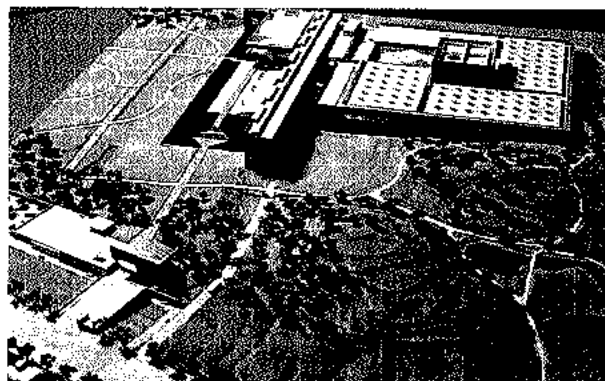
외부공간이 성토되는 경우에도 지형의 변화를 활용한 계획과 가능한 자연수로형 배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지 조성이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계획으로 성토시 지반의 피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와 배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차량의 통과로 인한 구조, 포장 방법, 재료 선택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박물관의 지하층에 수장고 등 주요 기능이 위치할 경우, 그 구조는 홍수 때의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등 모형



5등 모형

□ 심사평

1등 당선작

이 수상작은 부지 규모에 적합한 건물을 잘 창출하였으며, 매우 거대하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여 강하고 신중하게 설계된 작품이다.

이 건물 내부의 직접적인 기능배치와 함께,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공공 건물로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

건물 입구는 남산을 극적으로 포용하는 한편, 전시 영역과 공공 및 교육영역을 잘 분리해 주고 있다.

전시 공간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역사의 거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객에게 다양한 관람 동선을 제공하나 혼란스럽지 않고, 단순한 하나의 귀결점을 지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을 부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형과 환경을 활용하며, 공원의 속성들을 인식하며 존중하고 있다.

직선의 선형성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건물 전면이 도시형태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며 공원속에 또다른 모습으로 장래에 형성될 새로운 복합 문화 단지 개발의 기록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차장, 접근로, 서비스 공간 및 기타 부수적 요소 등도 잘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잘 통합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뛰어난 장점을 지닌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장차 박물관측과 설계자의 협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물의 하나로 인식될 박물관으로 탄생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2등 수상작

이 작품은 필로티 위에 떠 있는 전시실 뒤에 위치한 중정으로 관람객을 이끄는, 상당히 강하나 일종의 고전적 평온함을 지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가는 이 작품에서 대비를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즉 강력함과 평온함의 대비, 수평형태의 건물과 자연 환경의 대비, 복잡한 외부 스케일과 친숙한 속성을 지닌 중정과의 대비, 내부전시 공간의 인공적 요소와 공원주변의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조망과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고도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북쪽 공원으로 움직임을 잘 유

도하고 있다.

전시공간을 건물 외곽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연채광이 모든 층과 전시실내의 세부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3등 수상작

이 프로젝트는 그 역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 건물로서 인식이 분명하다. 이 건물의 여러 부분들은 명료한 기능 구분에 의해 즉각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념비적인 입구는 먼 정래의 발전 가능성까지 수용했다. 응모자는 인접 영역에 대한 본질적 도시 계획을 제안하며, 박물관 부지 공원 지역의 도심과의 연계성을 반영시키고 있다.

실내는 박물관과 연계된 서비스 공간과 기술 부문의 세부 사항을 상세하고 신중하게 잘 처리하였으며 특히 자연 채광의 해결 방안은 매우 훌륭했다.

4등 수상작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강렬함과 단순한 추상성이 탁월하다. 공원 속 한 편에 위치함으로써, 공원 내의 복합문화 건물군의 하나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박물관은 유일한 축선상의 입구, 높은 벽으로 주위 공간과 격리된 "비밀 정원"을 거치는 통로를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진다. 주요 요소들—교육, 관리, 전시실—은 건물내·외부에서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인식된다.

집중적이고 통합된 볼륨은 우아한 비례를 지니며, 단순하고 직접적인 동선체계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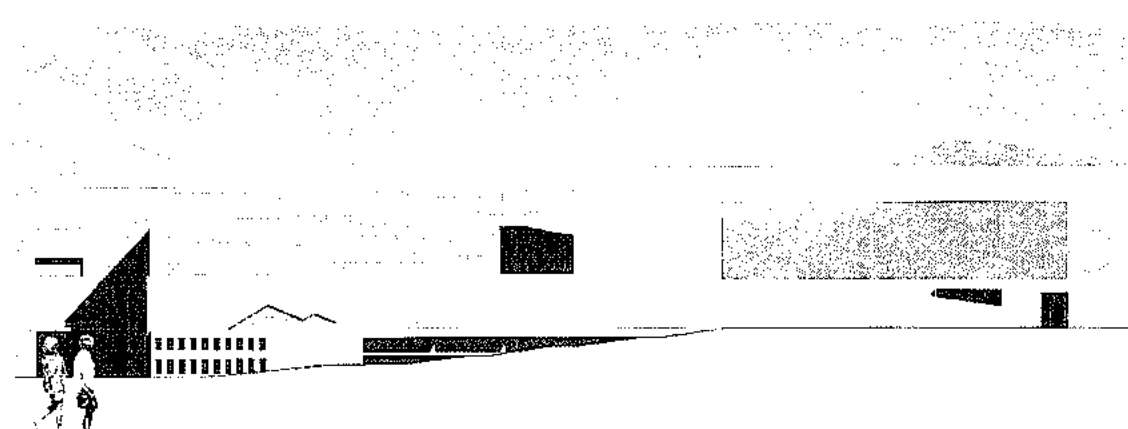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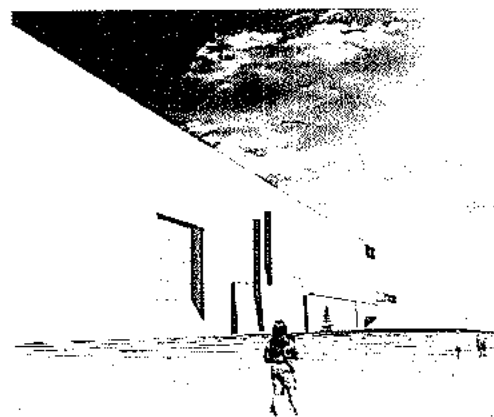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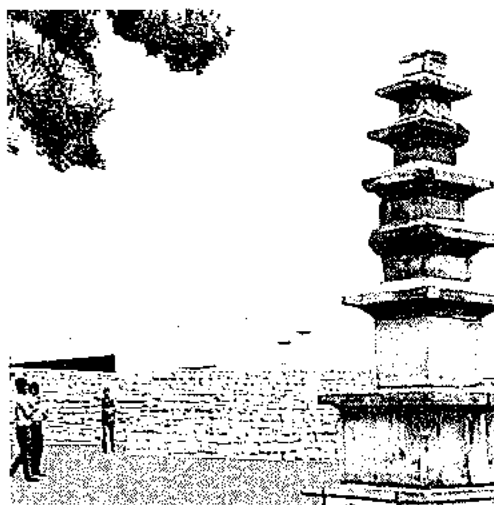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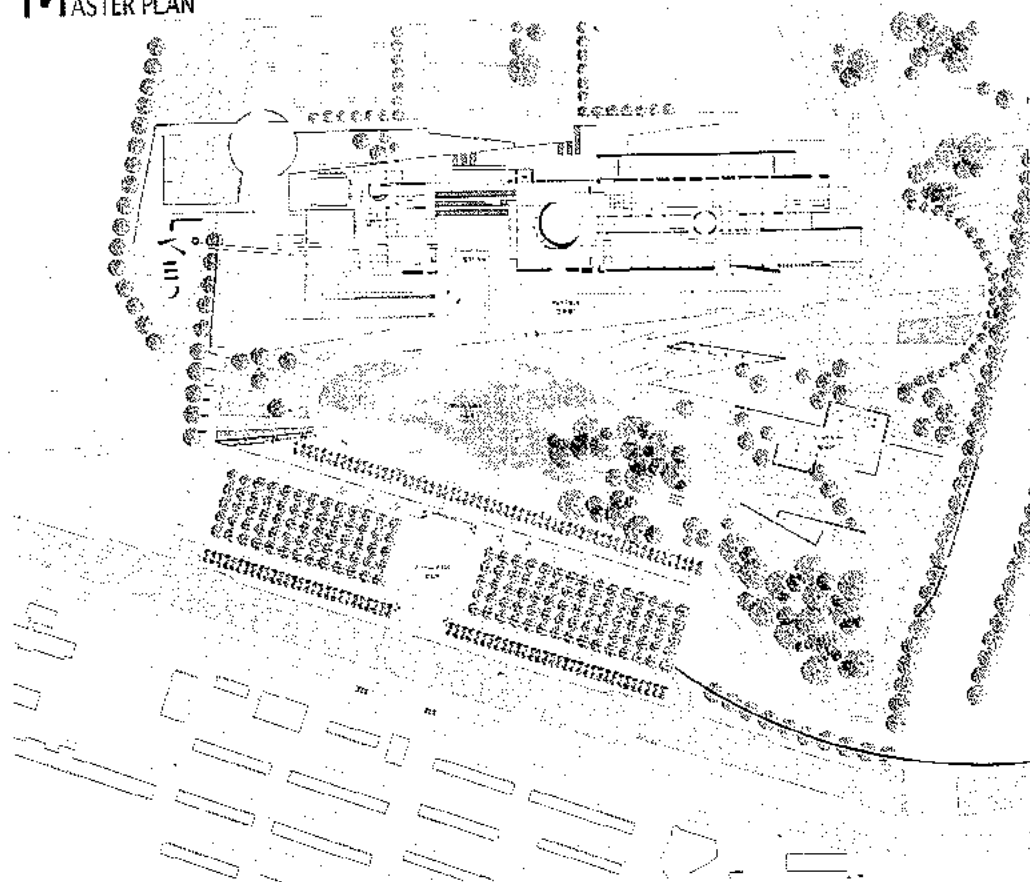
주 동선은 전시 공간에 커다란 유연성을 제공하는 2차 동선과 교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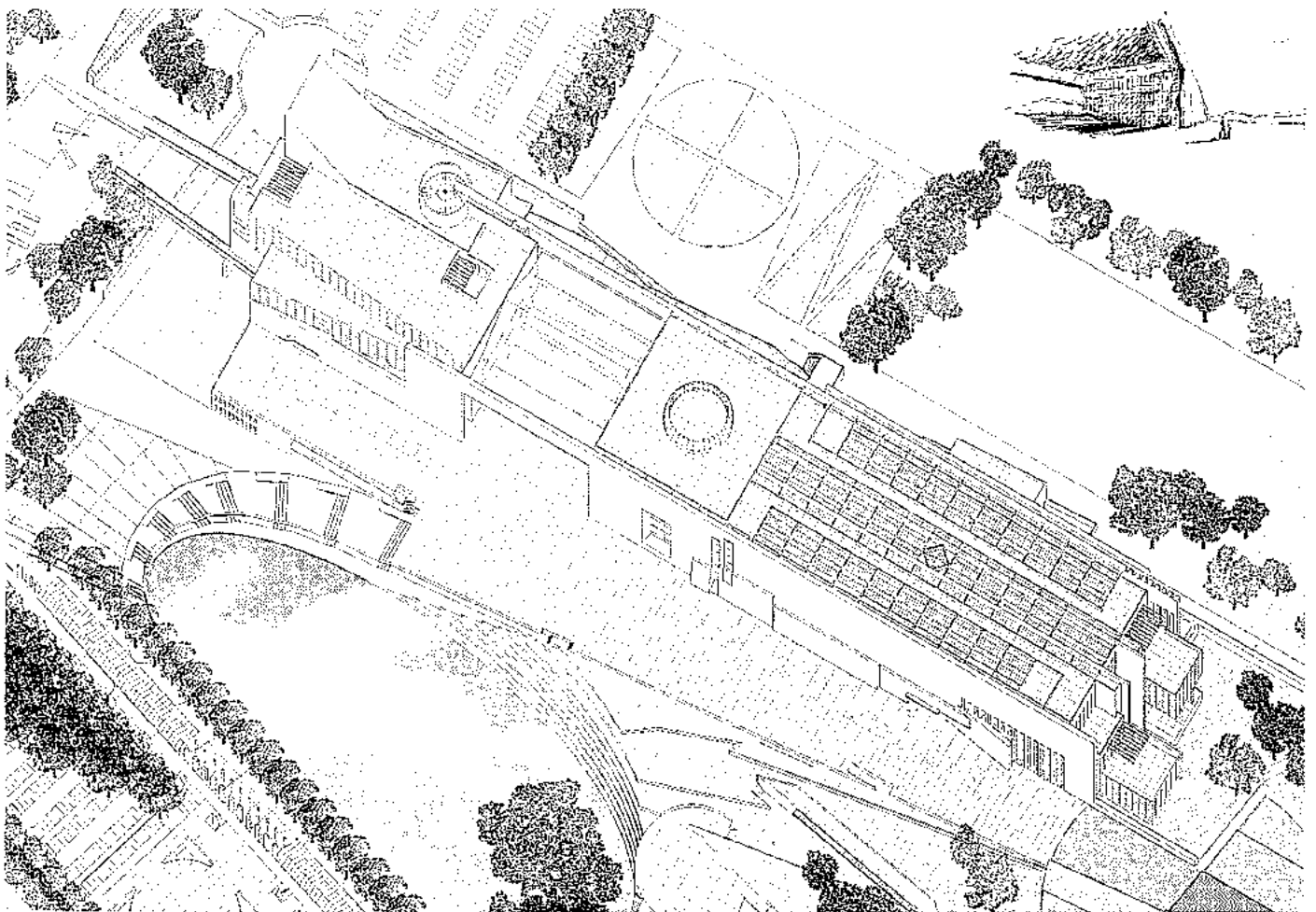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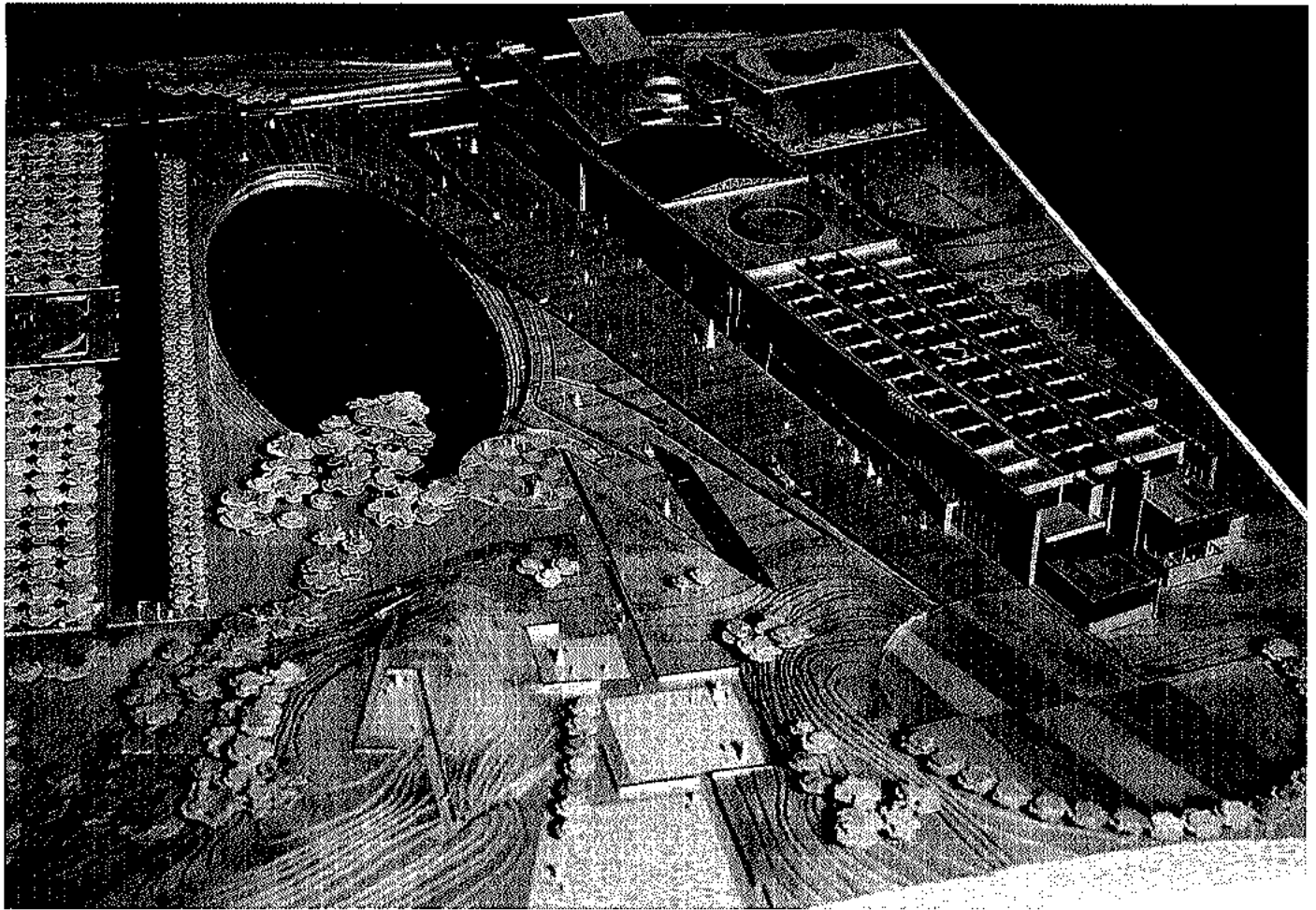
5등 수상작

이 작품은 스케일을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육중함의 인상을 피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역동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능적 명료성과 다양한 볼륨은 건물, 외부 각 요소들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실내에 대한 적극적인 투명성으로 인하여 관람객에게는 판단의 수월함과 어느 정도의 명료함을 지닌 동선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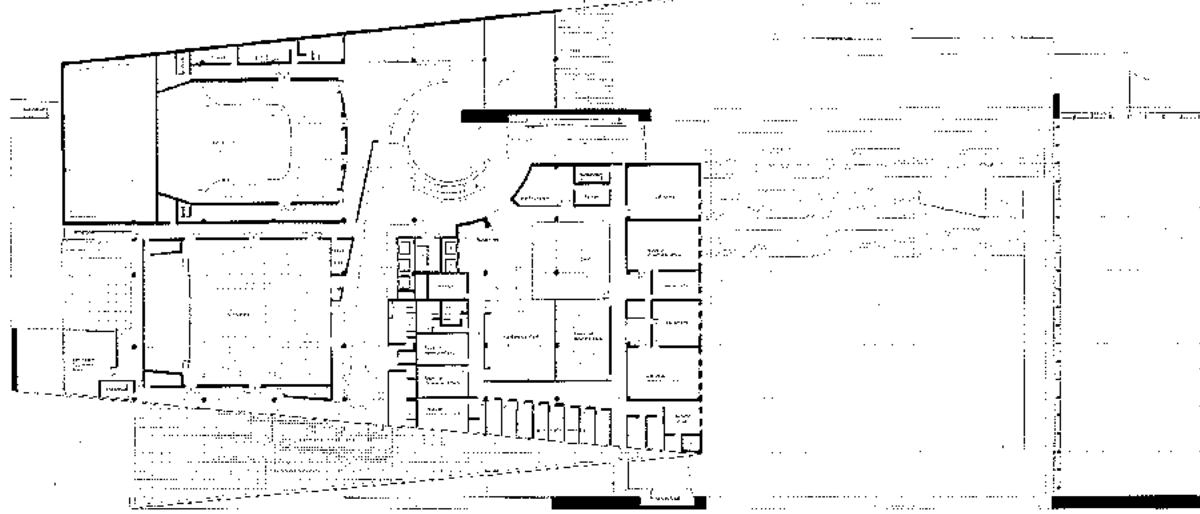
박물관 영역의 흥미와 움직임을 유도해 내는 다양한 높이와 층 레벨과 함께, 프로그램의 세부 요건에 대한 해석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MASTE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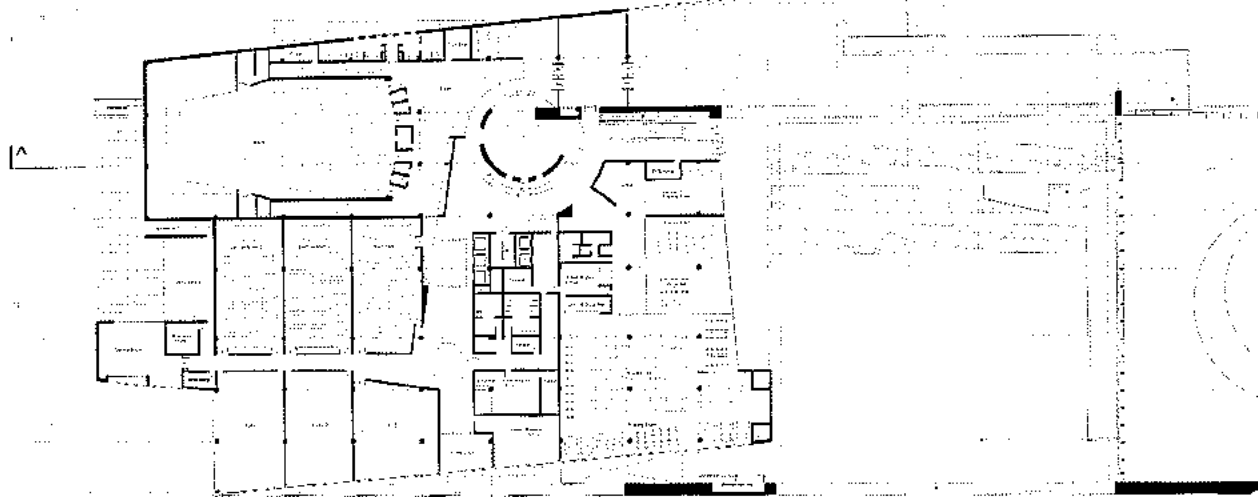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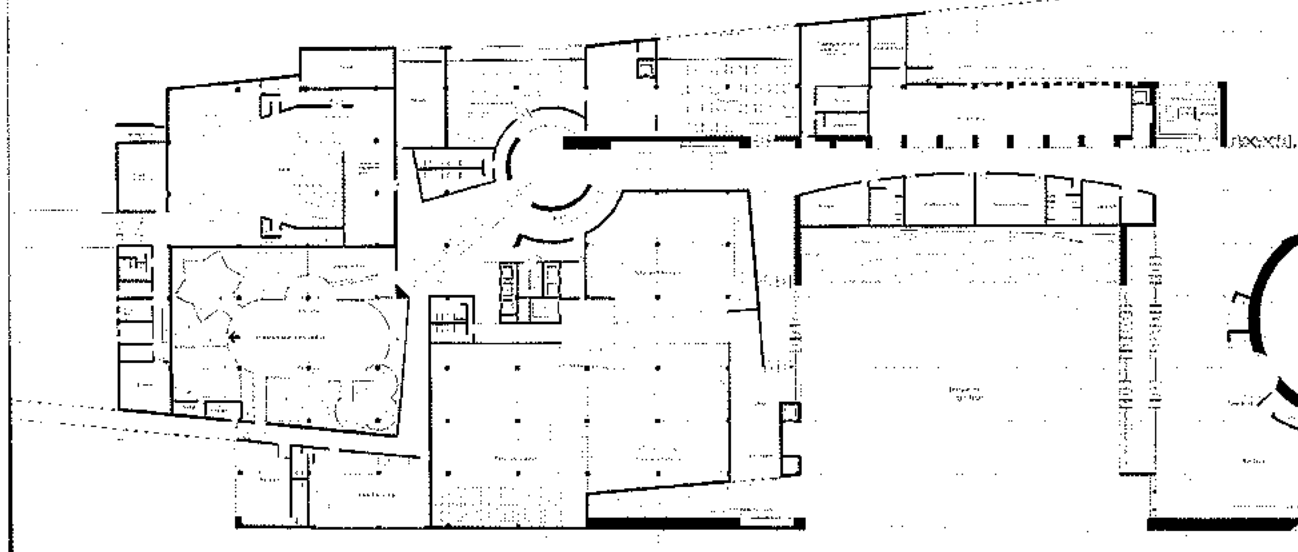
3RD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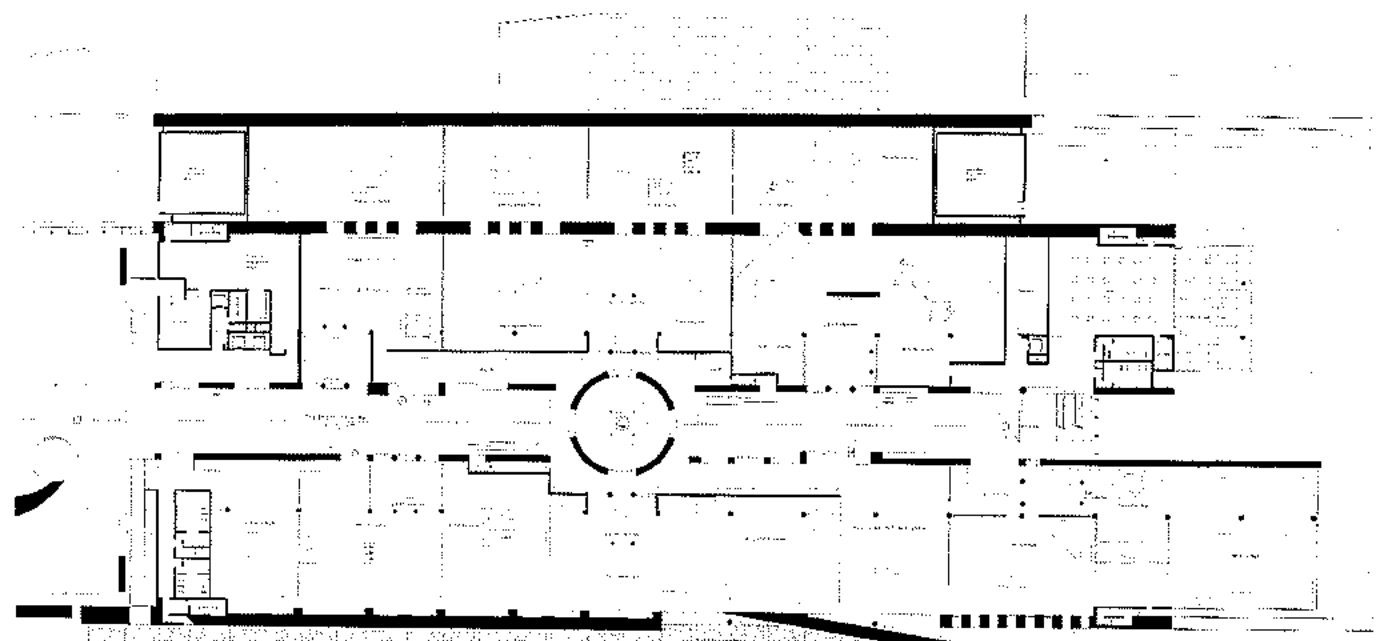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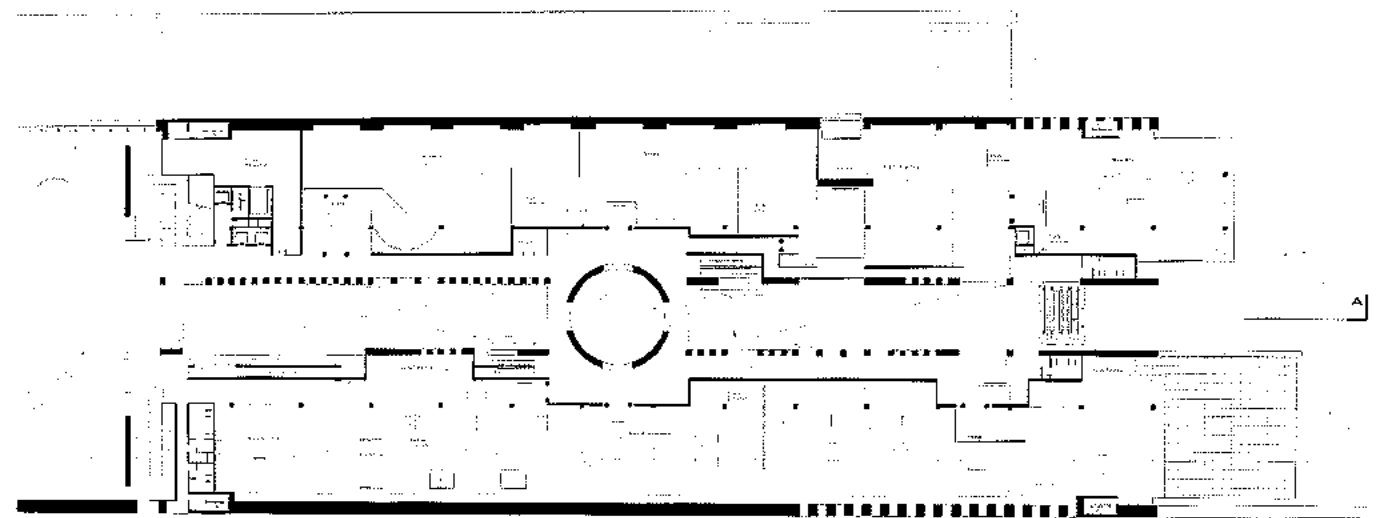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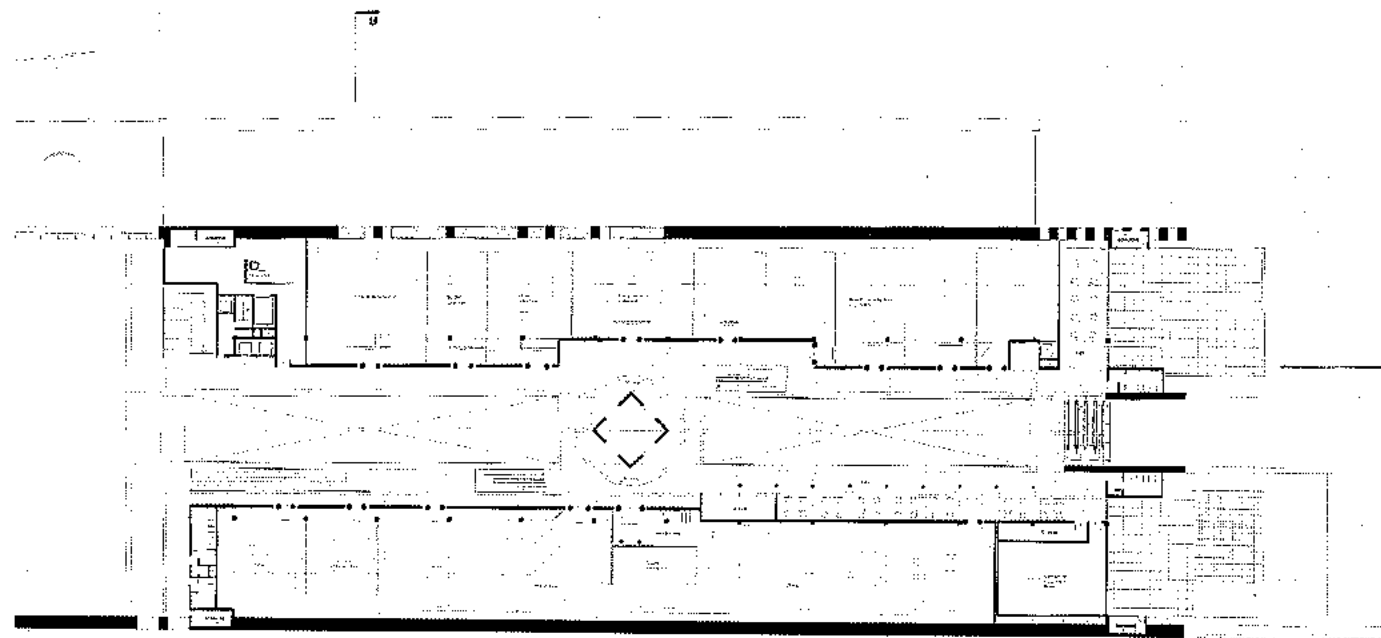


2ND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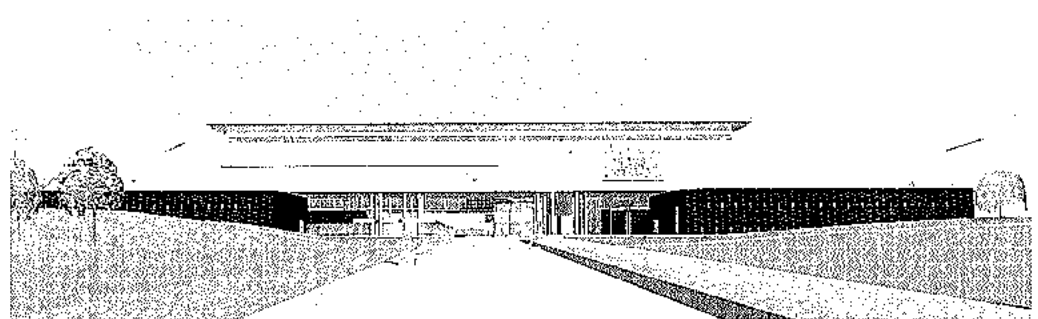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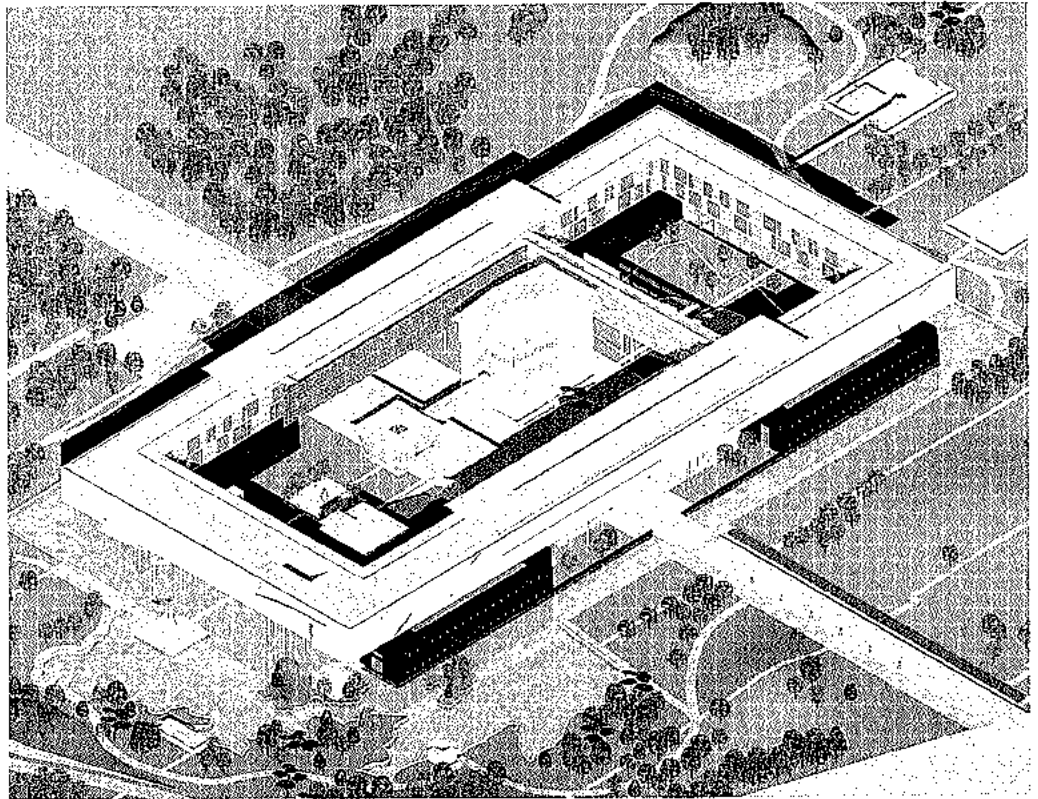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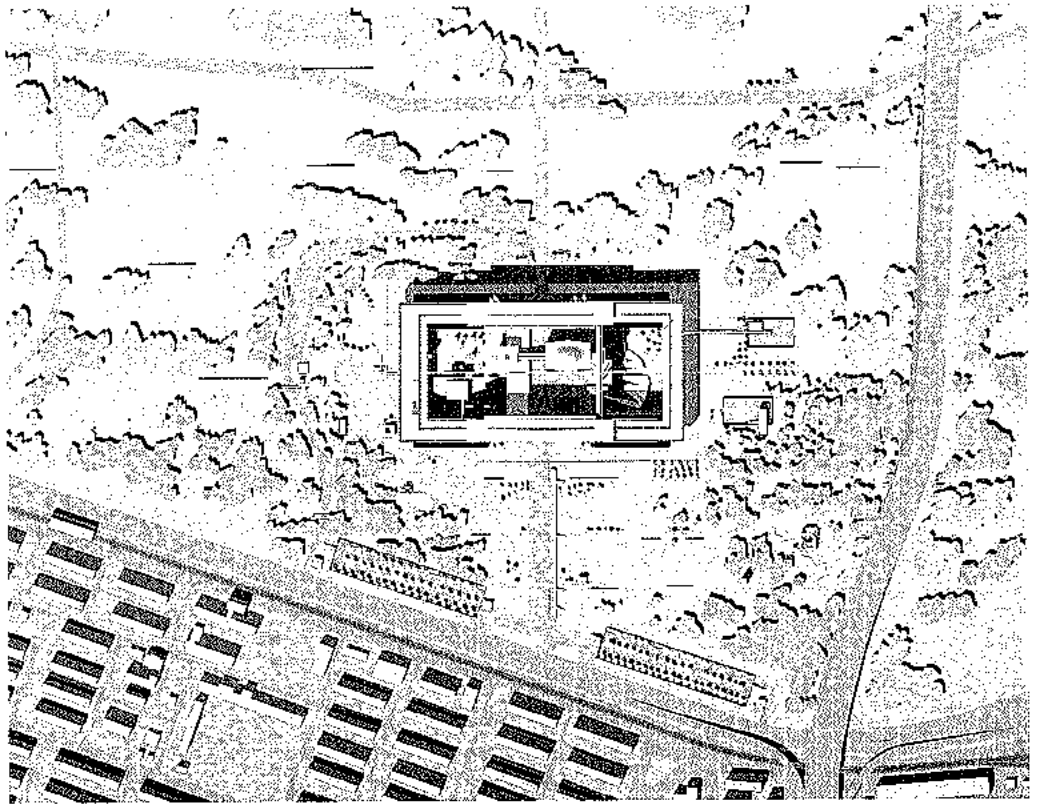
E^{NT}R^Y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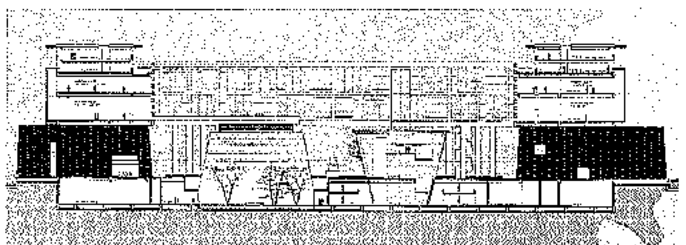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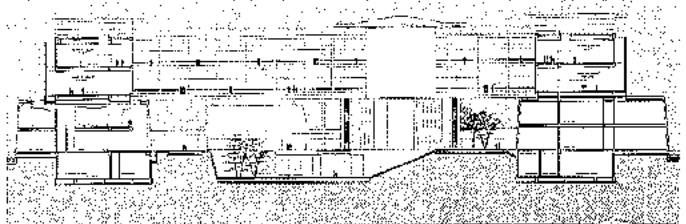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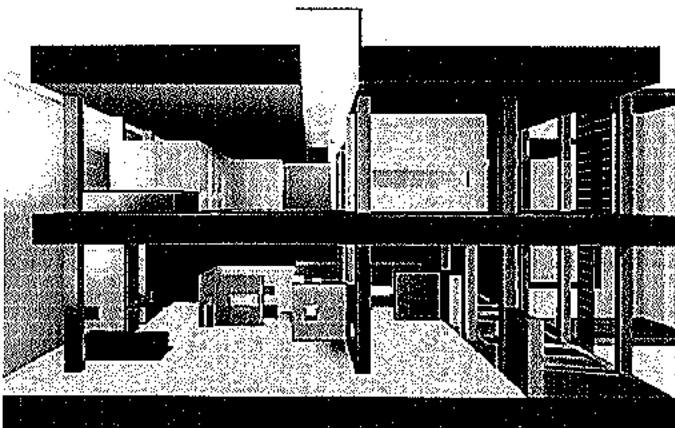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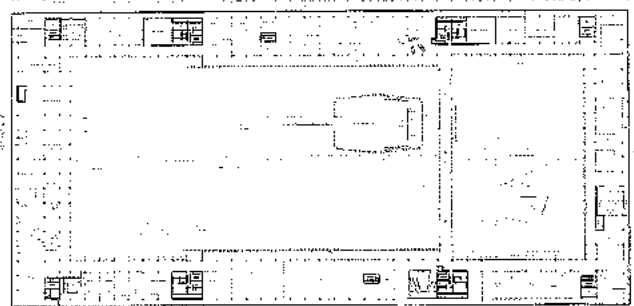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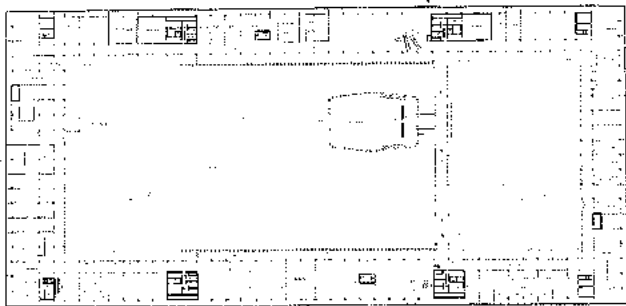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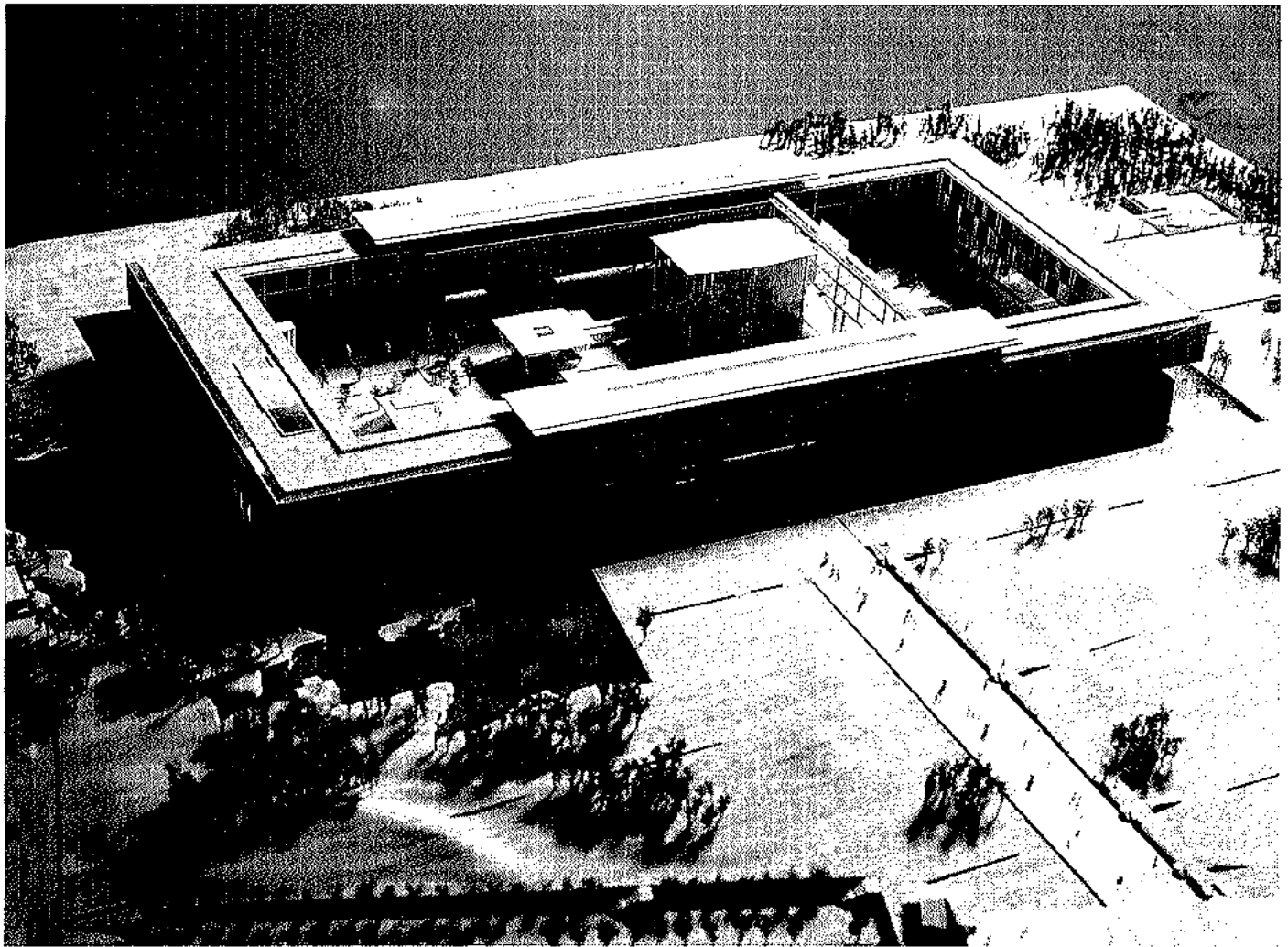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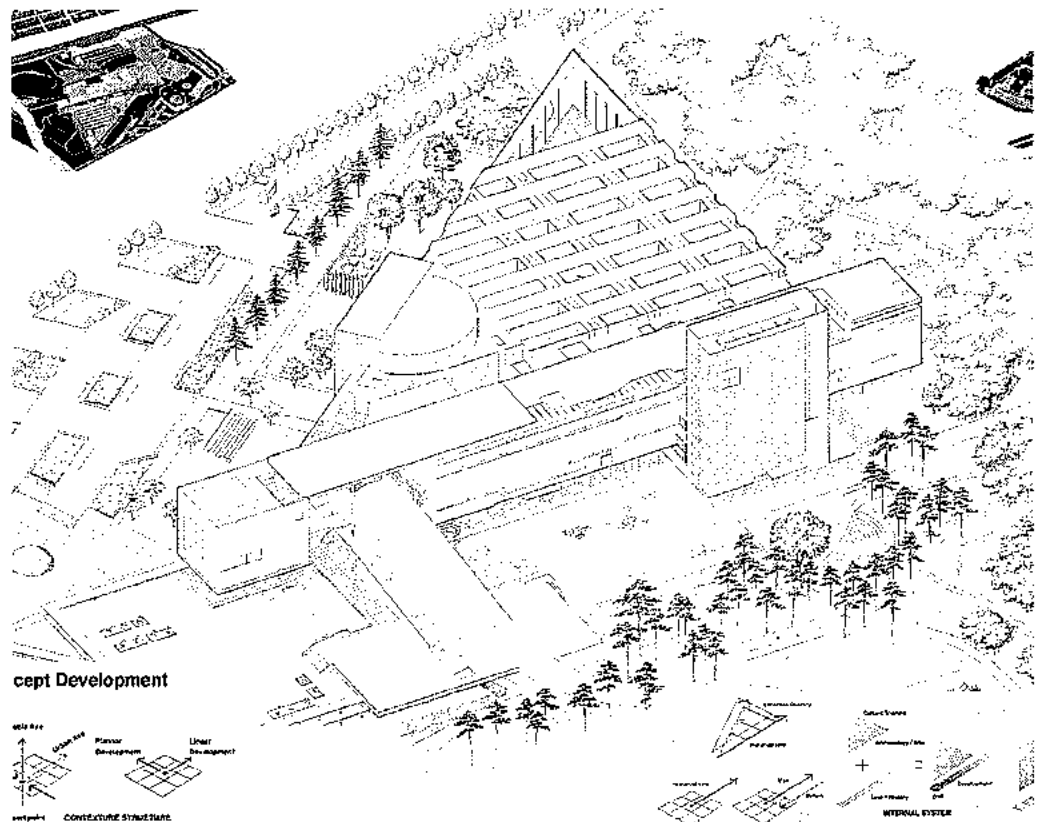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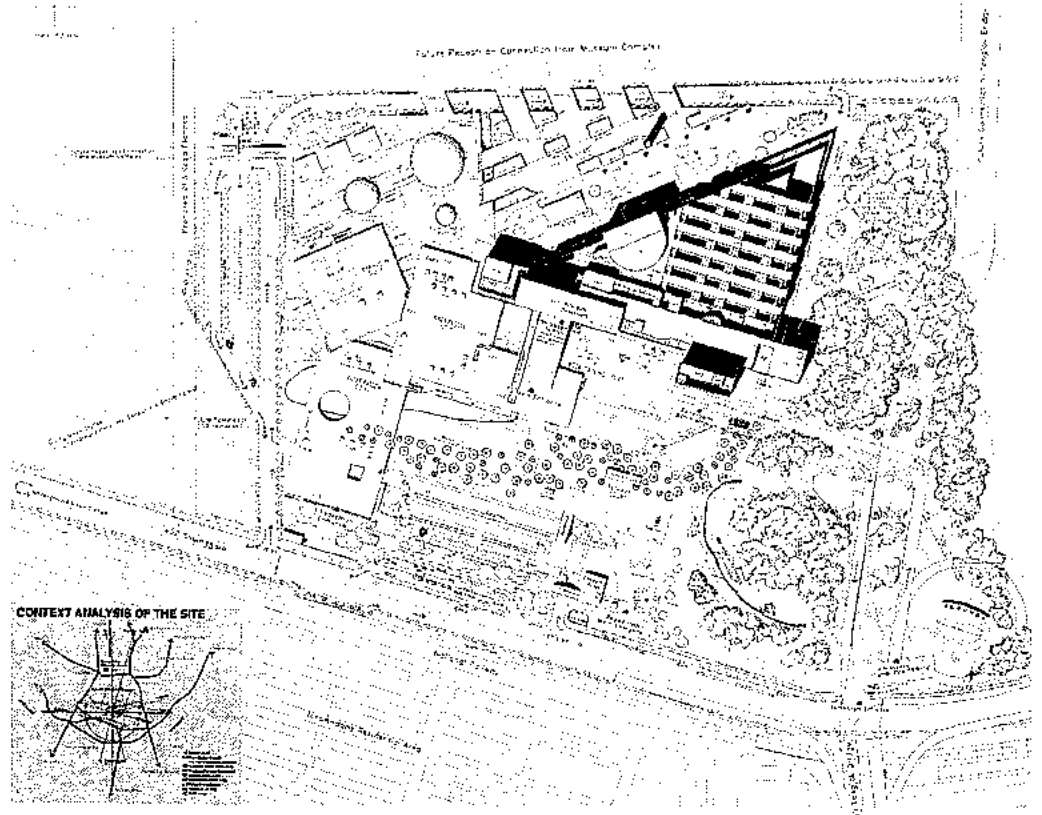
2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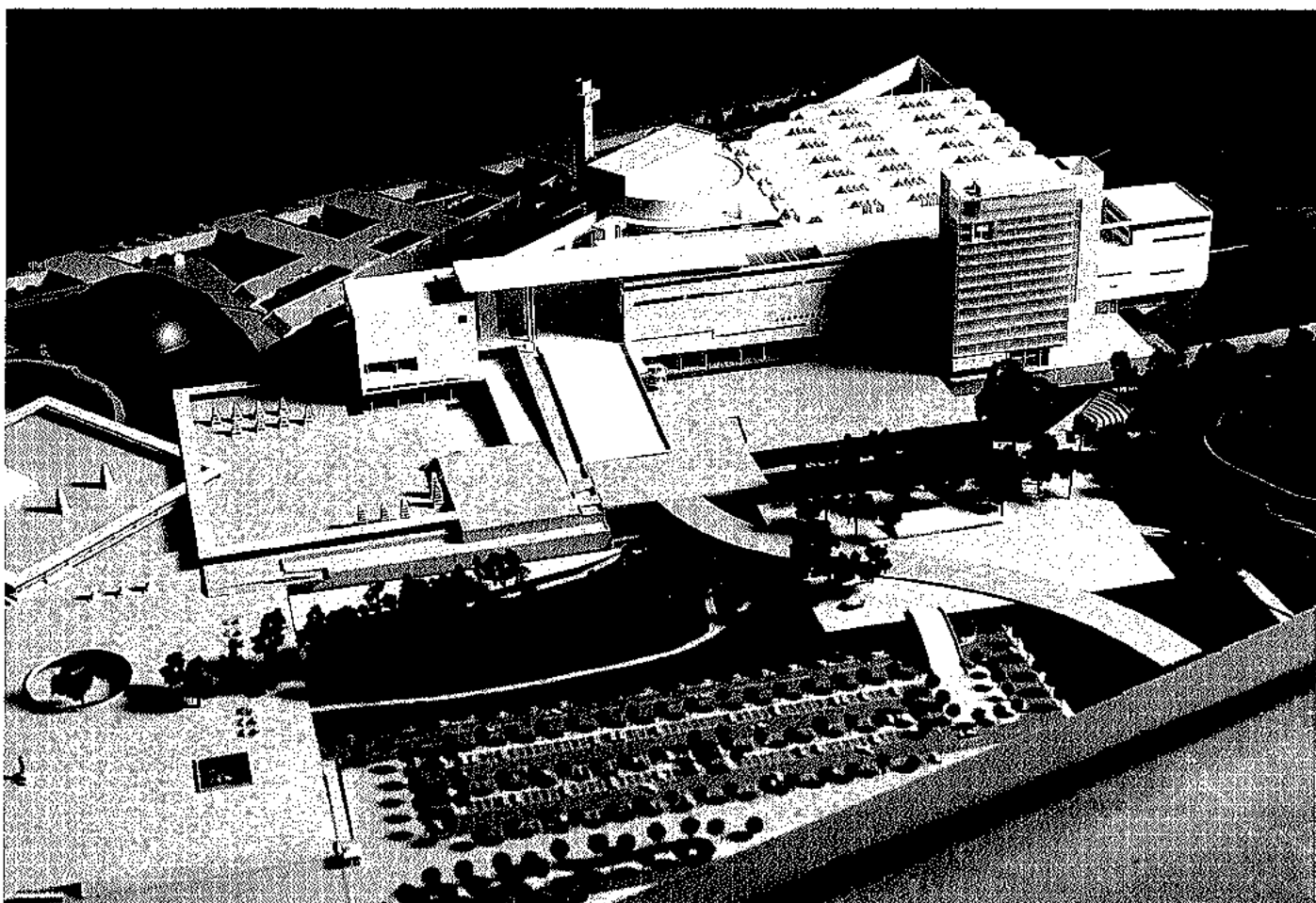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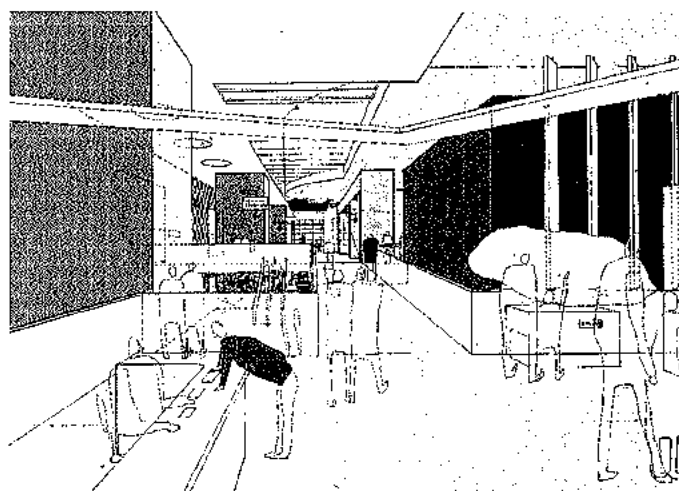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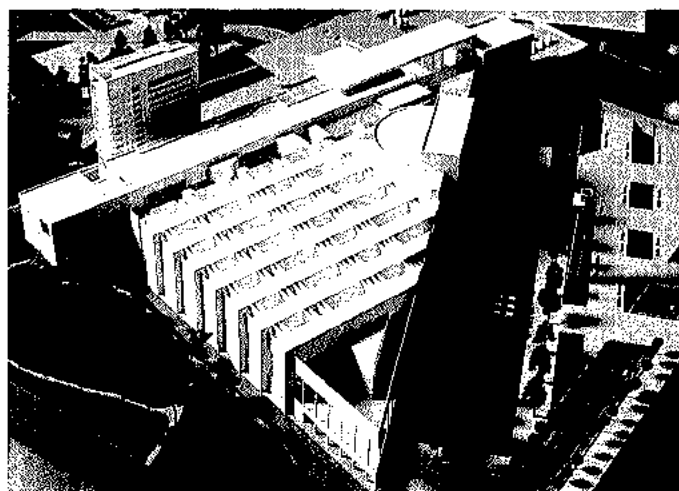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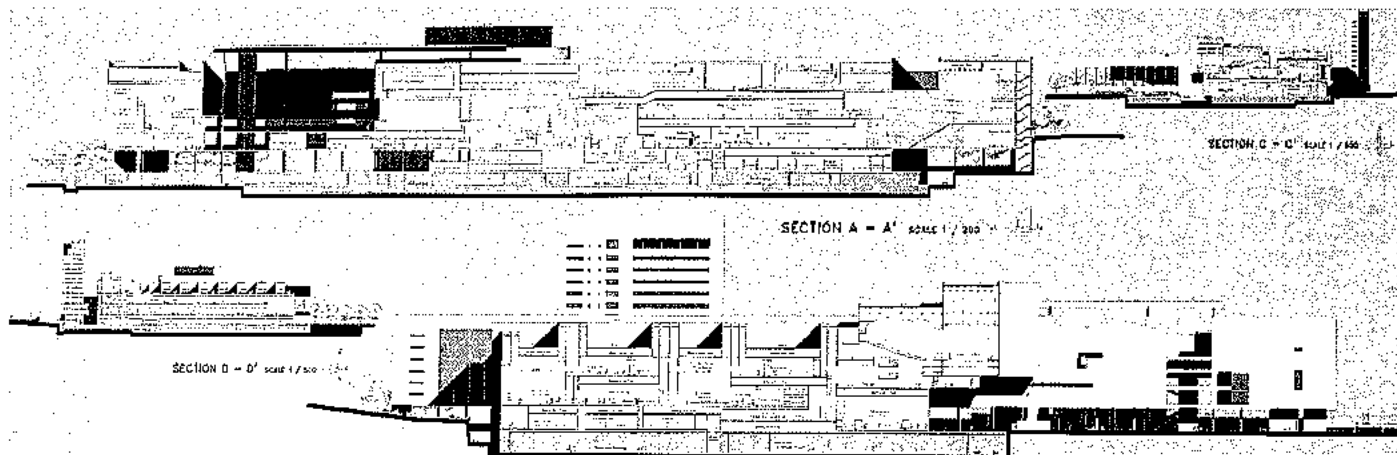
프리티앙드 뽀잠박(프랑스)
선진(엔) (김병년+신재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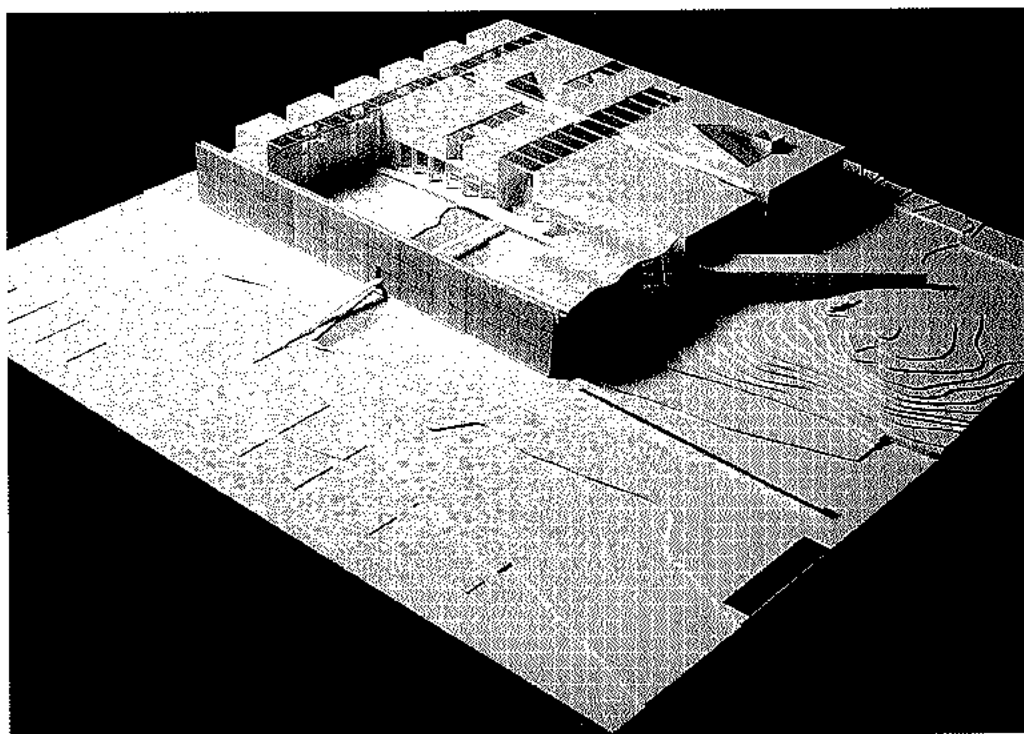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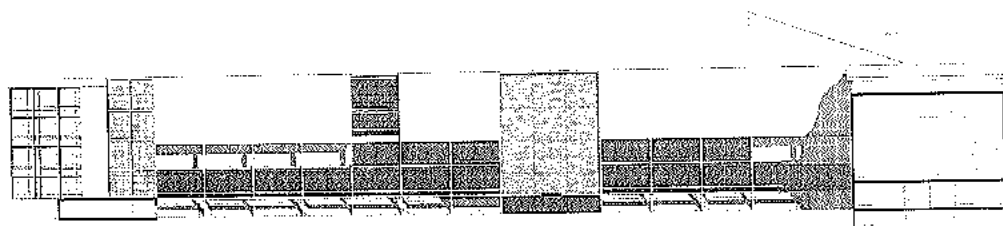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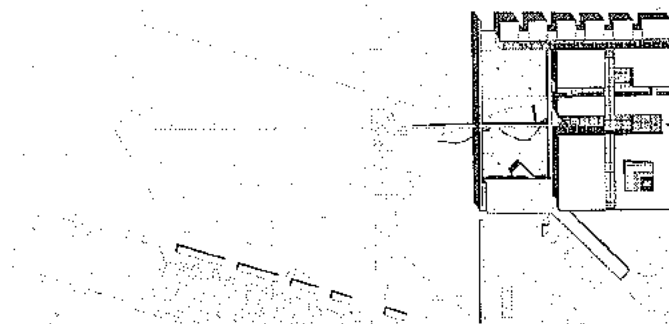
김현철(서울대 교수)
 금성건축(김웅미+김상식)
 김석윤 건축(김석윤)
 김홍식(명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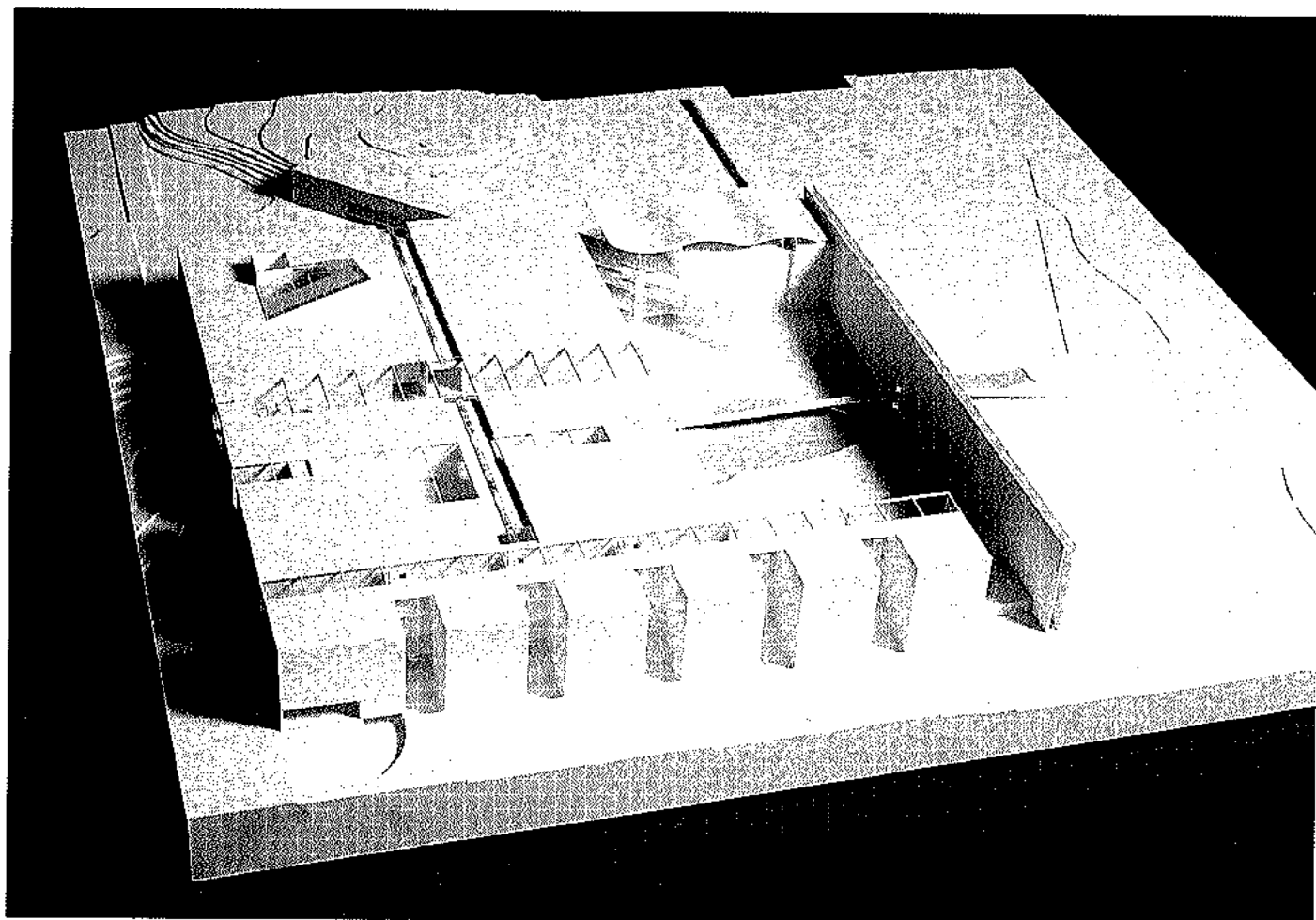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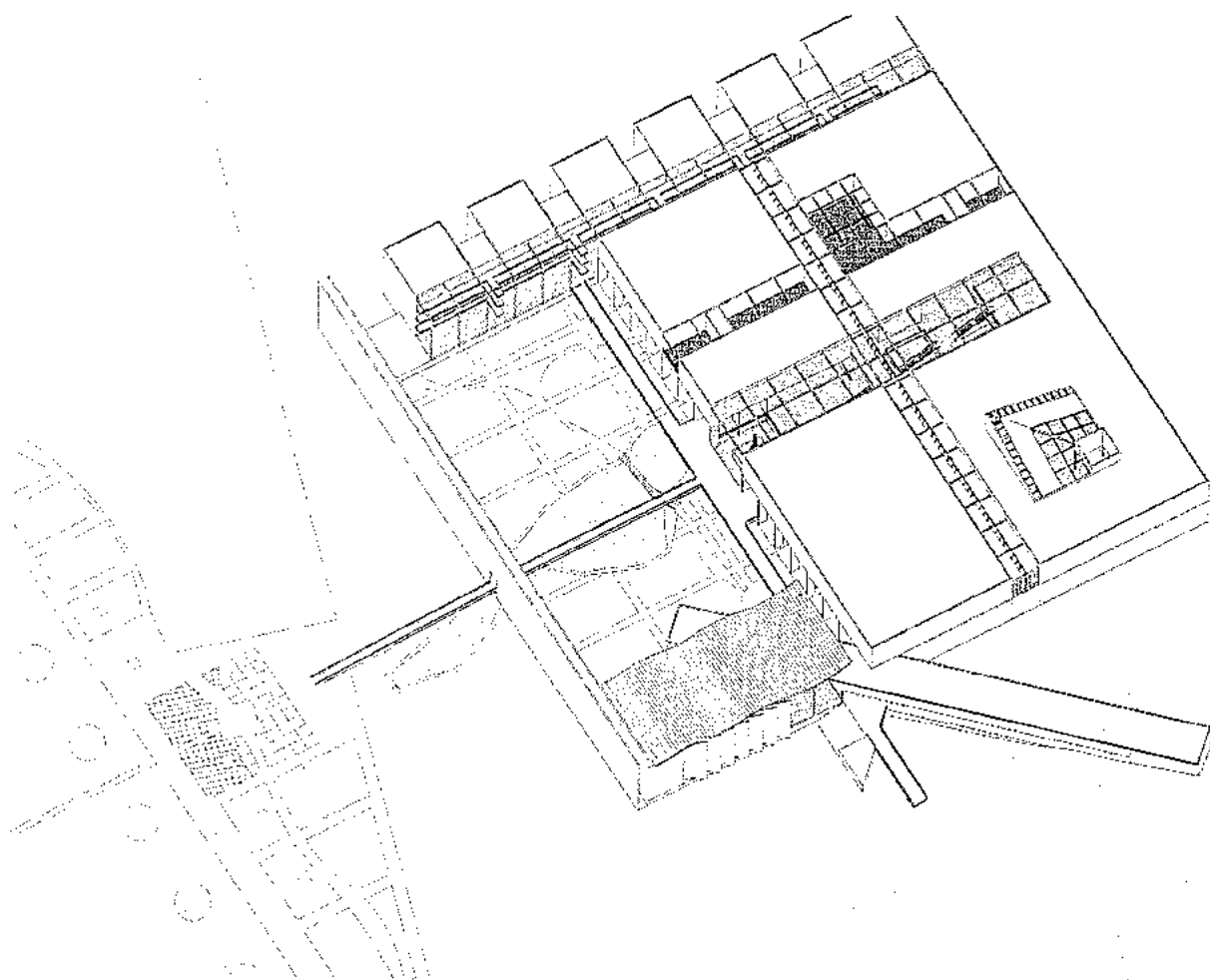




4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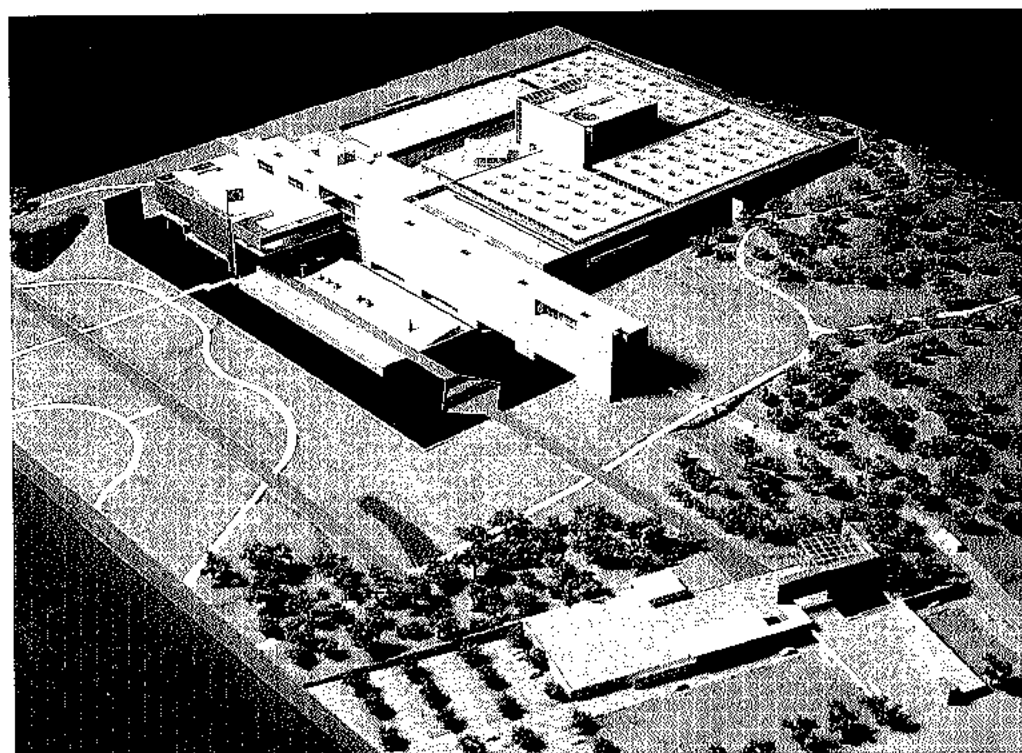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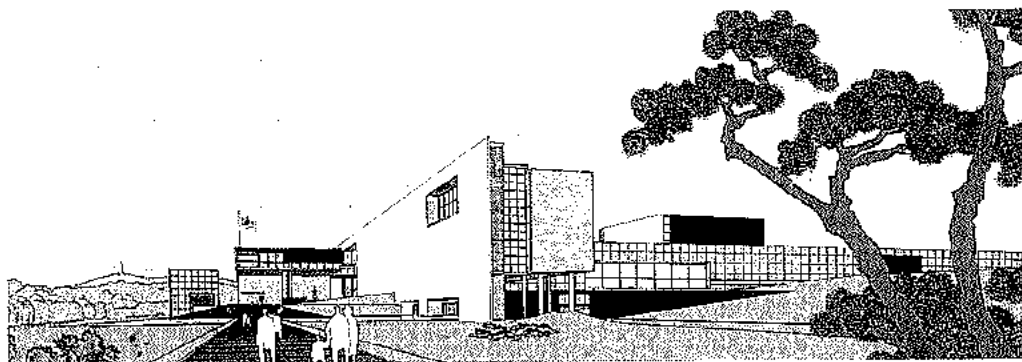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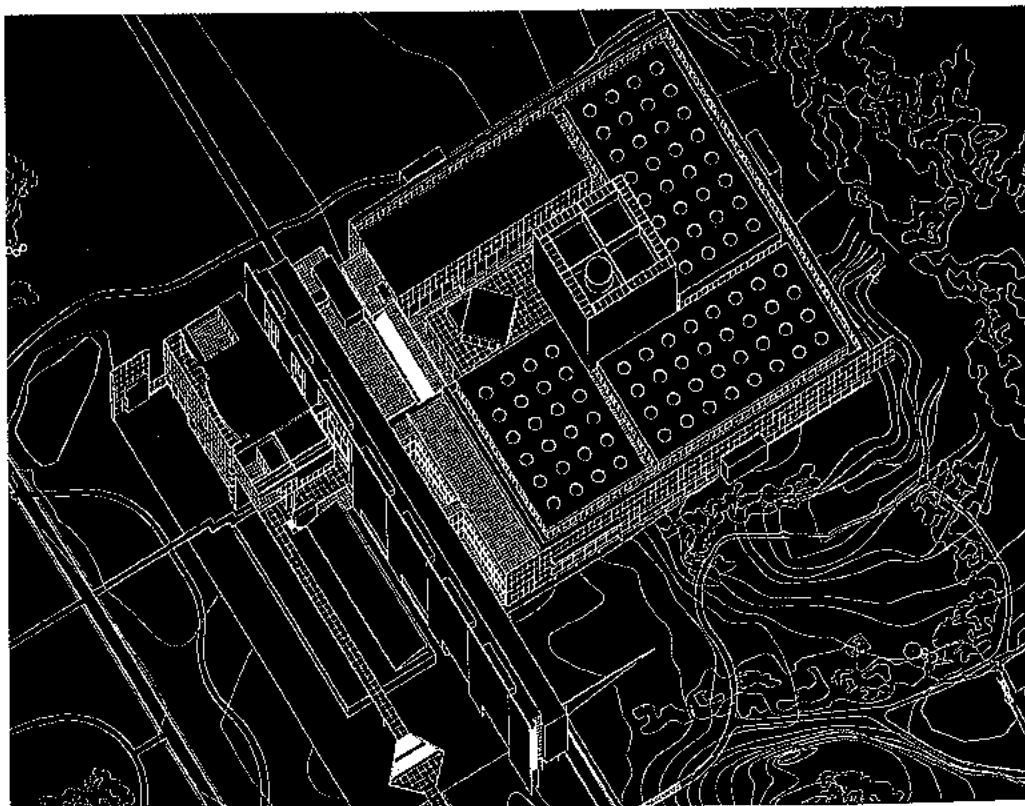
베르너 크리스텐(스위스)
크리스텐 씨들러 웨버(스위스)
곽영훈(환경그룹)
이승우(종합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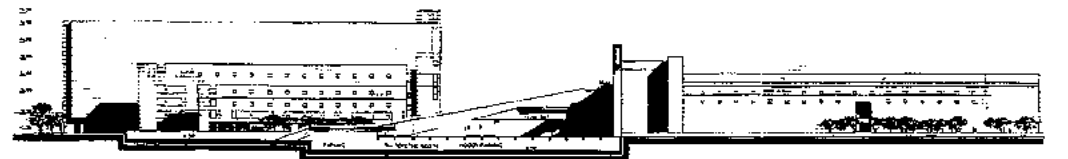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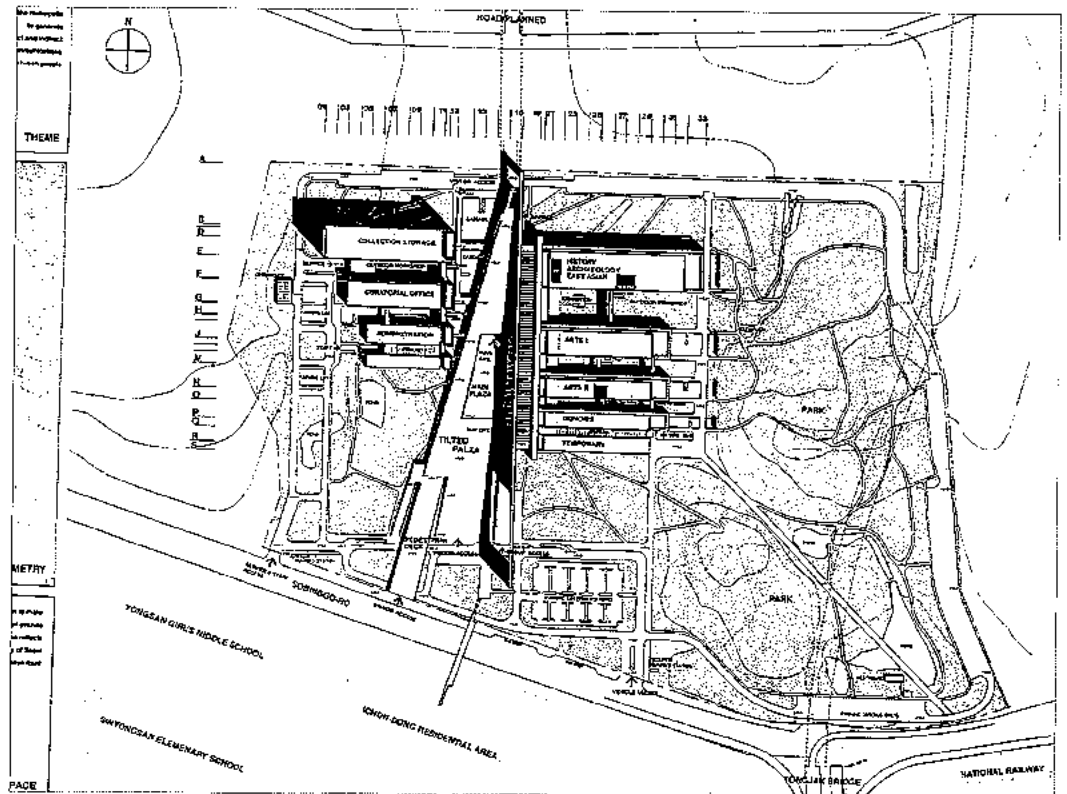
5등

로랑 실로몽 (프랑스)
김홍일 (위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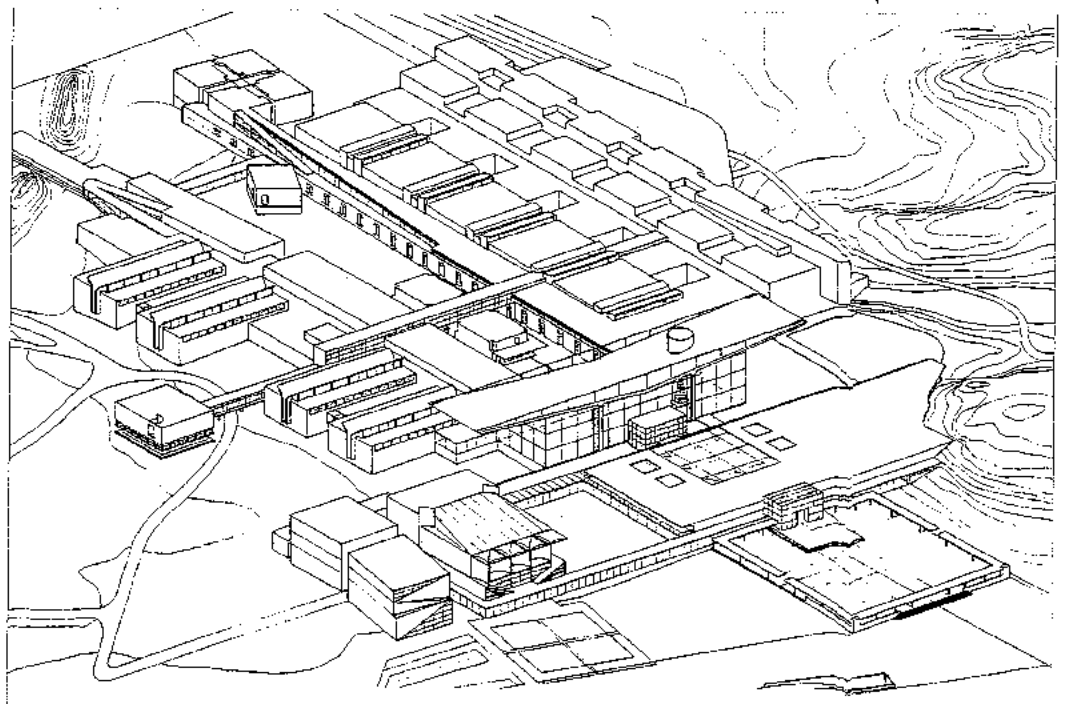
가 작

민현식, 승효상(이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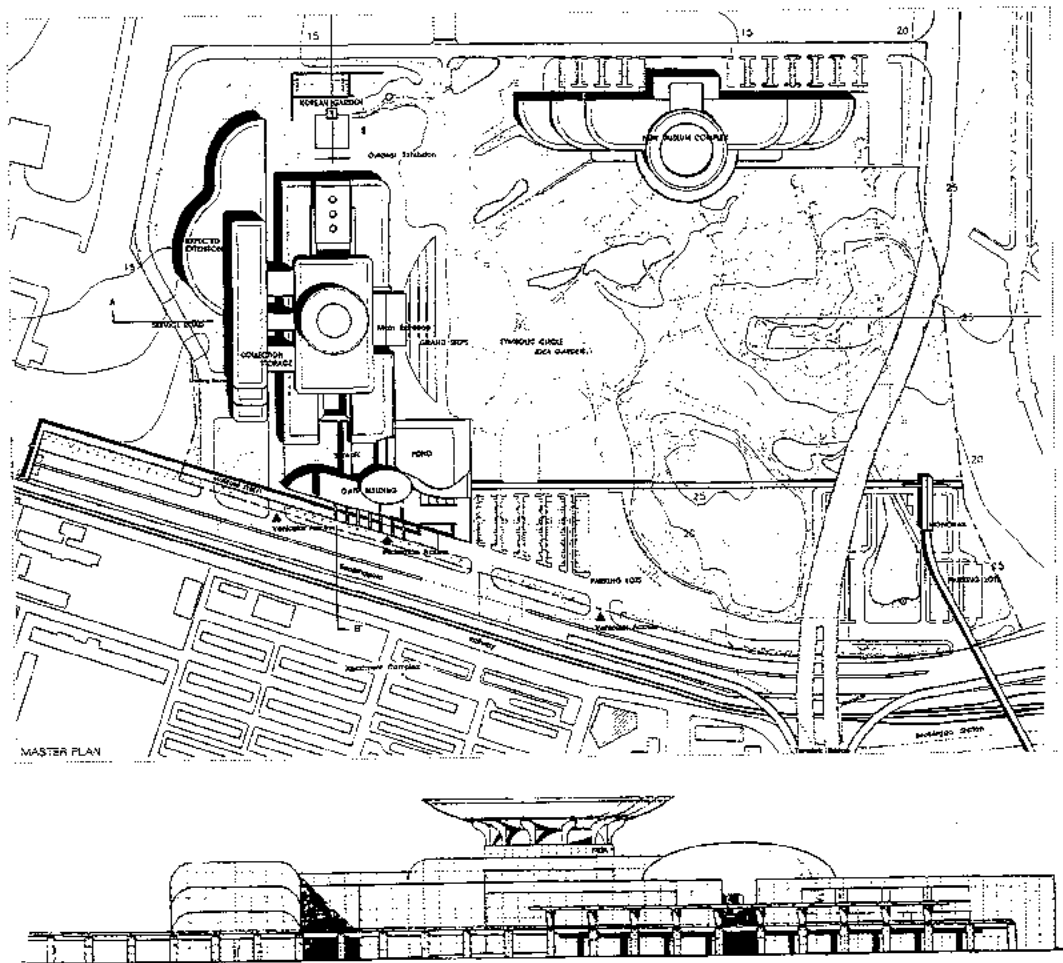
가 작

한규봉 (천일건축)
HENRI GAUDIN
BRUNO GAUDIN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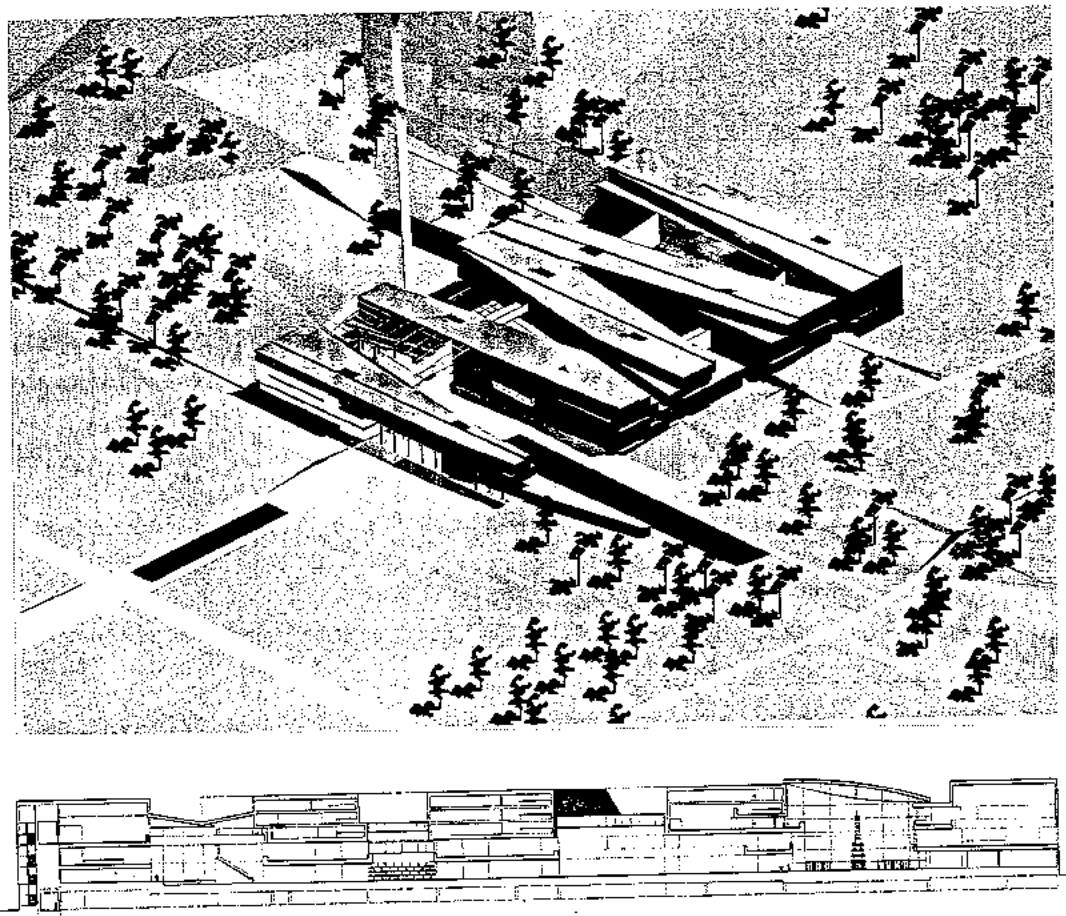
가 작

김석철(아키반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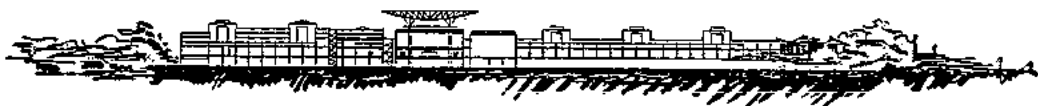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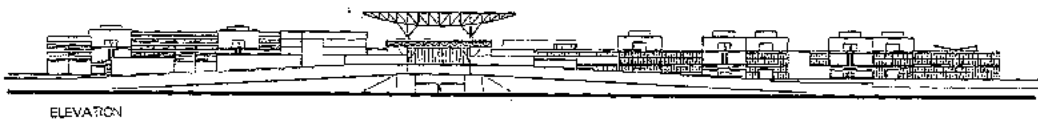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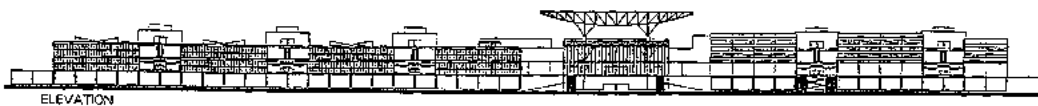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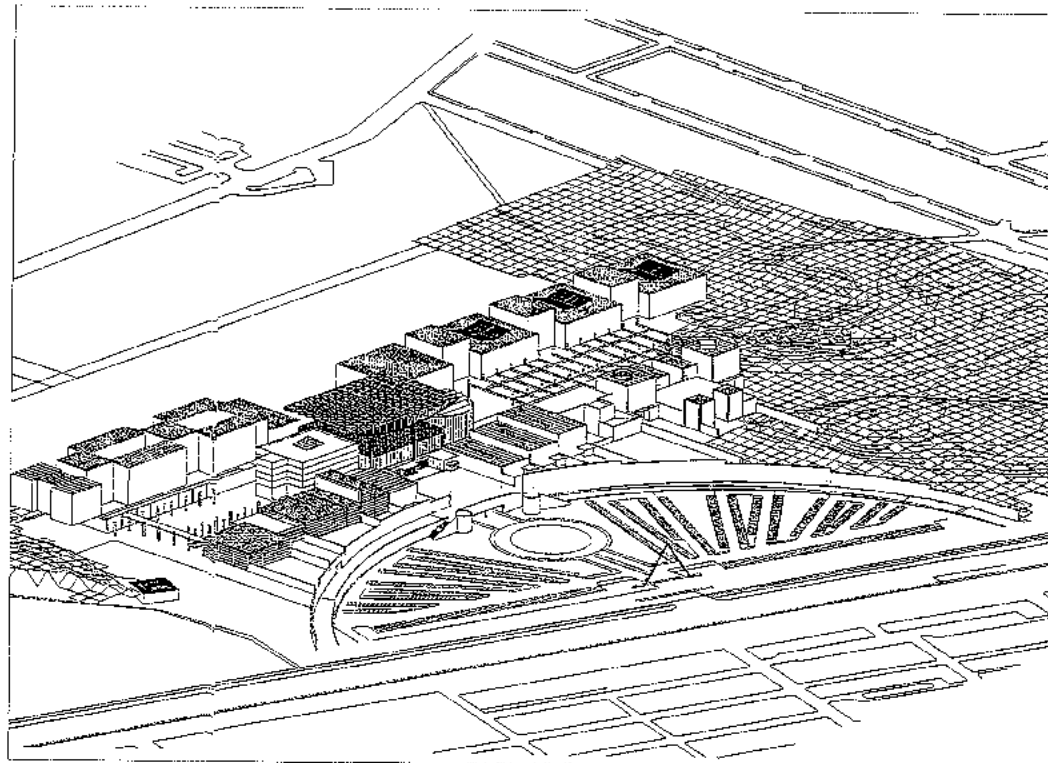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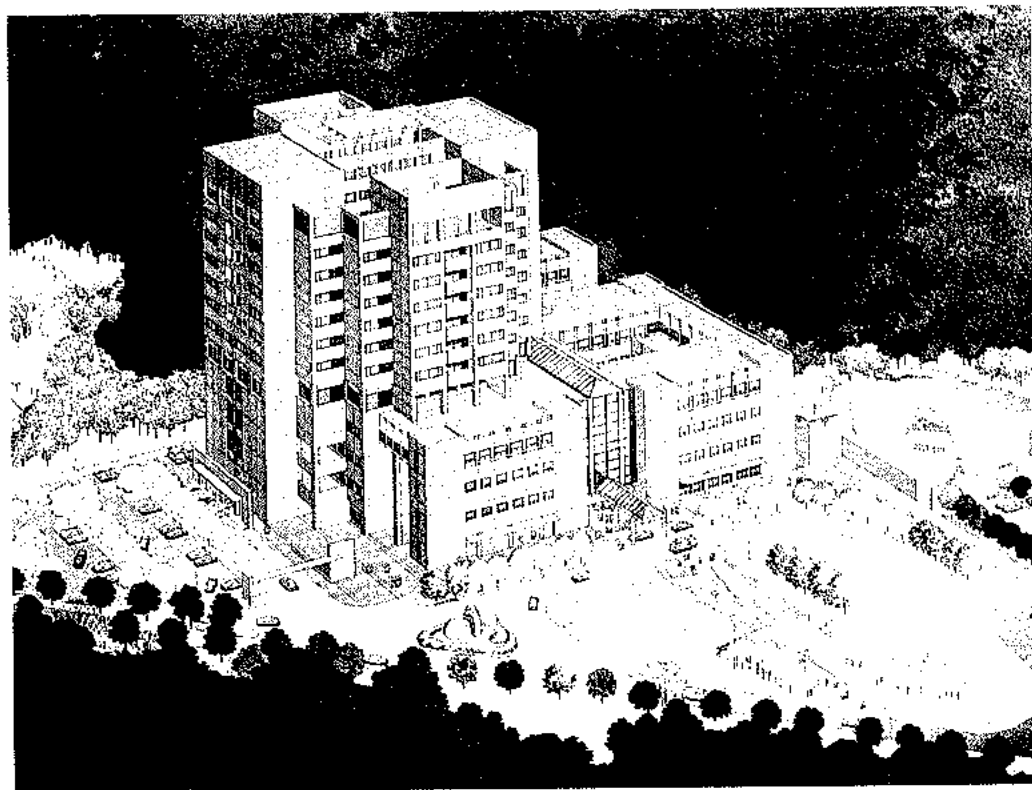
박 승(삼우설계)
한현호(건원국제)
JAMES GARRISON(미국)
ROBERT SEGALL(미국)



가 작

손두호(단우모람)
이 영(경원대학교수)





조감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건국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부속병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원도시건축(윤승중+변용+정현화)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일반진료기능은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교육기능, 수련병원으로서 의료인력 수련기능 등 21세기형 첨단병원으로서 기능을 갖추고자 실시된 이번 설계경기는 지명설계경기로 치뤄져 서울건축, 원도시건축, 우일건축, 정일엔지니어링, 부림건축, TSK수립건축, 희림건축 등 7개 사무소에서 참여했다. 우수작으로는 정일엔지니어링(송기덕) 건축안이 선정됐다.

당선작

원도시건축
(윤승중+변용+정현화)

위치/충주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용 의료 용지
대지면적/120,241㎡
건축면적/5,774.84㎡
연면적/45,357.36㎡
건폐율/4.8%,
용적률/30.98%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배치계획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배치계획은 경사지의 해석과 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래의 증축, 학교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적은 토목공사량과 최소한의 자연의 훼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경사형 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며 진입동선상에서 느껴질 수 있는 위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미지가 없도록 한다. 또한 자연에 큰 손상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기능성을 원바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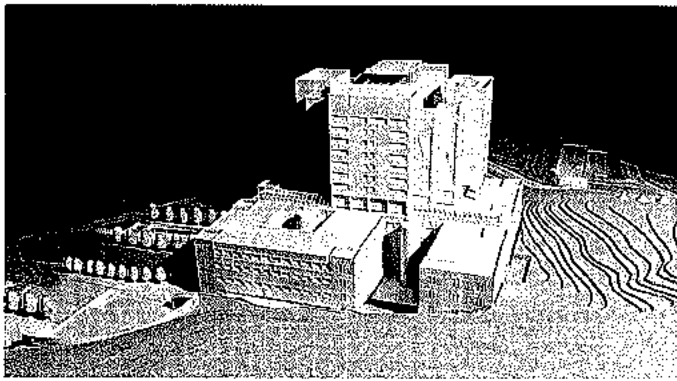
부지내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병원
- 의과대학(예정부지)
- 장례장
- 주차장(옥외, 옥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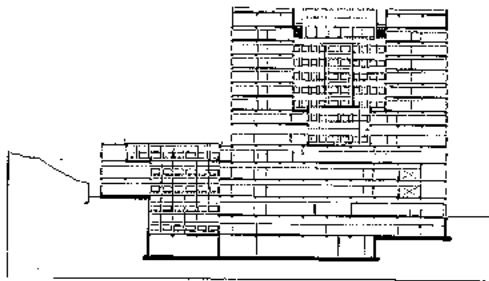
- 지역 근린시설
- 자연녹지 및 조경부분

토시아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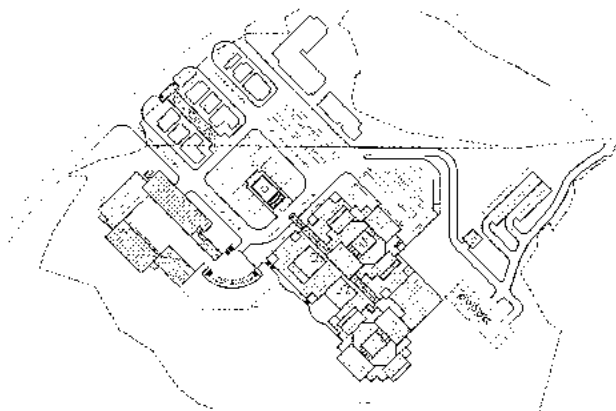
- 대지의 흐름에 맞는 기단부의 각도를 선정하여 경제성과 정면성을 살린 배치형식으로 구성한다.
- 병동부의 시선방향과 공동묘지의 선이 어긋나는 형태의 배치를 계획하여 조망조건을 확보한다.
- 두 병동부 사이의 틈으로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여 배경 자연과의 단절을 피한다.
- 대지의 동·서축을 주진입로의 방향으로 활용하고 병원접근로를 분리하여 타 동선과 차별화한다.



모델사진



단면도



화중배치안

-의과대학 부분(예정부지)

- 병원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연결성과 분리의 필요를 균형있게 조정한다.
- 병동과 의대사이의 심한 경사지는 지하주차장과 상부의 옥외극장을 설치하여 기능성과 함께 완충지역을 형성한다.

-장례부

- 지하에 설치하여 시각적인 차단을 함으로 환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인다.
- 별도의 접근로를 계획하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성격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주차시설

- 외부대지의 Main 주차장을 설치하고 환자를 위한 주차장을 병원 좌측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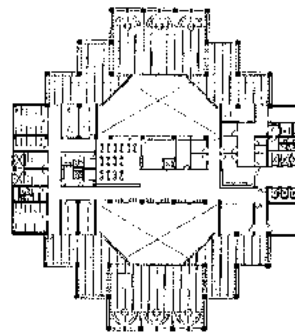
- 의대 건립후 기존주차장은 옥외극장 하부를 이용하고 의대 전용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한다(주차타워 고려).

-지역근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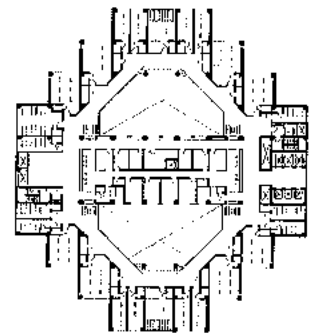
- 병원전면의 광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선큰, 아케이드) 근린시설로 용이한 접근을 유도한다.
- 학교, 병원의 중간적 역할을 한다.
- 증축후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자연녹지 및 조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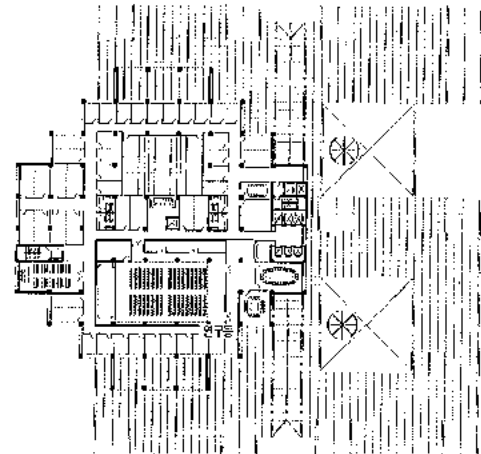
- 자연스러운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 전면광장과 아케이드 부분을 조경요소로 도입하여 활동적인 분위기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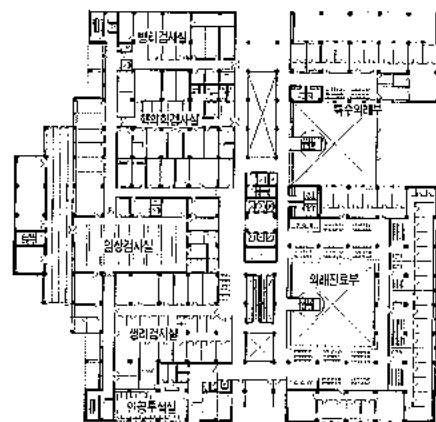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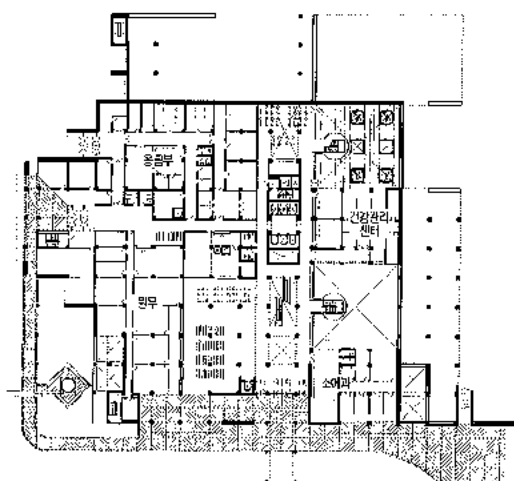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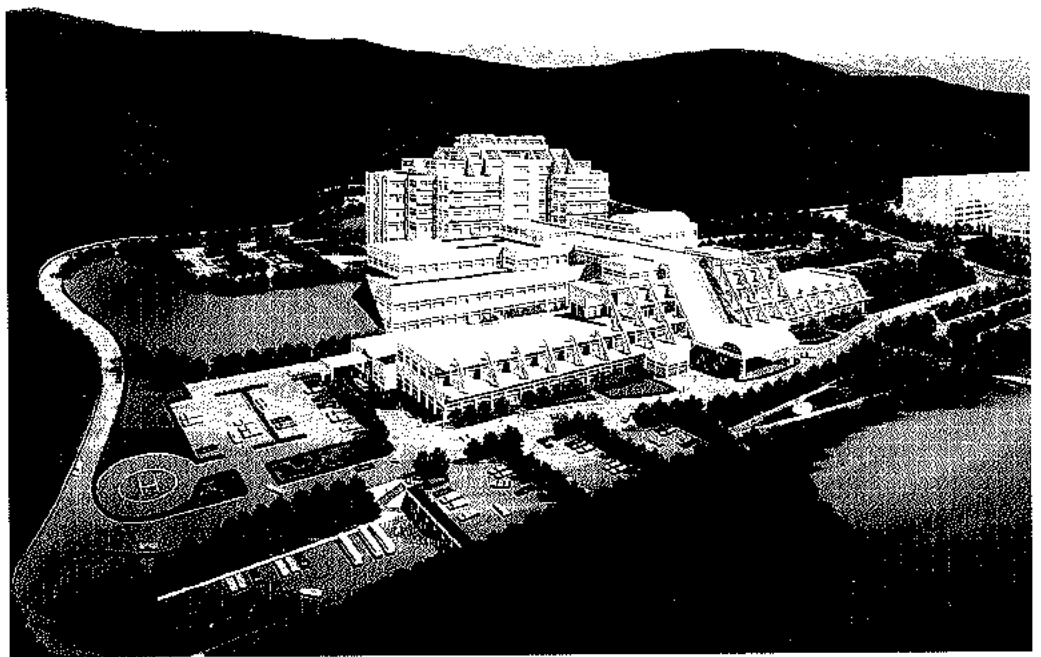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조감도

우수작

정일(엔)건축(송기덕)

대지면적 / 120,241㎡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건물용도 / 의료시설

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옥탑2층

건축면적 / 10,873.34㎡

연면적 / 45,0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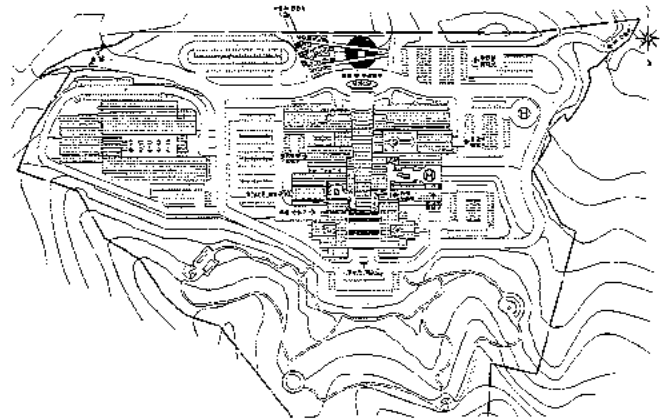
건폐율 / 9.04%

용적률 / 32.36%

병상수 / 532병상

주차대수 / 계획-437대(법정: 301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이 계획은 건국대학교 충주 지방 캠퍼스내에 위치하는 대학 병원으로서 경사진 산림지역에 위치하므로 자연환경의 최대한 활용과 중부권 지역의 "지역의료시설계획의 차원"의 포괄적인 내용(각종 의료혜택 및 각종 교육과 자료의 제공)을 담아야 하며, "병원의 성장"이라는 요구조건에 원활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설계가 주안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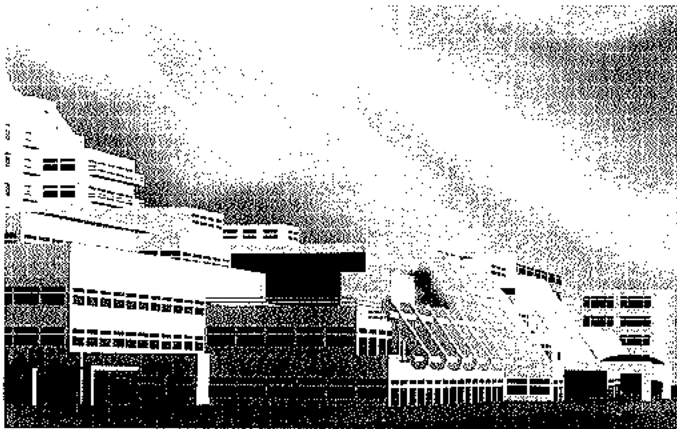
병원설계의 기본 방향 설정

환자 중심의 공간계획의 목표 아래 환자의 쾌적성 제공을 위해 천창, 아트리움, 테라스 등 자연환경의 최대 이용, 그리고 병원 기조를 도입하였고, 동선체계의 단순화와 위계화를 설정, 내부동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 효율성과 기능성을 증대시켰다. 의료시설의 500병상을 시작으로 장래증축을 1,000병상까지 완료를 목표로 이에 필요한 증축 대비를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병원 증축특징 성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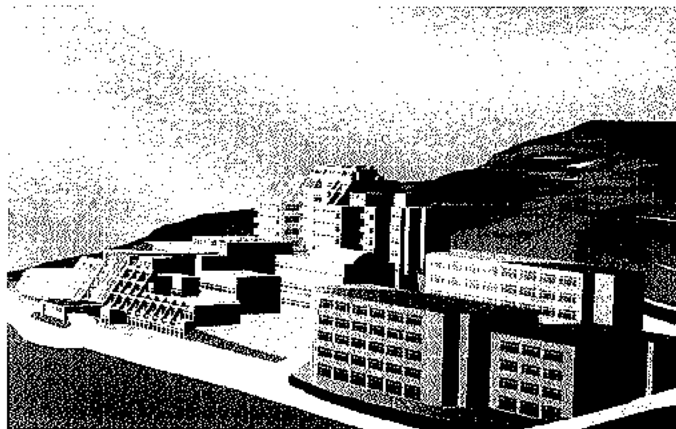
확실성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성장축을 설정하고, 증축되는 시설을 분야별로 1) 외래부, 2) 응급부, 3) 한방, 재활부, 4) 중앙진료부, 5) 병동부 6)연구관리부, 7) 서비스 및 설비부로 구분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별로 성장축을 따라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고층의 수직적 병원형태에서 탈피하여 저층의 수평적 병원 형태를 선정, 경사축의 방향으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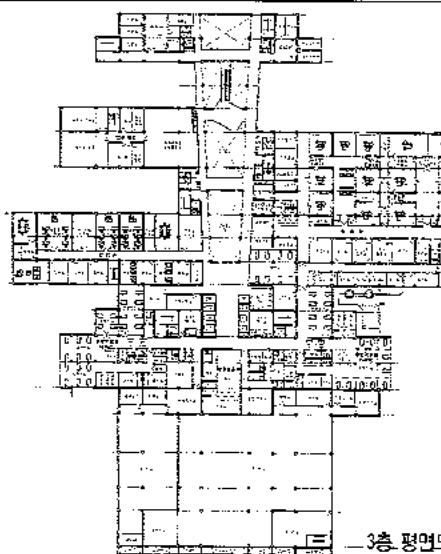
CAD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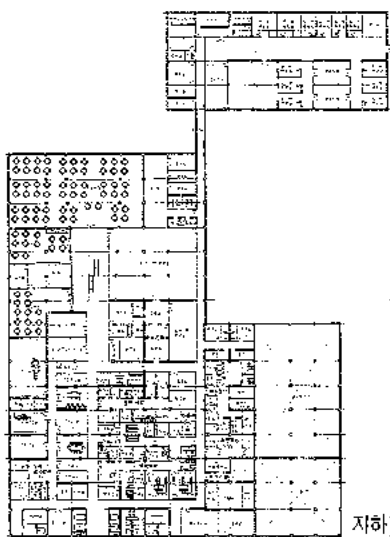
CAD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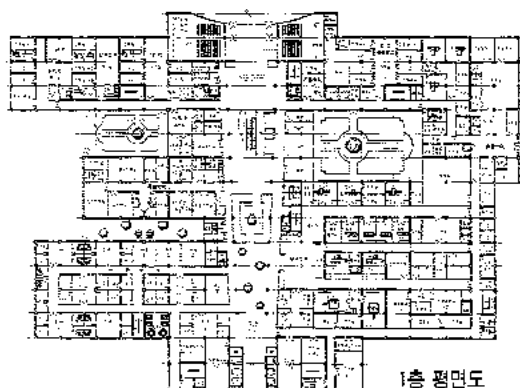
5~6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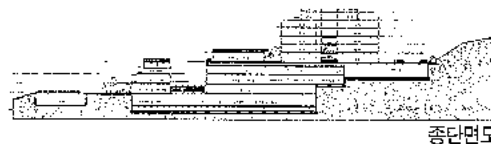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치하고 전면부에 외래부 및 응급부를 설치, 환자들의 출입구를 쉽게 하였으며, 외래부, 응급부, 한방, 중앙검사, 관리부, 병동부 등으로 건물을 분리 조합함으로써 터부서의 영향없이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각 부분별로 전용 주차장을 분리 설치, 환자의 출입도 독자적으로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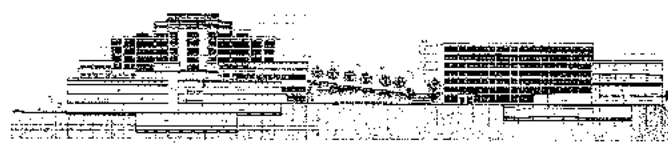
평면계획

기능 단위의 인접성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의 평면이 Deep Plan이 되는 경우는 자연채광과

자연환기의 적극적 도입으로 (Courtyard ; Sunken garden, Skilight) 기계적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였으며, 지층 형으로 수직적 이동경로를 최소화하고 스트레치나 휠체어, 키트 등의 바퀴달린 기구의 이동 편의를 위해 수평적 동선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형으로 확장가능한 내부, 외부 복도를 갖도록 하고 건물의 끝면은 성장이 가능하게 열려 있도록 하였다.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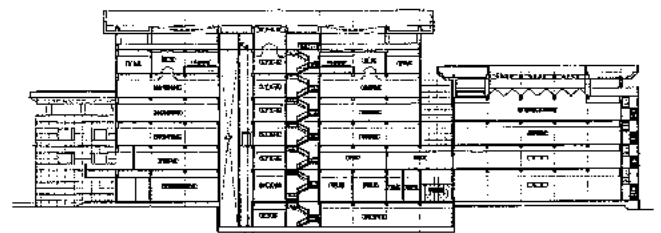


투시도

대전산업대학교 중앙도서관

TAEJON National Polytechnic University Library

대전산업대학교에서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 특성에 맞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건축문화의 상징으로 중앙도서관을 건립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4개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신화(엔)건축(김인수+최재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일반공개경기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시원건축(박창권)안이, 가작에는 이방건축(김광출), 천일건축(한규봉), 선건축(오선교)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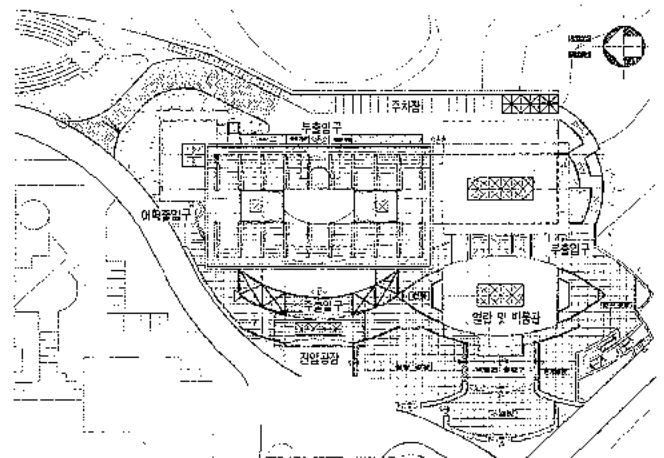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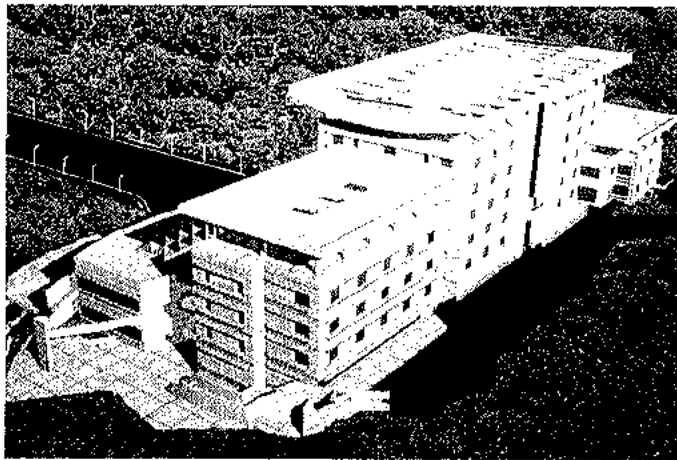
당선작

신화(엔)건축
(김인수+최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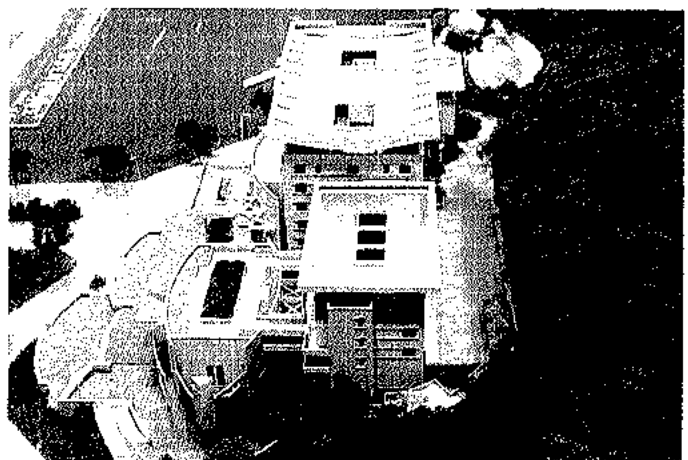
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덕평동
대지면적/8,200㎡
건축면적/3,253.9㎡
연면적/13,469.59㎡
규모/지하1층, 지상6층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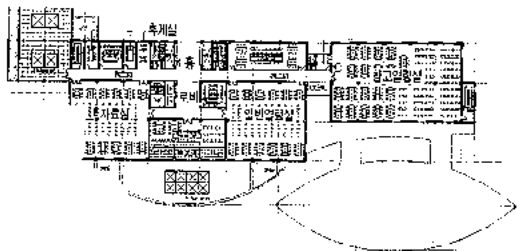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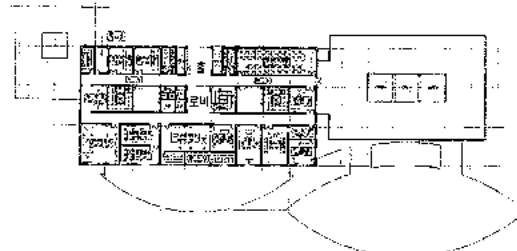
CAD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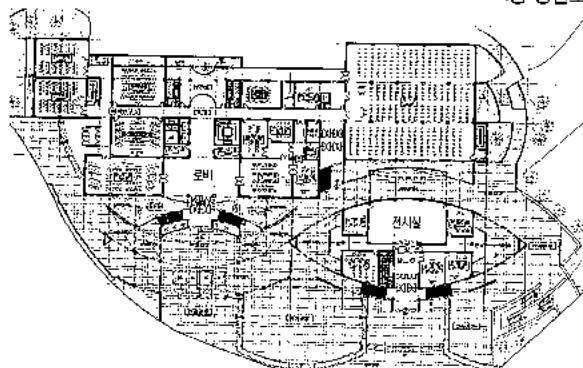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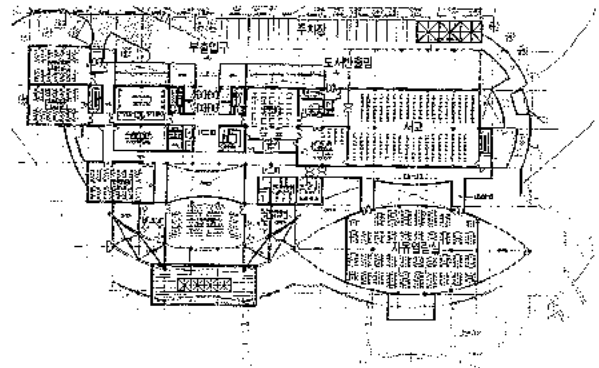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계획

-배치계획

- 주축을 중심으로 주출입, 수직 이동 동선 Main Mass의 위계 확보
- 채광, 환기가 양호한 남측으로 도서관, 박물관을 두고 북측에 여학연구소, 전자 계산소 배치
- 서고 및 열람실 일부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보차 분리를 위해 보행자 동선을 대지 전면면에, 주차 동선을 대지 후면에 둠
- 축을 중심으로 양분된 캠퍼스를 기반부의 유선형 흐름을 통하여 접근을 원활하게 함

-축의 설정

- 교문, 대학본관, 도서관 복용공

원으로 이르는 축을 주축으로 하고, 복도를 잇는 남북측 출구를 방위축과 부축으로 하여 건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을 계획함

- 캠퍼스 마스터플랜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축을 강조하여 계획함

-외부공간

- 도서관에 이르는 지점에 광장을 배치하여 동선을 유입하고 캠퍼스 내의 중심성을 강조
- 광장과 연계되는 녹지공간을 기반부와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배치상 균형과 통일감 확보
- 대지의 고저차를 계단과 조경을 설치함으로써 대지의 효율적 사용과 쾌적성 향상

평면계획

-개념설정

- 중앙홀 및 분산계단을 통하여 도서관블록, 여학블록, 전산블록의 자연스런 구분
- 중앙홀 및 천창의 Void로 인한 다양한 시각적 질의 유입 및 내부 휴게공간 형성
- 저층 기반부의 유선형 공간 및 통로 확보를 통하여 유기적인 공간조성과 안정감 확보
-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이용 계획에 의거 학생이용 엘리베이터 및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동선계획

- 상징성 및 인지도를 고려하여 주축선상에 주출입구를 두고 대지의 높이차, 실기능별 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동선을 명확히 구분

• 이용자(학생)동선

학생 및 이용자의 접근을 중심, 좌 우측 영역을 통하여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에 이르게 하였으며 기능별 영역을 구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

• 직원 및 자료 동선

대지 높이차에 의한 북측 Service 도로 이용하여 2층 전용 출입구를 통해 반입되며, 동선 처리는 전용 Core를 통해 엘리베이터 및 덤웨어를 이용하여 이동

• 신체 장애인 동선

신체 장애자는 1층 및 2층 출입구로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전용 이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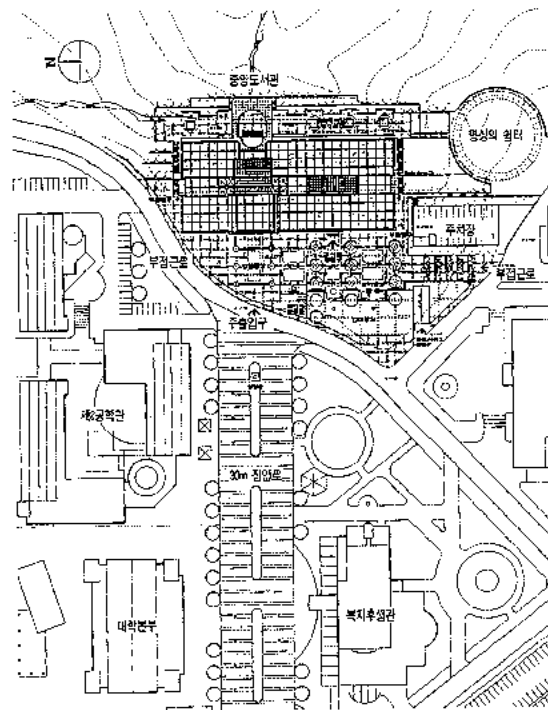


투시도

우수작

시원건축(박창권)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건축면적 / 3,084.5㎡
 연면적 / 13,158.91㎡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Post Tension



배치도

배치계획

배치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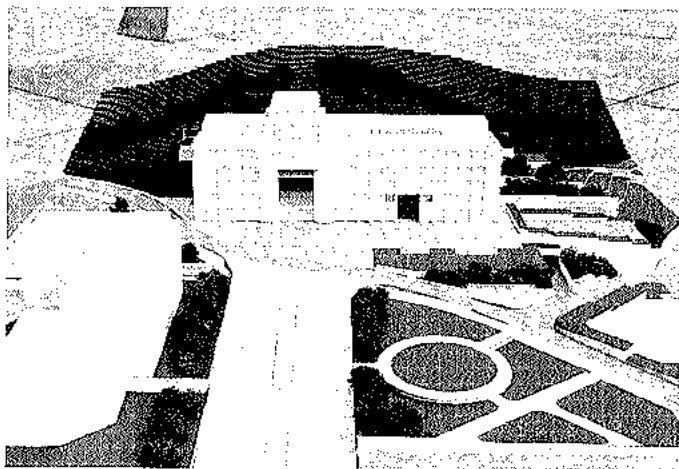
- 기존지형 및 절, 성토를 고려한 계획수립
- 캠퍼스 코아로서 중앙도서관으로의 접근성 강조
- 내외 공간의 합리적 구성에 의한 배치계획
- 기존 수립의 최대한 보존

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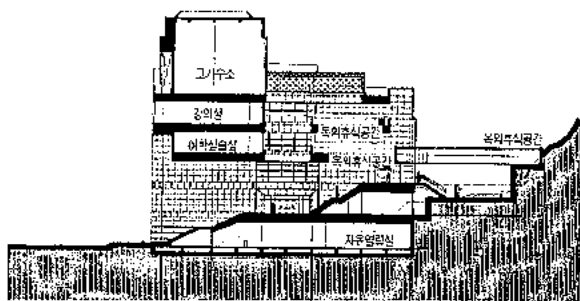
- 중심축 : 캠퍼스 진입축을 상징축으로 도서관을 관통하여 배면산까지 연장한 중심축 설정
 동서 방위축과 배면산 정점의 접근 시각축과 일치
- 부축 : 전체 대학캠퍼스의 지형축으로서, 남북 방위축을 기준 배면산 능선에 의한 남북 지형축으로 배경 역할

건물배치와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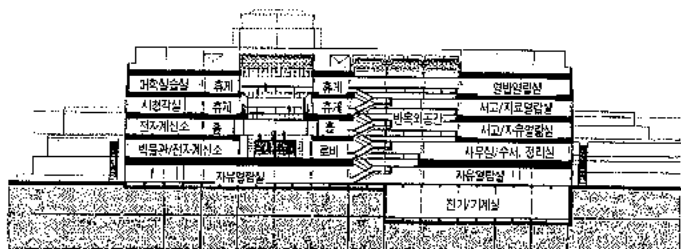
- 단일 매스에 의한 건물배치로 상징축에 대한 중심성과 정면성을 강조
- 중심축 양쪽 캠퍼스 건물군과의 연계를 고려한 건물배치
- 지형레벨의 이용과 동선을 고려한 시설배치



모형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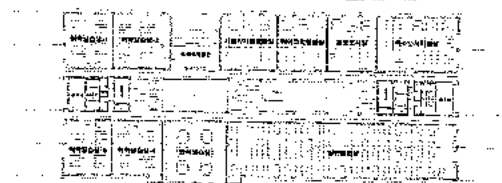
횡단면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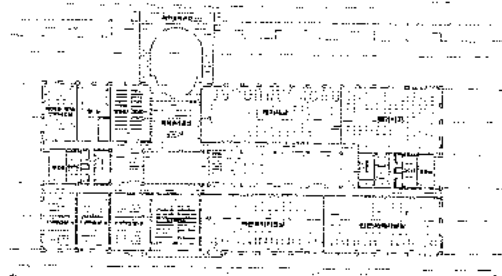
- 미래의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을 추구
- 도서기능 영역과 부속기능 영역 (박물관, 전자계산소, 여학연구소, 시청각실)의 영묘한 공간배치가 가능하도록 배려
- 자연채광, 녹지, 옥외공간의 도

입으로 내외공간의 유기적인 실내환경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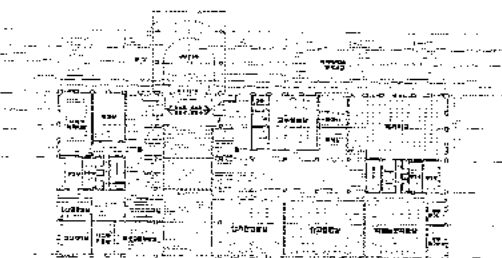
- 자유열람실은 B.D.S 영역외에 두어 24시간 개방체제로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고려
- 각 층마다 휴게실을 두어 흡연 및 소음 발생원을 감소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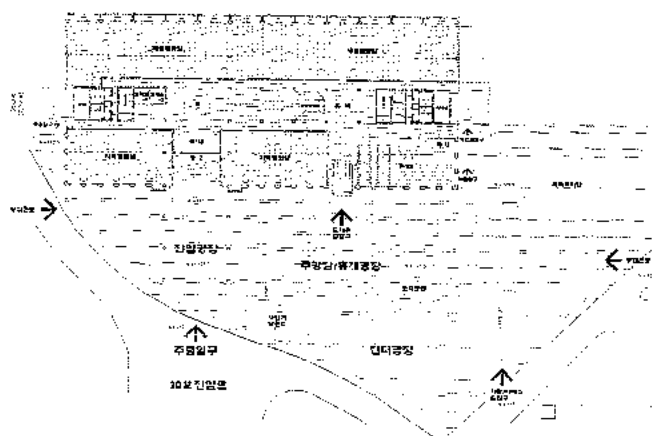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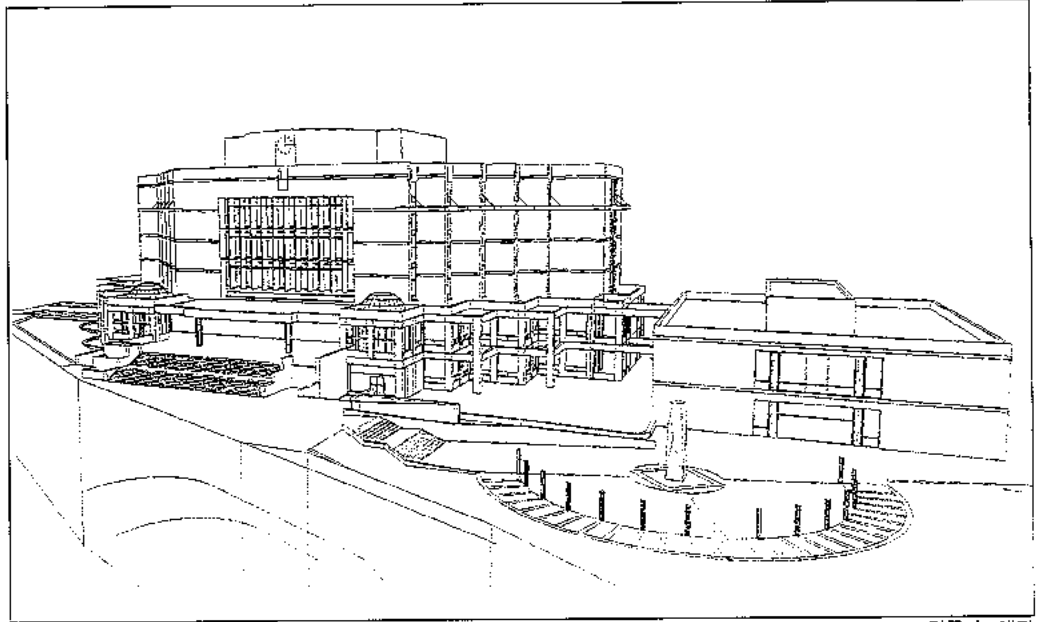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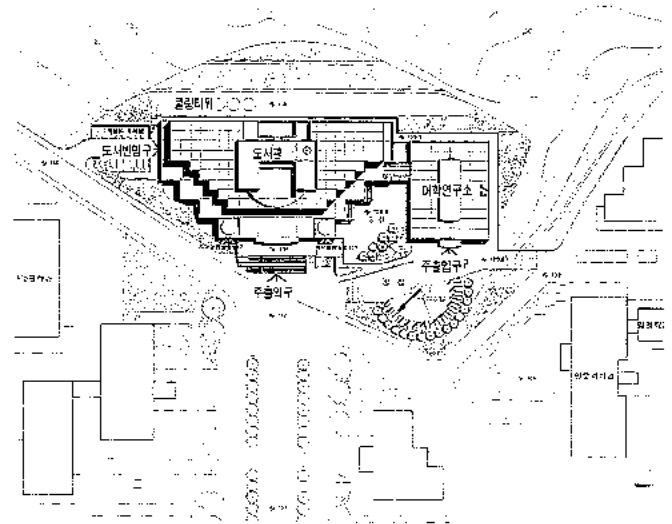


컴퓨터그래픽

가 작

이방건축(김광출)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건축면적 / 3,990.16㎡
연면적 / 13,472.72㎡
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배치도

배치계획

—정면성의 강조
도서관의 배치는 캠퍼스의 진입 축인 종축을 중심축으로 하고 좌우 방향을 길게 대칭으로 놓아 정면을 부각시킨다.

—도서관의 상징성추구
부지형상에 따라 정면은 점차 후퇴되는 모양을 취하며 이것은 흡사 펼쳐져 있는 책과 같은 이미지를 내포한다.

—석조건축의 품위 제고
저층부는 기단으로 처리하여 수직이 강조된 Main Mass와 대비되도록 하며 석조건물의 장중함이 느껴지도록 한다.

—COMPUS CORE로서의 장소성 부여
대지와 건물의 배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외부 공간은 학생광장으로서 학생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기능배분 및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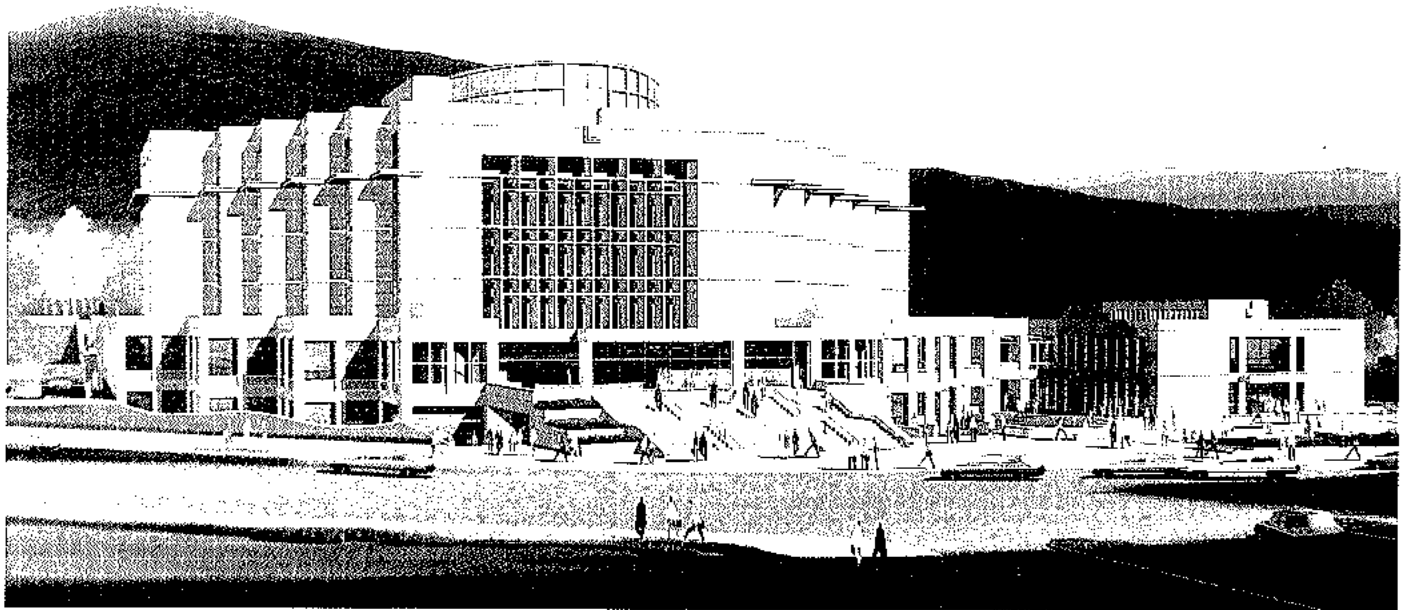
—전관 개가열람식 채택
이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이상형인 전관 개가열람 방식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자료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자유열람실을 위한 별도 출입구처리
자유열람실은 24시간 개방을 전제함으로 지하층에 별도의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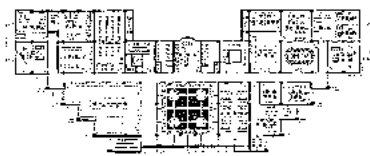
를 두어 도서관의 다른 부분이 폐쇄되었을 때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어학연구소의 별도처리
어학연구소는 별도로 분리시키고 별도의 출입구를 둔다.이부분은 장래 자유열람실 또는 특수열람실등 별관기능의 도서관으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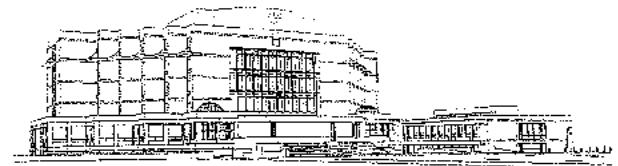
—전자계산소와 박물관을 위한 별도의 수직동선
5층 전자계산소와 박물관을 위한 별도의 직통계단을 두어 도서관의 B.D.S 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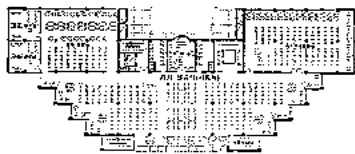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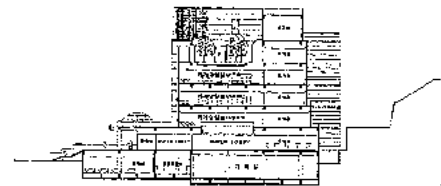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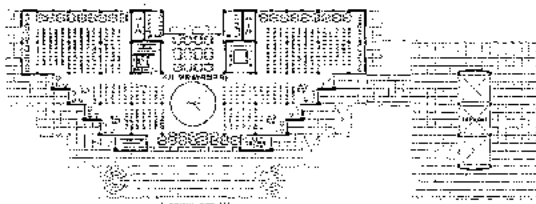
컴퓨터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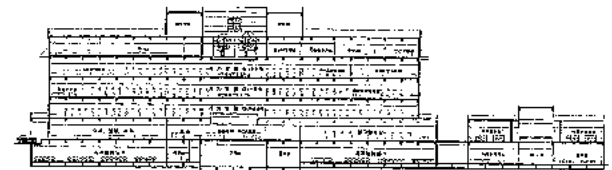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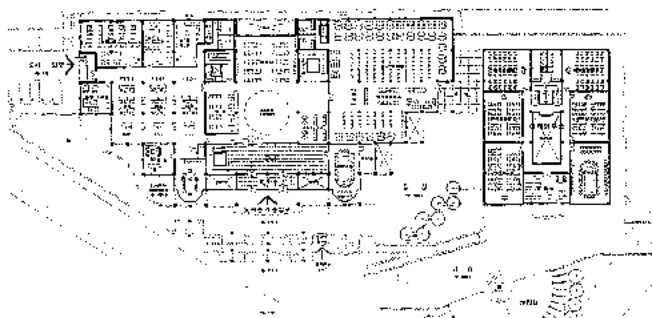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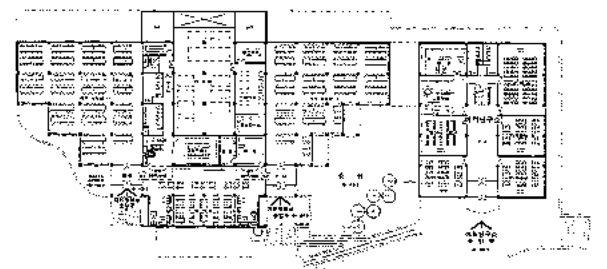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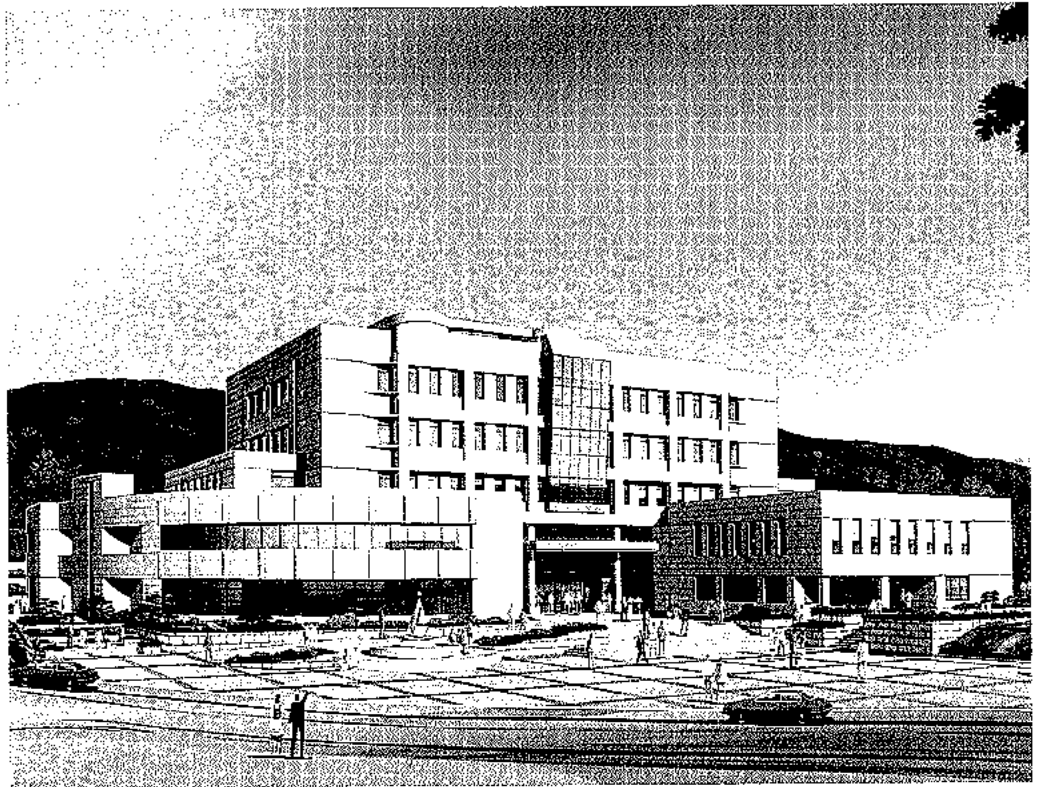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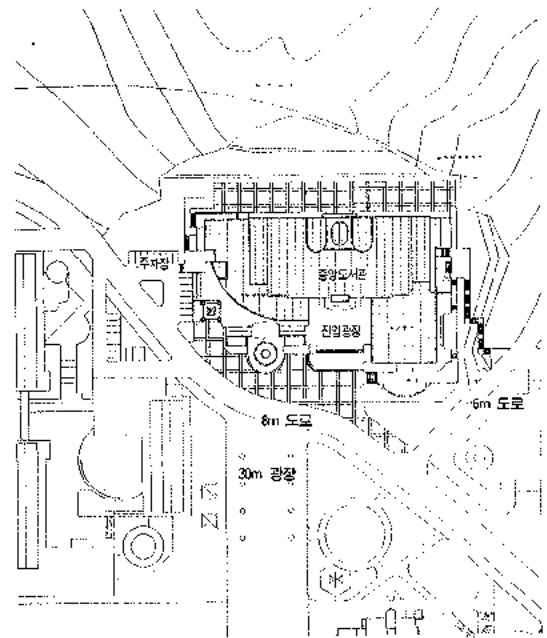


투시도

가 작

천일건축(엔)
(한규봉)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대지면적 / 8,200㎡
건축면적 / 3,214.58㎡
연면적 / 12,970.65㎡
건폐율 / 39.20%
용적률 / 126.53%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텐조



배치도

기본 개념

- 도서관 정보의 대량화, 자료의 형태변화, 그리고 열람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내부공간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충분히 확보
- 자료의 전산화와 마이크로 시대에 대비하여 여유있는 마이크로 열람실과 자료실 확보
- 기능적인 면에서 경제성 접근성, 가변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구획 및 구조체계, 모듈계획
- 캠퍼스 전체 시설간 연계기능에

통합되며 캠퍼스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발전 방향축과 주진입 접근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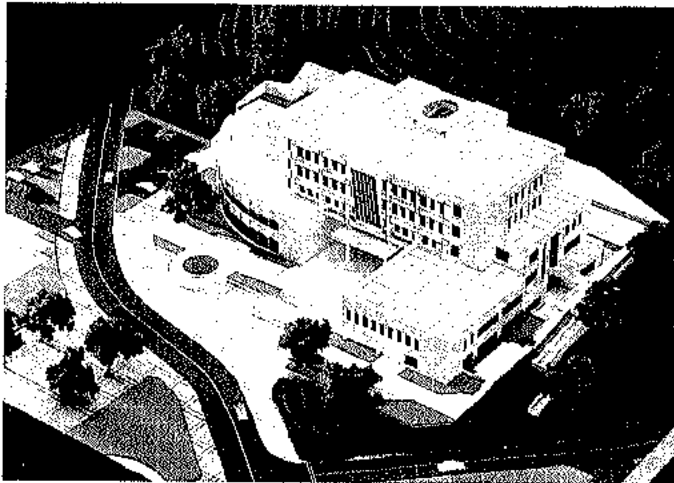
배치계획

- 진입도로의 축과 일치시켜 외부 공간과의 연속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도가 강조되도록 배치축 설정
- 후면 녹지공간을 휴게정원으로 하여 휴식공간 확보
- 도서관 전면 여유 공간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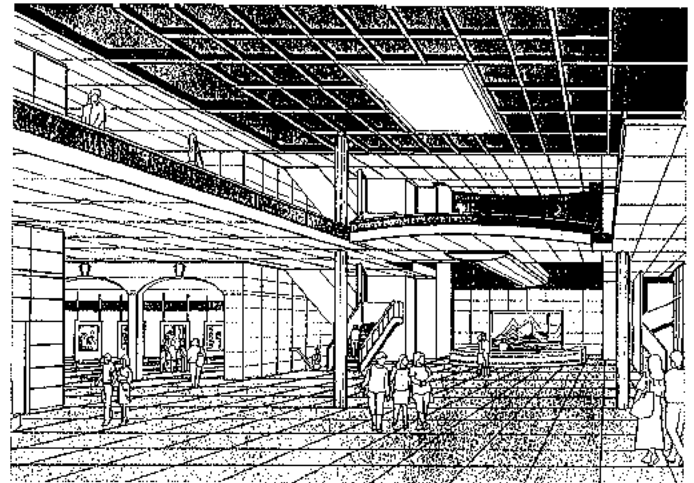
광장 및 스텝기든 등으로 조성
- 지형, 지세를 고려하여 건물의 형태가 지세와 조화를 이루도록 단아하면서 풍부한 건축적 효과와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는 접근 유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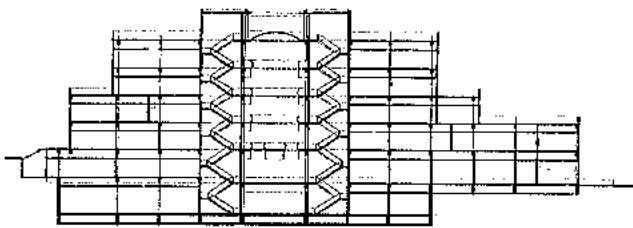
- 기능의 분리와 연결이 용이하게 코어의 위치 설정
- 지형 고저를 이용한 계획으로 각 공간별 이용자의 접근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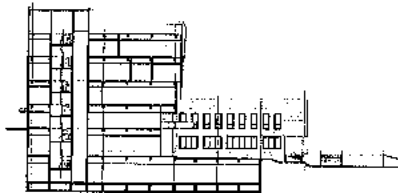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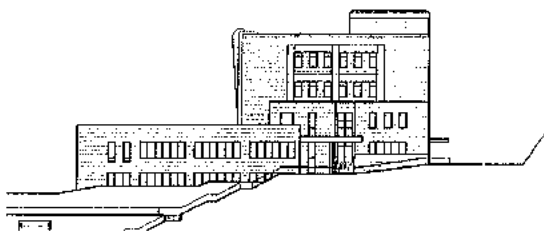
실내 루시도



측단면도



중단면도



후측면도

높이고 이용자별로 명확한 동선 체계의 조직화 시도

- 박물관, 어학연구소, 시청각, 전자계산소, 도서관 등의 다양한 기능의 복합건물로 공간 기능별 출입 동선을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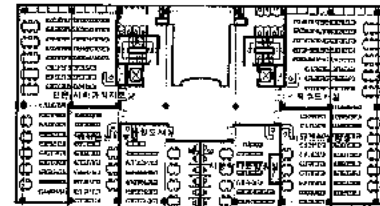
입면계획

- 대학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적극적인 이용장소
- 이로 외장적으로 친근감 부여
- 보수적인 장중함과 진취적인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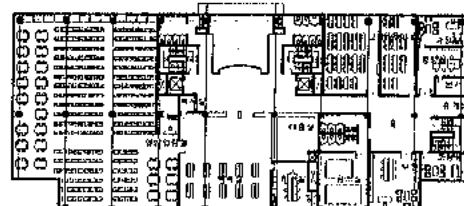
향을 동시에 표출하기 위하여 기단의 개념과 수평선의 요소 도입

- 1,2층을 기단의 개념으로 계획하여 장중함을 표출하고, 고전적 입면의 변화를 통한 현대적 감각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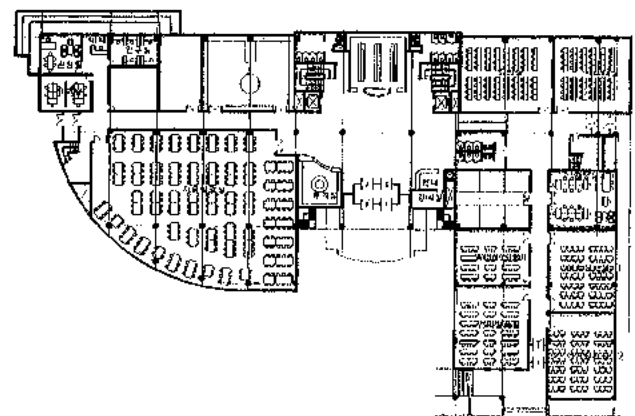
- 디자인 요소의 반복사용으로 통일된 이미지 전달과 부분적 디자인 요소의 변화있는 리듬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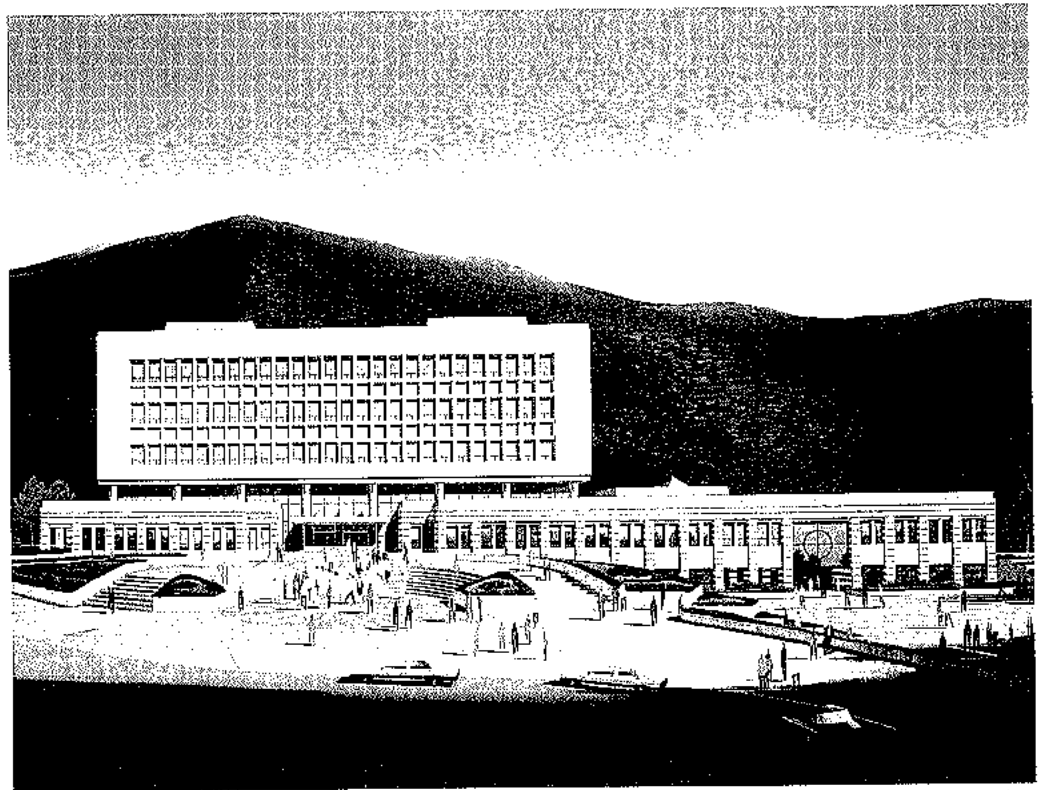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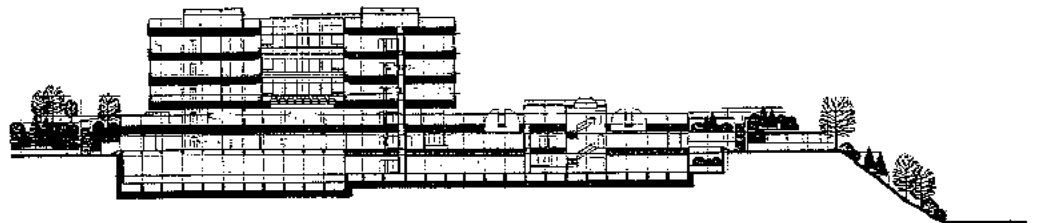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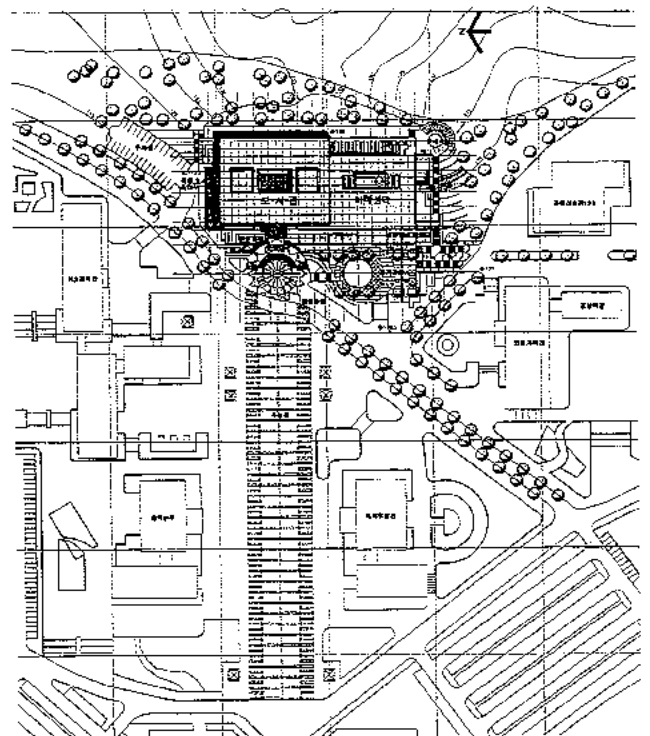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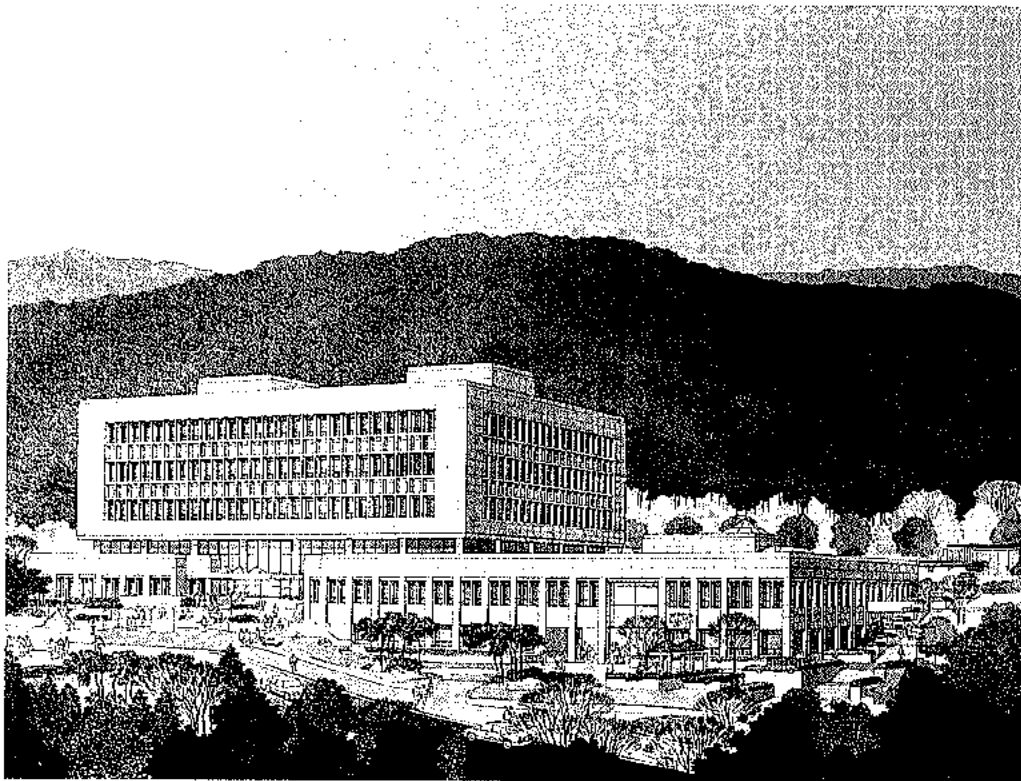
가작

선건축(오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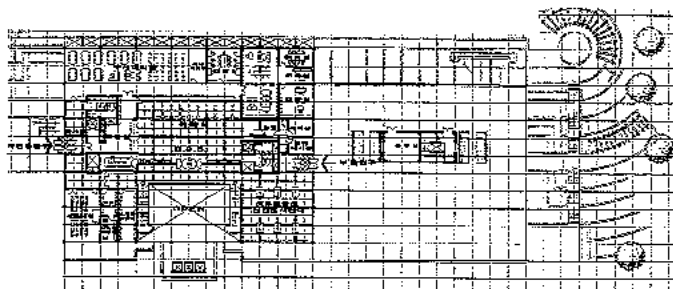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대지면적 / 8,200㎡
 건축면적 / 3,492.84㎡
 연면적 / 13,386.59㎡
 건폐율 / 42.59%
 용적률 / 132.0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옥탑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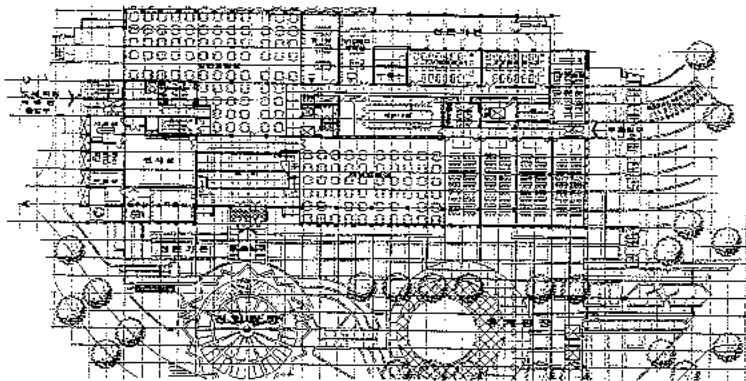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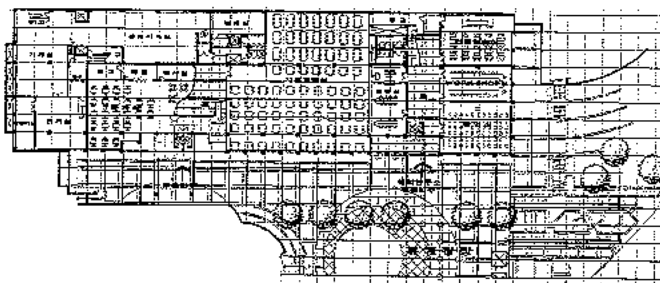
투시도2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기본개념

- 한국전통건축의 기단개념 도입으로 상징축의 중심에 놓여진 고층부를 부각시킴으로서 상징성 및 중심성을 표출
- 단순 명확한 내부동선처리 및 공간구성으로 기능별 실의 적절한 배분 및 상호 유기적 관계성 확립
- 지하층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선 큰의 적극도입으로 지하를 보다 더 인간화된 공간으로 격상
- 주 출입구 홀 부분의 2개층 오픈으로 개방감을 연출함과 동시에 광정을 도입 공간의 여유 및 자연 환경요소의 적극 유입

평면계획

- 고유기능에 따른 독립성 확보 및 각 기능별 동선의 단순화
- 6.9×13.8m의 장스팬 계획으로 장래 변화에 따른 공간활용의 가변성 및 융통성 부여
- 각 기능별 상호 연결성 도모와 외부공간과 저층간의 유기적인 동선체계 확립
- 설비의 단순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최대한 고려한 경제적인 평면계획
- 지하 1층은 선큰을 두어 채광, 환기 및 옥외 휴식공간으로 활용
- 서적반입은 수서 정리 사무실을 통해 각실에 배치하며 자료는 북 리프트(Book Lift)를 통해 수직이동
- 개가열람방식(Open Stack System)을 채택 기능상 평, 단면의 성격에 자유열람실 영역과 개가열람실영역으로 크게 구분
- 지하층, 1층을 자유, 3층, 4층, 5층을 개가로 처리 두기능의 절점인 2층에 관리 및 체크포인트를 두어 양분되는 상하부 기능을 마그네틱 공간으로(Magnetic Space)처리
- 자유열람실 이용자 진입을 BDS권내와 분리 부분개관에도 관리상 유리하게 처리
- 광정의 도입으로 자연채광 및 통풍-운영비의 절감 및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살아있는 공간의 연출
- 도서관의 정보자료 및 도서의 효율적인 열람 대출 보존과 도난 방지를 위하여 BDS권내와 BDS 권 외부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

1. 개요

샤르트르는 프랑스의 곡창지대인 보스(Beauce)지방의 중심지이지만 관광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게하는 대성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성당은 파리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화려한 이 대건축물은 독특한 지형과 고색창연한 도로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외르(Eure)강을 끼고 돌기 시작하면 외르 강 위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대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샤르트르의 옛마을에서는 이 지방의 전형적인 높은 박공과 쥘 대당(Saint-Aignan)성당과 쥘 피에르(Saint-Pierre) 성당의 지붕도 볼 수 있다.

특히 샤르트르 대성당은 다른 성당과는 달리 조각도 뛰어나지만 12세기와 13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제작기법의 독특함으로 다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부식이 덜 되고 때가 잘 끼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가지 실험 결과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제작 기법과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산 교육장이 되리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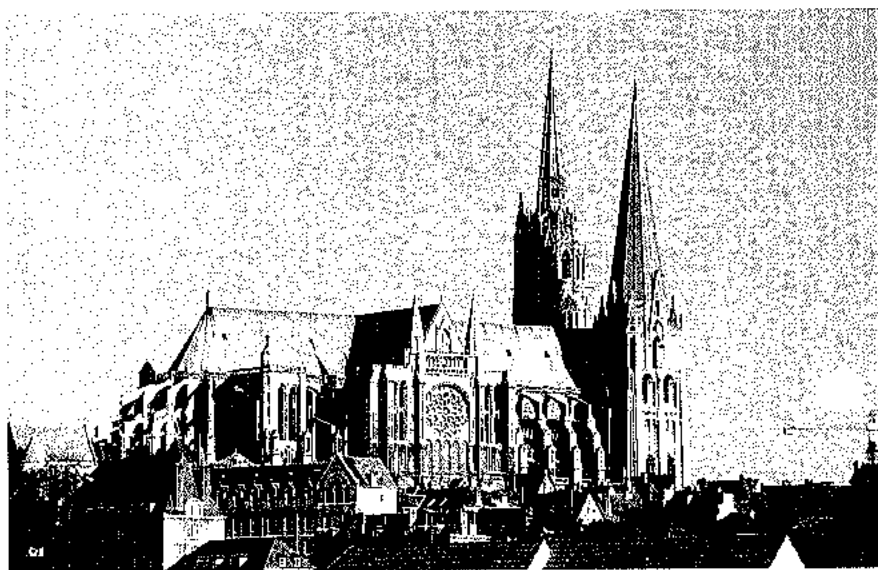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8)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Chartres 성당 -

朴孝洵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2. 순례지로서의 샤르트르 성당

특히 샤르트르 대성당은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순례지중의 하나로 프랑스에서도 명승지로 꼽히고 있는 성당에 속한다. 6세기 말 샤르트르의 주교였던 베타르(Bethaire)성인은 “어느날, 성모마리아의 찬란한 제단 앞에 내가 엎드려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미 6세기에 성당 안에 성모마리아의 작은제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768년 쥘 드니(Saint-Denis) 수도원에 페팽(pépin)왕이 기증한 사실을 서술해 놓은 8세기의 수사본을 보면 “이전에 받았던 여러 성당들 중에서 특히 쥘 드 마리 드 샤르트르(Sainte-Marie-de-Chartres)성당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분석해 본다면 역시 8세기부터 성당은 성모마리아에게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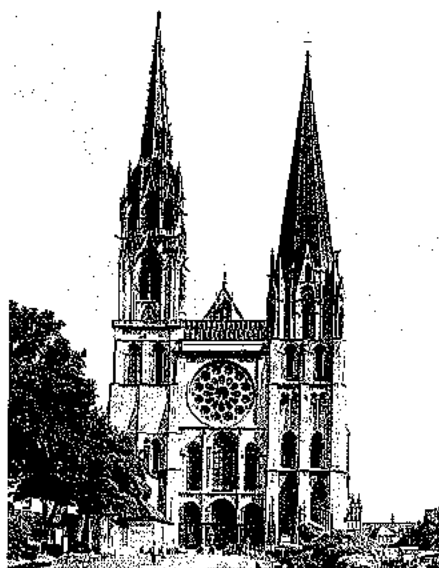
대성당과 지붕

현된 것을 알 수 있다. 876년에는 샤를르 르쇼브(Charles le Chauve)가 옛날에는 "성의"라고 불렸던 성모마리아의 긴 옷을 성당에 기증했다. 이 옷은 1712년까지 거의 천년간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서 "성모마리아의 베일"이라고도 불린다. 이 옷은 프랑스 대혁명 때 훼손되었으나 그전에는 5.35m×0.46m 크기의 비단천으로 되어있었다. 참고문헌을 보면 911년 롤롱(Rollon:노르만족의 해적 우두머리로 후일 노르만국의 첫번째 공작이 되었다.)과 노르만족들이 샤르트르를 포위했을 때 갠텔메(Gantelme)주교가 이 성의를 펼쳐보이자 이들은 눈 앞에서 도주를 했다고 한다. 성모마리아의 순례지로 요즘은 프랑스 남단의 피레네산맥의 산속에 있는 루르드(1)이지만 과거에는 샤르트르가 순례지였다. 환자들은 지하성당에 유숙하면서 9일간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고 많은 순례객들이 물러와 성당에서 유숙했기 때문에 성당을 청소할 때에는 많은 물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북쪽측랑에서 남쪽측랑으로 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닥의 포석을 경사지게 다시 시공하였다. 중앙회중석의 북쪽측랑 4계단과 남쪽측랑의 2계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건물의 환기를 위해서 수 많은 유리창을 없애기도 했다.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13세기의 라틴어로 된 설화집에는 국경너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진 성당의 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샤르트르의 성모마리아 발밑에 모든 나라의 순례객들이 몰려오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설화집에는 열성 신자들이 손수레에 싣고온 대성당을 짓기위한 돌뿐만 아니라 보석에서 공사장 인부들의 식량에 이르기까지 기증한 물품들을 상세히 서술해 놓았으며 13세기에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2세기에는 샤르트르에 세 교황이 거쳐가기도 하였으며 또 여러 성인들이 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클레르보(Clerveaux)의 사제였던 베르나르(Bernard), 켄터버리의 토마스(Thomas), 17세기에는 프랑수아 드 살스(François de Sales), 뱅상 드 뿔(Vincent de Paul), 루이 마리 그리농(Louis Marie Grignon), 브누아 라브르(Benoît Labr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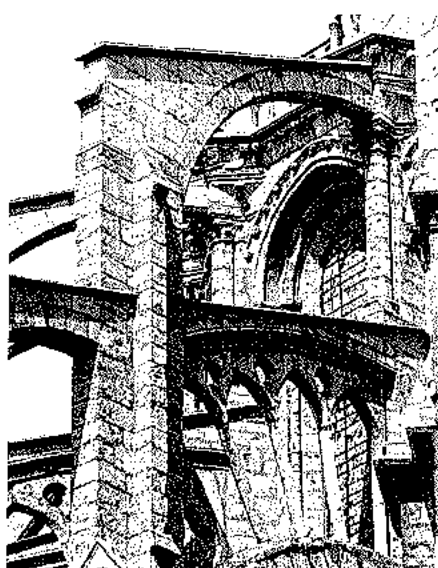
많은 왕들도 순례를 왔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샤르트르 성당에 많은 기부를 하였다. 북쪽 원화창은 블랑슈 드카스미유가 기증을 했으며 스무 번 이상이나 이곳에 왔던 앙리(Henri)3세는 여러날을 이 도시에서 체류했다. 앙리 4세의 대관식이 이 성당에서 거행되기도 했으며 왕들의 방문은 프랑스 내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대성당과 도시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았다. 1510년 열성신자들의 신심을 만족시키기위해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 앞에 성모마리아의 입상을 새웠다. 16세기에도 순례객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2만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드뢰(Dreux)에서부터 걸어왔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성유골이 훼손되기도 했으며 옛날 입상인 "지하의 성모마리아"는 1793년 12월 성당 앞뜰에서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격동기 동안 훼손을 당하기도 했지만 대성당은 전체적으로 보아 큰 파괴는 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가 집전되기 시작했고 지하성당의 주제단은 1855년 축성되었다. 같은해 성모의 무염시태(주: 원죄없이 잉태함을 뜻함)교의의 공포와 때를 같이 하여 "지하의 성모마리아"입상의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1857년에는 "지하의 성모마리아"입상을 제작했고 1876년은 천 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려 수 많은 군중들이 운집했다. 1976년 지하성당을 새로 손질하고 프랑스 대혁명 때 불태운 입상은 그 입상과 거의 유사하게 재현한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3. 성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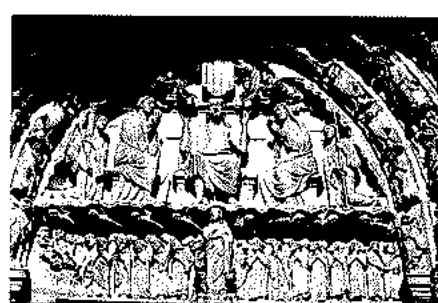
샤르트르는 고대부터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샤르트르의 고원 꼭대기에 있는 갈로 로마(Gallo-romain: 로마의 영향을 받은 옛 프랑스)우물은 이교도들의 종교예식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식은 4세기에 초기 복음전도자들에 의해 기독교 예식으로 바뀌었으며 4세기 갈로로망의 도시에 첫번째 성당이 건립되었다. 초대 주교는 아드방투스(Adventus)로 4세기 중엽 이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성당은 아키텐(Aquitaine)지방의 공작에 의해 743년 화재를 입었고 이어서 858년에는 덴마크의 해적들에 의해 두



대성당의 서쪽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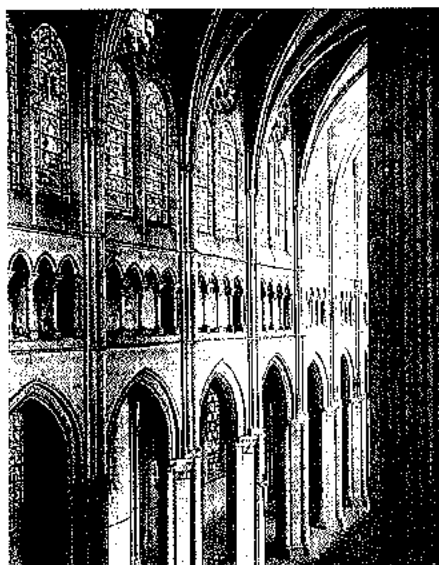
내진의 벽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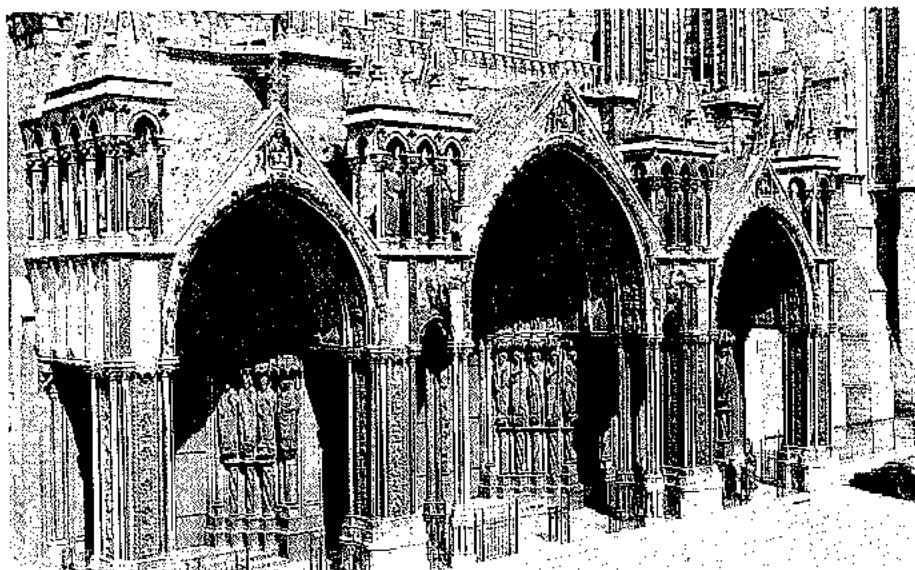
기둥머리

번째로 화재를 당했다. 지슬베르(Gislebert)주교가 대건 축물의 재건을 하면서 증축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876년부터 샤르트르 성당에 있던 성모마리아의 옷이 화재로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며 당황한 샤르트르 지방 사람들은 성당을 복구하는데에 미온적이었으며 망설였다. 다행스럽게도 복구작업을 시작한지 4일 후 이웃은 다시 발견되었다. 이 성당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순교자의 유해를 안치한 작은 제단인 "뤼벵(Lubin) 성인의 작은 제단"이 있다. 1020년 9월 7일과 8일 또 한번의 화재로 성당은 피해를 입었다. 그 즈음 필베르(Fubert) 주교가 샤르트르 교구를 관장했으며 그는 폐허가 된 성당을 재건하기위해 그의 모든 재능과 과학, 신앙심을 전부 동원하였다. 그는 로베르(Robert)왕과 유럽의 모든 군주들에게 편지를 하여 많은 기부금을 받아 지하성당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작은 제단 주위의 회랑 순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뤼벵 성인의 작은 제단도 이 때 벽으로 둘러싸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대성당과 지하성당에는 사제나 왕족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 샤르트르 대성당과 지하성당에는 무덤이 없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이는 샤르트르 대성당이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은 성모마리아의 특권적인 사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진 주위의 회랑에는 반원형 궁륭의 작은 제단이 세개나 있어 약간의 빛이 들어오며 중앙 회중석의 양쪽을 교차궁륭으로하여 후진주위의 회랑을 연장했다. 곧 이어서 필베르는 지하성당 위에 길이 108m 폭 34m에 달하는 성당을 건립했다. 1134년 마을을 휩쓴 화재로 성당의 정면이 재해를 입었으나 그 후 북쪽종루의 건축을 시작하여 1150년경 완성했다. 이 종루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으며 남으로 입했다. 1145년경 북쪽종루와 함께 남쪽종루의 공사도 시작하여 1160년경 완공하였는데 이 종루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종루중 가장 아름다운 것중의 하나로 선의 처리를 잘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서 있는 첨탑은 높이가 105m에 달한다. 왕의 문은 12세기 중반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1194년 6월 10일밤 발생한 화재로 대성당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하성당과 탑, 새로

건립한 정면만이 남게 되었다. 그 당시 샤르트르의 성모마리아에 대한 순례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장 일반화된 일이었으므로 대성당의 화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1260년 8월15일 성모 승천축일에 축성된 대성당은 중세기에 수 많은 순례객이 운집했었는데 이때의 환자들은 지하 성당의 북쪽회랑에서 유숙을 했으며 순례객들이 쉬도했던 기간 동안에 중앙회중석은 숙소로 사용되었고 밤에도 항상 대만원이었다. 더구나 열성적인 신자들의 신앙심에 부응하여 두번째 입상인 "기둥의 성모마리아"가 성당 속에 안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샤르트르에 있던 교황의 특사는 군중들과 사제들을 모아 그들에게 개인적인 손실은 잊어버리고 새로이 성당을 재건하는데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무송(MouCon)의 주교 레그노(Regnault)와 교회 참사회원들은 3년 동안 그들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였으며 평민들도 많은 희사를 했다. 마찬가지로 왕들과 영주들 역시 새로운 성당의 건립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내었다. 신자들은 건축에 필요한 돌을 손수레에 싣고 오는등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공사는 굉장히 빨리 진척되어 1194년에 시작한 공사가 1220년 천장을 궁륭으로 처리함으로써 마감되었다. 샤르트르 성당의 건축물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지하성당을 보강하고 개조한 뒤 공사는 세 부분(첫번째는 중앙회중석과 측랑, 그리고 좌우익랑의 아랫부분, 두번째는 내진과 후진 둘레의 작은제단들, 세번째는 좌우익랑의 윗쪽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13세기 후반에는 서쪽정면의 북쪽탑에 3층을 더 올려 건립하였으며 봉헌식을 한 후에는 제의실을 설치하면서 보완공사를 했다. 1326년 성당의 후진에 피아(piat)성인을 주보로 모시는 작은제단을 건립하였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의 사신에 참배하였다. 이 작은제단은 15.40m×7.20m 크기이며 내개의 트라베로 나누어져 있다. 기둥머리들과 홍예 머릿돌은 거의 완벽하게 공사를 하였으며 14세기와 16세기에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도 아름답고 훌륭하며 흥미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또 이중으로 된 성수반도 눈여겨 볼 만하다. 1413년 형제간의 불화로 감옥에 갇혀있던 방돔(Ven-



중앙회중석 북쪽면



남쪽 정면

d'Orléans)의 백작 루이 드 부르봉(Louis de Bourbon)은 "만일 풀려난다면 성모마리아께 바치는 작은 제단을 건립하겠다."고 소원을 빌었다. 이 약속대로 그는 1417년 남쪽측랑의 다섯번째 트라베에 작은제단을 건립하게 했다. 이 작은제단은 고딕 양식으로 대성당의 나머지 부분들과는 별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07년 장 드 보스라고도 불리우는 장 텍시에(Jean Texier)가 북쪽중랑의 첨탑 공사를 시작하여 1513년 끝마쳤으며 이어서 1514년 그는 내진의 탑 건축을 시작했고 1753년에는 교회 참사회원들이 내진의 개조 공사를 시작했다. 원주는 화강벽토를 바르고 여덟 장막은 여덟 점의 저부조 작품으로 대체했다. 브리당(Bridan)은 주제단의 성모승천을 조각했다. 이와같이 미학적이며 영성적인 의미에서 로댕이 "프랑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일컬었던 대성당은 종교전쟁,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에서 운 좋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아깝게도 1836년 연관공의 부주의로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날미암아 골조와 두 종각이 전소되고 모든 종이 녹았지만 착색 유리창은 무시했다. 그 후 철골조와 동판 지붕으로 지붕을 복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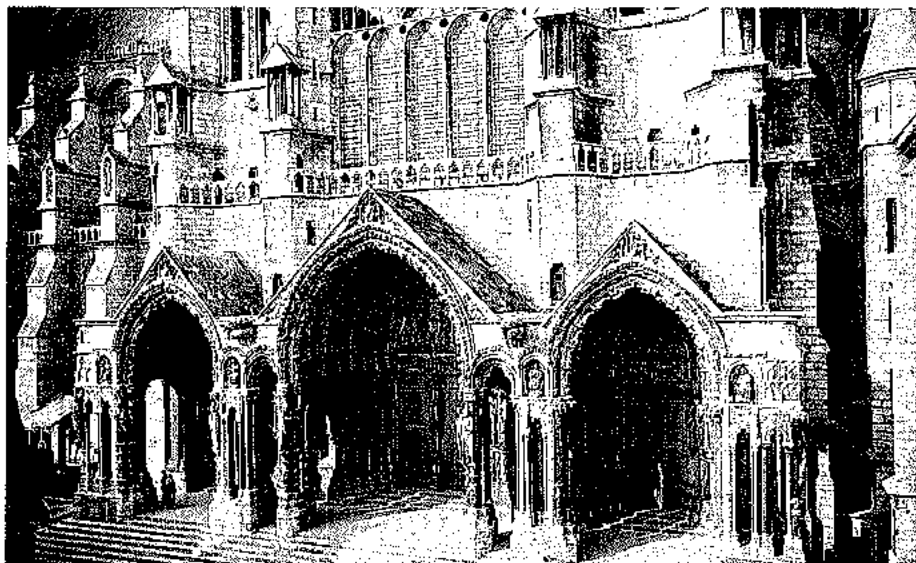
4. 건축적 특징

12세기 말 대성당을 구상한 신원미상의 십장은 건축 예술의 방향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첨두형 궁륭을 세웠고 이에따른 구조적 압력은 벽날개로 받치게 처리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실험적 구조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3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성당으로 아미앵성당과 랭스 성당은 보스(Beauce)지방의 샤르트르 성당에서 영향을 받아 주요 원칙을 지키면서 건물을 경쾌하게 처리하고 내부를 더 밝게하여 약간의 변화를 적용했다. 성당 내부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3층이지만 특별석 대신 측랑 위를 따라 트리포리움을 만들었으므로 특별석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더 높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건축의 기법을 만드는 방법이 되었고 수아송(Soissons)의 내진에도 이 방법이 채택되었다. 샤르트르의 노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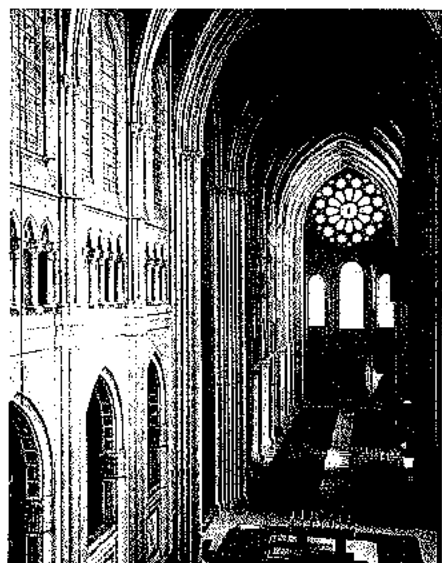
담 대성당은 여러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당의 내부 기둥 축 사이의 폭이 16.4m로 넓으며 또한 샤르트르 대성당보다 후일 건립된 랭스(Reims)대성당처럼 중앙회중석을 따라 외벽의 측랑이 있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미앵의 대성당처럼 내진 주위는 이중 측랑 구조로 되어있다. 후진에는 작은제단이 일곱있으며 이 가운데 세 제단은 11세기 지하성당의 작은제단 위에 건립되었고 이 작은제단들은 이 중으로 된 회랑으로 연결되어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처럼 좌우익랑은 후진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내진은 보기드물게 길지만 프랑스의 모든 성당 가운데 샤르트르 성당의 내진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면적은 아미앵(Amiens)성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좌우익랑에는 아미앵 성당이나 랭스, 보베(Beauvais) 대성당처럼 측랑이 있다. 정문의 조각을 위해서는 결이 고운 돌을 사용한 반면 건축에는 베르세르(Berchères)의 채석장에서 캐 돌을 사용했다. 샤르트르에서 12km 떨어진 이 채석장에서 캐낸 단단한 석회암은 가장 아름다운 재료중의 하나로 얼룩이나 매도 잘 타지않을 뿐아니라 풍화도 잘 되지않는 장점이 있다.

5. 내부

왕의 문을 지나 대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방문객들은 처음 대성당 내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부를 감도는 어둠에 신비스러움을 느끼며 동시에 넓은 공간과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으로 매우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거대한 기둥과 기둥사이의 폭이 16.4m 이상이 되는 중앙회중석은 프랑스내 모든 대성당 가운데 폭이 가장 넓은 것으로 유명하나 측랑은 매우 단순하다. 궁륭의 높이는 37m이며, 내부의 길이는 130m에 달한다. 중앙회중석은 13세기의 것으로 고딕 양식으로서 특별석은 없지만 트리포리움(성당 측랑의 상부에 있는 통로)은 있다. 이 대성당에서는 대미사가 많이 거행되고 있어 자연적으로 내진과 좌우익랑의 비중이 중앙회중석보다 크



북쪽 정면



내진에서 본 중앙회중석

다. 회진 주위의 화랑이 회랑이 이중인 내진과 좌우익랑 전체는 북쪽문에서 남쪽문까지 64m에 이른다. 종루의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실은 첨두형 궁륭이며 원주의 주춧돌들은 기둥의 주춧돌로 장식되었다. 탑 사이에는 첨두형 궁륭의 두 트라베가 원주 위로 늘어져 있다. 이 부분은 16세기에 개조를 했다. 1194년 이후 중앙회중석은 높은 토대의 원주로 탑과 이어져 있다. 직사각형의 궁륭으로 된 성당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이 대성당의 기둥들은 각각 힘을 받고 있지만 기둥 모양은 원통형과 팔각형이 교차되어 있다. 트리포리움 위쪽으로 각 트라베 안에는 한 쌍의 참문들이 벽처럼 돌로 제작한 창살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그리고 창문위에는 다엽 원화창이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인 탑들은 뽕족 아치로 13세기에 건립된 부분은 후진을 제외하고는 리브(갈빗뼈 모양의 뼈대)가 모두 반원형으로 되어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성당 입구에서 자세히 보면 내진을 향해 바닥이 약간 경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순례객들이 이 곳에서 밤을 지낼 때 다량의 물로 성당의 바닥을 깨끗이 씻기위해 이렇게 경사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중앙회중석의 한가운데 있는 미로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며 따라 걸던 길로 예루살렘의 길을 상징한다. 성모 승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승천하는 성모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모신 이 대성당에는 무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탑 가까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우익랑의 교차점에는 많은 원주들이 궁륭까지 뻗어있다. 세 원화창을 비교해 보면 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쪽 원화창과 공간을 압도하고 있는 북쪽의 간막이 벽 사이에서 변화를 볼 수 있다. 브리당(Bridan)이 제작한 주제단은 수준이 높은 18세기의 작품이지만 내진을 대리석과 화장벽토로 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런 맛이 없고 중앙회중석과 이어지는 리듬을 깨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진의 이중축랑 속에서 후진탑의 하중을 감당하고 있는 기둥들을 제외한 다른 기둥들은 상당히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16세기에 건립된 돌로 조각된 내진의 간막이 벽은 매우 화려하며 후진 주위를 돌면 작은 제단들과 불규칙하게 놓인 기둥들 그리고 궁륭들이 모두가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보는 이들에게 어디

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한 감동을 준다.

- 1) 전체 성당의 길이 : 130m
- 2) 내진의 길이 : 37m
- 3) 좌우익랑의 길이 : 64.5m
- 4) 중앙정면의 폭 : 47.65m
- 5) 중앙회중석의 가운데 폭 : 16.4m
- 6) 왕의 정문에서 측정한 궁륭의 높이 : 37m
- 7) 서쪽 원화창의 외부 쇠시리까지 포함한 직경 : 13.5m
- 8) 서쪽 원화창의 외부 쇠시리를 제한 직경 : 12m
- 9) 남쪽 원화창 : 10.56m
- 10) 북쪽 원화창 : 10.15m
- 11) 옛날 종루의 높이 : 105m
- 12) 새로운 종루의 높이 : 115m

5-1 내진의 간막이 벽

1514년 장 드 보스에 의해 제작이 시작되어 18세기에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모마리아의 생애를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이 작품은 41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의 돈을세김은 성서 속의 이야기와 신화등을 상기시킨다. 고딕 양식의 정문들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이 조각작품들의 대비는 매우 흥미롭다.

5-2 내진

주제단 위의 성모승천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과 기둥 사이의 저부조 작품들은 18세기에 덧붙인 것이다. 대형 파이프 오르간들은 16세기의 작품이다. "기둥의 성모마리아"는 1510년에 제작된 나무 입상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존재했던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에 세워져 있었다. 현재에도 많은 순례객들은 이 성모상 앞에서 경의를 표한다.

5-3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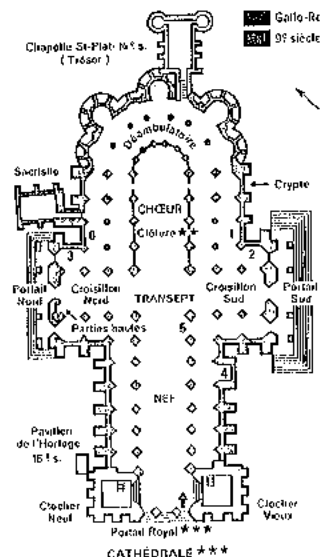
피아(piat)성인의 작은제단은 대성당의 보물들을 보관



기둥머리(유다와 유대인)



지하의 성모마리아



성당의 평면도

하기위해 설치하였다. 유리로 된 성유골함에는 과거 순례객들이 숭상하는 마음으로 보아왔던 "성모마리아의 베일"이라 불리우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옷이 있다. 또 미사도구, 17세기에 개종한 인디언들이 조개껍질을 깎아 만든 허리띠들과 13세기에 제작되었으나 18세기에 파괴된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의 부분들을 모아 놓았다.

5-4 지하성당

858년 해적이 쳐들어온 직후 건립된 루뱅 성인의 작은 제단은 고고학자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1020년에서 1024년 펠베르 성인에 의해 건립된 이 지하성당은 카롤링 왕조식 성당 구조를 모방하고 있으며 현재 대성당의 후진과 측랑의 아래층에는 11세기에 건립된 지하성당의 주랑이 있는데 길이 220m에 달하는 이 지하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다. 이 지하성당은 프랑스에 있는 고대 지하성당 가운데 가장 넓으며 이 곳보다 더 넓은 지하성당으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과 영국 켄터버리 대성당이 있다. 교차궁륭의 이 지하성당에는 내진 주위에 회랑이 있으며 회랑 주위에는 반원형 궁륭들이 방사상으로 뻗어있다.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12세기의 벽화, 쥘 포르 우물, 역사와 전설이 서려있는 갈로로망의 요새 도시 우물 그리고 지하의 성모마리아의 작은 제단으로도 지하성당은 흥미롭다. 프랑스 대혁명 때 불에탄 로마네스크 양식의 목판화는 옛날 참고 문헌에 의거하여 조각한 성모마리아의 입상으로 1976년 대체시켰다.

5-4-1 뤼뱅(Lubin) 성인의 지하성당

좁은 원주의 토대는 갈로로망식 벽위에 얹혀있다. 갈로로망식 벽은 벽돌과 회반죽을 교대로 배열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하성당은 격동기나 재해시 대성당의 보물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다. 특히 1194년 있었던 대화재시에도 성모마리아의 베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5-4-2 쥘 포르(Saints-Forts)의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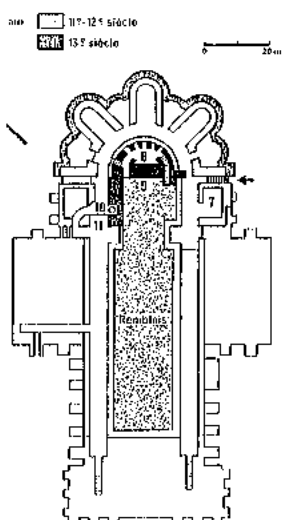
깊이가 33m에 달하는 이 우물의 아래부분은 갈로로망 우물의 특징인 정방형으로 되어있다. 우물 둘레의 돌은 근세에 놓았는데 858년 노르만족들이 침입해왔을 때 샤르트르 지방에서 학살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은 이곳에 버려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쥘 포르(주: 강한 성인들이라는 뜻의 우물)라고 불리게 되었다.

5-4-3 지하의 성모마리아 제단

많은 순례객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머물던 이 작은제단은 17세기부터 지하성당의 북쪽주랑과 이어졌고 성당을 축소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 작은제단이 있기 전에는 신자들이 성모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던 동굴이 있었다. 1976년 새로 꾸미고 장식을 했으며 19세기의 입상을 좀더 위엄있는 성모상으로 대체하고 고블랭(Gobelins)의 밝은 색조의 장식용단으로 돋보이게 했다.

5-5 스테인드 글라스

12세기와 13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에 속한다. 내진 안쪽의 높은 창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와 성모 영보,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의 장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쪽 정면에는 12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 3점이 특별석과 어울고 낮은 중앙회중석을 밝게 하고있으며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작품을 보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는 "제세의 나무"로 성모영보, 성모방문, 예수탄생, 목동들에게 알림, 동방 박사들의 헤로데와의 만남, 동방박사들의 경배 장면들이 순서대로 있다. 가운데에는 예수의 유년 시절과 공생활, 왼쪽에는 수난과 부활이 표현되어 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맑고 투명하면서도 심오한 "Bleu de Chartres"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오랫동안 제작 비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결과 소다와 규토로 합성한 이 유리는 다른 시기에 다른 혼합물로 합성한 유리보다 부식이 덜되고



CHRYPTE *
지하성당 평면도



북쪽 정문의 세례자 요한 입상



기둥머리(사탄)

때가 잘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면의 대형 원화창은 13세기의 것으로 마지막 심판이 그 주제이다.

그리고 좌우익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13세기에 제작한 원화창은 예침아치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제들은 각각의 정문에 있는 조각들과 관계가 있다. 즉 북쪽익랑에는 구약성서의 내용이, 남쪽익랑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 원화창은 1226년에서 1236년까지 프랑스를 섭정했던 블랑슈 드 까스띠유(Blanche de Castille)가 기부했다고 하여 “프랑스의 장미창”이라고도 불리우는 작품으로 한가운데 아기에수를 안고있는 성모마리아가 있다. 가운데 예침아치의 스테인드 글라스 아랫부분의 백합꽃의 방패꼴 문장, 원화창과 예침아치들 사이의 모퉁이 속에 있는 작은 예침아치 속에 백합꽃과 까스띠유의 탑들을 교대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블랑슈 드 까스띠유가 기증한 것을 나타내었다. 원화창 아래의 대형 예침아치들 속에는 아기인 마리아를 안고 있는 안느 성녀가 대사제와 왕 4명에게 둘러싸여 있다. 왼쪽에는 멜키세덱과 다윗, 오른쪽에는 솔로몬과 아론이 있다. 남쪽 원화창에는 영광에 싸인 그리스도 주의를 방사형으로 열두 제자가 표현되어 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비둘기 무늬는 기부한 사람들의 문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드뢰(Dreux)의 백작 피에르 모클레르(Pierre Mauclerc)와 그의 부인도 예침아치의 아래에서 볼 수 있다. 예침아치의 가운데에는 아기에수를 안고있는 성모마리아가 있으며 그 주위에는 4명의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이 그들의 어깨 위에 4명의 복음사가들을 무릎을 꿇고 서 있는것이 꼭 인상적이다. 복음사가들은 매우 약하고 비록 당당한 풍채는 아니라할지라도 성령의 덕분으로 구약성서의 예언자들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고 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모마리아”는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194년 발생한 화재에서 피해를 면한 부분인 아기에수를 안고있는 성모마리아는 13세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할 때 다시 삽입되었다. 푸른 색조가 특히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중앙회중석 측랑과 후진 주위의 작은 제단들에는 13세기에 제작된 전설적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남

쪽익랑에서 내진쪽에 있는 쥘베르 성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954년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프랑수아 로랑(Francois Lorin)이 제작했으며 북쪽익랑에서 내진쪽에 있는 “평화 스테인드 글라스”는 1971년 독일 가톨릭 신자들이 기증한 것으로 옛날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방돔(Vendome)의 작은 제단에 있는 15세기의 매우 밝은 스테인드 글라스는 다른 작품들과 어울리지않는 것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밝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6. 외부

지하성당에서 성당의 남쪽 앞뜰로 나와 몇 발자국을 가면 “옛날 종루”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1145년부터 건립한 이 종루는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처럼 보여 정방형의 탑과 팔각형 종루 사이를 보완하는 공사를 했다. 부벽의 수직선은 참탑의 원주를 따라 이어져 있으며 뾰족한 박공과 거대한 돌 종류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4군데의 피라밋도 수직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할 수 있다. 후진의 두 탑과 좌우익랑의 네 탑 그리고 천정아래에서 올린 교차점의 탑은 종루들을 받쳐주기위해 건립했으나 이 종루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건립되지 않았다. 종루 건립의 계획을 포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만일 건립했다라면 현재 서있는 두 종루에 외관상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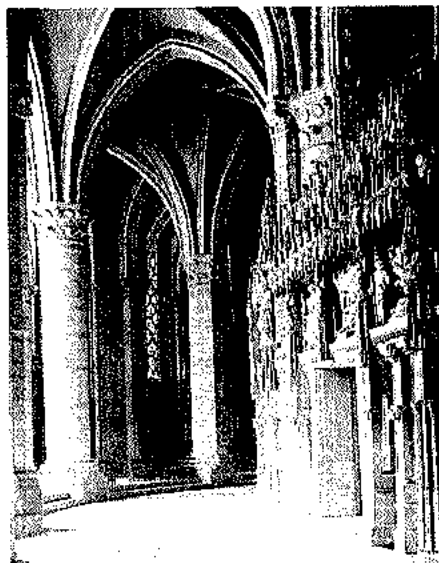
6-1 중앙정면

6-1-1 종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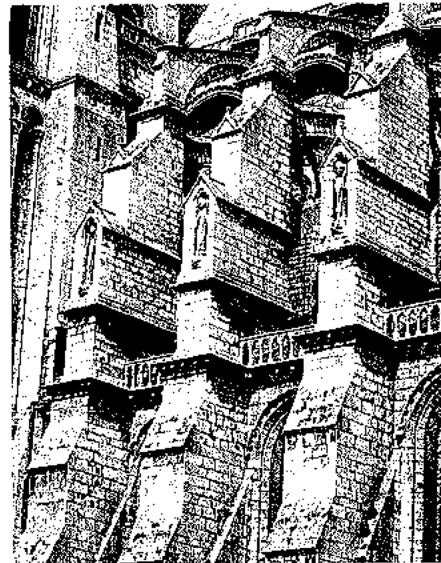
대성당의 높은 두 종루와 왕의 정문은 프랑스의 종교 예술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앙상블에 속한다. 왼쪽에 있는 “새로운 종루”는 실제로는 가장 먼저 건립을 했던 것으로 아랫부분은 1134년에 건립되었다.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1506년 화재로 인하여 나무로 된 종루가 파손되어 16세기에 장 드 보스(Jean de



피아성인의 작은 제단



후진주위의 회랑과 내진의 간막이 벽



중앙회중석 벽날개의 부벽(13세기)

Beauce)가 115m 높이의 돌로된 종루로 대체를 하면서 부터이다. 오른쪽의 “옛날 종루”는 1145년에서 1165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높이가 106m이며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의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루는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고딕 양식의 왼쪽 종루와는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6-1-2 왕의 정문

“왕의 정문” 위에는 12세기에 건립된 세 창문이 있고 그 위의 원화창은 13세기에, 왕들의 주랑(유대의 왕들과 성모마리아의 조상들을 조각으로 표현해 놓았다.)과 박공은 14세기에 건립되었다. “왕의 정문”은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작품중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로 1145년에서 1170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구세주의 생애와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중앙합각벽의 그리스도와 원주 위의 입상들 즉, 성서속의 왕과 왕비들, 예언자들, 사제들의 길고도 가느다란 얼굴들이 문의 공간 속에 줄지어 조각되어 있는데 뻗뻗한 신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얼굴은 매우 생기가 있어 상당히 유명하다. 문 상부의 아치와 기둥머리 속의 인물들의 생기있는 표정과 는 상반된 경직된 신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물들의 입상은 원주이면서 입상인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6-2 북쪽 정문

이 정문은 13세기에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물매지게 작은 벽과 문위의 아치밖에 없었다. 돌출한 현관은 그 후에 덧붙인 것이며 정면의 부벽을 잘라 상인방으로 부벽을 지탱했다. 그 후 14세기에 쇄막대로 상인방을 보강했다. 현관 전체의 폭은 33.2m, 성당 내부까지의 길이를 6.72m이다. 대성당의 윤곽을 좀더 잘 파악하려면 약간 뒤로 물러서서 정면의 왼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성당 전체는 매우 높고 보기 드물게 넓다. 벽을 바쳐주기 위하여 3층으로된 벽날개를 세웠는데 무리없이 탁월하게 처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두 아치는 작은 원주들로 연결을 했으며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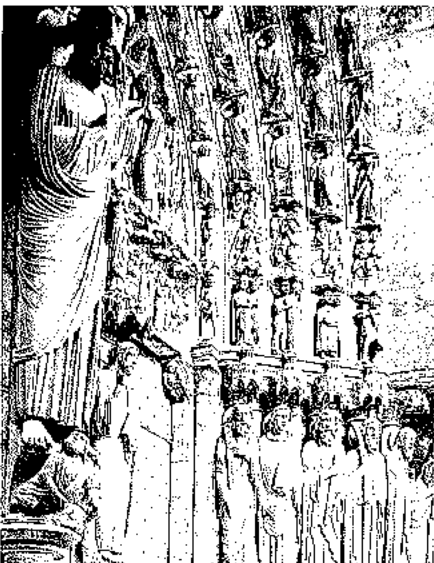
종루”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패종시계집은 1520년 장 드 보스가 제작한 작품이며 북쪽 정문의 장식들은 문과 아주 잘 어울리게 처리하였다. 왕의 문에 있는 입상들 보다 훨씬 자유로와 보이는 이 입상들은 생도감이 더 있고 현저하게 진전된 사실주의로 우아하게 조각을 하였다. “새로운 종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녀 모데스트(Modest)의 입상은 역시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치된 세계의 문은 성서의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오른쪽 문에는 그리스도가 가르친 덕을 실지로 행한 성서속의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가운데 문에는 구세주의 도래를 알린 성모마리아와 예언자들, 그리고 왼쪽 문에는 성모 영보(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함), 성모가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이 조각이다.

6-3 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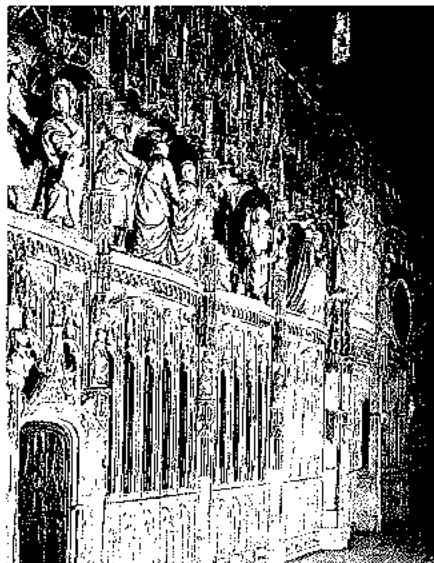
후진은 두 층으로 된 견고한 벽날개로 벽을 받쳐주고 있으며 14세기에 건립된 피아(Piat) 성인의 작은 제단은 아름다운 제단으로 대성당과 연결되어 있다.

6-4 남쪽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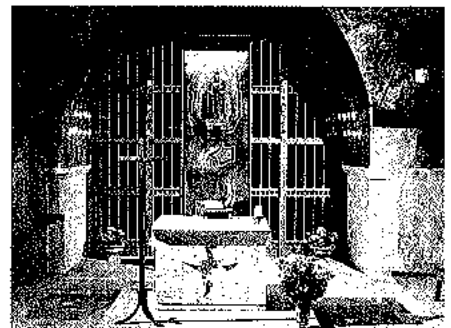
13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처음 건립할 때 남쪽정면에는 각 정문의 물매지게 작은 벽과 아치만이 있었다. 현관 전체의 폭은 31.65m, 그리고 성당 내부까지의 길이는 6.60m로 세문과 벽감과 십자가로 장식된 박공으로 마무리지어져 있다. 그 위에는 18점의 대형입상이 있는 주랑이 있고 17계단이 있다. 이 남쪽 정문에는 작은 원주들로 인하여 질이 우수하고 수준 높은 벽돌공사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멀리서 바라볼 때 곧게 뻗은 수직선들은 북쪽 정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통일된 느낌을 갖게 한다. 남쪽 정문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마지막 심판이 조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세기의 작품들은 서쪽 정문에 이러한 주제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왼쪽 문 상부아치에는 순교자들에 의해 마련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표현했으며 오른쪽 문 상부아



남쪽 정문의 중앙문



내진의 간막이 벽



성모마리아의 작은 제단

치에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을 묘사해놓았다. 그리스도는 중앙의 합각벽에 조각되어 있으며 또 문 사이의 벽에 그리스도의 입상이 있고 문 양쪽의 물매지게 깎은 벽에는 열두 제자들이 고행자들의 표정으로 부드럽게 주름진 긴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다. 순교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에 있는 조지(Georges) 성인과 테오도르(Theodore) 성인의 입상은 13세기의 것으로 무장한 기사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 입상들은 원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식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있다. 중앙정면의 “옛날 종루” 가운데 부분에서는 천상의 악단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인간을 빗대어서 경멸의 상징으로 묘사한 “늙은 당나귀”를 볼 수 있고 정면의 모퉁이에서는 천사의 긴 실루엣을 볼 수 있다.

6-5 건물 상부의 계단

195개의 이 계단은 북쪽 꼭대기를 따라 뻗어있으며 이곳을 오르면 지면에서 70m 높이에 달하는 “새로운 종루”의 아랫쪽 회랑에 이르게 된다. “옛날 종루”쪽 전경과 부벽, 벽날개, 입상들 그리고 석조조들을 볼 수 있는데 흥미를 갖게 한다. 대성당의 아랫쪽에는 사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참사회원들의 구역으로서 19세기까지 담으로 둘러져있던 대성당 뜰인 “성모마리아의 안뜰”이 오래된 뿔족 지붕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7. 맺음말

샤르트르 성당이 탄생하게 된 인문적 상황에 대하여 1974년 폰 김손의 “성 처녀 마리아의 궁전”이라는 저서에서 “샤르트르 성당이 주는 감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일단 성 베르나르가 그랬던 것처럼 성처녀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당시의 건축가들이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마리아의 존재를 느꼈던 것처럼 이를 느껴야 한다”라고 서술했다.

사실 이 성당을 실측해 본 바에 의한다면 건축가가 황금비나 5각형 같은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각 부분의 비례가 직관이 아닌 주관적이며, 정확한 기하학적 관계에 입각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인된 법칙들이 성스러운 빛으로 발현되는 것을 미로 생각했던 중세시대에 건립된 샤르트르 성당은 모든 고딕 성당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총체적인 균형과 비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신성한 수”의 법칙에 깊이 몰두하여 그 진체를 터득한 익명의 건축가에게 그 공로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파리의 노트르담과 샤르트르 대성당이 같은 시기에 세워진 했지만 노트르담의 정면은 초기가 아닌 말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면에서 훨씬 더 완벽하다 할 수 있다. 이 두 성당의 요소들은 랭스(Reims)와 아미앵(Amiens)의 모든 건물들과 함께 13세기 초 고딕 절정기의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성당이라는 건물을 단지 건물 자체로서 본다면 그 깊은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샤르트르 성당내에 조각되어 있는 입상이나 부조, 그리고 상장과 일반의 의지를 초월하여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 들어오는 신비한 빛으로 인해 이미 방문객 자신이 그속에 융해되어 평안속에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1) 1858년 베르나데트 수비루 라는 소녀에게 성모가 발현한 곳으로 이곳에는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이 1858년에 건립한 동굴 위쪽에 위치한 성당과 1958년 건립한 지하성당 등이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의 성모마리아



기둥머리(최후의 만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10. 12. 건설교통부령 제34호)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을 자격과 등급에 따라 1주이상, 2주이상 및 3주이상으로 차등화하여 정함(제3조)

나.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의4,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40조의2, 별표 2 내지 별표 4, 별표 17)

다.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 후 이들중에서 기술제안서평가방식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제13조)

라.1억5천만원이상의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현상공모방식에 의하도록 함(제13조의2)

마.5억원이상의 설계용역과 책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내역을 동시에 입찰하게 한 후 기술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3)

바.부실측정의 대상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용역, 50억원이상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공사로 함(제13조의5, 별표 8)

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산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및 주요구조물이 포함된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3인이상 보유하도록 함(제13조의8)

〈건설교통부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및 특급기술자 : 1주 이상

2. 기사 1급·기사 2급·기능사 1급·기능사 2급·기능사 또는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 : 2주 이상

3. 초급기술자 : 3주 이상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현황 신고서와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감리원경력 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기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설감리협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교육비를 교육훈련을 받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장에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수첩발급(갱신, 재발급)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수첩에 참여사업명·실제근무기간·직위 및 담당공종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용자의 보고의무) 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동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제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이 정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전문기관의 검토기간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검토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기술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으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은 별표 3의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성과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제12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분야별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반기별로 선정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설계 등 용역의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 ① 법 제20조의7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 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의2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 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 5억원미만인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다.

2. 용역비가 3억원이상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 후 이들 중에서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다만, 많은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직접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3.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용역계약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감리협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설계자의 선정) ①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현상공모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건설·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한 후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하여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

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하여 최우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의4(준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의9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조계산서
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 등 용역,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 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책임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벌점 적용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또는 측량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및 측량협회는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법 제21조의5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8(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9(설계감리자 지정기준)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계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 등 용역업자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

2. 영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서 해당전문분야의 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설계 등 용역업자

②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감리자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가 기준의 실비정액기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계 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도로확장공사. 다만 터널, 길이가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상·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 톤이상이거나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5. 25층이하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단지조성공사. 다만, 임해공단건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포장도의 덧씌우기 공사

8. 준설공사

9.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0. 굴토 또는 정지 등 단순 토공사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하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제4장의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작성기준)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3(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의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9”로 하고, 동조 2항중 “별표 3”을 “별표 10”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④ 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공사착공일부터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 12의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인 한 연도에서 검사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별표 5와”를 “별표 13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건설공사허가관세”를 “자”로 하며, 동조 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별표 6”을 “별표 14”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을 “자”로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4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점검요령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에 확인요청을 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뢰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품질의 적정성
4. 인접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②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서) ① 영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② 발주자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완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정조치결과보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별표 7과”를 “별표 15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을 “(건설자재의 납품서)”로 하고, 동조중 “표준납품서”를 “납품서”로,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업자 등”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비고 제3호”를 “비고 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51호서식”으로,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53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제14조제7호 내지 제10호의공사
2.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통합감리의 기준) ①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리비의 예치 등) ① 영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비는 당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당해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업시행자는 감리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발주기관의 장에게"를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발주기관의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평가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영 제52조제1항제13호"를 "영 제52조제1항제14호"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발주기관의 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업무를"을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로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①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당해 공사분야에서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총예정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 : 5년
2. 총예정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3. 총예정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8.0281.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확인원

5.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대진단보고서

7.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29조”를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건설감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리원수첩의 교부 및 관리) ① 건설감리협회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수첩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수첩재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

회사에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수첩을 회수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건설감리협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감리전문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8조제1항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휴업·폐업)변경신고서”를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로,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무실면적의 증감(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등록증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이 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의3(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감리협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제3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확인 및 검토사항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 후 경고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 후 주의

제42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공사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건설공사기준”을 각각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건설공사감독자는 영 제5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별표 18의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지·관급자재수불부·근무상황부 등 건설공사감독자가 사용하는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 내지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발주기관의 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83호서식”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건설폐자재의 물량과 재활용율이 다음 표이상인 때에는 1.5점을 가산한다. 다만, 동일현장에서 2이상의 건설폐자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물량과 재활용율이 각각 다음 표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부 외	중 량	재활용율
토사 및 기타 폐자재	1,000m ³ 이상	1,600톤이상	60%이상
콘크리트덩이	500m ³ 이상	1,000톤이상	50%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200m ³ 이상	400톤이상	35%이상

⑤ 발주청은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시공평가총괄표와 별지 제83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시공평가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실별점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설계 등 용역의 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의 평가는 설계 등 용역이 완료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수행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완료시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설계 등 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제46조 본문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87호서식”으

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업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별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별점	감산점수
50점이하	1
50점초과 100점이하	2.5
100점초과	5

7. 품질경영촉진법 또는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단계	가산점수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1	0.9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2	0.6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3	0.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용역업자별로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로 평가한다.

1.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을 가산할 것

3.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따라 감산할 것

4. 품질경영촉진법 또는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7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중 “전체대상 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최근 5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7. 최근 1년간 재해율이 전국 평균재해율미만일 것.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최근3년간의 평가평점이 평균 90점이상이고, 전체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별표9]을 [별표 18]로, [별표 4]내지 [별표 8]을 각각 [별표 12]내지 [별표 16]으로, [별표 3]을 [별표 10]으로, [별표 2]를 [별표 9]로, [별표 1]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1]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중전의[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중전의 [별표 2]) 및 [별표 10](중전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중전의 별표 5)제3호중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관련협회가 고시하는 노임단가”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중전의[별표 7]) 및 [별표 16](중전의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중전의 [별표 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내지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내지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87호서식]으로, [별지 제30호서식]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3호서식]내지 [별지 제85호서식]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58호서식]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55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서식]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8호서식]내지 [별지 제54호서식]으로, [별지 제11호서식]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내지 [별지 제4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8호서식]내지 [별지 제41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전의[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내지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중 “제29호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2호서식)내지 별지 제4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4호서식)중 “표준납품서”를 각각 “납품서”로, 용지규격을 표시한 “210mm×297mm”를 각각 “148mm×210mm”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6호서식)중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7호서식)중 “건설기술법관리법 제28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9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1호서식)중 “신고인(인)”을 “신청인(서명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중전의[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내지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중전의[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중전의[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내지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중전의[별지 제34호서식])내지 [별지 제82호서식](중전의[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 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6월30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고조치) 중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계 등 용역업자로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4조의4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업무 정지 기간
1. 지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호	12월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2호	2월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의4제1항 제3호	8월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또는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6월
다. 시공관리자의 소홀로 인건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4월
라. 시공관리자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월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의4제1항 제4호	1월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5호	2월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6호	3월
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물을 조작한 때		
나. 시험회수·시험실면적·시험사배차 등이 규정보다 부족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월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월
7. 법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제6조의4제1항 제7호	2월
8.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8호	2월
9.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9호	2월
10.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상태의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0호	1월
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공한 경우		
나.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공한 경우		1월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한 때	제6조의4제1항	2월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업무 정지 기간
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제6조의4제1항 제12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1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3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제13조 관련)

1.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1. 참여 건설기술자	-해당분야 자격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포함한다)	50 (15) (35)	○절대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배점 합계</th><th>사업책임 기술자</th><th>분야별 책임 기술자</th></tr> <tr> <td>계</td><td>50</td><td>35</td><td>15</td></tr> <tr> <td>자격</td><td>15</td><td>10</td><td>5</td></tr> <tr> <td>경력</td><td>35</td><td>25</td><td>10</td></tr> </table>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50	35	15	자격	15	10	5	경력	35	25	10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50	35	15																
자격	15	10	5																
경력	35	25	10																
2.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		7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3.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기간	10 (7)	○절대평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없음(7점), 1~2개월미만(4점), 2~4개월미만(3점), 4~8개월미만(2점), 8개월이상(0점)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개발실적 -투자실적	(3) (6) (4)	○절대 또는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6점) -최근 3년간 건설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4점)																
5. 현재 업무량과 여유	-총괄 책임자	15 (8)	○절대평가 -업무량 측정시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잔여과업 기간 : 3개월이상)도 건수에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6. 전차 용역과 관련	-분야별 책임자	(7)	포함 -1년간 1인기준 : • 건수 $[100 - (\text{건수} \times 10)] \times 1/2\%$: 10 건초과는 0% • 금액 $[100 - (\text{금액} \div 2\text{억} \times 10)] \times 1/2\%$: 20억초과는 0%
	-용역업자	(4)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 이내(100%), 3~5 년 이내(70%)
	-사업 책임 기술자	(4)	5~10년 이내(50%), 10년 이상(0%)

(비고)

각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4.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하였거나, 이에 대한 설계심의 등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평가대상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제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참여건설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한국에너지산업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의 정치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마다 2.0~5점(1월~3월 : 2.0점, 3월~1년 : 3.0점, 1년 이상 :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는 없다.
8.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2년간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상급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마다 0.5~2.5점(발주청 : 0.5, 장관 : 1.0점, 국무총리 : 1.5, 대통령 : 2.0점, 총·포장 : 2.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때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주어야 한다.
9. 공동도급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사업 및 전차용역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회사의 것과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실도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업자의 실적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유사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3점 내지 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12. 부실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13.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역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참가대상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대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1. 참여 건설기 술자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포 함한다)	(30)	○상대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배점 합계</th><th>사업책임 기술자</th><th>분야별 책임 기술자</th></tr> <tr> <td>계</td><td>30</td><td>15</td><td>15</td></tr> </table>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30	15	15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30	15	15								
2. 작업 계획 및 수법	-수행계획 -수행방법 -신기술 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25) (30) (8) (7)	○상대평가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계획 등 -작업수행 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외국의 최신 설계기술 등의 도입 활용, 설 계 착안 사항 -보유장비, 프로그램 등								

(비고)

각 평가항목은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되, 작업계획 및 수법의 세부사항 및 평가방법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많은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항목에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중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현채 업무량과 여유" 및 "전차용역관련"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배점범위를 150점으로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제13조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 감리원	-자격 -해당분야 경력 (해 당분야 용 역 참여실 적을 포함 한다)	60 (20)	○절대평가(자격,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 (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평가 하되 상주감리원수 및 당해용역사업의 특성 에 따라 조정 적용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배점 합계</th> <th colspan="2">상주감리원</th> <th rowspan="2">비상주 감리원</th> </tr> <tr> <th>책임</th> <th>보조</th> </tr> <tr> <td>계</td> <td>60</td> <td>24</td> <td>24</td> <td>12</td> </tr> <tr> <td>자격</td> <td>20</td> <td>8</td> <td>8</td> <td>4</td> </tr> <tr> <td>경력</td> <td>40</td> <td>16</td> <td>16</td> <td>8</td> </tr> </table>	구분	배점 합계	상주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책임	보조	계	60	24	24	12	자격	20	8	8	4	경력	40	16	16	8
구분	배점 합계	상주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책임	보조																						
계	60	24	24	12																					
자격	20	8	8	4																					
경력	40	16	16	8																					
2. 유사 용역사 업수행 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 도		15	○절대평가																						

(별표 7)

공공 건축공사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제13조의2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기준
4. 업무량과 여유 5. 전차 용역과 관련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없음(10점), 2월미만(8점), 2월이상 4월미만(6점), 5월이상 8월미만(3점), 8월이상(0점)
	-재정상태 건설도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용역업자	(5)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참여감리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기간 및 전수
	-사업책임 기술자	(5)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내(100%), 3~5년내(70%), 5~10년내(50%), 10년 이상(0%)

<비고>

1. 상대평가지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수주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4. 참여감리원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은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참여감리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감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7.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해당감리원마다 3점(발주청 : 0.3점, 장관 : 0.5점, 국무총리 : 1점, 대통령 : 2점, 훈·포장 : 3점)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다만, 1인이 2개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한다.
8. 참여관리원이 최근 3년간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감리원보다 1~5점(3월이하 : 2점, 3월초과 6월이하 : 3점, 6월초과 1년이하 : 4점, 1년초과 :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감리원의 점수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다.
9. 감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체계기간 및 누계평균부실점수등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건설감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10.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11.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 점수가 60점미만이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참가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2.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차용역 및 유사용역사업실적과 부정당업자지정 등의 인정은 공동도급상의 합산으로, 재정상태는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와 평균으로 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20%이하인 용역업자에 대한 실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발주청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당해 감리용역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 기준							
1. 설계 의 예술 성·작 품성	-도시계획의 적합성	(10)	○상대평가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평가							
	-작품의 예술성	(15)	-창의성과 독창성 평가							
	-설계계획의 합리성	(10)	-발주청 요구사항의 가능성 평가							
	-주변환경과의 조화	(5)								
	-경제성 및 공공성	(15)	-효율성 자재 사용계획(국산자재 우선)							
	-도시환경·문화의 기여도	(5)								
	-대안의 제안	(10)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2. 참여 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10)	○상대평가							
	-해당분야 용역 참가 실적	(5)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배점 합계</th><th>사업책임 기술자</th><th>분야별 책임설계자</th></tr> <tr> <td>계</td><td>50</td><td>35</td><td>15</td></tr> </table>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설계자	계	50	35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설계자							
계	50	35	15							
3. 작업 계획 및 수행 방법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5)	○상대평가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비고>

각 평가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발주하는 설계의 성격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점수를 합리적 통제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3. 참여 건축사 또는 기술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의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마다 0.5점에서 2점(1월~3월:0.5점, 3월~1년:1점, 1년이상:2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5.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2년간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 1인마다 0.5~2.5점(발주청 : 0.5점, 장관 : 1.0점, 국무총리 : 1.5점, 대통령 : 2.0점, 훈·포장 : 2.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한다.
6. 가점들을 받은 설계참여 건축사 또는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설계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훈을 받은 자를 다른 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유사한 수행능력 평가시 이 분야의 평가점수에서 1점 또는 2점을 감점할 수 있다.
7.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할 경우 유사설계실적 및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 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회사와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와 평균으로 한다.

(별표 16)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종합 및 건축감리 전문회사	○자동면부측정기	• 측정범위 : 0.001~1.0%이상 • 측정온도 : 0~40℃ • 전 원 : 전지 및 AC100V 겸용
	○콘크리트스트럼미	• 측정범위 : 100~600 kg/cm ² • 측 정 : 기록식
	○철근탐지기	• 파복두께 : 100mm이상, 철근간격 측정
	○도박두께측정기	• 측정방식 : 전자식 •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금속피막, 콘크리트피막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0~1,000μm±1μm • 측정범위 : 40~110DB
	○목재함수율측정기	• 측정범위 : 6~30% • 정 밀 도 : ±0.5%
토목감리 전문회사	○타일인발시험기	• 유입용량 : 1,500kg, 측정(Digital표시) • 인발강도 : 90kg/cm ²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설비 감리전문 회사	○풍압풍속계	• 측정범위 : 0~40m/s 0~500mmAq(정압) 0~100℃(온도)
	○초음파유량계	• 측정범위 : 0~6m/s(유속)
	○회전속도계	• 측정범위 : 0~10,000RPM
	○진동측정계	• 측정범위 : 3~5,000Hz(전동수) 0.03~20cm/s(속도)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25~130dB

(별표 17)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0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30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최근 3년간 5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30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3.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제30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임원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30조제1항 제6호	12월 이내업무정지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장에서 법 제2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때	제30조제1항 제7호	2월
8.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들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	제30조제1항 제8호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된 때 가.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8월
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4월
다.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월
9.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가. 3년이상 책임감리실적이 없는 때 나. 2년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때	제30조제1항 제9호	등록취소 8월 이내 업무정지
10.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1항 제10호	3월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30조제1항 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 준용
12.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30조제2항 제1호	2월 이내 업무정지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제30조제2항 제2호	2월
1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30조제2항 제3호	6월
15.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제30조제2항 제4호	2월 1월
16. 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제5호	2월
17.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2항 제6호	1월
18. 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감리원을 2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한 때	제30조제2항 제7호	1월

※ 별표 규정 중 별표7의 규정은 본협회 회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고, 기타 별표규정은 관련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임.

1995년도 10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1천2백2십5만9천98㎡보다 23.0%(2백8십2만5천1백42㎡) 감소한 9백4십3만3천9백5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 1억1천9백2십3만2천71㎡보다 13.7%(1

천6백3십7만6천7백25㎡) 감소한 1억2백8십5만5천3백46㎡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6백8십만9천4백63㎡보다 38.5%(2백6십2만4천4백93㎡) 증가한 9백4십3만3천9백5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서 울	1,673,093	4,912,304	3,239,211	193.6
	대 전	236,200	252,936	16,736	7.1
감소지역	부 산	1,419,793	771,365	(648,428)	-45.7
	대 구	673,580	487,501	(186,079)	-27.6
	인 천	357,676	223,504	(134,172)	-37.5
	광 주	361,223	225,874	(135,349)	-37.5
	경 기	2,257,946	703,761	(1,554,185)	-68.8
	강 원	298,438	113,121	(185,317)	-62.1
	충 북	624,581	305,384	(319,197)	-51.1
	충 남	667,065	184,020	(483,045)	-72.4
	전 북	475,036	155,969	(319,067)	-67.2
	전 남	873,369	123,991	(749,378)	-85.8
	경 북	940,730	302,729	(638,001)	-67.8
	경 남	1,314,462	640,932	(673,530)	-51.2
	제 주	85,906	30,565	(55,341)	-64.4
합 계		12,259,098	9,433,956	(2,825,142)	-23.0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9월분	10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703,116	890,513	187,397	26.7
다 세 대 주 택		174,516	252,945	78,429	44.9
연 립 주 택		78,320	136,820	58,500	74.7
아 파 트		2,583,159	3,915,458	1,332,299	51.6
근린생활시설		981,745	1,333,443	351,698	35.8
종 교 시 설		50,729	96,766	46,037	90.8
의 료 시 설		22,001	33,220	11,219	51.0
교육연구시설		173,562	236,480	62,918	36.3
업 무 시 설		183,418	266,666	83,248	45.4
숙 박 시 설		144,858	126,901	(17,957)	-12.4
공 장		1,120,082	986,585	(133,497)	-11.9
기 타		593,957	1,158,159	564,202	95.0
계		6,809,463	9,433,956	2,624,493	38.5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 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2,748	2,821	610,656	3,252	3,314	890,513	504	493	279,857	45.8	
다 세 대 주 택	634	692	320,106	575	583	252,945	(59)	(109)	(67,161)	-21.0	
연 립 주 택	78	93	115,364	94	94	136,820	16	1	21,456	18.6	
아 파 트	196	1,021	6,413,383	142	283	3,915,458	(54)	(738)	(2,497,925)	-38.9	
근린생활시설	2,870	2,979	1,212,466	2,865	2,972	1,333,443	(5)	(7)	120,977	10.0	
종 교 시 설	106	125	74,461	109	111	96,766	3	(14)	22,305	30.0	
의 료 시 설	25	25	109,585	22	25	33,220	(3)	0	(76,365)	-69.7	
교육연구시설	162	219	386,273	114	119	236,480	(48)	(100)	(149,793)	-38.8	
업 무 시 설	119	136	342,182	70	72	266,666	(49)	(64)	(75,516)	-22.1	
숙 박 시 설	112	118	122,892	106	159	126,901	(6)	41	4,009	3.3	
공 장	868	1,261	1,386,139	817	1,060	986,585	(51)	(201)	(399,554)	-28.8	
기 타	1,327	1,661	1,165,591	934	1,068	1,158,159	(393)	(593)	(7,432)	-0.6	
합 계	9,245	11,151	12,259,098	9,100	9,860	9,433,956	(145)	(1,291)	(2,825,142)	-23.0	()=미야나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0월분)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8,390	39,145	9,044,011	37,126	37,784	9,647,516	(1,264)	(1,361)	603,505	6.7	
다 세 대 주 택	6,966	7,515	3,514,866	7,060	7,946	3,407,645	94	431	(107,221)	-3.1	
연 립 주 택	953	1,191	1,767,136	1,054	1,107	1,535,511	101	(84)	(231,625)	-13.1	
아 파 트	1,873	7,736	46,334,573	1,580	5,318	37,489,360	(293)	(2,418)	(8,845,213)	-19.1	
근린생활시설	37,545	38,680	16,943,362	33,351	34,429	15,423,414	(4,194)	(4,251)	(1,519,948)	-9.0	
종 교 시 설	1,231	1,430	1,065,819	1,085	1,225	843,678	(146)	(205)	(222,141)	-20.8	
의 료 시 설	213	242	619,419	240	255	762,482	27	13	143,063	23.1	
교육연구시설	1,360	1,614	3,653,290	1,164	1,330	2,946,307	(196)	(284)	(706,983)	-19.4	
업 무 시 설	1,131	1,226	3,616,813	1,071	1,117	4,962,914	(60)	(109)	1,346,101	37.2	
숙 탁 시 설	1,710	1,807	2,166,033	1,240	1,392	1,747,190	(470)	(415)	(418,843)	-19.3	
공 장	8,529	12,643	13,238,163	8,231	11,313	12,354,438	(298)	(1,330)	(883,725)	-6.7	
기 타	12,585	15,871	17,268,586	9,877	11,891	11,734,891	(2,708)	(3,980)	(5,533,695)	-32.0	
합 계	112,486	129,100	119,232,071	103,079	115,107	102,855,346	(9,407)	(13,993)	(16,376,725)	-13.7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875	891	1,673,093	1,623	1,633	4,912,304	748	742	3,239,211	193.6	
부 산	818	1,031	1,419,793	1,023	1,179	771,365	205	148	(648,428)	-45.7	
대 구	1,169	1,321	673,580	1,215	1,216	487,501	46	(105)	(186,079)	-27.6	
인 천	327	341	357,676	261	262	223,504	(66)	(79)	(134,172)	-37.5	
광 주	273	279	361,223	313	365	225,874	40	86	(135,349)	-37.5	
대 전	291	300	236,200	213	215	252,936	(78)	(85)	16,736	7.1	
경 기	1,600	1,954	2,257,946	1,287	1,365	703,761	(313)	(589)	(1,554,185)	-68.8	
강 원	454	543	298,438	414	486	113,121	(40)	(57)	(185,317)	-62.1	
충 북	456	554	624,581	385	430	305,384	(71)	(124)	(319,197)	-51.1	
충 남	407	450	667,065	297	331	184,020	(110)	(119)	(483,045)	-72.4	
전 북	321	393	475,036	219	222	155,969	(102)	(171)	(319,067)	-67.2	
전 남	451	708	873,369	300	336	123,991	(151)	(372)	(749,378)	-85.8	
경 북	692	1,016	940,730	399	525	302,729	(293)	(491)	(638,001)	-67.8	
경 남	995	1,225	1,314,462	1,030	1,171	640,932	35	(54)	(673,530)	-51.2	
제 주	118	145	85,906	121	124	30,565	5	(21)	(55,341)	-64.4	
합 계	9,245	11,151	12,259,098	9,100	9,860	9,433,956	(145)	(1,291)	(2,825,142)	-23.0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0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4,642	15,117	17,246,705	15,608	15,686	21,647,749	966	569	4,401,044	25.5	
부 산	9,084	10,392	8,571,062	9,044	10,576	7,020,690	(40)	184	(1,550,372)	-18.1	
대 구	13,270	14,148	6,499,453	12,152	12,641	6,702,359	(1,118)	(1,507)	202,906	3.1	
인 천	4,462	4,622	5,655,006	3,722	3,939	4,937,744	(740)	(683)	(717,262)	-12.7	
광 주	3,536	4,167	4,594,502	2,848	3,688	3,733,943	(688)	(479)	(860,559)	-18.7	
대 전	3,782	4,009	3,063,618	2,523	2,699	2,751,509	(1,259)	(1,310)	(312,109)	-10.2	
경 기	18,958	23,064	27,119,833	18,605	20,860	20,134,158	(353)	(2,204)	(6,985,675)	-25.8	
강 원	5,274	6,084	3,454,895	5,435	6,378	3,920,559	161	294	465,664	13.5	
충 북	5,829	6,925	4,426,561	4,901	5,556	3,901,896	(928)	(1,369)	(524,665)	-11.9	
충 남	4,904	5,228	10,327,923	4,115	4,433	5,812,165	(789)	(795)	(4,515,758)	-43.7	
전 북	3,536	4,248	4,776,377	2,636	2,965	3,713,158	(900)	(1,283)	(1,063,219)	-22.3	
전 남	4,826	6,012	3,735,283	3,761	4,457	2,867,776	(1,065)	(1,555)	(867,507)	-23.2	
경 북	7,354	9,912	8,794,864	6,034	7,915	6,129,889	(1,320)	(1,997)	(2,664,975)	-30.3	
경 남	10,492	12,459	9,880,797	9,758	11,275	8,757,032	(734)	(1,184)	(1,123,765)	-11.4	
제 주	2,537	2,713	1,085,192	1,937	2,039	824,719	(600)	(674)	(260,473)	-24.0	
합 계	112,486	129,100	119,232,071	103,079	115,107	102,855,346	(9,407)	(13,993)	(16,376,725)	-13.7	()=미아너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95년도 건축사협회 주요활동

KIRA NEWS 1995

-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 이사회
- ☐ 건축관계 법령 개정
- ☐ 국제 교류
-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 95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 ☐ '95한국건축문화대상
- ☐ 건축사 연금 정산
- ☐ 건축사 업무 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

◇ 제1회 임시총회

- 일 시 : 1995. 3. 29(수) 오전 10시
- 장 소 : 본 협회 강당
- 참 석 : 전국대의원 497명중 369명
- 주요안건 :

- 1) 94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2) 94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3) 94년도 신문발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4) 94년도 특별미상대책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5) 94년도 건축사시험 및 연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6) 94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7) 94년도 건축개혁 추진 결의의 건
-원안 승인
- 8)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9) 건축사 연금 규정 효력의 일시정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건축사 연금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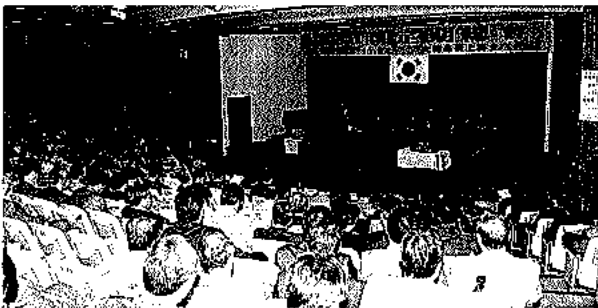
◇ 제2회 임시총회

- 일 시 : 1995. 6. 22(목) 오전 10시
- 장 소 : 본 협회 강당
- 참 석 : 전국 대의원 497명중 265명
- 주요안건 :

- 1)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일부 수정후 원안 승인
- 2) 건축개혁 기본 계획(안) 승인의 건
-건축개혁 기본개혁(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향후 다루기로 함.
- 3) 회비제도 개선(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4)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 및 연금정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5) 건축사공제사업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6)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7) 95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8) 95년도 입회비 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9) 95년도 회관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10) 95년도 회지발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11) 95년도 장·단기 발전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12) 95년도 창립 30주년 행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13) 95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제30회 정기총회



- 일 시 : 1995. 10. 24(화) 오전 10시
- 장 소 : 본 협회 강당
- 참 석 : 전국대의원 491명중 370명
- 주요안건 :
 - 1) 건축계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결의 및 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건축계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결의문을 채택하고, 본 협회 이사 2인, 감사1인, 15개 건축사회 회장, 서울 건축사회 소속 5개 구 건축사회 회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 96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3) 96년도 특별회계 『입회비 관리회계, 건축사시험회계, 재건축 진단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4) 전국 공통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5)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6) 건축사 연금정산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7) 임원개선의 건
-의결 정족수인 2백57명에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11월 3일 오후 2시에 속개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제30회 정기총회 속개회의

- 일 시 : 1995. 11. 3(금) 오후 2시
- 장 소 : 본 협회 강당
- 참 석 : 전국대의원 491명중 263명
- 주요안건 :
 - 1) 임원 개선의 건
-권태정 (2년) · 김광옥(2년) · 김무언(2년) · 류근열 (1년) · 안길원(2년) · 윤석우(2년) · 이관영(2년) · 이기범(2년) · 함재철(1년) · 이종관(유임) · 이의구 (당연직) 회원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고 송양석(2년) 회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함.

이사회

◇제1회('95. 1. 10)



- 주요 의결내용 : '95제건축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김택성, 이종관, 임인혁 이사에게 위임함 / 건축사 노임단가 기준변경 승인의 건-원안 승인 / 불우이웃돕기 세금 모금 및 전달기관 선정 승인의 건-협회 예산으로 하되, 방법·금액 및 전달기관 선정 등은 회장에게 위임함 / 고문변호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에 대한 협의-조용락 변호사 및 정판영 세무사를 1년간 재위촉하기로 함. / 건축사시험 관리에 대한 협의-건축사시험을 앞으로 협회에서 주관, 시행하기로 하되, 95년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회장 및 김택성 시험위원장에게 위임함.

◇제2회('95. 2. 14)

- 주요 의결내용 : 경남건축사회 소속 지역건축사회 신설 승인의 건-경남건축사회 소속 하동(남해)지역 건축사회 신설은 승인하되, 지역건축사회 명칭은 건축사회에 위임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각 지역건축사회 명칭을 원안대로 승인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정 결정 승인의 건-회장에 위임.

◇ 제3회('95. 3. 7)

• 주요 의결내용 : 건축개혁(안) 심의 승인의 건-부분 수정키로 하고 승인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결정 승인의 건-원안 승인 / 지역건축사회 명칭 변경 승인의 건-서울건축사회 소속 도봉구건축사회를 강북구건축사회로, 성동구건축사회를 광진구 건축사회로 명칭 변경 /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부회장 및 법제위원장이 검토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함.

◇ 제4회('95. 3. 17)

• 주요 의결내용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95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 백영기, 장기수, 손한중, 고남극, 김후곤, 조병원, 박정태, 조종관, 신기현, 김용훈 회원(10명)을 추대하기로 승인함. / 재건축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재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택성이사를 선임하고, 위원선임은 회장 및 위원장에게 위임함 / '94회계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제5회('95. 3. 28)

• 주요 의결내용 : 건설종합화 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추가상정의 건-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과 건축사연금규정 효력의 일시 정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을 추가 상정하기로 함.

◇ 제6회('95. 4. 3)

• 주요 의결내용 :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시·도건축사회 회장, 임원2~3인, 강남 서초구 건축사회장, 시·도건축사회별 1억원이상 연금납부 회원 등으로 전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개혁추진업무 전담기구 결정 및 사용 경비 지출 예산 결정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30주년 기념행사 결정의 건-계획(안)대로 시행준비키로 하되,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기로 함 / 협회 운영회비 제도 및 납입방법 결정의 건-개혁추진 전담기구에서 병행 추진키로 함. / 정관 개정(안) 작업 결정의 건-개혁추진 전담기구에서 병행 추진키로 함. / 건축사 시험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결정의 건-회장에 위임함.

◇ 제7회('95. 4. 14)

• 주요 의결내용 : 개혁추진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 계획서(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상정하기로 하고 유보 /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 계획서(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상정하기로 하고 유보 / 사용년한 경과 비품처분 승인의 건-감사에게 확인한 후 처분토록 승인함. / 직원 가호봉 부여 승인의 건-윤길홍 직원에게

일반기능 1급 가1호봉을 부여하기로 함.

◇ 제8회('95. 4. 28)

• 주요 의결내용 : 개혁추진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원안 승인 / 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원안 승인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원안 가운데 제5조 폐업환불금 명칭은 폐업위로금으로 개정하고 지급기준표는 5년이하는 1백만원, 10년이하는 1백5십만원, 10년초과는 2백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낮추고 시행일은 '95. 5. 1일로 함. / 본 협회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의 건-서형을 정책고문, 최찬환 정책자문을 위촉하되, 임기는 협회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자문료로 월 2백만원,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함. /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건축사대회 행사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95. 9. 28(목)~29(금)까지 양일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하고 주요계획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9회('95. 5. 10)

• 주요 의결내용 : 한·몽교류 협력 및 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한·몽교류 협정서 체결을 위하여 몽고를 방문하기로 하고, 대표단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함. / 건축개혁(안) 승인의 건-건축개혁(안)중 정관 개정(안)은 제도개선위원회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고, 예산관계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은 이종만, 이종관, 김규태, 임인혁이사 및 개혁추진실무위원 등이 협의하여,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30년사 발간 및 신문발간에 대한 협의-30년사 및 신문은 발간하지 않기로 함.

◇ 제10회('95. 5. 30)

• 주요 의결내용 : 건축개혁 기본 계획(안) 승인의 건-임인혁 이사가 최종검토 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회비제도 개선(안) 승인의 건-본부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 시·도건축사회는 월정회비, 운영회비 및 전국 공통 운영회비로 회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 및 정산(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계획(안) 승인의 건-"공제조합 설립타당성 조사계획안"으로 수정하여 회장이 검토한 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전반적인 사항을 이종관 이사의 검토와 회장이 최종 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회장 및 윤리위원장이 최종 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30년사 발간 및 신문발간에 대한 건-30년사 및 신문은 발간하지 않기로 결의함. / 감사원 명예 감사관 후보 추천의 건-감사원 명예 감사관 후보에 이종만, 김택성이사를 추천하기로 함.

◇ 제11회('95. 6. 13)

• 주요 의결내용 :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되고 난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 변경 승인의 건-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기도 건축사회 소속 송탄지역 건축사회를 평택지역 건축사회로 명칭을 변경함.

◇ 제12회('95. 7. 14)

• 주요 의결내용 : 전국 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적용지침

(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협회 회비징수 및 납부방법 운영 지침(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예산편성위원회 규칙 개정 (안) 승인 및 '96예산편성위원회 선임의 건- '96예산편성위원회 20인중 당연직 위원15명(시·도건축사회 회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의 선임을 회장에 위임하고 원안 승인

◇ 제13회('95. 7. 21)

• 주요 의결내용 : 창립 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삼풍백화전 붕괴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침체와 정부차원의 건축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추진 등으로 인해 유보 또는 무기연기하기로 하고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정기총회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함.

◇ 제14회('95. 8. 11)

• 주요 의결내용 :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안) 승인의 건-오는 10월 23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석대상, 주요행사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 및 3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에게 위임 추진토록 함. / 문고 및 일본건축사 초청 계획(안) 승인의 건-오는 10월 24일 제30회 정기총회에 초청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가급적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함. / 제30회 정기총회 개최일정에 대한 협의-오는 10월 24일(화) 오전 10시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기로 함.

◇ 제15회('95. 8. 29)

• 주요 의결내용 : 토론회 개최 계획(안) 승인의 건-9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사업무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사항 수탁여부 결정의 건-우리 협회 윤리규약 제7조, 8조, 10조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판권조향을 수정 또는 삭제할 의사가 있음을 수탁하기로 결의함 / 수해지구에 대한 대책의 건-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재니스"의 영향으로 전국의 수해지구에 대한 이재민에게 의연금 모금방법과 금액결정 등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16회('95. 9. 9)

• 주요 의결내용 : 수해지역의 모금방법 및 금액결정의 건-사회 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기탁하기로 결의하고 기탁처 및 방법은 회장에 위임함. / 수해건축물 건축설계비 감면 승인의 건-각 시·도지사 및 시·도건축사회에 건축설계비 감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대상 건물규모의 경우 50%, 건축신고대상 건물규모의 경우 무료로 감면해 주고 그에 따른 전국 공통운영회비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하여 수납하기로 함. / 건축설계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회장에 위임함. /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 승인의 건-원안 승인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현행대로 진단수수료는 진단료 총액의 50%를 지급기로 결의하고, 회원사에 안전진단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처리 되고 있다는 사항을 공지하기로 함.

◇ 제17회('95. 10. 11)

• 주요 의결내용 : 건축사보 관리규정(안) 승인의 건-"건축사

보 관리규칙"으로 수정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하기로 함.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좀 더 보완하여 평년총회에 제출토록 함. / 건축실무 및 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안) 승인의 건-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기협회와 좀 더 협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고문번호사 위촉기간 연장 추인의 건-원안 승인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원안 승인 / 회원등록 취소건의 승인의 건-대구건축사회 박상문 회원에 대한 회원등록 취소 건의 내용을 중앙 윤리위원회에서 다당성 여부를 심사후 가부를 결정,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하기로 함. / 표준계약서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요령(안) 승인의 건-설계·감리위원장, 법제위원장, 김규태 이사에게 위임함.

◇ 제18회('95. 10. 19)

• 주요 의결내용 :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원안 승인

◇ 제19회('95. 10. 26)

• 제30회 정기총회 속개회의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지난 10월24일 개최된 제30회 정기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가 선포됨에 따라 속개회의를 11월3일 오후 2시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기로 결의함.
• 속개회의 개최에 따른 총회비용 사용에 대한 협의
-속개회의 개최에 따른 각 시·도건축사회의 대의원 참석여비를 본부의 총회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함.

◇ 제20회('95. 11.21)

• 비상근무회장 선임의 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유보함.
• 건축계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우리 협회 제30회 정기총회('95.10.24)에서 건축계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협회 이사 2인, 감사1인, 15개 건축사회 회장, 서울건축사회 소속 5개 구 건축사회 회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함에 따라 대책위원회 위원을 회장에 위임함.
•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우리 협회 창립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건축사회 30년사" 발간에 기여한 제주도건축사회 회원, 직원에게 공로표창을 수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함.
• "건축사"지 광고단가 인상조정(안)승인의 건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건축사"지의 광고가격은 89년도에 지면전체가 인상된 바 있고, 92년도에 일부(표지 4)인상 조정된 바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지대 및 인쇄비) 등을 감안하여 96년 1월부터 인상조정기로 하는 원안을 승인함.
• 사무처 비품 처분(안)승인의 건
-우리 협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무처의 노후된 책상 18개를 처분하고 대체구입하기로 결의함.
• 건축3단체 송년회 개최 승인의 건
-건축3단체 회장단 회의에서 송년회를 매년 순차적으로 주관하여 개최기로 함에 따라 올해에는 우리협회가 오는 12월12일(화)오후 5시30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기로 결의함.

건축관계법령 개정

◇ 건축사법(확정)

- 현 황 : 95.1.5 공포/95.7.1 시행(건축사시험 관련규정은 96.1.1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 폐지, 무등록 건축사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 건축사 1차 시험을 건축사예비시험으로 전환하여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인정하고, 대졸후 즉시 응시 가능, 예비시험합격자 또는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하면 바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건축사법시행령(확정)

- 현 황 : 95.2.17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조회/95.3.8 본 협회 의견 제출/95.3.24~4.12 입법예고/95.8.17 차관회의 통과/95.8.22 국무회의 통과/95.9.2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건축사시험을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을 건축법규(100점), 건축설계(200점)로 하고, 건축사예비시험의 과목을 건축구조(100점), 건축시공(100점), 건축계획(100점)으로 함, 건축사보 신고수리, 건축사시험시행,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제로 변경함,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확보해야 할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수, 사무실 면적 등의 등록기준과, 설계·공사감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및 지정해야 할 책임건축사의 수 등의 업무범위 관련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법시행규칙(확정)

- 현 황 : 95.4.22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조회/95.5.11 본 협회 의견 제출/95.5.16~6.5 입법예고/95.10.17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건축사(소속건축사, 건축사보 포함)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현행 "○월이내의 업무정지"에서 "업무정지 ○월"로 절대화, 무등록건축사업무를 농협, 수협,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외환은행에 허용, 설계도서의 범위에 공사비내역서와 설비계산서를 추가, 건축사보 신고를 건축사협회(시·도건축사회)에 하도록 함.

◇ 건축법(확정)

- 현 황 : 95.1.5 공포/96.1.6 시행 예정(진폐율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 주요내용 : 건축허가신청시 기본설계도면만 제출하고, 착공 신고시 실시설계도면 제출,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감리 중간보고서로 대체, 사용검사제도 대신 감리완료보고서 제출후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 지시, 상세 시공도면 제출요청 등 감리자 권한 강화,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건축법시행령(미확정)

- 현 황 : 95.6.15~6.26 건설교통부에서 의견 조회/95.6.26 본 협회 의견 제출/95. 9. 15~10.4 입법예고/95.10.5 본 협회 추가의견 제출/95.11.9~11.22 현재 법제처 심의중/
- 주요내용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도록 하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신고 대상으로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100㎡ 이하로 확대, 건축물의 용도를 10개로 재분류하고, 이들간의 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함.

◇ 건축법시행규칙(미확정)

- 건설교통부에서 시안 마련 중

◇ 건설기술관리법(확정)

- 현 황 : 95.1.5 공포/95.7.1 시행
- 주요내용 :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감리제도 도입(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발주청이 집행계획을 작성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수행 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름,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감리원의 겸직과 중복배치를 금지하여 감리업무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확정)

- 현 황 : 95.5.16~6.5 입법예고 / 95.6.5 본 협회 의견 제출 / 95.8.4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책임감리 대상기관을 국가 등 공공기관외에 민간자유치사업(유통단지, 터미널, 노외주차장,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시행자를 추가,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술계 건설기술자외에 기능계와 학력, 경력 기술자를 추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 감리전문회사, 품질시험대행자 소속 기술자의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측량업자,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소속 건설기술자까지 포함(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의 교육 대상자도 같음),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시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업수행능력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 선정,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시에 설계의 예술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설계 발주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우위 업체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발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건설안전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의 규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공사기간중에 실시하여야 함, 유사 공종인 수개의 건설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통합책임감리 가능, 설비감리전문회사를 신설하여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중 설비 부분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종합, 토목, 건축)와 공동으로 책임감리 할 수 있음,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 등록기준중 건축사, 기술사, 기사 1급 자격 등 필수적 구비요건을 폐지하고 감리원의 등급에 해당하는 감리원의 확보로 가능토록 등록 기준을 완화,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및 벌점기준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확정)

- 현 황 : 95.5.16~6.5 입법예고 / 95.6.5 본 협회 의견 제출/95.10.12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사전자격심사 방식으로 5~7인을 선정,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 방식으로 5~7인을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으로 2~3인을 선정,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축설계의 경우 사전자격심사 방식으로 5~7인을 선정,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현상공모 방식에 의하도록 함, 5억원 이상의 설계용역과 책임감리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와 가격내역을 동시에 입찰하게 한 후 기술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순으로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확정)

- 현 황 : 95.1.5 공포 / 95.4.6 시행
-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 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 시설물의 설계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확정)

- 현 황 : 95.2.8~2.28 입법예고 / 95.2.22 본 협회 의견제출 / 95.4.20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1종시설물에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 2종시설물에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8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확정)

- 현 황 : 95.2.8~2.28 입법예고 / 95.2.22 본 협회 의견제출 / 95.6.3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결함으로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외에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구조 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등을 추가, 시정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구조상 주요부분으로 건축법상의 주요구조부 외에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를 추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사본과 자기 디스크를 제출하고 시설물 존속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확정)

- 현 황 : 95.1.5 공포 / 95.4.1 시행
- 주요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에 건축사업에 의한 설계자가 포함됨, 이 법이 적용되면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부당환품의 금지, 부당감액의 금지,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의 금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확정)

- 현 황 : 95.1.26~2.14 입법예고 / 95.2.9 본 협회 의견제출 / 95.4.1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건축설계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 종업원수 30인 미만인 기업자로 함, 하도급거래분쟁 사건의 조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주차장법(미확정)

- 현 황 : 95.9.26 건설교통부에서 의견 조회 / 95.9.30~10.9 입법예고 / 95.10.7 본 협회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주차장법의 적용대상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이용관리상의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노상, 노외주차장은 전지역)까지 확대, 주차난이 도심과 외곽지역, 도시와 농촌의 구별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의 의미가 상실되어 동 제도를 폐지하고, 주차장정비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도시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확정)

- 현 황 : 95.3.7 건설교통부에서 의견 조회 / 95.3.17 본 협회 의견 제출 / 95.5.12~6.1 입법예고 / 95.8.5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함,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물 부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 소방법시행령(확정)

- 현황 : 95.4.15~5.6 입법예고 / 95.4.26 본 협회 의견제출 / 95.8.10 공포, 시행(소방시설공사의 하자 및 소방안전

기술위원회 관련규정은 96.1.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장소중 연면적 1천㎡ 미만의 것으로서 소화기구, 비상경비설비,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 등 또는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함. 관람집회,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지하가 등은 6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 소방공사 감리대상을 건축허가동의대상 (400㎡이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1천㎡ 이상의 것으로 하되, 10층 이하 아파트, 학교, 공공업무시설 및 냉동창고 등과 소방시설작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소방공사 감리대상에서 제외. 소방공사의 감리대상 중 상주감리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것으로 완화.

◇ 소방법 시행규칙(미확정)

- 현 황 : 95.4.15~5.6 입법예고 / 95.4.26 본 협회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건축허가동의요구서 제출서류 중 건축물, 가스시설 등의 설계도면,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증 및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사본을 폐지하는 대신 소방시설별 계통도 및 작동설명서와 소방계획서(연면적 5천㎡ 이상인 것에 한한다)만을 제출토록 완화, 소방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경우 소방서의 완공검사로 갈음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공사완공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서의 완공검사로 갈음,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중 기계분야업과 전기분야업중의 업무구분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확정)

- 현 황 : 95.10.5 공포, 시행
- 주요내용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이 200세대미만이고 주택연면적이 건축물연면적의 50%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연면적의 70% 미만이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

국제교류

◇ 중국 건설부감찰설계사 대표단 우리 협회 방문

중국 건설부 감찰설계사 사장 우이량외 7인이 지난 4월 26일에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한·중 수교이후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는 한·중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교류활성화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본 협회 김규태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국제위원들은 이들 대표단을 맞이하여 상호 관심사인 한·중 양국간 건설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사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실태, 기타 양국관심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누는 등 상호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 폴란드 언론인단 우리 협회 방문

폴란드 Gazeta Wyborcza지 언론인단 3명이 지난 5월 3일에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한국과 폴란드간 건축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폴란드 언론인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정보수집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협회 김지덕 국제위원장 및 국제위원들은 이들 방문단을 맞이하여 한국의 도시계획 및 건축형태, 한국 전통건축양식의 보존실태와 복원, 한국과 유럽 건축양식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



◇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우리 협회 김규태 회장을 단장으로한 몽고, 중국방문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두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몽, 한·중간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과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 우리협회는 몽고건축사협회와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건축 및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 방문에서는 한·중 양국간 건설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운영실태,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일본 하마마쓰지부 건축사방문단 우리 협회 방문

일본 건축사회 스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 가도 히데야키 지부장의 19인이 지난 7월27일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전광역시 건축사협회와의 건축문화교류 10주년 축하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협회 박경환 부회장 및 서울건축사회 이의구 회장은 이들 방문단을 맞이하여 양국 상호 관심사에 관해 환담하는 등 한·일 양국간의 건축문화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 중국산동성건축공정관리국 방문단 우리협회 방문

중국 산동성 건축공정관리국 부국장과 9명이 지난 9월 22일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지난 4월 26일 중국건설부 감찰설계사 대표단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가 되는 이들 일행의 방문은 그동안 한·중 수교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온 한·중 건축교류 활성노력의 결실이 가시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 건축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한·중 건축발전공동논의의 차 이루어졌다.



◇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서 조인식 체결

몽고건축사협회 김보 미야구마로 회장과 7인의 대표단이 지난 10월 24일 우리 협회를 방문, 제3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지난 10월 26일에는 한·몽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에 체결된 한·몽 상호 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서는 지난 7월 24일 몽골 울란바트르에서 한·몽건축사협회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행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협정서에서 양 협회는 양국의 설계를 비롯한 전문단체와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지원하며, 전문단체간의 협력형태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양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양 협회에서 보내온 전시품을 전시회를 통해 소개하고 양국의 건축학과 교수 및 학생의 교류 및 건축과 도시분야의 문제점을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에서 주최하는 건축설계경기에 상호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 협회는 몽고 건축사 협회에 건축설계에 실무경험이 많은 건축사 및 건축실무에 관한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단 우리협회 방문

1985년 3월 체결된 한·일건축사 교류각서에 의거 건축기술정보 교류 및 상호 친선도모를 위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 또는 초청 등의 형식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회장과 3인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협회를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회장단들은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된 우리 협회 제3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한·일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 우리협회 대표단, 중국 건축사시험 시찰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전역에 걸쳐 실시된 중국 건축사시험에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과 5인의 대표단이 중국건축사시험 관찰원 자격으로 중국 건축사시험을 시찰하였다. 우리협회 대표단은 특히 북경, 서안, 상해 등 3개지역을 시찰하여 중국 건축사시험제도 및 관리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이 앞으로 건축사시험과 관련한 각국의 현황, 각국의 건축사시험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건축계 전반에 걸친 국제경쟁력 강화에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측은 남북한 건축사들의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 적극 중개역할을 하기로 했다.



◇ 제8차 아카시아 토론회 참가

우리협회 아카시아 토론회 대표단 6인이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웨스턴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8차 아카시아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아시아 회원국간의 건축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아카시아 토론회는 아시아지역 15개국 건축사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아카시아 토론회는 "아시아 1백년의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싱가포르 라폴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아카시아 건축작품전시회에 '9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3작품(포스코센터, 삼성국제경영연구소, 경희분당차병원)을 출품하였다.

창립30주년 기념행사



1965년 10월 23일 건축사법에 의해 우리 협회가 설립된지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창립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23일(월) 오후 6시에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각계인사와 대의원, 협회 임·직원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내빈소개 및 협회 연혁소개,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에는 강삼재 민자당 사부총장 등 각계 초청인사를 비롯하여 사와다 미쓰프사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장, 금보 미야구마르 몽골건축사협회장 등 해외 축하사절단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9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은 작년에 비해 최종합격자가 약4배 증가된 가운데 지난 10월 28일(토) 오전 10시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공고되었다. 총 6,427명이 응시하여 2,703명이 1차를 통과하여 최종 합격자가 1,387명으로 나타난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은 합격률 21.6%를 기록했으며, 전체합격자중 여성합격자가 75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17명에 비해 여성의 건축분야 전문직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95년도에 실시된 건축사자격(면허)시험의 일정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정

- 시험시행공고: '95. 5. 20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95. 5. 25~5. 31
- 1차 시험시행: '95. 7. 9 동국대학교
- 1차 합격자 발표: '95. 7. 20
- 2차 시험시행: '95. 9. 3 서울고, 선린상고
- 최종합격자 발표: '95. 10. 28
- 면허증(수첩)교부: '95. 12. 18~19

◇ 응시현황

출원자	응시자	1차합격자	2차응시자	최종합격자
7,761명	6,427명	2,703명 (42.1%)	2,675명	1,387명 (21.6%)

'95 한국건축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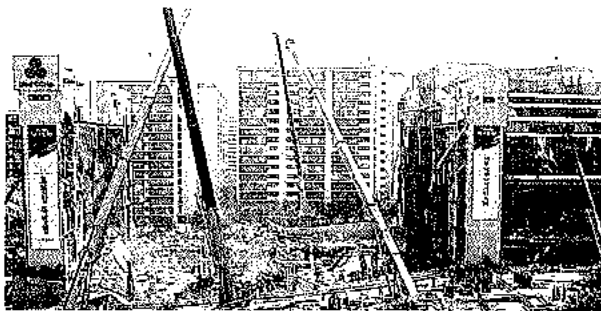


우리 협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95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총 76개 작품이 출품된 공공건축물 부문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1차 사전첨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치는 엄정한 심사결과, 영예의 대상은 간삼건축이 출품한 포스코센터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본상4점에게는 쌍용투자증권사옥(원도시건축), 분당차병원(공간건축), 삼성국제경영연구소(삼우건축), 홍천휴게소 팜파스(에스티메타건축)가 선정되었고, 그외 우수상3점, 입선17점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신인부문 및 각 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부문은 각각 16점, 179점이 출품되어 신인부문 최우수상은 류상보+한상범(ECTO 건축)의 Live Showwindow, 우수상은 박남규(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의 열린병원, 학생부문 최우수상은 한선정(서울대 건축과)의 동사무소, 우수상은 김지혁+박준규(울산대 건축학과)의 집-농촌주거계획안이 각각 수상하였고 이어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47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0월 16일(월)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과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등 건축계 관련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많은 보도간들의 열띤 취재속에 거행되었다. 또한 수상작 70여작품에 대한 전시회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려 건축인, 학생,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건축사연금정산

지난 '95. 10. 24일 제30회 정기총회에서 95년 10월 31일 연금기금 최종잔금 7백60억원을 개인별 연금정산배당금 산정방식에 따라 개인별 연금정산 배당금을 95년 11월 1일부터 지급기로 하고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정산배당금 지급 지정은행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송금요청 통장에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둘째, 연금대상자(회원 및 폐업후 연금 미수령자) 중 법원에 의해 건축사연금이 채권 가압류된 회원은 법원 및 채권자의 채무해소 확인후 정산처리 하고 셋째, 정산결의후 정산배당금이 우선 지급된 사망자는 잔여액만 추가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95년 11월 1일부터 건축사연금 정산배당금을 지급 대행 은행을 통해 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95년 11월 24일부로 총 4,713명에게 총 75,637,559,600원이 지급되었고, 계좌번호 미제출자 및 특별관리대상자 30명 (354,346,260원)에 대해서는 지급 준비중이다. 또한 95년 11월 연금정산 후 잔액 2,112,253,562원에 대해서는 96년 10월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제2차 연금정산을 할 예정이다.

삼풍백화점사고 특별점검 대책반 운영



우리 협회는 지난 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관련하여 대국민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삼풍백화점 특별점검 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긴급 구성, 붕괴사고이후 현장복구 및 인명구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협회 임원 6인과 재건축위원회 위원8인, 건축구조전문회원 5인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대책반은 1일 2~3개조를 편성, 매일 현장상황 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합리적인 구조작업 등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시 대책본부 상황실팀과 함께 상황발생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자문활동도 벌였다. 또한 사고현장 및 난지도 폐기물 처리장에서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따른 시료(코어)를 채취하여 국립건설시험소에 긴급 조사를 의뢰하고 검.경 합동수사 본부와 사고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토론회 및 간담회

◇ 건축사업무제도의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4백여 회원과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업무제도의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건설사고의 반발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업체 등이 건축.건설업의 경쟁력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제도.관행 등의 적극적 개선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과제〈건축설계 업무제도 개선방안〉, 제2과제〈건축공사 감리 업무제도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각각 설계 및 감리분야 주제 발표에 이어 8명의 건축설계, 시공분야 전문인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각 분야의 토론회자들은 현재 국내의 건설 및 건축업계의 환경에서 건축설계의 창작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겸하게 되면 건설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창작성을 표현할 수 없고, 정부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한 심의를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설계자가 정부 기준대로 설계하면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각종제도를 기준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최신위원회에서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부결된 것을 대형 건설업체가 다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

우리 건축계의 현안문제점과 건축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가 지난 10월 25일 정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호라이즌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건설교통부 김건호 건설지원실장, 손학래 건축기획관, 이재욱 건축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김규태 회장과 박경환 부회장, 이종만 법제위원장, 임인혁 설계위원장, 각 시.도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는 건설업 종합면허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밖에도 다중 이용시설의 감리와 건축사법의 벌칙관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